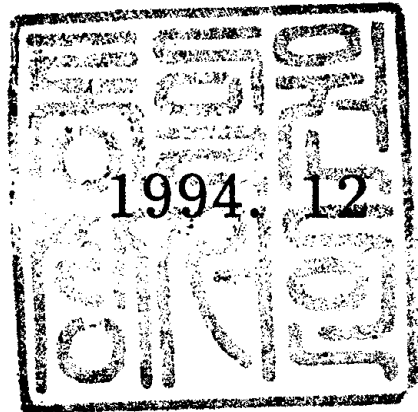


북한 인권자료-I

# 인권관련 법규 및 동·서독 사례연구



통 일 원

- 본 자료집은 통일원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인권관련 국내외 법규 및 동·서독 인권문제 연구사례 등을 종합정리하여 발간한 것입니다.
- 당원은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켜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사회의 변화 및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삶의 질 향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우선 관련자료집의 발간 등을 통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에 부응코자 합니다.
- 본 자료집이 분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통일문제와 북한인권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적극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통 일 정 책 실

# 차 례

I. 인권관련 법규 .....	5
1. 인권관련 국제법규 .....	7
가. 국제연합(UN)헌장('45. 6) .....	7
나. 세계인권선언('48. 12).....	35
다. 국제인권규약('66. 12).....	43
① A규약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43
② B규약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57
③ C규약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82
라. 난민의 지위에 관한협약('51) 및 의정서('66) .....	87
2. 인권관련 국내법규 .....	116
<한 국>	
가. 대한민국 헌법.....	116
나. 국적법 및 시행령 .....	137
다. 귀순북한동포보호법 및 시행령 .....	142
라.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령(난민관련 부분).....	154
<북 한>	
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92) .....	160
나. 조선로동당 규약('80) .....	186
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87) .....	211
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92) .....	234

II. 동·서독 사례연구 .....	281
1. 동·서독 인권관련 법규 .....	283
가. 긴급수용법 및 시행령 .....	283
나. 헬싱키 최종의정서('75.8) 요지 .....	283
* 첨부 : 『헬싱키 최종의정서』 제3범주(인도 및 기타분야 협력부문)	
영문 원문	
2. 동·서독 인권문제 논란 .....	318
가. 국제적인 인권규약과 동독 .....	318
나. 동·서독 인권개념의 차이 .....	319
다. 동독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	321
라. 국제적 비난에 대한 동독의 대응 .....	328
마. 서독정부의 대동독 인권정책 .....	329
① 동독지역 정치범 석방을 위한 내독간 비밀거래 .....	334
② 동독지역 정치적 폭행사례 기록보존소 .....	353
바. UN 등 국제기구를 통한 동독인권문제 거론 .....	358
3. 과거 동독주민들의 이주·탈출과 서독정부의 대처 .....	362
가. 과거 동독주민들의 이주·탈출 현황 .....	362
나. 이주민·탈출자에 대한 서독정부의 대처 .....	364
다. 동독주민의 재외서독공관·동독주재서독상주대표부 피난사례에 대한 서독정부의 대응 .....	372



4. 독일 이주민 및 정주민 수용과 지원조치 .....	376
가. 이/정주민 동화대책 .....	377
나. 이/정주민 수용절차 .....	382
다. 이/정주민 지원조치 .....	384
① 수용소 체재시 지원내역 .....	384
② 수용소 도착이후 지원내역 .....	398
라. '89 동독탈출난민의 서독 수용 및 지원 .....	418
5. 1989년 동독탈출난민 처리 및 협상과정 .....	424
가. 동독주민의 탈출경과 .....	424
나. 동독정부의 대응 .....	426
다. 서독정치권의 대응 및 논쟁 .....	428
라. 서독-헝가리 정부간 교섭 .....	433
마. 동·서독간 접촉 .....	436
바. 서독-동독, 체코, 폴란드 정부간 교섭 .....	438
사. 서독의 국내조치 .....	440
6. 1989년 동구권 경유 동독탈출난민 일지 .....	442

# I. 인권관련 법규

# 1. 인권관련 국제법규

## 가. 國際聯合(UN)憲章(1945年 6月 26日)

改正 1965. 8. 31

우리들 聯合國의 人民은, 우리들의 一生중 두번이나 말할 수 없는 悲哀를 人類에 게 가져 온 戰爭의 慘害로부터 다음의 世代를 救出하고, 基本的人權과 人間의 尊嚴과 價値와 男女 및 大小各國의 同權에 관한 信念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正義와 條約 기타의 國際法의 源泉으로부터 나오는 義務의 尊重과 維持를 할 수 있는 條件을 확립하고, 보다 더 큰 自由속에서 社會的 進歩와 生活水準의 向上을 促進케 할 것. 그리고 이러한 目的을 위하여, 寬容을 實行하고 더욱 選良한 隣人으로서 서로 平和로운 生活을 하고, 國際的 平和와 安全을 維持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힘을 合하고, 共同의 利益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武力을 行使하지 않는다는 原則의 受諾과 方法의 設定에 의하여 확보하고, 모든 人民의 經濟的 및 社會的 발달을 促進하기 위하여 國際的 機構를 사용할 것을 決議하여, 이러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努力을 結集할 것을 決定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各自의 政府는 샌프란시스코市에 會合하여 全權委任狀을 提示하고 그것이 良好妥當하다고 인정된 代表者를 통하여 이 國際聯合憲章에 同意하였으므로 이에 國際聯合이라는 國際機構를 設立한다.

## 第1章 目的과 原則

第1條 國際聯合의 目的은 다음과 같다.

① 國際間的 平和와 安全을 維持하는 것. 이 目的을 위하여 平和에 대한 威脅의

防止 및 除去와 侵略行爲 기타의 平和破壞의 鎮壓을 위하여 有效한 集團的 措置를 取할 것과 平和를 破壞할 우려있는 國際的 紛爭 또는 事態의 調整 또는 解決을 平和的 手段에 의하고 더욱 正義와 國際法의 原則에 따라서 實現하는 것.

②人民의 同權 및 自決의 原則에 基礎를 두고 諸國間의 友好關係를 발전케 할 것과 아울러 世界平和를 強化하기 위한 適當한 措置를 取할 것.

③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또는 人道的 性質을 가지고 國際的 問題를 解決함에 있어서도 人種, 性, 言語 또는 宗教에 의한 差別없이 모든 사람의 人權과 基本的 自由를 尊重하도록 助長獎勵함에 있어서 國際協力을 達成할 것.

④이와같은 共通의 目的을 達成함에 있어서 各國의 行動을 調和하기 위한 中心이 될 것.

第2條 이 機構와 이의 加盟國은 第1條에 舉示한 目的을 達成함에 있어서는 다음 的 原則에 따라서 行動하여야 한다.

①이 機構는 모든 加盟國의 主權平等의 原則에 基礎를 두고 있다.

②모든 加盟國은 加盟國의 地位로부터 결과되는 權利와 利益을 全加盟國에 保障하기 위하여 이 憲章이 負荷하는 義務를 誠實히 履行하여야 한다.

③모든 加盟國은 國際紛爭을 平和的手段에 의하여 國際平和와 安全과 正義를 危殆롭게 하지 않도록 解決하여야 한다.

④모든 加盟國은 그 國際關係에 있어서 武力에 의한 威嚇 또는 武力의 行使를 如何한 國家의 領土保全이나 또는 政治的 獨立에 대하여서도 또 國際聯合의 目的과 兩立할 수 없는 다른 如何한 方法에 의한 것이라도 이를 삼가야 한다.

⑤모든 加盟國은 國際聯合이 이 憲章에 따라서 取하는 如何한 行動에 대하여서라도 國際聯合에 모든 援助를 주고 더욱 國際聯合의 防止行動 또는 強制行動의 對象으로 되어 있는 如何한 國家에 대하여서라도 援助를 제공함은 삼가야 한다.

⑥이 機構는 國際聯合加盟國이 아닌 國家가 國際의 平和와 安全의 維持에 필요한 限 이러한 原則에 따라서 行動할 것을 확보하여야 한다.

⑦이 憲章의 如何한 規定도 本質上 그 國家의 國內管轄權내에 있는 事項에 干涉할 權限을 國際聯合에 賦與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러한 事項을 이 憲章에 基因하여 解決을 付託하여 오라고 加盟國에 대하여 要求하는 것도 아니다. 但, 이 原則은 第7章에 基因하는 強制措置의 適用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 第2章 加盟國의 地位

第3條 國際聯合의 原加盟國이란 샌프란시스코에서 國際機構에 관한 聯合國會議에 參加한 國家 또는 1942年 1月 1日의 聯合國宣言에 署名한 國家로서 이 憲章에 署名하고 더욱 第110條에 따라 이를 批准한 國家를 말한다.

第4條 ①國際聯合에 있어서의 加盟國의 地位는 이 憲章에 揭載한 義務를 受諾하고 또 이 機構에 의한 義務를 履行할 能力과 意思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모든 平和愛好國에 대하여 開放되어 있다.

②上記의 國家가 國際聯合의 加盟國이 되는 承認은 安全保障理事會의 勸告에 의하여 總會의 決定에 의한다.

第5條 安全保障理事會의 防止行動 또는 強制行動의 對象이된 國際聯合加盟國에 대하여는 總會가 安全保障理事會의 勸告에 의하여 加盟國으로서의 權利와 特權의 行使를 停止할 수 있다. 이러한 權利와 特權의 行使는 安全保障理事會가 回復할 수 있다.

第6條 이 憲章에 포함된 原則에 屢次 違反한 國際聯合加盟國은 總會가 安全保障理事會의 勸告에 의하여 이 機構로부터 除名할 수 있다.

### 第3章 機 關

第7條 ①國際聯合의 主要機關으로서 總會, 安全保障理事會, 經濟社會理事會, 信託統治理事會, 國際司法裁判所 및 事務局을 設置한다.

②필요하다고 인정된 補助機關은 이 憲章에 따라 設置할 수 있다.

第8條 國際聯合은 그 主要機關 및 補助機關에 男女가 如何한 地位에라도 平等한 條件으로 參加할 資格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如何한 制限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第4章 總 會

#### 【構成】

第9條 ①總會는 모든 國際聯合加盟國으로써 構成한다.

②각 加盟國은 總會에 있어서 5人 이하의 代表者를 낼 수 있다.

#### 【任務와 權限】

第10條 總會는 이 憲章의 범위내에 있는 問題 또는 事項 혹은 이 憲章에 規定한 機關의 權限 및 任務에 관한 問題 혹은 事項을 討議하고 아울러 第12條에 規定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와같은 問題 또는 事項에 대하여 國際聯合加盟國 혹은 安全保障理事會 또는 이 兩者에 대하여 勸告를 할 수 있다.

第11條 ①總會는 國際的 平和와 安全의 維持에 대한 協力에 관한 一般原則을 軍備縮小 및 軍備規制를 規律하는 原則을 포함하여 審議하고 아울러 이와 같은 原則에 대하여 加盟國 혹은 安全保障理事會 또는 이 兩者에 대하여 勸告를 할 수 있다.

②總會는 國際聯合加盟國 혹은 安全保障理事會에 의하여 또는 第35條②에 따라 國際聯合加盟國이 아닌 國家에 의하여 總會에 付託된 國際的平和와 安全의

維持에 관한 如何한 問題라도 討議하고 아울러 第12條에 規定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와 같은 問題에 대하여 1 혹은 2이상의 關係國 또는 安全保障理事會 혹은 이 兩者에 대하여 勸告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問題로 行動을 필요로 하는 것은 討議의 전 또는 후에 總會에 의하여 安全保障理事會에 付託되어 있어야 한다.

③總會는 國際的 平和와 安全을 危殆롭게 할 우려가 있는 事態에 대하여 安全保障理事會의 注意를 促求할 수 있다.

④本條에 게기한 總會의 權限은 第10條의 一般的範圍를 制限하는 것이 아니다. 第12條 ①安全保障理事會가 이 憲章에 의하여 賦與된 任務를 어느 紛爭이나 또는 事態에 대하여 수행하고 있는 동안은 總會는 安全保障理事會가 要請하지 않는 限 이 紛爭 또는 事態에 대하여 如何한 勸告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事務總長은 國際的 平和와 安全의 維持에 관한 事項으로서 安全保障理事會가 取扱하고 있는 것은 그 同意를 얻어 會期마다 總會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事務總長은 安全保障理事會가 그 事項의 取扱을 그만둔 경우에도 即時 總會 또는 總會가 開會중이 아닌 때에는 國際聯合加盟國에 대하여 同樣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第13條 ①總會는 다음 目的을 위하여 研究를 發議하고 아울러 勸告를 한다.

A. 政治的分野에 있어서 國際協力을 促進하는 것. 아울러 國際法의 漸進的發達과 法典化를 獎勵하는 것

B.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教育的 및 保健的分野에 있어서 國際協力을 促進하는 것 및 人種, 性, 言語 또는 宗教에 의한 差別없이 모든 人間을 위하여 人權과 基本的自由를 實現하도록 援助할 것

②前項B號에 게기한 事項에 관한 總會의 다른 責任, 任務 및 權限은 第9章과 第10章에 이를 게기한다.

第14條 第12條를 保留하고 總會는 基因의 如何에 불구하고 一般的福祉와 各國間에 友好關係를 害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如何한 事態에 대하여서라도 이를 平和的으로 調整하기 위한 措置를 勸告할 수 있다. 이 事態에는 國際聯合의 目的 및 原則을 정한 이 憲章의 規定의 違反에서 발생하는 事態가 포함된다.

第15條 ①總會는 安全保障理事會로부터 年次報告와 特別報告를 받아 이를 審議한다. 이 報告는 安全保障理事會가 國際的 平和와 安全을 維持하기 위하여 決定하고 또한 取한 措置의 說明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總會는 國際聯合의 他機關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를 審議한다.

第16條 總會는 第12章과 第13章에 基因하여 賦與된 國際信託統治制度에 관한 任務를 수행한다. 이 任務에는 戰略地區로서 指定되지 않은 地區에 관한 信託統治協定の 承認이 포함된다.

第17條 ①總會는 그 機構의 豫算을 審議하고 이를 承認한다.

②이 機構의 經費는 總會에서 割當한 바에 따라 加盟國이 負擔한다.

③總會는 第57條에 계기하는 專門機關과의 財政上 및 豫算上의 決定을 審議하고 承認하며 더욱 該當專門機關에 勸告할 目的으로써 그 專門機關의 行政的豫算을 檢査한다.

#### 【表決】

第18條 ①總會의 각 構成國은 1個의 投票權을 가진다.

②重要問題에 관한 總會의 決定은 出席하고 投票하는 構成國의 3分之2의 多數로써 정한다. 重要問題에는 國際的平和와 安全의 維持에 관한 勸告, 安全保障理事會의 非常任理事國의 選舉, 經濟社會理事會의 理事國의 選舉, 第86條 ① C號에 의한 信託統治理事會의 理事國의 選舉, 新加盟國의 國際聯合加盟의 承認, 加盟國으로서의 權利와 特權의 停止, 加盟國의 除名, 信託統治制度의 運用에 관한 問題와 豫算問題가 포함된다.



③기타 問題에 관한 決定은 3分之2의 多數에 의하여 決定될 問題의 새로운 部類의 決定을 포함하여 출석하고 投票하는 構成國의 過半數에 의하여 정한다.

第19條 이 構成에 대한 分擔金의 支拂을 延滯하고 있는 國際聯合加盟國은 그 延滯金의 金額이 그 당시까지의 滿 2年間に 그 國家가 支拂하여야 할 分擔金의 金額과 同額이거나 또는 이를 초과할 때에는 總會에서 投票權을 가지지 못한다. 但, 總會는 支拂의 不履行이 이러한 加盟國에 있어서 不可避한 事情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加盟國은 投票케 할 수 있다.

#### 【節次】

第20條 總會는 年次通常會期로서 또는 필요있는 경우에는 特別會期로서 會합한다. 特別會期는 安全保障理事會의 要請 또는 國際聯合加盟國의 過半數의 要請이 있을 때 事務總長이 招集한다.

第21條 總會는 그의 節次的 規則을 採擇한다. 總會는 그 會期마다 그 議長을 選舉한다.

第22條 總會는 그 任務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補助機關을 設置할 수 있다.

### 第5章 安全保障理事會

第23條 ①安全保障理事會는 國際聯合加盟國 15個國으로써 構成한다. 中華民國, 프랑스, 쏘비에트 社會主義共和國聯邦, 그레이트브리튼 및 北部아일랜드聯合王國과 美合衆國을 安全保障理事會의 常任理事國으로 한다. 總會는 첫째로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 및 本 機構의 기타 目的에 대한 國際聯合加盟國의 貢獻과 또는 衡平한 地理的 配置에 대해 특별히 妥當한 考慮를 하여 安全保障理事會의 非常任理事國이 될 그밖의 國際聯合加盟國 10個國을 選舉한다.

②安全保障理事會의 非常任理事國은 任期 2年으로써 選舉된다. 安全保障理事會의 理事國을 11個國에서 15個國으로 增加시킨 후, 最初의 非常任理事國의 選舉에서는 참가된 4個 理事國중 2個 理事國은 任期 1年으로써 選出된다.

③安全保障理事會의 各 理事國은 1人의 代表를 가진다.(1965. 8. 31 本條改正)

#### 【任務와 權限】

第24條 ①國際聯合의 신속하고 有效한 行動을 확보하기 위하여 國際聯合加盟國은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에 관한 第1次的 責任을 安全保障理事會가 지는 것으로 하고 또한 安全保障理事會가 이 責任에 基因하는 義務를 完遂함에 있어서 加盟國에 代身하여 行動하는 것에 同意한다.

②前記의 義務를 完遂함에 있어서는 安全保障理事會는 國際聯合의 目的과 原則에 따라 行動하여야 한다. 이 義務를 完遂하기 위하여 安全保障理事會에 賦與된 特定의 權限은 第6章, 第7章, 第8章 및 第12章에서 정한다.

③安全保障理事會는 年次報告를 또 필요한 경우에는 特別報告를 總會에 審議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第25條 國際聯合加盟國은 安全保障理事會의 決定을 이 憲章에 따라 受諾하고 더욱 履行함에 同意한다.

第26條 世界의 人的 및 經濟的 資源을 軍備를 위하여 轉用하는 것을 가장 적게 하고 國際的 平和와 安全의 확립과 維持를 促進할 目的으로 安全保障理事會는 軍備規制의 方式을 확립하기 위하여 國際聯合加盟國에 제출된 計劃을 第47條에 제기하는 軍事參謀委員會의 援助를 얻어 作成할 責任을 진다.

#### 【表決】

第27條 ①安全保障理事會의 各 理事國은 1個의 投票權을 가진다.

②節次事項에 관한 安全保障理事會의 決定은 9個 理事國의 贊成投票로써 成立된다.

③그밖의 모든 事項에 관한 安全保障理事會의 決定은 常任理事國의 同意投票를 포함하는 9個 理事國의 贊成投票로써 成立된다. 다만, 第6章 및 第52條 第3項에 의거한 決定에 있어서는 紛爭當事國은 投票權을 棄權해야 한다. (1965. 8. 31 本條改正)

【節次】

第28條 ①安全保障理事會는 계속하여 任務를 執行할 수 있도록 組織한다. 이를 위하여 安全保障理事會의 각 理事國은 이 機構의 所在地에 常任代表를 두어야 한다.

②安全保障理事會는 定期會議를 開催한다. 이 會議에 있어서는 각 理事國은 希望한다면 閣員 또는 특히 指名하는 다른 代表者를 세워서 할 수 있다.

③安全保障理事會는 그 事業을 가장 容易하게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이 機構의 所在地 이외의 場所에서 會議를 開催할 수 있다.

第29條 安全保障理事會는 그 任務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補助機關을 들 수 있다.

第30條 安全保障理事會는 議長을 選定하는 方法을 포함하는 그 節次規則을 採擇한다.

第31條 安全保障理事會의 理事國이 아닌 國際聯合加盟國은 安全保障理事會에 提起된 問題에 대하여 理事會가 그 加盟國의 利害에 특히 影響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이 問題의 討議에 投票權없이 參加할 수 있다.

第32條 安全保障理事會의 理事國이 아닌 國際聯合加盟國 또는 國際聯合加盟國이 아닌 國家는 安全保障理事會의 審議중인 紛爭의 當事者인 경우에는 이 紛爭에 관한 討議에 投票權없이 參加하도록 勸誘하여야 한다. 安全保障理事會는 國際聯合加盟國이 아닌 國家의 參加를 위하여 公正하다고 인정되는 條件을 정한다.

## 第6章 紛爭의 평화적 解決

第33條 ①如何한 紛爭이라도 그 계속이 國際的 平和와 安全의 維持를 危殆롭게 할 우려가 있는 事件에 대하여서는 그 當事者는 먼저 第一로 交渉, 審査, 仲介, 調停, 仲裁裁判, 司法的 解決, 地域的 機關 또는 地域的 協定の 이용 기타 當事者가 選擇하는 平和的 手段에 의한 解決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安全保障理事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當事者에 대하여 이 紛爭을 前記의 手段에 의하여 解決하도록 要請한다.

第34條 安全保障理事會는 如何한 紛爭에 대하여서도 國際的 摩擦로 引導하고 또는 紛爭을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如何한 事態에 대하여서도 그 紛爭 또는 事態의 계속이 國際的 平和와 安全의 維持를 危殆롭게 할 우려가 있나 없나를 決定하기 위한 調査를 할 수 있다.

第35條 ①國際聯合加盟國은 如何한 紛爭에 대하여서도 第34條에 계기한 性質의 如何한 紛爭에 대하여서도 이 憲章에 정한 平和的 解決의 義務를 이 紛爭에 관하여 미리 受諾한다면 安全保障理事會 또는 總會의 注意를 促求할 수 있다.

③本條에 의하여 注意를 促求된 事項에 관한 總會의 節次는 第11條 및 第12條의 規定에 따라야 한다.

第36條 ①安全保障理事會는 第33條에 계기한 性質의 紛爭 또는 同様の 性質의 事態의 如何한 段階에 있어서도 적당한 調整의 節次 또는 方法을 勸告할 수 있다.

②安全保障理事會는 當事者가 이미 採用한 紛爭解決의 節次를 고려에 넣어야 한다.

③本條에 의한 勸告를 함에 있어서는 安全保障理事會는 法律的 紛爭이 國際司法裁判所規程의 規定에 따라 當事者에 의하여 原則으로서 同 裁判所에 提訴하

여야 한다는 것도 考慮에 넣어야 한다.

第37條 ①第33條에 제기한 性質의 紛爭의 當事者는 同條에 擧示한 手段에 의하여 이 紛爭을 解決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安全保障理事會에 提起하여야 한다.

②安全保障理事會는 紛爭의 계속이 國際的 平和와 安全의 維持를 危殆롭게 할 우려가 實際로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36條에 基한 行動을 取하든가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解決條件을 勸告하든가 그 어느쪽을 決定하여야 한다.

第38條 第33條 내지 第37條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安全保障理事會는 如何한 紛爭에 관하여서도 모든 紛爭當事者가 要請한다면 그 平和的 解決을 위하여 그 當事者에 대하여 勸告를 할 수 있다.

## 第7章 平和에 대한 威脅, 平和의 破壞 및 侵略行爲에 관한 行動

第39條 安全保障理事會는 平和에 대한 威脅, 平和의 破壞 또는 侵略行爲의 存在를 決定하고 아울러 國際的 平和와 安全을 維持하고 또 回復하기 위하여 勸告를 하고 또는 第41條 및 第42條에 따라 如何한 措置를 取할 것인가를 決定한다.

第40條 事態의 惡化를 防止하기 위하여 第39條의 規定에 의하여 勸告하고 또는 措置를 決定하기 전에 安全保障理事會는 필요 혹은 希望하는 暫定措置에 따르도록 關係當事者에 要請할 수 있다. 이 暫定措置는 關係當事者의 權利, 請求權 또는 地位를 害하는 것이 아니다. 安全保障理事會는 關係當事者가 이 暫定措置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일에 妥當한 考慮를 하여야 한다.

第41條 安全保障理事會는 그 決定을 實施하기 위하여 兵力의 사용 이외의 如何한 措置를 사용할 것인가를 決定할 수 있고 더우기 措置를 適用하도록 國際聯

합加盟國에 要請할 수 있다. 이 措置는 經濟關係 및 鐵道, 航海, 航空, 郵便, 電話, 無線通信 기타의 運輸通信手段의 全部 또는 一部の 中斷과 外交關係의 斷絶을 포함할 수 있다.

第42條 安全保障理事會는 第41條에 정한 措置로서는 不充分하다고 인정하고 또는 不充分한것이 判明될 때에는 國際的平和와 安全의 維持 또는 陸軍의 行動을 取할 수 있다.

第43條 ①國際的 平和와 安全의 維持에 貢獻하기 위하여 모든 國際聯合加盟國은 安全保障理事會의 要請에 의하여 또는 1 혹은 2 이상의 特別協定에 따라 國際的 平和와 安全의 維持에 필요한 兵力, 援助 및 便益을 安全保障理事會에 이용케 할 것을 約束한다. 이 便益에는 通過의 權利가 포함된다.

②前記의 協定은 兵力의 數 및 種類, 그 出動準備程度 및 一般的 配置와 제공될 便益 및 援助의 性質을 規定한다.

③前記의 協定은 安全保障理事會의 發議에 의하여 되도록 신속히 交渉한다. 이 協定은 安全保障理事會와 加盟國과의 사이 또는 安全保障理事會와 加盟國群과의 사이에 締結되고 또한 署名國에 의하여 各自의 憲法上의 節次에 따라 批准되어야 한다.

第44條 安全保障理事會는 兵力을 사용하기로 決定하였을 때에는 理事會에 代表가 없는 加盟國에 대하여 第43條에 의하여 負荷된 義務의 履行으로서 兵力의 제공을 要請하기 전에 그 加盟國이 希望한다면 그 加盟國의 兵力중의 割當部隊의 사용에 관한 安全保障理事會의 決定에 參加하도록 그 加盟國을 勸誘하여야 한다.

第45條 國際聯合이 緊急한 軍事措置를 取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加盟國은 合同의 國際的 強制行動을 위함 國內空軍部隊割當數를 即時 이용에 供할 수 있도록 保持하여야 한다. 이들 該當部隊의 數量과 出動準備程度와 그 合同行動

의計劃은 第43條에 계기하는 1 혹은 2이상의 特別協定の 規定範圍내에서 軍事參謀委員會의 援助를 얻어서 安全保障理事會가 決定한다.

第46條 兵力使用의 計劃은 軍事參謀委員會의 援助를 얻어 安全保障理事會가 作成한다.

第47條 ①國際的 平和와 安全의 維持를 위하여 安全保障理事會의 軍事的要求, 理事會의 自由에 委任된 兵力의 사용 및 指揮, 軍備規制와 可能한 軍備縮少에 관한 모든 問題에 관하여 理事會에 助言 및 援助를 하기 위하여 軍事參謀委員會를 設置한다.

②軍事參謀委員會는 安全保障理事會의 常任理事國의 參謀總長 또는 그 代表者로써 構成한다. 이 委員會에 常任委員으로서 代表되지 아니한 國際聯合加盟國은 委員會의 責任의 有效한 수행을 위하여 委員會의 事業에 그 國家의 參加가 필요한 때에는 委員會에 의하여 이와 提携하도록 勸誘되어야 한다.

③軍事參謀委員會는 安全保障理事會 밑에서 理事會의 自由에 委任된 兵力의 戰略的措置에 관하여 責任을 진다. 이 兵力의 指揮에 관한 問題는 뒤에 解決한다.

④軍事參謀委員會는 安全保障理事會의 許諾을 얻어 적당한 地域的 機關과 協議한 후 地域的 小委員會를 設置할 수 있다.

第48條 ①國際的 平和와 安全의 維持를 위한 安全保障理事會의 決定을 履行함에 필요한 行動은 安全保障理事會가 定하는 바에 따라 國際聯合加盟國의 全部 또는 一部에 의하여 取하여진다.

②前記의 決定은 國際聯合加盟國에 의하여 직접으로 또 國際聯合加盟國이 參加하고 있는 적당한 國際機關에 있어서의 그 加盟國의 行動에 의하여 履行된다.

第49條 國際聯合加盟國은 安全保障理事會가 決定한 措置를 履行함에 當하여 共同하여 相互援助를 供與하여야 한다.

第50條 安全保障理事會가 어느 國家에 대하여 防止措置 또는 強制措置를 取하

였을 때에는 他國에서 이 措置의 履行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經濟問題가 自國에 관계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國際聯合加盟國이고 아니고를 不問하고 이 問題의 解決에 대하여 安全保障理事會와 協議할 權利를 保有한다.

第51條 이 憲章의 如何한 規定도 國際聯合加盟國에 대하여 武力攻擊이 발생한 경우에는 安全保障理事會가 國際的 平和와 安全의 維持에 필요한 措置를 取하는 동안 個別的 또는 集團的 自衛의 固有의 權利를 沮害하는 것은 아니다. 이 自衛權의 行使에 당하여 加盟國이 取한 措置는 即時 安全保障理事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또 이 措置는 安全保障理事會가 國際的 平和와 安全의 維持 또는 回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行動을 언제든지 取하는 이 憲章에 基因한 權能과 責任에 대하여는 何等의 影響이 없다.

## 第8章 地域的 協定

第52條 ①이 憲章의 如何한 規定도 國際的 平和와 安全의 維持에 관한 事項으로서 地域的 行動에 적당한 것을 처리하기 위한 地域的 協定 또는 地域的 機關의 存在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但, 이 協定 또는 機關 및 그 行動이 國際聯合의 目的과 原則에 一致할 것을 條件으로 한다.

②前記의 協定을 締結하고 또는 前記의 機關을 組織하는 國際聯合加盟國은 地方的紛爭을 安全保障理事會에 提起하기 전에 이 地域的 協定 또는 地域的 機關에 의하여 이 紛爭을 平和的으로 解決하도록 모든 努力을 하여야 한다.

③安全保障理事會는 關係國의 發議에 의한 것이거나 아니거나를 不問하고 前記의 地域的 協定 또는 地域的 機關에 의한 地方的 紛爭의 平和的 解決의 발달을 獎勵하여야 한다.

④本條는 第34條 및 第35條의 適用을 何等妨害하는 것은 아니다.



第53條 ①安全保障理事會는 그 權威下에 있어서의 強制行動을 위하여 適當한 경우에는 前記의 地域的 協定 또는 地域的 機關을 이용한다.

但, 如何한 強制行動도 安全保障理事會의 許可없이는 地域的 協定에 의하여 또는 地域的 機關에 의하여 取하여서는 아니된다. 但, 本條②에 規定한 敵國에 대한 措置중 第107條에 따라 規定되는 것 또는 이 敵國에 대한 侵略政策의 再現에 對備하는 地域的 協定에 있어서 規定되는 것은 關係政府의 要請에 의하여 이 機構가 그 敵國에 의한 새로운 侵略을 防止하는 責任을 질때까지 예외로 한다.

② 本條①에서 사용하는 敵國이라는 用語는 第二次 戰爭중에 이 憲章의 어느 署名國의 敵國이었던 國家에 適用된다.

第54條 安全保障理事會는 國際的 平和와 安全의 維持를 위하여 地域的 協定에 의하여 또는 地域的 機關에 의하여 開始되고 또는 企圖되고 있는 活動에 대하여 恒常 充分한 通報를 받고 있어야 한다.

## 第9章 經濟的 및 社會的 國際協力

第55條 人民의 同權과 自決의 原則의 尊重에 基礎를 두는 諸國間의 平和的이며 友好的인 관계에 필요한 安定 및 福祉의 條件을 創造하기 위하여 國際聯合은 다음의 일을 促進하여야 한다.

- A. 一層높은 生活水準, 完全雇傭 및 經濟的, 社會的進歩와 발전의 條件
- B. 經濟的, 社會的 및 保健的 國際問題와 關係國際問題의 解決과 文化的 및 教育的 國際協力
- C. 人種, 性, 言語 또는 宗教에 의한 差別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人權과 基本的 自由의 普遍的인 尊重과 遵守

第56條 모든 加盟國은 第55條에 게기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이 機構와 協力하여 共同的 또는 個別的 行動을 取할 것을 誓約한다.

第57條 ①政府間의 協定에 의하여 設置된 各種의 專門機關으로서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教育的 및 保健的 分野와 關係分野에 있어서 그 基本的 文書로서 정하는 바에 따라 廣範한 國際的 責任을 지는 것은 第63條의 規定에 따라 國際聯合과 連携關係를 가져야 한다.

②이와같이 하여 國際聯合과 連携關係를 가지는 前記의 機關은 이하에서 專門機關이라 稱한다.

第58條 이 機構는 專門機關의 政策과 活動을 調整하기 위하여 勸告를 행한다.

第59條 이 機構는 적당한 경우에는 第55條에 게기한 目的의 達成에 필요한 새로운 專門機關을 設置하기 위하여 關係國間의 交涉을 發議한다.

第60條 이 章에 게기한 이 機構의 任務를 다할 責任은 總會와 總會의 權威下에서 經濟社會理事會가 擔當한다. 理事會는 이를 위하여 第10章에 게기하는 權限을 가진다.

## 第10章 UN 人權審議委員會

第61條 ①經濟社會理事會는 總會에 의해 選舉된 國際聯合加盟國 27個國으로써 構成한다.

②第3項의 規定을 條件으로 經濟社會理事會의 9個 理事國은 任期 3年으로써 每年 選舉된다. 退任理事國은 계속하여 再選될 資格을 가진다.

③經濟社會理事會의 理事國을 18個國에서 27個國으로 增加시킨 후 最初의 選舉에서는 그해 末에 任기가 滿了되는 6個理事國에 더하여 참가된 이들 9個理事國중 選舉된 3個 理事國의 任기는 總會에 의해 約定되는 바에 따라 1

年末에 滿了하고 그밖의 3個 理事國의 任期는 2年末에 滿了한다.

④經濟社會理事會의 각 理事國은 1人의 代表를 가진다.(1965. 8. 31 本條改正)

#### 【任務와 權限】

第62條 ①經濟社會理事會는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教育的 및 保健社會國際事項과 關係國際事項에 관한 研究와 보고를 행하고 또는 發議하고 아울러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總會, 國際聯合加盟國 및 관계 專門機關에 勸告할 수 있다.

②理事會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人權과 基本的 自由의 尊重과 遵守를 助長하기 위하여 勸告를 할 수 있다.

③理事會는 그 權限에 속하는 事項에 대하여 總會에 제출하기 위한 條約案을 作成할 수 있다.

④理事會는 國際聯合이 정하는 規則에 따라 그 權限에 속하는 事項에 관하여 國際會議를 召集할 수 있다.

第63條 ①經濟社會理事會는 第57條에 계기한 機關의 그 어느것과도 그 機關이 國際聯合과 連携關係를 맺기 위한 條件을 정하는 協定을 締結할 수 있다. 이 協定은 總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②理事會는 專門機關과의 協議와 專門機關에 대한 勸告 및 總會와 國際聯合加盟國에 대한 勸告에 의하여 專門機關의 活動을 調整할 수 있다.

第64條 ①經濟社會理事會는 專門機關으로부터 定期報告를 받기 위하여 적당한 措置를 取할 수 있다. 理事會는 理事會의 勸告와 理事會의 權限에 속하는 事項에 관한 總會의 勸告를 實施하기 위하여 取하여진 措置에대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國際聯合加盟國과 專門機關과의 協定을 締結할 수 있다.

②理事會는 前記의 보고에 관한 그 의견을 總會에 通報할 수 있다.

第65條 經濟社會理事會는 安全保障理事會에 情報를 제공할 수 있다. 經濟社會

- 理事會는 또한 安全保障理事會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이를 援助하여야 한다.
- 第66條 ①經濟社會理事會는 總會의 勸告를 履行함에 있어서 자기의 權限에 속하는 任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理事會는 國際聯合加盟國의 要請이 있을 때 또는 專門機關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總會의 承認을 얻어 役務를 제공한다.
- ③理事會는 이 憲章의 他部分에서 規定되고 또는 總會에서 자기에게 賦與된 기타의 任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表決】

- 第67條 ①經濟社會理事會의 각 理事國은 1個의 投票權을 가진다.
- ②經濟社會理事會의 決定은 출석하고 投票하는 理事國의 過半數에 의하여 행한다.

【節次】

- 第68條 經濟社會理事會는 經濟的 및 社會的 分野에 있어서의 委員會, 人權의 伸張에 관한 委員會 및 자기의 任務修行에 필요한 기타의 委員會를 設置한다.
- 第69條 經濟社會理事會는 어느 國際聯合加盟國에 대하여서도 그 加盟國에 특히 관계있는 事項에 관한 審議에는 投票權없이 參加하도록 勸告하여야 한다.
- 第70條 經濟社會理事會는 專門機關의 代表者가 理事會의 審議 및 理事會가 設置하는 委員會의 審議에 參加하기 위한 協定을 締結할 수 있다.
- 第71條 經濟社會理事會는 그 權限내에 있는 事項에 관계있는 民間團體와 協議하기 위하여 適當한 協定을 締結할 수 있다. 이 協定은 國際團體와의 사이에 또 適當한 경우에는 관계있는 國際聯合加盟國과 協議한 후에 國內團體와의 사이에 締結할 수 있다.
- 第72條 ①經濟社會理事會는 議長選定의 方法을 포함한 그 節次規則을 採擇한다.

②經濟社會理事會는 그 規則에 따라 필요가 있을 때에 會合한다. 그 規則은 理事國의 過半數의 要請에 의한 會議召集의 規定을 포함하여야 한다.

## 第11章 非自治地域에 관한 宣言

第73條 人民이 아직 完全한 自治를 행함에 이르지 않은 地域의 施政을 행할 責任을 가지고 또 그 責任을 지는 國際聯合加盟國은 그 地域의 住民의 利益이 至上이라는 原則을 承認하고 더욱이 이 地域의 住民의 福祉를 이 憲章이 확립하는 國際的 平和와 安全의 制度내에서 最高度까지 增進케 할 義務를 神聖한 信託으로서 受諾한다.

- A. 關係人民의 文化를 充分히 尊重하고 이 人民의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및 教育的 進歩와 公正한 待遇 및 虐待로부터의 보호를 확보할 것
- B. 각 地域 및 그 人民의 特殊事情과 人民의 進歩가 相異한 段階에 응하여 自治를 발달케 하고 人民의 政治的 願望에 妥當한 고려를 하고 더욱 人民의 自由로운 政治制度의 漸進的 發達에 대하여 人民을 援助할 것
- C. 國際的 平和와 安全을 增進할 것
- D. 本條에 계기하는 社會的, 經濟的 및 科學的 目的을 實際로 達成하기 위하여 建設的인 發展措置를 促進하고 研究를 獎勵하고 더욱 相互間 또는 적당한 경우에는 專門國際團體와 協力할 것
- E. 第12章과 第13章의 適用을 받는 地域을 제외하고 前記의 加盟國이 各己 責任을 지는 地域에 있어서의 經濟的, 社會的 性質의 統計 기타 資料를 安全保障과 憲法上의 고려에서 필요한 制限에 따를 것을 條件으로 하여 情報用으로서 事務總長에게 定期的으로 送付할 것

第74條 國際聯合加盟國은 또한 本章의 適用을 받는 地域에 관한 그 政策을 그

本土에 관한 政策과 같이 世界의 다른 地域의 利益과 福祉에 妥當한 고려를 한 뒤에 社會的, 經濟的 및 商業的 事項에 관하여 善隣主義의 一般原則에 基盤을 두도록 하는데 同意한다.

## 第12章 國際信託統治制度

第75條 國際聯合은 그 權威下에 國際信託統治制度를 設置한다. 이 制度는 今後의 個個의 協定에 의하여 이 制度下에 두게 되는 地域의 施政 및 監督을 目的으로 한다. 이 地域은 이하 信託統治地域이라 稱한다.

第76條 信託統治制度의 基本目的은 이 憲章의 第1條에 제기한 國際聯合의 目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 A. 國際的 平和와 安全을 增進할 것
- B. 信託統治地域의 住民의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및 教育的 進歩를 促進할 것. 각 地域과 그 人民의 特殊事情 및 關係人民이 自由로이 表明한 願望에 適合하도록 또 각 信託統治協定의 條項이 規定하는 바에 따라 自治 또는 獨立에 향하여 住民의 漸進的 發達을 促進할 것
- C. 人種, 性, 言語 또는 宗教에 의한 差別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人權과 基本的自由를 尊重하도록 獎勵하고 더욱 世界의 人民의 相互依存의 認識을 助長할 것
- D. 前記의 目的達成을 방해함이 없이 또 第90條의 規定을 留保하고 모든 國際聯合加盟國 및 그 國民을 위한 社會的, 經濟的 및 商業的 事項에 대하여 平等한 待遇를 확보하고 또 그 國民을 위하여 司法上 平等한 待遇를 확보할 것

第77條 ①信託統治制度는 다음 種類의 地域으로서 信託統治協定에 의하여 이 制度下에 두게 되는 것에 適用한다.

A. 現在 委任統治下에 있는 地域

B. 第二次 世界戰爭의 결과 敵國으로부터 分離된 地域

C. 施政에 대하여 責任을 지는 國家에 의하여 自發적으로 이 制度下에 두는 地域

②前記의 種類중 어느 地域을 如何한 條件으로서 信託統治制度下에 두게 되는  
가에 대하여서는 今後의 協定으로써 정한다.

第78條 國際聯合加盟國간의 관계는 主權平等의 原則의 尊重을 基礎로 하므로  
信託統治制度는 加盟國으로 된 地域에는 適用하지 않는다.

第79條 信託統治下에 두게 되는 각 地域에 관한 信託統治의 條項은 如何한 變  
更 혹은 改正도 포함하여 직접 關係國에 의하여 協定되고 또 第83條 및 第85  
條에 規定하는 바에 따라 承認되어야 한다. 이 직접關係國은 國際聯合加盟國의  
委任統治下에 있는 地域의 경우에는 受任國을 포함한다.

第80條 ①第77條, 第79條 및 第81條에 基하여 締結되고 각 地域을 信託統治下  
에 두는 個個의 信託統治協定에 있어서 協定되는 바를 제외하고 또 이와같은  
協定이 締結될때까지 本章의 規定은 어느 國家 또는 어느 人民의 如何한 權利  
라도 또 國際聯合加盟國이 各己 當事國으로 되어 있는 現在의 國際文書의 條  
項이라도 직접 혹은 間接으로 조금이라도 變更하는 것이라고 解釋하여서는 아  
니된다.

②本條①은 第77條에 規定하는 바에 따라 委任統治地域과 기타의 地域을 信託  
統治地域과 기타의 地域을 信託統治制度下에 두기 위한 協定の 交渉과 締結의  
遲滯 또는 延期에 대하여 根據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解釋하여서는 아니된다.

第82條 如何한 信託統治協定에 있어서도 그 協定이 適用되는 信託統治地域의  
一部 또는 全部를 포함하는 1 혹은 2이상의 戰略地區를 指定할 수 있다. 但,  
第43條에 의하여 締結되는 特別協定을 害하지 못한다.

第83條 ①戰略地區에 관한 國際聯合의 모든 任務는 信託統治協定 條項과 그 變

更 또는 改正의 承認을 포함하여 安全保障理事會가 행한다.

②第76條에 제기한 基本目的은 각 戰略地區의 人民에 適用한다.

③安全保障理事會는 國際聯合의 信託統治制度에 의한 任務로서 戰略地區의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및 教育的 事項에 관한 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信託統治理事會의 援助를 이용한다. 但, 信託統治協定에 따를 것으로 하고 또 安全保障의 考慮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第84條 信託統治地域이 國際的 平和와 安全의 維持에 대하여 그 役割을 다하게 함은 施政權者의 義務이다. 이를 위하여 施政權者는 이 點에 관하여 安全保障理事會에 대하여 지는 義務를 履行함에 당하여 또 地方的 防衛와 信託統治地域에 있어서의 法律과 秩序의 維持를 위하여 信託統治地域의 義勇軍의 便益 및 援助를 이용할 수 있다.

第85條 ①戰略地區로서 指定되지 않는 모든 地區에 관한 信託統治協定에 대하여서의 國際聯合의 任務는 이 協定의 條項과 그 變更 또는 改正의 承認을 포함하여 總會가 행한다.

②總會의 權威下에서 行動하는 信託統治理事會는 前記의 任務遂行에 대하여 總會를 援助한다.

## 第13章 信託統治理事會

### 【構成】

第86條 ①信託統治理事會는 다음의 國際聯合加盟國으로써 構成한다.

A. 信託統治地域의 施政을 행하는 加盟國

B. 第23條에 이름을 제기한 加盟國으로서 信託統治地域의 施政을 행하지 않는 國家



C. 總會에 의하여 3年の 任期로서 選舉된 기타의 加盟國 그 數는 信託統治理事會의 理事國의 總數를 信託統治地域의 施政을 행하는 國際聯合加盟國과 이를 행하지 않는 國家와를 均分함에 필요한 數로 한다.

②信託統治理事會의 각 理事國은 理事會에서 自國을 代表하는 특별한 資格있는 者 1名을 指名하여야 한다.

#### 【任務와 權限】

第87條 總會와의 그 權威下에 信託統治理事會는 그 任務遂行에 당하여 다음의 일을 행할 수 있다.

- A. 施政權者가 제출하는 보고를 審議할 것
- B. 請願을 受理하고 더욱 施政權者와 協議하여 이를 審査할 것
- C. 信託統治協定の 條項에 따라 前記의 行動 기타의 行動을 取할 것

第88條 信託統治理事會는 각 信託統治地域의 住民의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및 教育的 進歩에 관한 質問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또 總會의 權限내에 있는 각 信託統治地域의 施政權者는 이 質問書에 基하여 總會에 年次報告를 제출하여야 한다.

#### 【表決】

第89條 ①信託統治理事會의 각 理事國은 1個의 投票權을 가진다.

②信託統治理事會의 決定은 出席하고 投票하는 理事國의 過半數에 의하여 행한다.

#### 【節次】

第90條 ①信託統治理事會는 議長의 選定方法을 포함하는 그 節次規則을 採擇한다.

②信託統治理事會는 그 規則에 따라 필요가 있을 때 會合한다. 이 規則은 理事國 過半數의 要請에 의한 會議召集의 規定을 포함하여야 한다.

第91條 信託統治理事會는 적당한 경우에는 經濟社會理事會 및 專門機關의 各己 關係하고 있는 事項에 대하여 兩者의 援助를 이용한다.

## 第14章 國際司法裁判所

第92條 國際司法裁判所는 國際聯合의 主要한 司法機關이다. 이 裁判所는 附屬한 規程에 따라 任務를 行한다. 이 規定은 常設國際司法裁判所規程을 基礎로 하고 더우기 憲章과 不可分의 一體가 된다.

第93條 ①모든 國際聯合加盟國은 當然히 國際司法裁判所規程의 當事國으로 된다.

②國際聯合加盟國이 아닌 國家는 總會가 각 경우에 決定하는 條件으로서 安全保障理事會의 勸告에 의하여 國際司法裁判所規程의 當事國으로 된다.

③國際聯合加盟國이 아닌 國家는 總會가 각 경우에 決定하는 條件으로서 安全保障理事會의 勸告에 의하여 國際司法裁判所規程의 當事國으로 될 수 있다.

第94條 ①각 國際聯合加盟國은 自國이 當事者인 如何한 事件에 있어서도 國際司法裁判所의 裁判에 따를 것을 約束한다.

②事件의 一方의 當事者가 裁判所가 내린 判決에 基하여 自國이 義務를 履行하지 않을 때에는 他方의 當事者는 安全保障理事會에 提訴할 수 있다. 理事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判決을 執行하기 위하여 勸告를 하고 또는 取하여야 할 措置를 決定할 수 있다.

第95條 이 憲章의 如何한 規定도 國際聯合加盟國이 相互間의 紛爭의 解決을 이미 存在하고 또는 將來 締結할 協定에 의하여 他裁判所에 付託할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第96條 ①總會 또는 安全保障理事會는 如何한 法律問題에 대하여서라도 勸告的 意見을 주도록 國際司法裁判所에 要請할 수 있다.

②國際聯合의 기타의 機關 또는 專門機關으로서 언제든지 總會의 許可를 얻어야 하는 것은 또한 그 活動의 범위내에 있어서 發生하는 法律問題에 대하여 裁判所의 勸告的 意見을 要請할 수 있다.

## 第15章 事務局

第97條 事務局은 事務總長 1人과 이 機構가 필요로 하는 職員으로써 構成된다.

事務總長은 安全保障理事會의 勸告에 의하여 總會가 任命한다. 事務總長은 이 機構의 行政職員의 長이다.

第98條 事務總長은 總會, 安全保障理事會, 經濟社會理事會 및 信託統治理事會의 모든 會議에 있어서 事務總長의 資格으로서 行動하고 더욱 이들 機關으로부터 委託된 他任務를 수행한다. 事務總長은 이 機構의 事業에 대하여 總會에 年次 보고를 행한다.

第99條 事務總長은 國際的 平和와 安全의 維持를 威脅한다고 인정되는 事項에 대하여 安全保障理事會의 注意를 喚起할 수 있다.

第100條 ①事務總長과 職員은 그 任務의 수행에 당하여 如何한 政府로부터도 또는 이 機構외의 如何한 當局으로부터도 指示를 받고 또는 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事務總長과 職員은 이 機構에 대하여서만 責任을 지는 國際的 職員으로서의 地位를 壞損할 우려가 있는 如何한 行動도 삼가야 한다.

②各 國際聯合加盟國은 事務總長과 職員의 責任의 오로지 國際的인 性質을 尊重하는 것과 아울러 이들이 責任을 다함에 당하여 이들을 左右하려고 하지 않을 것을 約束한다.

第101條 ①職員은 總會가 設定하는 規則에 따라 事務總長이 任命한다.

②經濟社會理事會, 信託統治理事會 및 필요에 응하여 國際聯合의 기타의 機關에 適當한 職員을 常任으로서 配屬한다. 이 職員은 事務局의 一部이다.

③職員의 雇用과 勤務條件의 決定에 있어서 가장 고려하여야 할 것은 最高水準의 能率, 能力 및 誠實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職員은 되도록 廣範한 地理的 基礎에 의하여 採用하여야 하는 重要性에 대하여서는 妥當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실이 나타났을 때에 제기한다.

1. 판결, 판정의 기초로 삼았던 증거가 거짓이었을 때
2. 판결,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로써 재판할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알려졌을 때

제287조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은 그 판결을 받은 자가 죽은 다음에도 제기할 수 있다.

제288조 재심제기의 신청은 개인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검사에게 한다.

앞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1개월 안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자기의 의견을 붙여 그것을 중앙검찰소에 보낸다.

검사의 결심으로 재심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의 절차도 같다.

제289조 중앙검찰소 소장은 재심제기신청리유가 정당할 때에는 중앙재판소에 재심을 제기하며 부당할 때에는 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한다.

제290조 재심사건은 중앙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심리해결한다.

제291조 재심사건의 심리는 검사의 사건보고로부터 시작하며 필요한 심리를 한 다음 해당한 판정을 한다.

재심사건의 심리날자는 3일 전에 중앙검찰소에 알려야 한다.

제292조 중앙재판소는 재심제기의 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 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예심 또는 제1심재판소에 보내어 다시 심리하게 하거나 직접 기각하며 재심제기리유가 부당할 경우에는 재심을 거부하는 판정을 한다.

제293조 중앙재판소는 재심사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스는 이 宣言의 第5項의 規定에 따라 國際的平和와 安全의 維持를 위하여 필요한 共同行動을 이 機構에 같음하여 取하기 위하여 서로 필요에 응하여 다른 國際聯合加盟國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107條 이 憲章의 如何한 規定도 第二次 世界戰爭에 이 憲章의 署名國의 敵이 었던 國家에 관한 行動 중 그 行動에 대한 責任을 가지는 政府가 이 戰爭의 結果로서 取하고 또는 許可한 것을 無效로 하고 또는 排除하는 것이 아니다.

## 第18章 改 正

第108條 이 憲章의 改正은 總會의 構成國의 3分の 2의 多數로써 採擇되고 또 安全保障理事會의 모든 常任理事國을 포함한 國際聯合加盟國의 3分の 2에 의하여 各自의 憲法上의 節次에 따라 批准되었을 때 모든 國際聯合加盟國에 대하여 效力을 발행한다.

第109條 ①이 憲章을 再審議하기 위한 國際聯合加盟國의 全體會議은 總會의 構成國의 3分の 2의 多數와 安全保障理事會의 7理事國의 投票에 의하여 決定되는 날 및 場所에서 開催할 수 있다. 각 國際聯合加盟國은 이 會議에서 1個의 投票權을 가진다.

②全體會議의 3分の 2의 多數에 의하여 勸告된 이 憲章의 變更은 安全保障理事會의 모든 常任理事國을 포함한 國際聯合加盟國의 3分の 2에 의하여 各自의 憲法上의 節次에 따라 批准되었을 때에 效力을 발생한다.

③이 憲章의 效力發生후의 總會의 第10回 年次會期까지에 全體會議가 開催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召集하는 提案을 總會의 第10回 年次會期の 議事日程에 넣어야 하며 全體會議는 總會의 構成國의 過半數 및 安全保障理事會의 7理事國의 投票에 의하여 決定된 때에 開催하여야 한다.

## 第19章 批准과 署名

第110條 ①이 憲章은 署名國에 의하여 各自의 憲法上의 節次에 따라 批准되어야 한다.

②批准書는 아메리카合衆國政府에 任置된다. 同 政府는 모든 署名國과 이 機構의 事務總長이 任命된 경우에는 事務總長에 대하여 각 任置를 통고한다.

③이 憲章은 中華民國, 프랑스, 쏘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 그레이트브리튼 및 아일랜드聯合王國, 아메리카合衆國과 기타 署名國의 過半數가 批准書を 任置한 때에 效力이 발생한다. 批准書任置調書는 其時 아메리카合衆國政府가 作成하고 그 謄本은 모든 署名國에 送付한다.

④이 憲章의 署名國으로서 憲章의 效力이 生한 후에 批准하는 것은 各自의 批准書의 任置日에 國際聯合의 原加盟國으로 된다.

第111條 이 憲章은 中國語, 프랑스語, 러시아語, 英語 및 스페인語의 本文을 다 같이 正文으로 하고 아메리카合衆國政府의 記錄에 任置한다. 이 憲章의 認定謄本은 同 政府가 다른 署名國政府에 送付한다. 이상의 證據로서 聯合國政府의 代表者는 이 憲章에 署名하였다.

1945年 6月 26日에 샌프란시스코市에서 作成하였다.

## 나. 세계인권선언('48. 12)

### 전 문

인류사회의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여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함은 자유와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인권의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모독하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사람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는 일반사람의 최고이상으로서 선포되어 있으므로,

사람은 전제와 탄압에 대항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인권은 반드시 법률이 정한바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절대 필요하므로,

국가간의 우호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킴이 절대 필요하므로,

국제연합의 모든 국민은 그 현장에서 기본적인 인권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와 남녀 동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욱 많은 자유안에서 사회를 향상시키고 일층 높은 생활수준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기로 결의한 바 있으므로,

각 회원국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존경과 염을 촉진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는 이 서약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이제,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가 도달하여야 할 공통된 목표로서 이 인권공동선언을 선포하는 바이니 모든 개인과 사회 각기관은 이 선언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경과 염을 깊게 하도록 교육하며 국가적 또 국제적으로 점진적인 방법으로써 회원국자신의 국민들과 통치하에 있는 인민으로 하여금 이 권리와 자유를 보편적으로 또 충실히 인식하고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제 1 조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써 행동하여야 한다.

## 제 2 조

모든 사람은 종족, 살색, 성별, 언론, 종교, 정치상 기타 의견, 민족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가문 혹은 기타 지위여하로 인하여 하등의 차별을 받음이 없이 본 선언에 발포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각자가 속하여 있는 나라나 지역이 독립국이거나 신탁통치국이거나 비자치국이거나 혹은 주권이 제한을 받는 지역이거나를 막론하고 그 정치적, 법적 혹은 국제적 지위에 있어 하등 차별을 받지 않는다.

## 제 3 조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제 4 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노예신분이나 노예상태하에 있어서는 안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에 있어서나를 막론하고 금지되어야 한다.

## 제 5 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고문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잔인하고 비인도적 혹은 비열한 처우나 처벌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6 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디서나 법률앞에 하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7 조

모든 사람은 법률앞에 동등하며 아무런 차별없이 동등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동등한 보호를 받으며 이러한 차별대우에 선동되지 않도록 동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

## 제 8 조

모든 사람은 헌법 혹은 법률이 부여한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관 국가법정에서 유효한 보정판결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9 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체포, 감금 혹은 추방되지 아니한다.

## 제10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의 권리, 의무 및 그에게 대한 범죄소송을 재정함에 있어 자주적이며 불편부당한 공개법정앞에서 하등의 차별없이 공정한 판결을 받을 자격을 가진다.

## 제11조

1. 형법상 범죄로 인하여 소추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변호에 필요한 모든 보장이 확보되어 있는 공개재판에서 법에 의하여 유죄로 판명될 때까지는 무죄한 자로 간주될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범행당시 국내법상으로는나 국제법상으로는나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혹은 부작위로 인하여 형법상으로 정죄 되지 못한다. 그리고 범행당시 적용할 수 있는 형벌보다 중한 벌을 과하지 못한다.

### 제12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거처, 가정 혹은 통신에 대하여 불법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며 그 명예와 신망에 대한 침해는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3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국내에서 이동하고 거주할 자유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나라(자국을 포함함)에서든지 떠날 수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 제14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 피난거주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 범죄나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소추인 경우에는 실효된다.

### 제15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누구를 막론하고 불법하게 그 국적을 박탈 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국적변경의 권리가 거부되지 않아야 한다.

## 제16조

1. 성년된 남녀는 종족, 국적 혹은 종교로 인한 하등 제한을 받음 없이 결혼하고 가정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약혼, 결혼기간중 또는 그 해소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다.

2. 결혼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충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되어야 한다.

3.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 기본적인 단위단체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 제17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의로 재산을 박탈당하여서는 안된다.

## 제18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혹은 신앙을 개변할 자유와 단독으로나 혹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나 또는 공적으로나 혹은 사적으로나 자기가 믿는 종교나 신앙을 전도하고 실천하며 예배하고 신봉할 자유를 포함한다.

## 제19조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이를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어떤 방도를 통하여서나 국경의 제한을 받음없이 정보와 사상을 찾고 받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제20조

1. 누구를 막론하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결사에 가입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 제21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직접으로 혹은 자유선거에 의한 대표를 통하여 자기 국가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나 자기국내에서 공공임무를 맡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 인민의 의사가 정부권력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 의사는 보편동등하며 또한 비밀 혹은 그에 유사한 자유 투표방법에 의한 정기적인 정당한 선거로 표시되어야 한다.

## 제22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조를 통하여 또는 각 국가의 기구와 자원이 허하는 범위내에서 그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달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제 권리를 행사할 자격을 가진다.

## 제23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일할 권리와 직업의 자유선택과 적정·유리한 노동조건과 실적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런 차별없이 동등한 일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일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공정상당한 보수를 받으며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방법으로써 보충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각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 제24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적당한 노동시간의 제한과 유보수의 정기적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휴가를 가질 권리를 가진다.

#### 제25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의식주, 의료 및 필수 공공사업에 있어 자신과 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함에 충분한 생활수준을 보유할 권리를 가지며 실직, 질병, 불구, 상배, 노상 혹은 기타 불가항력의 사정으로 인하여 생활의 곤궁을 받을때에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머니와 유년기의 어린이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자이고 아님을 막론하고 동일한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 제26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적어도 초등 및 기초기에 있어서는 무료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고등교육도 적격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을 완전히 계발시키고 인권과 기본자유에 대한 존경의 염을 견고히 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와 종족과 종교단체 사이에 이해와 관용성과 우의를 돈독히 하여야 하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의 사업을 조장시켜야 한다.

3. 부모는 그 자녀에게 과할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 제27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관여하며 예술을 감상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제작한 과학상, 문학상 혹은 예술상 작품으로부터 오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28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본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제29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회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사회 안에서만 인격은 자유로이 또는 충분히 발달될 수 있는 것이다.

2. 이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침범하지 않고 존경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법률 또는 도덕, 공공질서 및 민주 사회의 일반안녕을 유지하는데 필요하고 정당한 요구에 응하여 제정된 법률의 정한바에 의하여서만 제한을 받는다.

3. 이 권리 및 자유는 어떤 경우에라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반되게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30조

이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바는 무엇을 막론하고 본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행동에 가담하거나 혹은 그러한 행동을 감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 다. 국제인권규약('66. 12)

### ① A규약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 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국제연합헌장상의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 조문들에 합의한다.

## 제 1 부

### 제 1 조

1.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인민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인민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민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 당하지 아니한다.

3. 비자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동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 2 부

### 제 2 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특히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3. 개발도상국은, 인권과 국가 경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경제적 권리를 어느정도까지 자국의 국민이 아닌 자에게 보장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 3 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 규정된 모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 제 4 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가가 이 규약에 따라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그러한 권리의 본질과 양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또한 오직 민주 사회에서의 공공복리증진의 목적으로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제한에 의해서만, 그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 제 5 조

1.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서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의 어떠한 당사국에서 법률, 협정,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또는 현존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는, 이 규약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인정의 범위가 보다 협소하다는 것을 구실로 동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훼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 제 3 부

### 제 6 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근로권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조치에는 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착실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과 생산적인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의 지도, 훈련계획, 정책 및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 7 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가.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것을 제공하는 보수

(1)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특히 여성에게 대하여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함께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아니한 근로조건을 보장

(2) 이 규약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  
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다. 연공서열 및 능력이외의 다른 고려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직장에서 적절한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라. 휴식,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

## 제 8 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가.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단체의 규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할 수 없다.

나.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하는 권리 및 총연합이 국제노동조합조직을 결성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권리

다.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위하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

라. 특정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

2. 이 조는 군인, 경찰 구성원 또는 행정관리가 전기한 권리들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제 9 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 제10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1.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에 대하여는, 특히 가정의 성립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이 부양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된다. 혼인은 혼인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하에 성립된다.

2. 임산부에게는 분만 전후의 적당한 기간동안 특별한 보호가 부여된다. 동 기간중의 근로 임산부에게는 유급휴가 또는 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있는 휴가가 부여된다.

3. 가문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연소자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하여진다. 어린이와 연소자는 경제적, 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된다. 어린이와 연소자를 도덕 또는 건강에 유해하거나 또는 생명에 위험하거나 또는 정상적 발육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노동에 고용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당사국은 또한 연령제한을 정하여 그 연령에 달하지 않는 어린이에 대한 유급노동에의 고용이 법률로 금지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기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개별적으로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아래 사항을 위하여 구체적 계획을 포함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과학·기술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영양에 관한 원칙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천연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발전시키거나 개혁함으로써 식량의 생산, 보존 및 분배의 방법을 개선할 것

나. 식량수입국 및 식량수출국 쌍방의 문제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세계식량공급의 공평한 분배를 확보할 것

## 제12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2. 이 규약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가. 사산율과 유아사망율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나.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분의 개선

다.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라. 질병 발생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 제13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가.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

나.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중등 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다. 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

라. 기본교육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초등교육의 기간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장려되고 강화된다.

마.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적당한 연구·장학제도가 수립되며, 교직원의 물질적 처우는 계속적으로 개선된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후견인이 그들의 자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이외의 학교로서 국가가 정하거나 승인하는 최소한도의 교육수준에 부합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자유 및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를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조의 어떠한 부분도 항상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을 준수하고, 그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국가가 결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일치한다는 요건하에서, 개인과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간섭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14조

이 규약의 당사국이 되는 때 그 본토나 자국 관할내에 있는 기타 영토에서 무상으로 초등의무교육을 확보할 수 없는 각 당사국은 계획상에 정해질 합리적인 연한이내에 모든 사람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원칙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2년이내에 입안,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 제15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다음 권리를 인정한다.

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나.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다.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화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그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제반조치가 포함된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적 접촉의 장려와 발전 및 과학과 문화분야에서의 협력으로부터 이익이 초래됨을 인정한다.

## 제 4 부

### 제16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준수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2. 가. 모든 보고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된다. 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보고서 사본을 동 이사회에 송부한다.

나.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연합전문기구의 회원국인 국가가 제출한 보고서 또는 보고서 내용의 일부가 전문기구의 창설규정에 따라 동 전문기구의 책임에 속하는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경우, 동 보고서 사본 또는 그 내용중의 관련 부분의 사본을 동 전문기구에 송부한다.

### 제17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경제사회이사회가 규약당사국 및 관련 전문기구와 협의한 후, 이 규약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자국의 보고서를 각 단계별로 제출한다.

2. 동 보고서는 이 규약상의 의무의 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장애를 지적할 수 있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이 이미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에 관련 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일한 정보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동 정보에 대한 정확한 언급으로서 족하다.

### 제18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분야에서의 국제연합헌장상의 책임에 따라, 전문기구가 동 기구의 활동영역에 속하는 이 규약 규정의 준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취된 진전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해 전문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보고서에는 전문기구의 권한있는 기관이 채택한 규정의 행에 관한 결정 및 권고의 상세를 포함할 수 있다.



## 제19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각국이 제출하는 인권에 관한 보고서 및 제18조에 따라 전문기구가 제출하는 인권에 관한 보고서중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의 검토, 일반적 권고, 또는 정보를 위하여 적당한 보고서를 인권위원회에 송부할 수 있다.

## 제20조

이 규약의 당사국과 관련 전문기구는 제19조에 의한 일반적 권고에 대한 의견 또는 국제연합인권위원회의 보고서 또는 보고서에서 언급된 어떠한 문서에서도 그와같은 일반적 권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의견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21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일반적 성격의 권고를 포함하는 보고서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일반적 준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 및 전문기구로부터 입수한 정보의 개요를 수시로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22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이 규약의 제4부에서 언급된 보고서에서 생기는 문제로서, 국제연합의 타기관, 그 보조기관 및 기술원조의 제공에 관여하는 전문기구가 각기 그 권한내에서 이 규약의 효과적, 점진적 실시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적 조치의 타당성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 제23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국제적 조치에는 협약의 체결, 권고의 채택, 기술원조의 제공 및 관계정부와 협력하여 조직된 협의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별 회의 및 기술적 회의의 개최와 같은 방안이 포함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 제24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에서 취급되는 문제에 관하여 국제연합의 여러기관과 전문기구의 책임을 각각 명시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 및 전문기구헌장의 규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25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모든 사람이 그들의 천연적 부와 자원을 충분히, 자유로이 향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 5 부

### 제26조

1. 이 규약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전문기구의 모든 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모든 당사국 또한 국제연합총회가 이 규약에 가입하도록 초청한 기타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규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규약은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5.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규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 제27조

1. 이 규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2. 35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후에 이 규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이 규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 제28조

이 규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 제29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 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중 최소 3분의 1이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국제연합총회의 승인을 얻고, 각기 자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이 규약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규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 제30조

제26조 제5항에 의한 통보에 관계없이,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동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가. 제26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나. 제27조에 의한 이 규약의 발효일자 및 제29조에 의한 모든 개정의 발효일자

### 제31조

1. 이 규약은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26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 규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 ② B규약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전 문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시민적, 정치적 자유 및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국제연합헌장상의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의 조문들에 합의한다.

### 제 1 부

#### 제 1 조

1.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인민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인민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적 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민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비자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동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 2 부

### 제 2 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현행의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3.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 가.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집행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할 것.

나.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것.

다. 그러한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할 것을 확보할 것.

### 제 3 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 제 4 조

1.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되어 있을 때에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당해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내에서 이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당해국의 국제법상의 여타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항의 규정은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에 대한 위반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3.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행사하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위반하는 규정 및 위반하게 된 이유를, 국제연합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규약의 타 당사국들에게 즉시 통지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위반이 종료되는 날에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그 내용을 통지한다.

## 제 5 조

1.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서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의 어떠한 당사국에서 법률, 협정,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또는 현존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는 이 규약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인정의 범위가 보다 협소하다는 것을 구실로 동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3 부

### 제 6 조

1.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사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 법에 따라서 또한 이 규약의 규정과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의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 이 형벌은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하여서만 집행될 수 있다.
3. 생명의 박탈이 집단살해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이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지고 있는 의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



4.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면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형선고에 대한 일반사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은 모든 경우에 부여될 수 있다.
5. 사형선고는 18세미만의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되며, 또한 임신부에 대하여 집행되어서는 아니된다.
6.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사형의 폐지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방해하기 위하여 원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 7 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없이 의학적이거나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 제 8 조

1.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한다.
2. 어느 누구도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3. 가.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 나. 제3항 “가”호의 규정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있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형의 선고에 따른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다. 이 항의 적용상 “강제노동”이라는 용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나”호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작업 또는 의무로서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하여 억류되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억류로부터 조건부 석방 중에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

- (2) 군사적 성격의 의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민적 의무
- (3) 공동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시에 요구되는 의무
- (4)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의무

### 제 9 조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시에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 사실을 신속히 통고받는다.
3.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석방은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4.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5.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희생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10 조

1.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2. 가. 피고인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격리되며, 또한 유죄의 판결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는다.  
나. 미성년 피고인은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된다.
3.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된다.

## 제 11 조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

## 제 12 조

1.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자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
3. 상기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기타 권리와 양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4.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제 13 조

합법적으로 이 규약의 당사국의 영역내에 있는 외국인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그 영역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으며, 또한 국가안보상 불가피하게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추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고 또한 권한있는 당국 또는 동 당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명된 자에 의하여 자기의 사안이 심사되는 것이 인정되며, 또한 이를 위하여 그 당국 또는 사람앞에서 다른 사람이 그를 대리하는 것이 인정된다.

### 제 14 조

1.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도기관 및 공중에 대하여서는 민주사회에 있어서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견해로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 기타 소송에서 선고되는 판결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당해 절차가 혼인관계의 분쟁이나 아동의 후견문제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다.
2.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보장을 완전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가. 그에 대한 죄의 성질 및 이유에 관하여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고받을 것

나.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과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것

다.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받을 것

라. 본인의 출석하에 재판을 받으며, 또한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할 것. 만약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통지를 받을 것. 사법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충분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법적 조력이 그에게 주어지도록 할 것

마. 자기에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할 것과 자기에 불리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기를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신문받도록 할 것

바.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

사. 자기에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

4.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그들의 연령을 고려하고 또한 그들의 갱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요망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5.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어떤 사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후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 발견된 사실에 의하여 오심이 있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거나 또는 사면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죄판결의 결과 형벌을 받은 자는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다만, 그 알지못한 사실이 적시에 밝혀지지 않는 것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에게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어느 누구도 각국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서는 다시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 제 15 조

1.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범죄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후에 보다 가벼운 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는다.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사회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행위시에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당해인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제 16 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17 조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18 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 제 19 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 나.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 제 20 조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 제 21 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 제 22 조

1.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이 조는 군대와 경찰의 구성원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하는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 제 23 조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적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인정된다.
3. 혼인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 없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혼인기간중 및 혼인해소시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혼인해소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필요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제 24 조

1. 모든 어린이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어린이는 출생후 즉시 등록하고, 성명을 가진다.
3. 모든 어린이는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 제 25 조

모든 시민은 제2조에 규정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나.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다. 일반적인 평등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

## 제 26 조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 제 27 조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 제 4 부

### 제 28 조

1. 인권이사회(이하 이 규약에서 이사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사회는 1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하에 규정된 임무를 행한다.

2. 이사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인권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이 규약의 당사국의 국민들로 구성하고, 법률적 경험을 가진 약간명의 인사의 참여가 유익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3. 이사회위원은 개인적 자격으로 선출되고, 직무를 수행한다.

### 제 29 조

1. 이사회위원은 제28조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선거를 위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2인이하의 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러한 자는 지명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3. 동일인이 재지명받을 수 있다.

### 제 30 조

1. 최초의 선거는 이 규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34조에 따라 선언된 결원의 보충선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위원의 구성을 위한 각 선거일의 최소 4개월전에, 이 규약당사국이 3개월 이내에 이사회위원후보 지명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국에 서면 초청장을 발송한다.
3.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와같이 지명된 후보들을 지명국 이름의 명시와 함께 알파벳 순으로 명단을 작성하여 늦어도 선거일 1개월전에 동 명단을 이 규약당사국에게 송부한다.
4. 이사회위원의 선거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국제연합 본부에서 소집한 이 규약당사국회담에서 실시된다. 이 회합은 이 규약당사국의 3분의 2를 정족수로 하고,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획득하는 후보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 제 31 조

1. 이사회는 동일국가의 국민을 2인이상 포함할 수 없다.
2. 이사회 선거에 있어서는 위원의 공평한 지리적 안배와 상이한 문명형태 및 주요한 법률체계가 대표되도록 고려한다.

### 제 32 조

1. 이사회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모든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 재선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중 9인의 임기는 2년후에 종료된다. 이들 9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후 즉시 제30조 제4항에 언급된 회합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2. 임기 만료시의 선거는 이 규약 제4부의 전기 조문들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 제 33 조

1. 이사회 어느 한 위원이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일시적 성격의 결석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이라고 다른 위원 전원이 생각할 경우, 이사회 의장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이를 통보하며, 사무총장은 이때 동 위원의 결석을 선언한다.
2. 이사회 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한 경우, 의장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사망일 또는 사임의 효력발생일로부터 그 좌석의 결석을 선언한다.

### 제 34 조

1. 제33조에 의해 궐석이 선언되고, 교체될 궐석위원의 잔여임기가 궐석선언일부터 6개월이내에 종료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이를 통보하며, 각 당사국은 궐석을 충원하기 위하여 제29조에 따라서 2개월 이내에 후보자의 지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와같이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알파벳순으로 작성, 이를 이 규약의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보궐선거는 이 규약 제4부의 관계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3. 제33조에 따라 선언되는 궐석을 충원하기 위하여 선출되는 위원은 동조의 규정에 따라 궐석위원의 잔여임기 동안 재직한다.

### 제 35 조

이사회의 위원들은 국제연합총회가 이사회의 책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에서 동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수를 받는다.

### 제 36 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규정상 이사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 제 37 조

1.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최초회의를 국제연합본부에서 소집한다.
2. 최초회의 이후에는 이사회는 이사회의 절차규칙이 정하는 시기에 회합한다.
3. 이사회는 통상 국제연합본부나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사무소에서 회합을 가진다.

### 제 38 조

이사회의 각 위원은 취임에 앞서 이사회의 공개석상에서 자기의 직무를  
공평하고 양심적으로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 제 39 조

1. 이사회는 임기 2년의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은 재선될 수 있다.
2. 이사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제정하며 이 규칙은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  
한다.
  - 가. 의사정족수는 위원 12인으로 한다.
  - 나.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투표로 한다.

### 제 40 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와 그러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다  
음과 같이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 가. 관계당사국에 대하여는 이 규약의 발효후 1년 이내
  - 나. 그 이후에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때
2. 모든 보고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되며 사무총장은 이를 이사회  
가 심의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송부한다. 동 보고서에는 이 규약의 이행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한다.
3.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사회와의 협의후 해당전문기구에 그 전문기구의  
권한의 분야에 속하는 보고서 관련 부분의 사본을 송부한다.
4. 이사회는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한다. 이사회  
는 이사회 자체의 보고서와 이사회가 적당하다고 간주하는 일반적 의견을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이사회는 또한 이 규약의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 사본과 함께 동 일반적 의견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5. 이 규약의 당사국은 본조 제4항에 따라 표명된 의견에 대한 견해를 이사  
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 41 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이 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 당사국의 통보를 접수, 심리하는 이사회의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을 이 조에 의하여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이 조의 통보는 이 규약의 당사국중 자국에 대한 이사회의 그러한 권한의 인정을 선언한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될 경우에만 접수, 심리될 수 있다. 이사회는 그러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에 관한 통보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조에 따라 접수된 통보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가. 이 규약의 당사국은 타당사국이 이 규약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문제에 관하여 그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통보를 접수한 국가는 통보를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당해문제를 해명하는 설명서 또는 기타 진술을 서면으로 통보한 국가에 송부한다. 그러한 해명서에는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내에서, 동 국가가 당해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취하였든가, 현재 취하고 있든가 또는 취할 국내절차와 구제수단에 관한 언급이 포함된다.

나. 통보를 접수한 국가가 최초의 통보를 접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가 관련당사국 쌍방에게 만족스럽게 조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 당사국중 일방에 의한 이사회와 타 당사국에 대한 통고로 당해 문제를 이사회에 회부할 권리를 가진다.

다. 이사회는 이사회에 회부된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모든 가능한 국내적 구제절차가 원용되고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다음에만 그 문제를 처리한다. 다만, 구제수단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이사회가 이 조에 의한 통보를 심사할 경우에는 비공개 토의를 가진다.

마. “다”호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사회는 이 규약에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기초위에서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바. 이사회는 회부받은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도 “나”호에 언급된 관계당사국들에게 모든 관련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사. “나”호에서 언급된 관계당사국은 당해문제가 이사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동안 자국의 대표를 참석시키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아. 이사회는 “나”호에 의한 통보의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자. “마”호의 규정에 따라 해결에 도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보고서를 사실과 도달된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시킨다.

차. “마”호의 규정에 따라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보고서를 사실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시키고 관계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의견과 구두의견의 기록을 동 보고서에 첨부시킨다.

모든 경우의 보고서는 관계당사국에 통보된다.

2. 이 조의 제규정은 이 규약의 10개 당사국이 이 조 제1항에 따른 선언을 하였을 때 발효된다. 당사국은 동 선언문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사무총장은 선언문의 사본을 타 당사국에 송부한다. 이와 같은 선언은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이 철회는 이 조에 의하여 이미 송부된 통보에 따른 어떠한 문제의 심의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당사국에 의한 추후의 통보는 사무총장이 선언 철회의 통고를 접수한 후에는 관계당사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되지 아니한다.



## 제 42 조

1. 가. 제41조에 따라 이사회에 회부된 문제가 관계당사국들에 만족스럽게 타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관계당사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 특별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임명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이 규약의 존중에 기초하여 당해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나. 조정위원회는 관계당사국에게 모두 수락될 수 있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관계당사국이 3개월 이내에 조정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성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보지 못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비밀투표에 의하여 인권이사회위원중에서 인권이사회 위원 3분의 2의 다수결투표로 선출된다.
2.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동 위원은 관계당사국, 이 규약의 비당사국 또는 제41조에 의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조정위원회는 자체의 의장을 선출하고 또한 자체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4.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본부 또는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 사무소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동 회의는 조정위원회가 국제연합사무총장 및 관계당사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기타 편리한 장소에서도 개최될 수 있다.
5.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은 이 조에서 임명된 조정위원회에 대하여도 역무를 제공한다.
6. 이사회가 접수하여 정리한 정보는 조정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관계당사국에게 기타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조정위원회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 또는 당해문제를 접수한 후, 어떠한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에 관계당사국에 통보하기 위하여 인권이사회 의 위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 가. 조정위원회가 12개월 이내에 당해문제에 대한 심의를 종료할 수 없을 경우, 조정위원회는 보고서를 당해문제의 심의현황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 국한시킨다.
- 나. 조정위원회가 이 규약에서 인정된 인권의 존중에 기초하여 당해문제에 대한 우호적인 해결에 도달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보고서를 사실과 도달한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 국한시킨다.
- 다. 조정위원회가 “나”호의 규정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조정위원회의 보고서는 관계당사국간의 쟁점에 관계되는 모든 사실문제에 대한 자체의 조사결과 및 문제의 우호적인 해결 가능성에 관한 견해를 기술한다. 동 보고서는 또한 관계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의견 및 구두 의견의 기록을 포함한다.
- 라. “다”호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출되는 경우, 관계당사국은 동 보고서의 접수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권이사회의 위원장에게 조정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의 수락여부를 통고한다.
8. 이 조의 규정은 제41조에 의한 이사회의 책임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9. 관계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이 제출하는 견적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모든 경비를 균등히 분담한다.
10. 국제연합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 제9항에 의하여 관계당사국이 분담금을 납입하기 전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제 43 조

이사회의 위원과 제42조에 의하여 임명되는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계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한 직무를 행하는 전문가로서의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 제 44 조

이 규약의 이행에 관한 규정은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구의 설립헌장 및 협약에 의하여 또는 헌장 및 협약 하에서의 인권분야에 규정된 절차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이 규약당사국이 당사국간에 발효중인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정에 따라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른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제 45 조

이사회는 그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국제연합총회에 제출한다.

## 제 5 부

### 제 46 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에서 취급되는 문제에 관하여 국제연합의 여러 기관과 전문기구의 책임을 각각 명시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 및 전문기구헌장의 규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 47 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모든 사람이 그들의 천연적 부와 자원을 충분히 자유로이 향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 6 부

### 제 48 조

1. 이 규약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전문기구의 모든 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모든 당사국 또한 국제연합총회가 이 규약에 가입하도록 초청한 기타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규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규약은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5.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규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 제 49 조

1. 이 규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2.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후에 이 규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이 규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 제 50 조

이 규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 제 51 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국제연합총회의 승인을 얻고, 각기 자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이 규약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고,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규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 제 52 조

제48조 제5항에 의한 통보에 관계없이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동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가. 제48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나. 제49조에 의한 이 규약의 발효일자 및 제51조에 의한 모든 개정의 발효일자

## 제 53 조

1. 이 규약은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48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 규약의 인증 등본을 송부한다.

### ③ C규약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규약”이라 칭한다)의 목적 및 그 제규정의 이행을 더욱 잘 달성하기 위하여 규약 제4부에서 설치된 인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칭한다)가 규약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침해의 희생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으로부터의 통보를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접수하고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 1 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된 규약당사국은 그 관할권에 속하는 자로서 동국에 의한 규약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침해의 희생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으로부터의 통보를 접수하고 심리하는 이사회에 권한을 인정한다. 이사회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규약당사국에 관한 어떠한 통보도 접수하지 않는다.

#### 제 2 조

제1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규약에 열거된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들은 모든 이용가능한 국내적 구제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이사회에 심리를 위한 서면통보를 제출할 수 있다.

#### 제 3 조

이사회는 이 의정서에 따른 통보가 익명이거나, 통보제출권의 남용 또는 규약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그러한 통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 4 조

1. 제3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사회는 이 의정서에 따라 제출된 통보에 대하여 규약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2. 이 당사국은 6개월 이내에 그 문제 및 취하여진 구제조치가 있는 경우 이를 설명하는 서면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 제 5 조

1. 이사회는 개인 및 관련당사국으로부터 입수된 모든 서면정보를 참고하여, 이 의정서에 따라 접수된 통보를 심리한다.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으로부터의 어떠한 통보도 심리하지 않는다.
  - 가. 동일 문제가 다른 국제적 조사 또는 해결절차에 따라 심사되고 있지 않을 것
  - 나. 개인이 모든 이용가능한 국내적 구제조치를 완료하였을 것. 다만, 이 규칙은 구제조치의 적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이사회는 이 의정서에 따라 통보를 심사할 때에는 비공개 회의를 갖는다.
4. 이사회는 관련당사국과 개인에게 이사회 의견의 견해를 송부한다.

## 제 6 조

이사회는 규약 제45조에 의한 연례보고서에 이 의정서에 따른 활동의 개요를 포함한다.

## 제 7 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1960년 12월 14일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식민지와 그 인민에 대한 독립부여 선언에 관한 결의 1514(XV)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국제연합헌장과 국제연합 및 그 전문기관하에서 체결된 여타 국제협약과 문서에 의하여 이들에게 부여된 청원권을 어떤 경우에도 제한하지 않는다.

## 제 8 조

1. 이 의정서는 규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규약을 비준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들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의정서는 규약을 비준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발효한다.
5.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 제 9 조

1. 규약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이 의정서는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2.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에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 의정서는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 제 10 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 제 11 조

1. 이 의정서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 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 중 최소한 3분의 1이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에,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하에 이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 출석하여 표결하는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국제연합총회의 승인을 얻고, 각기 자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이 의정서 당사국의 3분의 2 다수가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고,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의정서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 제 12 조

1. 당사국은 언제든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폐기는 동 폐기가 발효하기 전에는 제2조에 의해 제출된 통보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규정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침해하지 않는다.

### 제 13 조

제8조 제5항에 의한 통보에 관계없이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규약 제48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가. 제8조에 따른 서명, 비준 및 가입

나. 제9조에 따른 이 의정서의 발효일자 및 제11조에 의한 모든 개정의 발효일자

다. 제12조에 따른 폐기

### 제 14 조

1. 이 의정서는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규약 제48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 라. 난민의 지위에 관한협약('51) 및 의정서('66)

###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 전 문

체약국은

국제연합헌장과 1948년12월10일,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승인된 세계인권선언이 인간은 차별없이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음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이 수차에 걸쳐 난민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또한 난민에게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의 가능한 한 광범위한 행사를 보장하려고 노력하였음을 고려하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종전의 국제협정들을 개정하고 통합하고, 또한 그러한 문서의 적용범위와 그러한 문서에서 정하여진 보호를 새로운 협정에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고려하며,

난민에 대한 비호의 부여가 특정 국가에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국제적 범위와 성격을 가진다고 국제연합이 인정하는 문제에 관한 만족할 만한 해결은 국제협력이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며,

모든 국가가 난민문제의 사회적, 인도적 성격을 인식하고, 이 문제가 국가간의 긴장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하며,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이 난민의 보호에 관하여 정하는 국제협약의 적용을 감독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의하고, 또한 각국과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과의 협력에 의하여 난민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의 효과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될 것임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 1 장 일반규정

### 제 1 조 “난민”이라는 용어의 정의

1. 이 협약의 적용상 “난민”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자에게 적용된다.

가. 1926년5월12일 및 1928년6월30일의 약정 또는 1933년10월28일 및 1938년2월10일의 협약, 1939년9월14일의 의정서 또는 국제난민기구헌장에 의하여 난민으로 인정되고 있는 자. 국제난민기구가 그 활동기간 중에 행한 부적격 결정은 당해자가 나호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당해자가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나. 1951년1월1일 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및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의 경우에, “국적국”이라 함은 그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 각각을 말하며,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에 기초한 정당한 이유없이 어느 하나의 국적국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자에게 국적국의 보호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가. 이 협약의 적용상 제1조 1항의 “1951년1월1일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용어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1) “1951년1월1일 전에 유럽에서 발생한 사건” 또는

(2) “1951년1월1일전에 유럽 또는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각 체약국은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상기중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선언을 행한다.

나. (1)규정을 적용할 것을 선택한 체약국은 언제든지 (2)규정을 적용할 것을 선택한다는 것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그 의무를 확대할 수 있다.

3. 이 협약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다음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이 종지된다.

가. 임의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나. 국적을 상실한 후 임의로 국적을 회복할 경우, 또는

다.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고, 또한 새로운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라.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는 공포때문에 정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밖에 체류하고 있었으나 그 국가에서 임의로 다시 정주하게 된 경우, 또는

마. 난민으로 인정되어온 근거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이 조항은 동 조 제1항가호에 해당하는 난민으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한 이유로서 과거의 박해에 기인하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원용할 수 있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국적이 없는 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되어온 근거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종전의 상주국가에 되돌아올 수 있을 경우, 다만, 이 조항은 동 조 제1항가호에 해당하는 난민으로서 종전의 상주국가에 돌아오기를 거부한 이유로서 과거의 박해에 기인하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원용할 수 있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이 협약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외에 국제연합의 기관이나 또는 기구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있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있는 자의 지위에 관한 문제가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결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됨이 없이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의 부여가 종지되는 경우 그 자는 그 사실에 의하여 이 협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이익을 받을 자격이 있다.

5. 이 협약은 거주국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는 데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의 어느 것에 해당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평화에 대한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규정하는 국제문서에 정하여진 그러한 범죄를 범한 자.

나. 난민으로서 피난국에 입국하는 것이 허가되기 전에 그 국가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범한 자

다.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행한 자.

## 제 2 조 일반적의무

모든 난민은 자신이 체재하는 국가에 대하여 특히 그 국가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 및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의무를 진다.

## 제 3 조 무차별

체약국은 난민에게 인종, 종교 또는 출신국에 의한 차별없이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 4 조 종 교

체약국은 그 영역안의 난민에게 종교를 실천하는 자유 및 자녀의 종교적 교육에 관한 자유에 대하여 적어도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한 호의적 대우를 부여한다.

## 제 5 조 이 협약과는 관계없이 부여되는 권리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이 협약과는 관계없이 난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 6 조 “동일한 사정하에서”라는 용어

이 협약의 적용상, “동일한 사정하에서”라는 용어는 그 성격상 난민이 충족시킬 수 없는 요건을 제외하고, 특정 개인이 그가 난민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 특정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충족시켜야 하는 요건(체재 또는 거주 기간과 조건에 관한 요건을 포함한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 제 7조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

1. 체약국은 난민에게 이 협약이 더 유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한다.
2. 모든 난민은 어떠한 체약국의 영역안에서 3년간 거주한 후 그 체약국의 영역안에서 입법상의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를 받는다.
3. 각 체약국은 자국에 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에 상호주의의 적용없이 난민에게 이미 인정되고 있는 권리와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그 권리와 이익을 계속 부여한다.

4. 계약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정되고 있는 권리와 이익외의 권리와 이익을 상호주의의 적용없이 난민에게 부여할 가능성과 제2항에 규정하는 거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난민과 제3항에 규정하는 권리와 이익이 인정되고 있지 아니한 난민에게도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를 적용할 가능성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협약의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에 규정하는 권리와 이익 및 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권리와 이익에 관하여서도 적용한다.

#### 제 8 조 예외적 조치의 면제

계약국은 특정한 외국국민의 신체,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취하여지는 예외적 조치에 관하여, 형식상 당해 외국의 국민인 난민에 대하여 단순히 그의 국적만을 이유로 그 조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제상 이 조에 명시된 일반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계약국은 적당한 경우 그러한 난민을 위하여 그 예외적 조치를 한다.

#### 제 9 조 잠정조치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계약국이 전시 또는 기타 중대하고 예외적인 상황에 처하여, 특정 개인에 관하여 국가안보를 위하여 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잠정적으로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조치는 특정 개인이 사실상 난민인가의 여부, 또는 그 특정 개인에 관하여 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인가의 여부를 계약국이 결정할 때까지에 한한다.



## 제 10 조 거주외 계속

1. 제2차 세계대전중에 강제외 되거되어 어느 체약국의 영역외로 이동되어서 그 영역안외 거주하고 있는 난민은 그러한 강제체류기간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안외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2. 난민이 제2차 세계대전중에 어느 체약국의 영역외로부터 강제외 되거되었다가 이 협약의 발효일 이전에 거주를 위하여 그 영역안외로 귀환한 경우 그러한 강제외거 전후의 거주기간은 계속적인 거주가 요건이 되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계속된 하나의 기간외로 본다.

## 제 11 조 난민선원

체약국은 자국을 기국외로 하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외로서 정규적으로 근무중인 난민에 관하여서는 자국의 영역외서 정주하는 것에 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타국에서의 정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자국의 영역외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에 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 제 2 장 법적지위

### 제12조 개인적 지위

1. 난민의 개인적 지위는 주소지 국가의 법률에 의하거나 또는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2. 난민이 이미 취득한 권리로서 개인적 지위에 따르는 것, 특히 혼인에 따르는 권리는 난민이 체약국의 법률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르는 것이 필요한 경우 이들에 따를 것을 조건외로 하여 그 체약국에 의하여 존중된다. 다만, 문제의 권리는 난민이 난민이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라도 그 체약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

### 제 13 조 동산 및 부동산

체약국은 난민에게 동산 및 부동산의 소유권과 이에 관한 기타 권리의 취득 및 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및 기타의 계약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 제 14 조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난민은 발명, 의장, 상표, 상호등의 산업재산권의 보호 및 문학적, 예술적 및 학술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보호에 관하여, 상주거소를 가지는 국가에서 그 국가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보호와 동일한 보호를 부여받는다. 기타 체약국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 난민의 상주거소를 가지는 국가의 국민에게 그 체약국의 영역에서 부여되는 보호와 동일한 보호를 부여받는다.

### 제 15 조 결사의 권리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안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비정치적이고 비영리적인 단체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중 가장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

### 제 16 조 재판을 받을 권리

1. 난민은 모든 체약국의 영역에서 자유로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난민은 상주거소를 가지는 체약국에서 법률구조와 소송비용의 담보면제를 포함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그 체약국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3. 난민은 상주거소를 가지는 체약국외의 체약국에서 제2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상주거소를 가지는 체약국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 제 3 장 유급직업

### 제 17 조 임금 지급되는 직업

1.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안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임금이 지급되는 직업에 종사할 권리에 관하여,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 국민에게 부여되는 대우중 가장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체약국이 국내 노동시장의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고용에 관하여 취하는 제한적 조치는 그 체약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에 이미 그 조치로부터 면제된 난민이나, 또는 다음의 조건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는 난민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그 체약국에서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나. 그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배우자가 있는 자.  
난민이 그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이익을 원용하지 못한다.
  - 다. 그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1명 또는 그 이상의 자녀를 가진 자.
3. 체약국은 임금이 지급되는 직업에 관하여 모든 난민, 특히 근로자모집계획 또는 이주민계획에 따라 그 영역안에 입국한 난민의 권리를 자국민의 권리와 동일하게 할 것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 제 18 조 자영업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안에 있는 난민에게 독립하여 농업, 공업, 수공업 및 상업에 종사하는 권리 및 상업상, 산업상 회사를 설립할 권리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 제 19 조 자유업

1. 각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안에 체재하는 난민으로서 그 체약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한 자격증서를 가지고 자유업에 종사할 것을 희망하는 자에게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체약국은 본토 지역외에 자국이 국제관계에서 책임을 가지고 영역안에서 상기한 난민이 정주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한다.

## 제 4 장 복 지

### 제 20 조 배 급

공급이 부족한 물자의 분배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주민전체에 적용되는 배급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난민은 그 배급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내국민에게 부여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 제 21 조 주 거

체약국은 주거에 관한 사항이 법령의 규제를 받거나 또는 공공기관의 관리하에 있는 경우 합법적으로 그 영역안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주거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 제 22 조 공공교육

1. 체약국은 난민에게 초등교육에 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체약국은 난민에게 초등교육외의 교육, 특히 수학의 기회, 학업에 관한 증명서, 자격증서 및 학위로서 외국에서 수여된 것의 승인,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감면 및 장학금의 급여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 제 23 조 공공구제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안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공공구제와 공적원조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 제 24 조 노동법제와 사회보장

1.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안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가. 보수의 일부를 구성하는 가족수당을 포함한 보수, 근로시간, 시간외근로, 유급휴가, 가내근로에 관한 제한, 최저고용연령, 견습과 훈련, 여성과 연소자의 근로 및 단체교섭의 이익향유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의 규율을 받거나 또는 행정기관의 관리하에 있는 것

나. 사회보장(산업재해, 직업병, 출산, 질병, 폐질, 노령, 사망, 실업, 가족부양 기타 국내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급부사유에 관한 법규)

다만,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1) 취득한 권리와 취득과정중에 있는 권리의 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 (2) 거주하고 있는 체약국의 국내법령이 공공자금에서 전액 지급되는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또한 통상의 연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기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정하는 것.
2.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에서 기인하는 난민의 사망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그의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체약국의 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체약국은 취득되었거나 또는 취득의 과정중에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의 유지에 관하여 다른 체약국간의 이미 체결한 협정 또는 장차 체결할 문제의 협정의 서명국의 국민에게 적용될 조건을 난민이 충족시키고 있는 한 그 협정에 의한 이익과 동일한 이익을 그 난민에게 부여한다.
  4. 체약국은 상기한 체약국과 비체약국간의 현재 유효하거나 장래 유효하게 될 유사한 협정에 의한 이익과 동일한 이익을 가능한 한 난민에게 부여하는 것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 제 5 장 행정적조치

### 제 25 조 행정적원조

1. 난민이 그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외국기관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기관의 원조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체약국은 자국의 기관 또는 국제기관에 의하여 그러한 원조가 난민에게 부여되도록 조치한다.
2. 제1항에서 말하는 자국의 기관 또는 국제기관은 난민에게 외국인이 통상적으로 본국의 기관으로부터 또는 이를 통하여 발급받는 문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그 감독하에 이들 문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한다.

3. 상기와 같이 발급된 문서 또는 증명서는 외국인이 본국의 기관으로부터 또는 이를 통하여 발급받은 공문서에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반증이 없는 한 신빙성을 가진다.
4. 궁핍한 자에 대한 예외적인 대우를 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조에 규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수수료는 타당하고 또는 동종의 사무에 대하여 자국민에게 징수하는 수수료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이 조의 규정은 제27조 및 제28조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제 26 조 이동의 자유

각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안에 있는 난민에게 그 난민이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규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및 그 체약국의 영역안에서 자유로이 이동할 권리를 부여한다.

### 제 27 조 신분증명서

체약국은 그 영역안에 있는 난민으로서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 제 28 조 여행증명서

1.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안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영역 밖으로의 여행을 위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고, 이 여행증명서에 관하여서는 이 협정 부속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체약국은 그 영역안에 있는 다른 난민에게도 이러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또한 체약국은 특히 그 영역안에 있는 난민으로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이러한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2. 종전의 국제협정의 체결국이 국제협정이 정한 바에 따라 난민에게 발급한 여행증명서는 이 협약의 체결국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이 조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취급된다.

### 제 29 조 재정상의 부과금

1. 체결국은 난민에게 유사한 상태에 있는 자국민에게 과하고 있거나 또는 과하여질 조세 기타 공과금(명칭여하를 불문한다)이외의 공과금을 과하지 아니한다. 또한 조세 기타 공과금에 대하여 유사한 상태에 있는 자국민에게 과하는 금액보다도 고액의 것을 과하지 아니한다.
2. 전항의 규정은 행정기관이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를 포함한 문서의 발급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법령을 난민에게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제 30 조 자산의 이전

1. 체결국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난민이 그 영역안에서 반입한 자산을 정주하기 위하여 입국허가를 받은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허가한다.
2. 체결국은 난민이 입국허가된 타국에서 정주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산에 대하여 그 소재지를 불문하고 그 난민으로부터 그 자산의 이전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 제 31 조 피난국에 불법으로 있는 난민

1. 체결국은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제1조의 의미에 있어서 위협되고 있는 영역으로부터 직접 온 난민으로서 허가없이 그 영역에 입국하거나 또는 그 영역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있는 것을 이유로 형벌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난민이 지체없이 당국에 출두하고 또한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있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체약국은 상기한 난민의 이동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외의 제한을 과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러한 제한은 그 난민의 체약국에 있어서의 체재가 합법적인 것이 될때까지 또는 그 난민이 타국에의 입국허가를 획득할 때까지만 적용된다. 체약국은 그러한 난민에게 타국에의 입국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편의를 부여한다.

### 제 32 조 추 방

1. 체약국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그 영역에 있는 난민을 추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러한 난민의 추방은 법률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행하여진다. 국가안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난민은 추방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증거를 제출하고, 또한 권한있는 기관 또는 그 기관이 특별히 지명하는 자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이 목적을 위한 대리인을 세우는 것이 인정된다.
3. 체약국은 상기 난민에게 타국가에의 합법적인 입국허가를 구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부여한다. 체약국은 그 기간동안 동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보한다.

### 제 33 조 추방 또는 송환의 금지

1.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체약국에 있는 난민으로서 그 국가의 안보에 위협하다고 인정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장되고 그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위협한 존재가 된 자는 이 규정의 이익을 요구하지 못한다.

### 제 34 조 귀 화

체약국은 난민의 동화 및 귀화를 가능한 한 장려한다. 체약국은 특히 귀화 절차를 신속히 행하기 위하여 또한 이러한 절차에 따른 수수료 및 비용을 가능한 한 경감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 제 6 장 실시 및 경과규정

### 제 35 조 국내당국과 국제연합과의 협력

1. 체약국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국 또는 그를 승계하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의 임무의 수행에 있어서 이들 기관과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특히 이들 기관이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감독하는 책무의 수행에 있어서 이들 기관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2. 체약국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국 또는 그를 승계하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이 국제연합의 관할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적당한 양식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가. 난민의 상태

나. 이 협약의 실시상황

다. 난민에 관한 현행법령 및 장차 시행될 법령

### 제 36 조 국내법령에 관한 정보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 협약의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법령을 송부한다.

### 제 37 조 종전의 협약과의 관계

이 협약의 제28조제2항을 침해함이 없이, 이 협약은 체약국사이에서 1922년7월5일, 1924년5월31일, 1926년5월12일, 1928년6월30일 및 1935년7월30일의 협약, 1933년10월28일 및 1938년2월10일의 협약, 1939년9월14일의 의정서 및 1946년10월15일의 협약을 대신한다.

## 제 7 장 최종조항

### 제 38 조 분쟁의 해결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협약 당사국간의 분쟁으로서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분쟁당사국중 어느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한다.

### 제 39 조 서명, 비준 및 가입

1. 이 협약은 1951년7월28일에 제네바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고, 그 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 협약은 1951년7월28일부터 동년 8월31일까지 국제연합 구주사무국에서, 동년 9월17일부터 1952년12월31일까지 국제연합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다시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난민 및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전권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된 국가 또는 총회에 의하여 서명하도록 초청받은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고,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협약은 본조 제2항에 언급된 국가들의 가입을 위해 1951년7월28일부터 개방된다.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제 40 조 적용지역조항

1. 어떠한 국가도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자국이 국제관계에 책임을 지는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이 협약을 적용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은 이 협약이 그 국가에 대하여 발효할 때 효력을 발생한다.
2. 그후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언제든지 통고함으로써 그러한 적용을 행하고 또한 그 적용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90일후 또는 그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의 양자중 늦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관계국가는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영역에 관하여 이 협약을 적용시키기 위하여 헌법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그러한 영역의 정부의 동의를 조건으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검토한다.

## 제 41 조 연방조항

체약국이 연방제 또는 비단일제 국가인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가. 이 협약의 규정으로서 그 실시가 연방의 입법기관의 입법권의 범위안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서는, 연방정부의 의무는 연방제국가가 아닌 체약국의 의무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나. 이 협약의 규정으로서 그 실시가 연방구성국, 주 또는 현의 입법권의 범위안에 속하고 또한 연방의 헌법제도상 구성국, 주 또는 현이 입법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는 것에 관하여서는 연방정부는 구성국, 주 또는 현의 적당한 기관에 대하여 가능한 한 빨리 호의적인 권고와 함께 그 규정을 통보한다.

다. 이 협약의 체약국인 연방제국가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협약의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이 협약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연방과 그 구성단위의 법령 및 관행에 관한 설명을 제시하고, 또한 입법 기타의 조치에 의하여 이 협약의 규정이 실시되고 있는 정도를 보여준다.

## 제 42 조 유 보

1. 어떠한 국가도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이 협약의 제1조, 제3조, 제4조, 제16조제1항, 제33조, 제36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외에는 협약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유보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유보를 행한 국가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당해 유보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 제 43 조 발 효

1. 이 협약은 여섯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90일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은 여섯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비준 또는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90일 후에 발효한다.

### 제 44 조 폐 기

1. 어떠한 체약국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이 협약을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후에 당해체약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3. 제40조에 따라 선언 또는 통고를 행한 국가는 그후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상기한 영역에 이 협약의 적용을 종지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다. 그 선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제 45 조 개 정

1. 어떠한 체약국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언제든지 이 협약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국제연합총회는 상기 요청에 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권고한다.

## 제 46 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한 통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제39조에 규정한 비회원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 가. 제1조 제2항에 의한 선언 및 통고
- 나. 제39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 다. 제40조에 의한 선언 및 통고
- 라. 제42조에 의한 유보 및 철회
- 마. 제43조에 의한 이 협약의 발효일
- 바. 제44조에 의한 폐기 및 통고
- 사. 제45조에 의한 개정의 요청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일천구백오십일년 칠월 이십팔일 제네바에서 모두 정본인 영어, 불란서어로 본서 1통을 작성하였다.

본서는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되고, 그 인증등본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제39조에 규정된 비회원국에 송부된다.

## 부 속 서

### 제 1 항

1. 이 협약 제28조에 규정하는 여행증명서의 양식은 부록에 첨부된 견본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2. 증명서는 적어도 2개언어로 작성되고, 그중 하나의 언어는 영어 또는 불어로 한다.

## 제 2 항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국가의 규칙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녀는 양친의 어느 일방 또는 예외적인 경우 다른 성인난민의 여행증명서에 병기할 수 있다.

## 제 3 항

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자국민의 여권에 대한 수수료의 최저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4 항

특별한 경우 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증명서는 가능한 한 다수의 국가에 대하여 유효한 것으로 발급한다.

## 제 5 항

증명서는 발급기관의 재량에 따라 1년 또는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 제 6 항

1. 증명서의 유효기간의 갱신 또는 연장은 그 증명서의 명의인이 합법적으로 타국의 영역안에 거주를 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명서의 발급기관이 있는 국가의 영역안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한 그 발급기관의 권한에 속한다.
2. 외교기관 또는 영사기관으로서 특히 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기관은 자국 정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3. 체약국은 이미 그 영역안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난민으로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여행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의 갱신, 연장 또는 새로운 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 제 7 항

체약국은 이 협약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 제 8 항

난민이 가려고 희망하는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은 그의 입국을 인정할 용의가 있고 또한 사증이 필요한 경우에 그 난민이 소지한 증명서에 사증을 부여한다.

### 제 9 항

1. 체약국은 최종 목적지 영역의 사증을 취득한 난민에게 통과사증을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2. 상기한 사증의 발급은 외국인에 대한 사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거부할 수 있다.

### 제 10 항

출국사증, 입국사증 또는 통과사증에 대한 수수료는 외국의 여권에 사증을 부여하는 경우의 수수료의 최저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11 항

난민이 다른 체약국의 영역안에 합법적으로 거주를 정한 경우에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하는 책임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에 있고, 그 난민은 그 기관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제 12 항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종전의 증명서를 회수하고, 그 증명서를 발급국에 반송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발급국에 이를 반송한다. 그와 같은 기재가 없는 경우 그 발급기관은 회수한 증명서를 무효로 한다.

### 제 13 항

1. 각 체약국은 이 협약 제28조에 따라 발급한 여행증명서의 명의인에 대하여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동안 언제라도 그 영역에 돌아오는 것을 허가할 것을 약속한다.
2. 체약국은 전항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증명서의 명의인에게 출입국에 관하여 정하여진 절차에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체약국은 예외적인 경우 또는 난민의 체재가 일정기간에 한하여 허가된 경우 그 난민이 체약국의 영역에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3월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 제 14 항

제13항의 규정만을 예외로 하고, 이 부속서의 규정은 체약국의 영역에의 입국, 통과, 체재, 정주 및 출국에 관한 조건을 규율하는 법령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 제 15 항

증명서의 발급 또는 이의 기재사항은 그 명의인의 지위 특히 국적을 결정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 16 항

증명서의 발급은 그 명의인에게 발급국의 외교기관 또는 영사기관에 의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결코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들 기관에 대하여 보호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다.

##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1951년7월28일 제네바에서 작성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이 1951년1월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난민이 되었던 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협약이 채택된 후에 새로운 사태에 의하여 난민이 발생하였다는 점 및 이러한 난민이 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1951년1월1일의 기준시점에 관계없이 협약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난민이 동등한 지위를 향유해야 한다는 것이 소망스럽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 1 조 일반규정

1. 이 의정서의 체약국은 다음에 정의된 난민에 대하여 협약 제2조에서 제 3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협약의 적용상, 난민은 이 조 3의 규정의 적용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협약 제1조 제1항 나호에 규정된 ‘1951년1월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및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서’라는 문언이 삭제되었다면 협약 제1조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3. 이 의정서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에 의하여 어떠한 지리적 제한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이미 협약의 당사국이 된 국가가 협약 제1조 제2항 가호(1)에 따른다고 한 선언은, 협약 제1조 제2항 나호에 의하여 확대되지 않는 한, 이 의정서에 의하여서도 적용된다.

## 제 2 조 체약국기관과 국제연합과의 협력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또는 이를 승계하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의 임무의 수행에 있어서 이러한 기관과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특히 이러한 기관이 이 의정서의 규정의 적용을 감독하는 임무를 수행시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고등판무관사무소 또는 이를 승계하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이 국제연합의 권한있는 기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에 관한 정보 및 통계를 적당한 양식으로 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 가. 난민의 상태
  - 나. 이 협약의 이행상황
  - 다. 난민에 관한 현행 법령 및 난민에 관하여 장래 시행할 법령

## 제 3 조 국내법령에 관한 정보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령을 송부하여야 한다.

## 제 4 조 분쟁의 해결

이 의정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의정서 당사국간의 분쟁으로서 다른 수단으로써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인 경우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연합사법재판소에 이를 부탁하여야 한다.

## 제 5 조 가 입

이 의정서는 협약의 모든 당사국 및 이것의 당사국이 아닌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관의 가맹국 또는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이 의정서에 가입하도록 초청된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제 6 조 연방조항

연방제국가 또는 비단일제 국가의 경우에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가. 이 의정서 제1조1에 따라 적용될 규정으로서 연방의 입법기관의 입법권의 범위내에 해당하는 이 협약의 규정에 관하여 연방정부의 의무는 연방제국가가 아닌 체약국과 동일하다.

나. 이 의정서 제1조1에 따라 적용될 규정으로서 연방의 헌법제도상 방, 주 또는 칸톤이 입법조치를 할 의무가 없고 그 방, 주 또는 칸톤의 입법권의 범위내에 해당하는 이 협약의 규정에 관하여 연방정부는 방, 주 또는 칸톤의 적당한 기관에 대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호의적인 권고와 함께 이 규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이 의정서의 연방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을 통하여 전달된 다른 당사국의 요청에 대하여 이 의정서 제1조1에 따라 적용될 규정으로서 협약의 규정에 관한 연방 및 그 구성단위의 법령 및 관행을 설명하고 입법조치 및 기타 조치에 의하여 당해 협약 규정이 어느정도 실시되고 있는지 제시하여야 한다.

## 제 7 조 유보 및 선언

1. 어느 국가라도 가입시에 이 의정서 제4조에 관하여 그리고 이 의정서 제1조에 의한 협약의 제1조, 제3조, 제4조, 제16조(1) 및 제33조를 제외한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유보할 수 있다. 다만, 협약의 당사국이 이 조에 의하여 유보한 경우에는 그 협약의 적용을 받는 난민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2. 협약 제42조에 따라서 협약 당사국이 한 유보는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이 의정서에 기한 의무에 대하여도 유효하다.
3. 1에 따라 유보를 한 국가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어느 시기라도 당해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4.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이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가 협약 제40조1 및 2에 기하여 한 선언은 이 의정서에 대하여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관계 당사국이 이 의정서에 가입시에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하여 달리 통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약 제40조2 및 3 그리고 제44조3의 규정도 이 의정서에 준용한다.

## 제 8 조 효력발생

1. 이 의정서는 여섯번째 가입서가 기탁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여섯번째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이 의정서에 가입하려는 국가에 대하여 이 의정서는 그 가입서가 기탁된 날에 발효한다.

## 제 9 조 폐 기

1. 어떠한 당사국도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어느 시기라도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통고를 수령한 날로부터 일년째 되는 날에 관계국에 효력을 발생한다.

## 제 10 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한 통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5조에 규정한 국가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효력 발생일 및 이 의정서에 관한 유보의 철회, 폐기, 선언 및 통고를 통보한다.

## 제 11 조 국제연합 사무국에의 기탁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를 각각 정본으로 하는 이 의정서의 본서는 국제연합총회의장 및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서명하였고 국제연합사무국에 기탁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인증등본을 국제연합의 모든 가맹국 및 이들 가맹국 이외에 제5조에 규정된 국가에 송부한다.

## 2. 인권관련 국내법규

〈한 국〉

### 가. 대한민국 헌법

#### ●大韓民國憲法(1948·7·17)

改正 1952·7·7  
1954·11·29  
1960·6·15  
1960·11·29  
1962·12·26<全文改正>  
1969·10·21  
1972·12·27<全文改正>  
1980·10·27<全文改正>  
1987·10·29<全文改正>

#### 前 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임각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1987年 10月·29日

#### 第 1 章 總 綱

第 1 條 ①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第 2 條 ①大韓民國의 國民이 되는 요건은 法律로 정한다.

②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在外國民을 보호할 義務를 진다.



第3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第4條 大韓民國은 統一을 指向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입각한 平和的 統一 政策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第5條 ①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유지에 노력하고 侵略的 戰爭을 否認한다.

②國軍은 國家의 安全保障과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수행함을 使命으로 하며, 그 政治的 中立性은 준수된다.

第6條 ①憲法에 의하여 체결·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승인된 國際法規는 國內 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②外國人은 國際法과 條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位가 보장된다.

第7條 ①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②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第8條 ①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보장된다.

②政黨은 그 目的·組織과 活動이 民主的이어야 하며,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組織을 가져야 한다.

③政黨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政黨運營에 필요한 資金을 補助할 수 있다.

④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憲法裁判所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憲法裁判所의 審判에 의하여 解散된다.

第9條 國家는 傳統文化의 계승·발전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야 한다.

## 第2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

第10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진다.

第11條 ①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教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③勳章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

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정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5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6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 밖의 정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7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 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제78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第15條 모든 國民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第16條 모든 國民은 住居의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住居에 대한 押收나 搜索을 할 때에는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第17條 모든 國民은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第18條 모든 國民은 通信의 秘密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第19條 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第20條 ①모든 國民은 宗教의 自由를 가진다.

②國教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教와 政治는 分離된다.

第21條 ①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가진다.

②言論·出版에 대한 許可나 檢閱과 集會·結社에 대한 許可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通信·放送의 施設基準과 新聞의 機能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④言論·出版은 他人의 名譽나 權利 또는 公衆道德이나 社會倫理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言論·出版이 他人의 名譽나 權利를 침해한 때에는 被害者는 이에 대한 被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2條 ①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②著作者·發明家·科學技術者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보호한다.

第23條 ①모든 國民의 財產權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限界는 法律로 정한다.

②財產權의 행사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公共必要에 의한 財產權의 收用·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補償은 法律로써 하되, 正當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第24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舉權을 가진다.

第25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擔任權을 가진다.

第26條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機關에 文書로 請願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請願에 대하여 審査할 義務를 진다.

第27條 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軍人 또는 軍務員이 아닌 國民은 大韓民國의 領域 안에서는 중대한 軍事上 機

密·哨兵·哨所·有毒飲食物供給·捕虜·軍用物에 관한 罪중 法律이 정한 경우와 非常戒嚴이 宣布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事法院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④刑事被告人은 有罪의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

⑤刑事被害者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事件의 裁判節次에서 陳述할 수 있다.

**第28條** 刑事被疑者 또는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法律이 정하는 不起訴處分을 받거나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에 正當한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9條** ①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損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正當한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務員 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한다.

②軍人·軍務員·警察公務員 기타 法律이 정하는 者가 戰鬥·訓練등 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損害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報償외에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賠償은 請求할 수 없다.

**第30條** 他人의 犯罪行爲로 인하여 生命·身體에 대한 被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로부터 救助를 받을 수 있다.

**第31條** ①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均등하게 教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教育과 法律이 정하는 教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義務教育은 無償으로 한다.

④教育의 自主性·專門性·政治的 中立性 및 大學의 自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國家는 平生教育을 振興하여야 한다.

⑥學校教育 및 平生教育을 포함한 教育制度와 그 운영, 教育財政 및 敎員의 地位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32條** ①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的·經濟的 方法으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과 適正賃金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最低賃金制를 施行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 義務의 내용과 조건을 民主主義原則에 따라 法律로 정한다.

③ 勤勞條件의 基準은 人間의 尊嚴性을 보장하도록 法律로 정한다.

④ 女子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雇傭·賃金 및 勤勞條件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年少者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國家有功者·傷痍軍警 및 戰歿軍警의 遺家族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優先的으로 勤勞의 機會를 부여받는다.

第33條 ① 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② 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이 정하는 者에 한하여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③ 法律이 정하는 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34條 ① 모든 국민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② 國家는 社會保障·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

③ 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國家는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

⑤ 身體障礙者 및 疾病·老齡 기타의 사유로 生活能力이 없는 국민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⑥ 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35條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와 국민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環境權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③ 國家는 住宅開發政策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快適한 住居生活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36條 ① 婚姻과 家族生活은 개인의 尊嚴과 兩性의 平等을 기초로 成立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國家는 이를 보장한다.

② 國家는 母性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保健에 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37條 ①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第38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39條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

②누구든지 兵役義務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 第3章 國 會

第40條 立法權은 國會에 속한다.

第41條 ①國會는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祕密選舉에 의하여 選出된 國會議員으로 구성한다.

②國會議員의 數는 法律로 정하되, 200人이상으로 한다.

③國會議員의 選舉區와 比例代表制 기타 選舉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42條 國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第43條 國會議員은 法律이 정하는 職을 겸할 수 없다.

第44條 ①國會議員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期中 國會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②國會議員이 會期전에 逮捕 또는 拘禁된 때에는 現行犯人이 아닌 한 國會의 요구가 있으면 會期中 釋放된다.

第45條 國會議員은 國會에서 職務上 행한 發言과 表決에 관하여 國會외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46條 ①國會議員은 清廉의 義務가 있다.

②國會議員은 國家利益을 우선하여 良心에 따라 職務를 행한다.

③國會議員은 그 地位를 濫用하여 國家·公共團體 또는 企業體와의 契約이나 그 處분에 의하여 財産上의 權利·이익 또는 職位를 취득하거나 他人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第47條 ①國會의 定期會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回 集會되며, 國會의

臨時會는 大統領 또는 國會在籍議員 4分の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集會된다.

②定期會의 會期는 100日을, 臨時會의 會期는 30日을 초과할 수 없다.

③大統領이 臨時會의 集會를 요구할 때에는 期間과 集會要求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第48條 國會는 議長 1人和 副議長 2人을 選出한다.

第49條 國會는 憲法 또는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可否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第50條 ①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거나 議長이 國家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公開하지 아니한 會議內容의 公表에 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51條 國會에 제출된 法律案 기타의 議案은 會期中에 議決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國會議員의 任期가 단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2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제출할 수 있다.

第53條 ①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에 移送되어 15日이내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②法律案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第1項의 期間내에 異議書를 붙여 國會로 還付하고, 그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國會의 閉會중에도 또한 같다.

③大統領은 法律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法律案을 修正하여 再議를 요구할 수 없다.

④再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會는 再議에 붙이고, 在籍議員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3分の 2이상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확정된다.

⑤大統領이 第1項의 期間내에 公布나 再議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확정된다.

⑥大統領은 第4項과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法律을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5項에 의하여 法律이 확정된 후 또는 第4項에 의한 確定法律이 政府에 移送된 후 5日이내에 大統領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會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⑦法律은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公布한 날로부터 20日을 경과함으로써 效力을 발생한다.

**第54條** ①國會는 國家의 豫算案을 審議· 確定한다.

②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 開始 90日전까지 國會에 제출하고, 國會는 會計年度 開始 30日전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會計年度가 開始될 때까지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서 豫算案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의 目的을 위한 經費는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執行할 수 있다.

1. 憲法이나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機關 또는 施設의 유지· 운영
2. 法律上 支出義務의 이행
3. 이미 豫算으로 승인된 事業의 계속

**第55條** ①한 會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 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年限을 정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豫備費는 總額으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56條** 政府는 豫算에 變更을 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하여 國會에 제출할 수 있다.

**第57條** 國會는 政府의 同意없이 政府가 제출한 支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58條** 國債를 모집하거나 豫算외에 國家의 부담이 될 契約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政府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59條**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 정한다.

**第60條** ①國會는 相互援助 또는 安全保障에 관한 條約, 중요한 國際組織에 관한 條約, 友好通商航海條約, 主權의 制約에 관한 條約, 講和條約, 國家나 國民에게 중대한 財政的 부담을 지우는 條約 또는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의 체결· 批准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②國會는 宣戰布告, 國軍의 外國에의 派遣 또는 外國軍隊의 大韓民國 領域 안에서 의 駐留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第61條** ①國會는 國政을 監査하거나 特정한 國政事案에 대하여 調查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書類의 提出 또는 證人의 출석과 證言이나 의견의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②國政監査 및 調査에 관한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62條 ①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國會나 그 委員會에 출석하여 國政處理狀況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陳述하고 質問에 응답할 수 있다.

②國會나 그 委員會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出席要求를 받은 때에는 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第63條 ①國會는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解任建議는 國會在籍議員 3分の 1이상의 發議에 의하여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64條 ①國會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議事와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國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며, 議員을 懲戒할 수 있다.

③議員을 除名하려면 國會在籍議員 3分の 2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④第2項과 第3項의 處分에 대하여는 法院에 提訴할 수 없다.

第65條 ①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부의 長·憲法裁判所 裁判官·法官·中央選舉管理委員會 委員·監査院長·監査委員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이 그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議決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3分の 1이상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議決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에 대한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發議와 國會在籍議員 3分の 2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彈劾訴追의 議決을 받은 者는 彈劾審判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정지된다.

④彈劾決定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지는 아니한다.

## 第4章 政府

### 第1節 大統領

**第66條** ①大統領은 國家의 元首이며, 外國에 대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②大統領은 國家의 獨立·領土의 保全·國家의 繼續性과 憲法을 守護할 責務를 진다.

③大統領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성실한 義務를 진다.

④行政權은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에 속한다.

**第67條** ①大統領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祕密選舉에 의하여 選出한다.

②第1項의 選舉에 있어서 最高得票者가 2人이상인 때에는 國會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出席한 公開會議에서 多數票를 얻은 者를 當選者로 한다.

③大統領候補者가 1人일 때에는 그 得票數가 選舉權者 總數의 3分の 1이상인 아니면 大統領으로 當選될 수 없다.

④大統領으로 選舉될 수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舉權이 있고 選舉日 현재 40歲에 達하여야 한다.

⑤大統領의 選舉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68條** ①大統領의 任期가 만료되는 때에는 任期滿了 70日내지 40日전에 後任者를 選舉한다.

②大統領이 闕位된 때 또는 大統領 當選者가 死亡하거나 判決 기타의 사유로 그 資格을 喪失한 때에는 60日이내에 後任者를 選舉한다.

**第69條** 大統領은 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宣誓를 한다.

“나는 憲法을 준수하고 國家를 保衛하며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 및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 大統領으로서의 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國民 앞에 엄숙히 宣誓합니다.”

**第70條** 大統領의 任期는 5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第71條** 大統領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 法律이 정한 國務委員의 順序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

**第72條** 大統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外交·國防·統一 기타 國家安危에 관한 重要政策을 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다.

**第73條** 大統領은 條約을 체결·批准하고, 外交使節을 信任·접수 또는 派遣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한다.

**第74條** ①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軍을 統帥한다.

②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 정한다.

第75條 大統領은 法律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委任받은 사항과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大統領令을 발할 수 있다.

第76條 ①大統領은 內憂·外患·天災·地變 또는 중대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있어서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財政·經濟上의 處分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발할 수 있다.

②大統領은 國家의 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交戰狀態에 있어서 國家를 保衛하기 위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발할 수 있다.

③大統領은 第1項과 第2項의 處分 또는 命令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國會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第3項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處分 또는 命令은 그때부터 效力을 喪失한다. 이 경우 그 命令에 의하여 改正 또는 廢止되었던 法律은 그 命令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效力을 회복한다.

⑤大統領은 第3項과 第4項의 사유를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77條 ①大統領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兵力으로써 軍事上의 필요에 응하거나 公共의 安寧秩序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②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으로 한다.

③非常戒嚴이 宣布된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令狀制度,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④戒嚴을 宣布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通告하여야 한다.

⑤國會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戒嚴의 解除를 요구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第78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員을 任免한다.

第79條 ①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赦免·減刑 또는 復權을 命할 수 있다.

②一般赦免을 命하려면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赦免·減刑 및 復權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80條 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勳章 기타의 榮典을 수여한다.

第81條 大統領은 國會에 출석하여 發言하거나 書翰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第82條 大統領의 國法上 행위는 文書로써 하며, 이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관계 國務委員이 副署한다. 軍事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第83條 大統領은 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 기타 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겸할 수 없다.

第84條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중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第85條 前職大統領의 身分과 禮遇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 第2節 行政府

### 第1款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第86條 ①國務總理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며, 行政에 관하여 大統領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統轄한다.

③軍人は 現役을 免한 후가 아니면 國務總理로 任命될 수 없다.

第87條 ①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委員은 國政에 관하여 大統領을 補佐하며, 國務會議의 構成員으로서 國政을 審議한다.

③國務總理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④軍人は 現役을 免한 후가 아니면 國務委員으로 任命될 수 없다.

### 第2款 國務會議

第88條 ①國務會議는 政府의 權限에 속하는 중요한 政策을 審議한다.

②國務會議는 大統領·國務總理와 15人이상 30人이하의 國務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되고, 國務總理는 副議長이 된다.

第89條 다음 사항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國政의 基本計劃과 政府의 一般政策
2. 宣戰·講和 기타 중요한 對外政策
3. 憲法改正案·國民投票案·條約案·法律案 및 大統領令案
4. 豫算案·決算·國有財產處分の 基本計劃·國家의 부담이 될 契約 기타 財政

에 관한 중요사항

5. 大統領의 緊急命令·緊急財政經濟處分 및 命令 또는 戒嚴과 그 解除
6. 軍事에 관한 중요사항
7. 國會의 臨時會 集會의 요구
8. 榮典授與
9. 赦免·減刑과 復權
10. 行政各部間의 權限의 劃定
11. 政府안의 權限의 委任 또는 配定에 관한 基本計劃
12. 國政處理狀況의 評價·分析
13. 行政各部의 중요한 政策의 수립과 調整
14. 政黨解散의 提訴
15. 政府에 제출 또는 회부된 政府의 政策에 관계되는 請願의 審査
16. 檢察總長·合同參謀議長·各軍參謀總長·國立大學校總長·大使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과 國營企業體管理者의 任命
17. 기타 大統領·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제출한 사항

第90條 ①國政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元老로 구성되는 國家元老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國家元老諮問會議의 議長은 直前大統領이 된다. 다만, 直前大統領이 없을 때에는 大統領이 指名한다.

③國家元老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1條 ①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對外政策·軍事政策과 國內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를 둔다.

②國家安全保障會議는 大統領이 主宰한다.

③國家安全保障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2條 ①平和統一政策의 수립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3條 ①國民經濟의 발전을 위한 重要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民經濟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國民經濟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 第3款 行政各部

第94條 行政各部의 長은 國務委員 중에서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95條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部의 長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法律이나 大統領令의 委任 또는 職權으로 總理令 또는 部令을 발할 수 있다.

第96條 行政各部의 設置·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 정한다.

### 第4款 監査院

第97條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 國家 및 法律이 정한 團體의 會計檢査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監察을 하기 위하여 大統領 所屬下에 監査院을 둔다.

第98條 ①監査院은 院長을 포함한 5人以上 11人이하의 監査委員으로 구성한다.

②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③監査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第99條 監査院은 歲入·歲出의 決算을 매년 檢査하여 大統領과 次年度國會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100條 監査院의 組織·職務範圍·監査委員의 資格·監査對象公務員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 第5章 法院

第101條 ①司法權은 法官으로 구성된 法院에 속한다.

②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各級法院으로 組織된다.

③法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第102條 ①大法院에 部를 둘 수 있다.

②大法院에 大法官을 둔다. 다만,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法官이 아닌 法官을 둘 수 있다.

③大法院과 各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 정한다.

第103條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

第104條 ①大法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大法官은 大法院長의 提請으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은 大法官會議의 同意를 얻어 大法院長이 任命한다.

第105條 ①大法院長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②大法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③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의 任期는 10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④法官의 停年은 法律로 정한다.

第106條 ①法官은 彈劾 또는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하며, 懲戒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停職·減俸 기타 不利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②法官이 중대한 心身上의 障害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하게 할 수 있다.

第107條 ①法律이 憲法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法院은 憲法裁判所에 提請하여 그 審判에 의하여 裁判한다.

②命令·規則 또는 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大法院은 이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을 가진다.

③裁判의 前審節次로서 行政審判을 할 수 있다. 行政審判의 節次는 法律로 정하되, 司法節次가 準用되어야 한다.

第108條 大法院은 法律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訴訟에 관한 節次, 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109條 裁判의 審理와 判決은 公開한다. 다만, 審理는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安寧秩序를 방해하거나 善良한 風俗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110條 ①軍事裁判을 관할하기 위하여 特別法院으로서 軍事法院을 둘 수 있다.

②軍事法院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관할한다.

③軍事法院의 組織·權限 및 裁判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④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은 軍人·軍務員의 犯罪나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와 哨兵·哨所·有毒飲食物供給·捕虜에 관한 罪중 法律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單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死刑을 宣告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 6 章 憲法裁判所

第111條 ①憲法裁判所는 다음 사항을 管掌한다.

1.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 審判
2. 彈劾의 審判
3. 政黨의 解散 審判
4. 國家機關 相互間,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및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權限爭議에 관한 審判
5. 法律이 정하는 憲法訴願에 관한 審判

②憲法裁判所는 法官의 資格을 가진 9人의 裁判官으로 구성하며, 裁判官은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第 2 項의 裁判官중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한다.

④憲法裁判所의 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裁判官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112條 ①憲法裁判所 裁判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②憲法裁判所 裁判官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干渉할 수 없다.

③憲法裁判所 裁判官은 彈劾 또는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第113條 ①憲法裁判所에서 法律의 違憲決定, 彈劾의 決定, 政黨解散의 決定 또는 憲法訴願에 관한 認容決定을 할 때에는 裁判官 6人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②憲法裁判所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審判에 관한 節次,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③憲法裁判所의 組織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 第 7 章 選舉管理

第114條 ①選舉와 國民投票의 公正한 管理 및 政黨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選舉管理委員會를 둔다.

②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3人, 國會에서 選出하는 3人과 大法



院長이 指名하는 3人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委員長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③委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④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關여할 수 없다.

⑤委員은 彈劾 또는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⑥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選舉管理·國民投票管理 또는 政黨事務에 關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으며,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内部規律에 關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⑦各級 選舉管理委員會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115條 ①各級 選舉管理委員會는 選舉人名簿의 작성등 選舉事務와 國民投票事務에 關하여 關계 行政機關에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指示를 받은 당해 行政機關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116條 ①選舉運動은 各級 選舉管理委員會의 管理下에 法律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均등한 機會가 保障되어야 한다.

②選舉에 關한 經費는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第8章 地方自治

第117條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利에 關한 事務를 처리하고 財產을 관리하며, 法令의 범위안에서 自治에 關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종류는 法律로 정한다.

第118條 ①地方自治團體에 議會를 둔다.

②地方議會의 組織·權限·議員選舉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任方法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운영에 關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 第9章 經濟

第119條 ①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개인과 企業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함을 基本으로 한다.

②國家는 均형있는 國民經濟의 成長 및 安定과 적정한 所得의 分配를 유지하고, 市場의 支配와 經濟力의 濫用을 방지하며, 經濟主體間의 調和를 통한 經濟의 民

主化를 위하여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다.

第120條 ①鑛物 기타 중요한 地下資源·水産資源·水力과 經濟上 이용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期間 그 採取·開發 또는 이용을 特許할 수 있다.

②國土와 資源은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그 균형있는 開發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計劃을 수립한다.

第121條 ①國家는 農地에 관하여 耕者有田의 원칙이 達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農地의 小作制度는 금지된다.

②農業生産性の 提高와 農地의 合理的인 이용을 위하여나 불가피한 事情으로 발생하는 農地의 賃貸借와 委託經營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第122條 國家는 國民 모두의 生産 및 生活의 基盤이 되는 國土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開發과 보전을 위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義務를 課할 수 있다.

第123條 ①國家는 農業 및 漁業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農·漁村綜合開發과 그 지원등 필요한 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地域間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地域經濟를 육성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中小企業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農水産物의 需給均衡과 流通構造의 개선에 노력하여 價格安定을 도모함으로써 農·漁民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國家는 農·漁民과 中小企業의 自助組織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自律的 活動과 발전을 보장한다.

第124條 國家는 건전한 消費行爲를 啓導하고 生産品의 品質向上을 촉구하기 위한 消費者保護運動을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第125條 國家는 對外貿易을 육성하며, 이를 規制·調整할 수 있다.

第126條 國防上 또는 國民經濟上 緊切한 필요로 인하여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經營을 統制 또는 관리할 수 없다.

第127條 ①國家는 科學技術의 革新과 情報 및 人力의 開發을 통하여 國民經濟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國家標準制度를 확립한다.

③大統領은 第1項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諮問機構를 둘 수 있다.

## 第10章 憲法改正

第128條 ①憲法改正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 또는 大統領의 發議로 提案된다.

②大統領의 任期延長 또는 重任變更을 위한 憲法改正은 그 憲法改正 提案 당시의 大統領에 대하여는 效力이 없다.

第129條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大統領이 20日이상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130條 ①國會는 憲法改正案이 公告된 날로부터 60日이내에 議決하여야 하며, 國會의 議決은 在籍議員 3分の 2이상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②憲法改正案은 國會가 議決한 후 30日이내에 國民投票에 붙여 國會議員選舉權者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者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③憲法改正案이 第2項의 贊成을 얻은 때에는 憲法改正은 확정되며, 大統領은 즉시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 附 則

第1條 이 憲法은 1988年 2月 25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憲法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律의 制定·改正과 이 憲法에 의한 大統領 및 國會議員의 選舉 기타 이 憲法施行에 관한 準備는 이 憲法施行전에 할 수 있다.

第2條 ①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選舉는 이 憲法施行日 40日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의 任期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開始한다.

第3條 ①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國會議員選舉는 이 憲法公布日로부터 6月이내에 실시하며, 이 憲法에 의하여 選出된 최초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國會議員選舉후 이 憲法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로부터 開始한다.

②이 憲法公布 당시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第1項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 前日까지로 한다.

第4條 ①이 憲法施行 당시의 公務員과 政府가 任命한 企業體의 任員은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憲法에 의하여 選任方法이나 任命權者가 변경된 公務員과 大法院長 및 監查院長은 이 憲法에 의하여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하며, 이 경우 前任者인 公務員의 任期는 後任者가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한다.

②이 憲法施行 당시의 大法院長과 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③이 憲法중 公務員의 任期 또는 重任制限에 관한 規定은 이 憲法에 의하여 그 公務員이 최초로 選出 또는 任命된 때로부터 適用한다.

第5條 이 憲法施行 당시의 法令과 條約은 이 憲法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한 그 效力을 지속한다.

第6條 이 憲法施行 당시에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 設置될 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職務를 행하고 있는 機關은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운 機關이 設置될 때까지 存續하며 그 職務를 행한다.

## 나. 국적법 및 시행령

### ● 國籍法〔1948·12·20〕 〔法律第16號〕

改正 1962·11·21 法律第1180號  
1963·9·30 法律第1409號  
1976·12·22 法律第2906號

第1條 本法은大韓民國의國民되는要件을規定한다.

第2條 ①다음各號의1에該當하는者는大韓民國의國民이다.

1. 出生한當時에父가大韓民國의國民인者
2. 出生하기前에父가死亡한때에는死亡한當時에大韓民國의國民이던者
3. 父가分明하지아니한때또는國籍이없는데에는母가大韓民國의國民인者
4. 父母가모두分明하지아니한때또는國籍이없는데에는大韓民國에서出生한者

②大韓民國에서發見된棄兒는大韓民國에서出生한것으로推定한다.

第3條 國籍이없거나大韓民國의國籍을取得함으로因하여 6月內에그國籍을喪失하게 되는外國人으로서다음各號의 1 에該當한者는大韓民國의國籍을取得한다. <改正 62·11·21>

1. 大韓民國의國民의妻가된者
2. 大韓民國의國民인父또는母가認知한者
3. 歸化한者

第4條 外國人이認知로因하여大韓民國의國籍을取得한때에는다음要件을 갖추어야한다.

1. 本國法에依하여未成年일것
2. 外國人의妻가아닐것
3. 父母中먼저認知한者가大韓民國의國民일것
4. 父母가同時에認知한때에는父가大韓民國의國民일것

第5條 外國人으로서다음要件을 갖춘者는法務部長官의許可를얻어歸化할수있다. <改正 62·11·21>

1. 5年以上繼續하여大韓民國에住所가있을것
2. 滿20歲以上으로서그의本國法에依하여能力이있을것

3. 品行이端正할것
4. 獨立의生計를維持할만한資産또는技能이있을것
5. 國籍이없거나또는大韓民國의國籍을取得함으로因하여6月內에그國籍을喪失하게 될것

**第6條** 外國人으로서다음各號의 1에該當하며大韓民國에3年以上繼續하여住所가있을때에는第5條第1號의條件을 갖추지 아니하여도歸化할수있다.

1. 父또는母가大韓民國의國民이었던者
2. 妻가大韓民國의國民인者
3. 大韓民國에서出生한者로서父또는母가大韓民國에서出生한者

**第7條** ①外國人으로서다음各號의 1에該當하며現在大韓民國에住所가있을때에는本法第5條第1號, 第2號및第4號의要件을 갖추지 아니하여도歸化할수있다.

1. 父또는母가大韓民國의國民인者
2. 大韓民國에特別한功勞가있는者
3. 大韓民國의國籍을取得한者의妻로서大韓民國의國籍을取得하지못한者

②第1項第2號에該當하는者에게歸化를許可할때에는法務部長官은大統領의承認을 얻어야한다.

**第8條** ①大韓民國의國籍을取得하는者의妻는그의本國法에反對規定이없는限夫와같이大韓民國의國籍을取得한다. 但國籍이없거나大韓民國의國籍을取得함으로因하여6月內에그國籍을喪失하게되는때에限한다.

②大韓民國의國籍을取得하는者의子로서本國法에依하여未成年者인때에도같다.

**第9條** 外國人の妻는夫와같이하지아니하면歸化할수없다.

**第10條** 削除 <63·9·30>

**第11條** ①歸化는官報에告示하여야한다.

②歸化는告示한後가아니면效力을發生하지아니한다.

**第12條** 大韓民國의國民으로서다음各號의 1에該當한者는國籍을喪失한다. <改正 63·9·30>

1. 外國人과婚姻하여그配偶者의國籍을取得한者
2. 外國人の養子로서그國籍을取得한者
3. 婚姻으로因하여大韓民國의國籍을取得한者가婚姻의取消또는離婚으로因하여外國의國籍을取得한者

4. 自進하여外國의國籍을取得한者
5. 二重國籍者로서法務部長官의許可를얻어國籍을離脫한者
6. 未成年인大韓民國의國民이外國人의認知로因하여外國의國籍을取得한者. 但大韓民國의國民의妻또는養子가된者는例外로한다.
7. 外國人으로서 大韓民國의 國籍을 取得한 者가 6月이 경과하여도 그 外國의 國籍을 喪失하지 아니한 때

**第13條** 大韓民國의國籍을喪失한男子의妻또는未成年者인子가그의國籍을取得한때에는大韓民國의國籍을喪失한다.

**第14條** (國籍의 回復) ①第12條 및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大韓民國의 國籍을 喪失한 者는 法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大韓民國의 國籍을 回復할 수 있다.

②第5條第5號 및 第8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籍의 回復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76·12·22]

**第15條** 歸化, 國籍의離脫과回復에關한節次는大統領令으로定한다.

**第16條** 國籍을喪失한者는大韓民國의國民이아니면享有할수없는權利를國籍喪失한날로부터 1年以內에大韓民國의國民에게讓渡하여야한다.

前項의規定에違反한때에는그權利를喪失한다.

附 則

이法은公布한날로부터施行한다

附 則 <62·11·21>

本法은公布한날로부터施行한다

附 則 <63·9·30>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76·12·22>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국적법시행령(1969·10·14)  
(대통령령제4127호 한글화)

개정 1971·7·9 대통령령제5693호  
1976·12·31 대통령령제8378호

제 1 조 (귀화허가의 신청) ①귀화하고자 하는 자는 귀화허가신청서에 귀화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귀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처와 미성년의 자가 있는 때에는 귀화허가신청서에 이를 기재하고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2 조 (국적이탈허가의 신청)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 5 호의 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국적이탈허가신청서에 이중국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 3 조 (국적상실자의 신고) ①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이탈신고서에 국적상실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읍·면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국적상실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국적상실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71·7·9>

제 4 조 (국적회복허가의 신청서류) 국적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는 국적회복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국적을 상실하였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국적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에게 처와 미성년의 자가 있을 때에는 국적회복허가신청서에 이를 기재하고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하고 국적회복의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 및 기타 참고서류

제 5 조 (관보의 고시·허가통지서의 교부) 법무부장관은 귀화·국적회복 또는 제 2 조의 국적이탈의 허가를 하였거나 국적상실의 신고 또는 보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보에 고시하고 본인에게 귀화·국적회복 또는 국적이탈의 허가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71·7·9>



제 6 조 내지 제11조 삭제 <76·12·31>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1·7·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다. 귀순북한동포보호법 및 시행령

### ●歸順北韓同胞保護法<sup>[1993.6.11]</sup> 法律第4568號全文改正

**第1條 (目的)** 이 법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이 달성될 때까지 軍事分界線以北地域 (이하 “北韓”이라 한다)에서 大韓民國으로 歸順한 同胞의 定着을 돕는 한편, 이들이 자유롭게 生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보호대상자)** 北韓에서 大韓民國으로 歸順한 同胞(이하 “歸順北韓同胞”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第3條 (保護申請 및 決定등)** ①歸順北韓同胞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者는 保健社會部長官에게 保護申請을 하여야 한다.

②保健社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申請을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歸順北韓同胞保護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 여부를 決定한 후 그 결과를 申請人과 그가 定着하고자 하는 地域의 市長(서울特別市長 및 直轄市長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道知事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③市長 또는 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通報된 者에 대하여는 歸順北韓同胞로 登錄하여야 한다.

**第4條 (定着金등의 지급)** ①歸順北韓同胞에 대하여는 그 定着與件과 生計維持能力등을 고려하여 定着金を 지급할 수 있다.

②歸順北韓同胞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着金외에 그가 제공한 情報나 가지고 온 裝備(財貨를 포함한다)의 活用價値에 따라 等級을 정하여 報勞金を 지급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定着金과 報勞金の 금액, 等級의 기준 및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 (特別任用)** ①北韓의 軍人이었던 者로서 國軍에 編入되기를 희망하는 歸順北韓同胞에 대하여는 歸順하기 전의 階級에 상당하는 國軍의 階級에 任用할 수 있다.

②北韓의 公務員이었던 者로서 大韓民國의 公務員에 任用되기를 희망하는 歸順北韓同胞에 대하여는 歸順하기 전의 階級에 상당하는 公務員의 階級에 任用할

수 있다.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歸順北韓同胞로서 國家利益에 현저히 이바지한 者에 대하여는 歸順하기 전의 階級에 상당하는 階級보다 上位의 階級에 任用할 수 있다.

第6條 (生活保護) 歸順北韓同胞로서 生活이 어려운 者에 대하여는 生活保護法 第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同法 第7條 내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보호를 행할 수 있다.

第7條 (住居支援) 歸順北韓同胞에 대하여는 國家利益에 이바지한 정도와 年齡·世帶構成 및 그가 居住하고자 하는 地域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住宅을 無償으로 제공하거나 住宅의 賃借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8條 (就業斡旋) ①歸順北韓同胞에 대하여는 就業을 알선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就業斡旋의 대상범위·斡旋節次 기타 就業斡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條 (教育保護) ①歸順北韓同胞에 대하여는 教育保護를 행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教育保護의 대상범위·保護節次 기타 教育保護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條 (醫療保護) 歸順北韓同胞와 그 家族에 대하여는 醫療保護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醫療保護를 행할 수 있다.

第11條 (就籍의 特例) ①保健社會部長官은 歸順北韓同胞로서 軍事分界線以南地域에 本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本人의 의사에 따라 本籍을 정하고 서울家庭法院에 職權으로 就籍許可申請書를 제출한다.

②第1項의 就籍許可申請書에는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된 決定書謄本과 戶籍의 기재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身分表를 붙여야 한다.

③서울家庭法院은 第1項의 就籍許可申請書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許可여부를 決定하고, 就籍許可를 한 때에는 당해 就籍地의 市(區가 설치된 市에 있어서는 區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邑·面의 長에게 就籍許可書謄本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市·邑·面의 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就籍許可書謄本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戶籍을 編製하여야 한다.

⑤이 法에 의한 就籍許可, 就籍許可書謄本の 송부, 戶籍의 編製등에 소요되는

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부담으로 한다.

第12條 (이 法 보호대상으로부터의 排除) ①保健社會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보호를 받거나 받을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歸順北韓同胞保護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 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1. 思想이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되는 者
2. 大統領令이 정하는 罪를 범하여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者

②保健社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할 때에는 前科記錄을 관리하는 機關에 犯罪經歷을 照會할 수 있다.

第13條 (歸順北韓同胞保護委員會) ①歸順北韓同胞에 대한 보호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保健社會部에 歸順北韓同胞保護委員會(이하 이 條에서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1.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호대상여부
2.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호대상에서의 제외여부
3. 기타 歸順北韓同胞의 보호와 관련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委員會는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國家機關 기타 公·私團體에 알아보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③委員會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 (歸順北韓同胞後援會) ①歸順北韓同胞의 生活安定과 自立定着을 지원하기 위하여 歸順北韓同胞後援會를 設立할 수 있다.

②歸順北韓同胞後援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歸順北韓同胞後援會에 대하여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15條 (罰則) ①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法에 의한 보호를 받거나 보호를 받게 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고, 지급받은 定着金 또는 報勞金은 이를 沒收한다. 沒收할 수 없을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②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越南歸順

勇士로 登錄된 者는 이 法에 의한 歸順北韓同胞로 登錄된 것으로 본다.

第3條 (報償金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이미 지급하기로 決定된 報償金·特別報償金·年金 또는 生活調整手當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第4條 (住宅提供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住宅을 제공하기로 決定된 者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住宅을 제공한다.

第5條 (貸付決定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貸付를 받을 者로 決定된 者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貸付를 행한다.

第6條 (職場斡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이미 就業希望申請書를 제출한 者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職場을 알선한다.

第7條 (教育保護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越南歸順勇士와 그의 子女로 登錄된 者에 대해서는 本則 第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教育保護를 행한다.

第8條 (養老·養育保護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養老·養育保護를 받고 있는 者에 대하여는 당해 養老·養育保護施設을 退所할 때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養老·養育保護를 행한다.

第9條 (越南歸順勇士後援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越南歸順勇士後援會는 이 法에 의한 歸順北韓同胞後援會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후 3月 이내에 이 法에 의한 法人으로 定款을 변경하여야 한다.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政府組織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第1項중 “除隊軍人 및 越南歸順勇士의 報償·保護와”를 “除隊軍人の 報償·보호 및”으로 한다.

②報勳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중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및 越南歸順勇士特別報償法의 適用對象者(이하 “國家有功者등”이라 한다)”를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의 適用對象者(이하 “國家有功者등”이라 한다)”로 한다.

第2條第1號중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및 越南歸順勇士特別報償法”을 “國家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로 한다.

③韓國報勳福祉公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중 “國家有功者禮遇등에 관한法律 및 越南歸順勇士特別報償法の 適用對象者(이하 “國家有功者등”이라 한다)를 “國家有功者禮遇등에 관한法律의 適用對象者(이하 “國家有功者등”이라 한다)”로 한다.

④醫療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4號중 “國家有功者禮遇등에 관한法律의 適用을 받고 있는 者 및 越南歸順勇士特別報償法の 適用을 받고 있는 越南歸順勇士”를 “國家有功者禮遇등에 관한法律의 適用을 받고 있는 者”로 하고, 同項第6號를 第7號로 하며, 同項에 第6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6. 歸順北韓同胞保護法の 적용을 받고 있는 者와 그 家族으로서 保健社會部長官이 醫療保護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者

●귀순북한동포보호법시행령<sup>(1993.12.11)</sup>  
(대통령령제14019호전문개정)

개정 1994.9.9 대통령령제14377호

제 1 조 (목적) 이 영은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보호의 신청) 법 제 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 호서식의 신청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보호대상자의 결정등)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법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 2 호서식의 통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 신청인과 그가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조 (등록) 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보호대상자를 별지 제 3 호서식의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5 조 (정착금의 지급기준등)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 최저임금액(이하 “월 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의 100배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1. 기본금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가. 제 1 급(본인외에 동거가족이 2인이상인 경우) : 월 최저임금액의 40배상당액
  - 나. 제 2 급(본인외에 동거가족이 1인인 경우) : 월 최저임금액의 30배상당액
  - 다. 제 3 급(본인외에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월 최저임금액의 20배상당액
2. 가산금은 귀순북한동포 본인 및 동거가족의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등을 고려하여 월 최저임금액의 60배의 범위안에서 법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귀순북한동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94.9.9]

제 6 조 (보로금의 지급 및 기준) ①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귀순북한동포가 제공한 정보 또는 장비의 종류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군함·전투폭격기 : 황금 10,000그램이상 20,000그램이하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

2. 전차·유도무기·기타 비행기 : 황금 500그램이상 5,000그램이하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
3. 포·기관총·소총류 : 황금 10그램이상 500그램이하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
4. 무전기 : 황금 10그램이상 30그램이하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
5. 재화 : 시가에 상당한 금액
6. 정보 : 황금 500그램이상 20,000그램이하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

②보로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에 따라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7조 (주거지원)** ①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순북한동포에게 주거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귀순북한동포 본인의 연령, 세대구성과 그가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동 주택의 임대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4·9·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은 귀순북한동포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되는 국민주택의 우선분양 또는 우선임대를 건설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취업알선)**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은 취업능력이 있는 귀순북한동포 본인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알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취업희망신청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희망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 및 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2. 상시근로자 16인이상을 사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국·공립학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취업요청이 있을 경우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범위안에서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⑤보건사회부장관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희망신청직종이 별도의 자격 또는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9 조 (교육보호)** ①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는 귀순복한동포 본인에 한한다.

②제 1 항의 교육보호의 범위는 수학능력등에 따라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까지로 하며,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한다. 다만, 사립의 대학·사범대학·개방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그 반액을 국고가 부담한다.

③제 1 항의 교육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5 호서식의 교육보호신청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건사회부장관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중 교육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범죄의 종류)** 법 제12조제 1 항제 2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라 함은 형법 제 2 편제 1 장(내란의 죄), 제 2 장(외환의 죄)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군형법 제 2 편제 1 장(반란의 죄), 제 2 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 10조를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제 5 조·제 9 조·제12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4.9.9>

②위원장은 보건사회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경제기획원장관·통일원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보건사회부장관·총무처장관·국가안전기획부장이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2. 경찰청장이 소속치안감 또는 경무관급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1인
3. 이북 5 도위원회 사무국장

**제12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 (위원회의 기타 심의사항)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타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의 지급여부와 지급등급 및 등급별 수준
2.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의 지급여부 및 그 수준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원여부와 지원방법 및 그 수준

**제14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보호신청이 있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타 심의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소속 4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 (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94·9·9]

**제17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94·9·9]

#### 부 칙

이 영은 199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94·9·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호신청을 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호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행한다.



[별지 제 3 호서식]

귀순북한동포보호대상자등록대장

순번	연월일	보호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 급		주택 회망 여부	비고
						정착금	보로금		

31314-07611일  
93. 11. 10 승인

297mm × 210mm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 4 호서식]

취업회망신청서						처리기간 1 일	
성명		보호 번호		주민등록 번호			
주소					자격·면 허 번호		
학 력							
주요경력							
신체조건				생활근거지			
근무회망 지 역				회 망 종 지			
<p>귀순북한동포보호법 제 8 조 및 동법시행령 제 8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취업회망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보건사회부장관 귀하</p>							
※ 구비서류 :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수수료 없 음	

31314-07711민  
93. 11. 10 승인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교육보호신청서							처리기간	
							1 일	
인적사항	성명	(한자: )			보호번호	사진 (3×4)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여
	주소							
진학희망	구분	순위	학교명	학과	소재지	거리	비고	
	국·공립	제1 희망						
		제2 희망						
	사립	제1 희망						
		제2 희망						
	<p>위와 같이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보호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left; margin-top: 20px;">보건사회부장관    귀하</p>							
						수수료		
						없음		

31314-07811민  
93. 11. 10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sup>2</sup>)

## 라.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령(난민관련 부분)

〈출입국관리법〉

### 第8章의2 難民의 인정등

第76條의2(難民의 인정) ①法務部長官은 大韓民國안에 있는 外國人으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難民의 인정에 관한 申請이 있는 때에는 그 外國人이 難民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은 그 外國人이 大韓民國에 上陸 또는 入國한 날(大韓民國에 있는 동안에 難民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0日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疾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의 인정을 한 때에는 그 外國人에게 難民認定證明書를 교부하고, 難民의 인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難民의 인정에 관한 審査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6條의3(難民 인정의 取消) ①法務部長官은 第7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의 인정을 받은 者가 難民協約 第1條 C(1) 내지 (6) 또는 第1條 F(a) 내지 (c)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難民의 인정을 取消할 수 있다.

②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의 인정을 取消한 때에는 그 사실을 外國人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第76條의4(異議申請) 第7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 인정의 申請을 하였으나 難民의 인정을 받지 못한 者 또는 第76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

민의 인정이 取消된 者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日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法務部長官에게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行政審判法에 의한 行政審判을 請求할 수 없다.

第76條5(難民旅行證明書) ①法務部長官은 第7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의 인정을 받은 者가 出國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申請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難民旅行證明書を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의 出國이 大韓民國의 이익이나 安全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難民旅行證明書の 有効期間은 1年으로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旅行證明書を 발급받은 者는 그 證明書の 有効期間내에 大韓民國에 入國하거나 大韓民國으로부터 出國할 수 있다. 이 경우 入國에 있어서는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再入國許可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法務部長官은 第3項의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月이상 1年미만의 범위내에서 入國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할 수 있다.

⑤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旅行證明書を 발급받고 出國한 者가 疾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證明書の 有効期間내에 再入國할 수 없는 때에는 그의 申請에 의하여 6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有効期間의 延長을 許可할 수 있다.

⑥法務部長官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有効期間延長許可에 관한 權限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在外公館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第76條의6(難民認定證明書등의 반납) ①第7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의 인정을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소지하고 있는 難民認定證明書 또는 難民旅行證明書を 지체없이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第59條第2項·第68條第4項 또는 第8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強制退去命令  
書를 발부받은 때

2. 第6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強制退去命令에 대한 異議申請이 이유 없다  
는 통지를 받은 때

3. 第76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의 인정을 取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

②法務部長官은 第76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旅行證明書를 발급받은  
者가 大韓民國의 이익이나 安全을 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外國人에게 14日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難民旅行證明書의 반납을 명  
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旅行證明書를 반납한 때에는 그 때에, 지정된 기  
한까지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경과한 때에 당해 難民旅行證明書  
는 각각 그 효력을 잃는다.

第76條의7(難民에 대한 滯留許可의 特例) 法務部長官은 難民의 인정을 받은 者  
가 第6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한 때에는 第61條第1項에 規定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異議申請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의 滯  
留를 許可할 수 있다. 이 경우 第61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 제7장의2 난민의 인정등

제88조의2(난민의 인정) ①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신청하  
고자 하는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서에 난민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사진 2매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권 또는 선원수첩을 제시할 수 없는 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권 또는 선원수첩

2. 난민임시상륙허가를 받은 자는 난민임시상륙허가서

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중인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한자는 외국인등록증

③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난민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⑤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⑥법무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임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난민인정증명서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법 제7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하지 아니한 때의 통지는 그 사유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난민인정불허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제88조의3(난민인정의 취소) 법 제7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취소한 때의 통지는 그 사유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난민인정취소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제88조의4(이의신청) ①법 제7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이유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난민인정증명서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8조의5(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①법 제7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난민여행증명서발급신청서에 난민인정증명서와 제88조의2제2항 각호의 서류 및 사진 2매를 첨부하여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8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난민여행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8조의6(난민여행증명서의 재발급) ①법무부장관은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난민여행증명서가 분실되거나 없어진 경우
2. 난민여행증명서가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
3. 기타 법무부장관이 재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난민여행 증명서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2매를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관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사유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원래의 난민여행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 하는 때에는 난민여행증명서발급대장에 재발급 표시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체류지관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8조의7(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유효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법 제76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난민여행증명서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는 때에는 난민여행증명서에 유효기간연장허가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유효기간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8조의8(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난민여행증명서반납명령서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그 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북 한〉

### 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1992. 4.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에서 수정)

#### 제1장 정 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며 운영된다.

제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 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이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이 령도하는 노동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내외 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3조 국가는 균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 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 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를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 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 제2장 경 제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 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와 체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2조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부림집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같은 것과 중소 공장, 기업소는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 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를 줄여 나간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 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 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

**제29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노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노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노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노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 지도와 경제 기술적 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 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옹계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 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제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제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옹계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높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하거나 국가의 감독 밑에서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37조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

제38조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 화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5조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 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제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체제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운다.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 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킨다.

제52조 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54조 국가는 우리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책동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 데 대한 방침을 관철하여 전체 인

민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 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를 강화하고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 제4장 국 방

**제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 데 있다.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조** 국가는 군대 안에서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리용할 수 없다.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와 청원은 법이 정한 절차와 기간 안에 심의처리하여야 한다.

제70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정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5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6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 밖의 정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7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 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제78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제7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80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제81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82조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3조 노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노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노동규률과 노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 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 제6장 국가기구

###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의 상무기관은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이다.

제88조 립법권은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가 행사한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0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때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한다.
2.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가 채택한 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



위원회에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 서기장, 의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1. 최고인민회의의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5. 정무원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 밖의 정무원 성원들을 임명한다.
16.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7.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8. 필요에 따라 최고인민회의가 조직한 중앙국가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9.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20.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하며 대외관계에서 최고인민회의를 대표한다.

부의장은 의장의 사업을 돕는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과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이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통일정책위원회 같은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의 위원회들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의 위원회들은 최고인민회의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의 위원회들은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제100조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는 의장, 부의장, 서기장, 의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 의장, 부의장은 각각 최고인민회의의 의장, 부의

장이 겸임한다.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101조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에 제기된 법안과 현행법령의 수정안을 심의 채택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2. 새로운 법안과 법수정안을 채택한 경우 그와 어긋나는 법규들을 폐지한다.
3. 현행법령을 해석한다.
4.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5.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6.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7. 최고인민회의의 위원회들과의 사업을 한다.
8.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9.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102조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03조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가 선거될 때까지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04조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의 앞에 책임진다.

## 제 2 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제10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한다.

제10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2. 필요에 따라 정무원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한다.
3. 최고인민회의 법령,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중앙인민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
4. 특사권을 행사한다.
5.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를 공포한다.
6.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발표한다.
7.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0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명령을 낸다.

제10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1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돕는다.

### 제 3 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다.

제11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

제11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

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 중요 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3.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4. 유사시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1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 제 4 절 중앙인민위원회

제117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지도 기관이다.

제118조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다.

제119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중앙인민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20조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과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정무원과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3. 사법, 검찰기관사업을 지도한다.
4.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지도하며 법집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5.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집행정형을 감독

하며 그와 어긋나는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집행을 정지시키고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6. 부문별 행정적 집행기관인 정무원 위원회, 부를 내오거나 없앤다.
7.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정무원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 밖의 정무원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8. 중앙인민위원회 부문별 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9.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0.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한다.
11.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2. 대사권을 행사한다.
13. 행정구역을 새로 내오거나 고친다.

제121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22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3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 제5절 정무원

제124조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정무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125조 정무원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부장들과 그 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정무원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126조 정무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각 위원회, 부, 정무원직속기관,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2. 정무원직속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환경보호, 관광, 그 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7.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8.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27조 정무원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정무원전원회의는 정무원 성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무원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 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정무원 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8조 정무원전원회의는 국가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정무원상무회의는 정무원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9조 정무원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30조 정무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회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31조 새로 선거된 정무원총리는 정무원 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 인민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앞에 선서를 한다.  
제132조 정무원 위원회와 부는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다.  
정무원 위원회, 부는 지시를 낸다.

## 제 6 절 지방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제133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4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5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36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7.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37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



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39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

제140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은 해당 인민위원회가 공포한다.

제141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 중의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3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결정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6. 하급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해당 지역 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다.
8. 해당 행정경제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 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9. 인민회의 휴회 중에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4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인민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그 앞에 책임진다.

## 제 7 절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제147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행정경제위원회는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제148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9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경제사업을 조직집행한다.
2. 해당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와 정무원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3.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6. 하급 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하급 행정경제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50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51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상급 행정경제위원회와 정무원에 복종한다.

## 제8절 재판소와 검찰소

제152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53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4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55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수들과 온갖 범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56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 수 있다.

제157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 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8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제159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0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중앙재판소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161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162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 검찰소와 특별 검찰소가 한다.

제163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64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65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명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범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66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67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6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뿔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 테두리 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위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6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 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 쪽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는 비는 1 대 2 이다.

제17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17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나. 조선로동당 규약

(1980. 10. 13)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1926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공산주의적 혁명조직으로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했으며 오랜 항일혁명투쟁을 통해 당창건을 위한 조직적,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에 기초하여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우리나라에서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이며 전체 근로대중 조직체 중에서 최고형태의 혁명조직이다.

조선로동당은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 조선로동당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망라하는 근로인민들 가운데서 근로대중의 리익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선봉적 투사들로서 조직한다.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

조선로동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킨다.

조선로동당은 자본주의사상과 마찬가지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계급운동에서 나타난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 당의 사상의지적 통일단결을 계속 강화한다.

조선로동당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으로서 천리마운동과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추진한다.

조선로동당은 로동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높임으로써 로농동맹을 기초로 한 전 조선의 각계각층 애국적 민주력량들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최고의 활동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로동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삼는다.

조선로동당은 모든 당사업의 기본원칙으로 계급로선과 균중로선을 관철한다.

조선로동당은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 청산리정신 및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한다.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를 촉진하고 사회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견고히 하며 나아가서 사회주의제도를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활발히 진행한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그리고 일본군국주의의 재침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조국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자주성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사회

주의나라들과의 단결과 국제공산주의운동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고 세계의 모든 신흥세력나라 인민들과의 친선,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운동과 자본주의나라들의 로동계급과 그 밖의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지하고 광범한 연합전선을 실현하여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 제1장 당 원

1. 조선로동당 당원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투사이다.

2. 조선로동당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체제로 확고히 무장된 조선공민으로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옹호, 관철하기 위하여 간결히 투쟁하며 당규약을 준수하는 근로자들이 될 수 있다.

3. 조선로동당 당원은 규정된 후보기간을 마친 후보당원 가운데서 받아들인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입당청원자를 후보기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당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만18세부터 입당할 수 있다.

입당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후보당원으로 입당하려는 사람은 입당청원서와 당원 2명의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원이 입당할 때에 시(구역)·군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위원회의 입당보증서는 당원 1명의 보증서를 대신할 수 있다.

후보당원이 입당할 때에는 입당청원서와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제출하



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당세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입당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입당보증인은 최소한 2년 이상의 당년한을 가져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사회, 정치생활을 잘 알아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보증의 진실성에 대하여 당 앞에 책임을 진다.

3) 입당문제는 개별적으로 심사하며, 당세포총회에서 입당청원자의 참가 밑에 토의결정하며 그 결정은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

시(구역)·군당위원회는 입당문제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을 1개월 내에 심의해결하여야 한다.

4) 특수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당문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특별히 특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심의한다.

5) 타당에서 출당한 사람이 입당하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의 당년한을 가진 당원 3명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타당에서 평당원으로 있었던 사람의 입당은 시(구역)·군당위원회가, 시(구역)·군급의 위원 및 간부로 있었던 사람의 입당은 관할 도(직할시)당 위원회가, 도(직할시), 중앙위원회위원 및 간부로 있었던 사람의 입당은 당중앙위원회가 각각 최종적으로 비준한다.

6)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당세포는 후보당원에게 당원의 자격을 갖추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당세포는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이 끝남에 따라 당원심사총회에서 그의 입당자격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그를 당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만일 후보당원의 입당준비 정도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보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후보당원이 후보기간을 마친 후에도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보명부에서 삭제된다.

후보기간을 연기하거나 후보당원을 명부에서 삭제시키는 당세포의 결정은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7) 후보당원이나 후보기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당원이 된 자의 입당일시는 당세포총회에서 입당을 결정한 날로한다.

4. 당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있어야 한다.

당원은 당과 수령에 무한히 충성하고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확고히 무장하며, 당의 요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옹호하며 이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의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옹호하며 로동과 생활에 적용해 나가야 한다.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적 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및 가족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여야 한다.

2) 당원은 당성을 부단히 단련하기 위한 높은 조직의식을 가지고 당생활에 자발적으로 참가하여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회의와 당학습을 비롯한 당의 조직 및 사상생활에 충실히 참가하고 당조직의 결정과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정확히 수행하며 자신의 당생활을 정기적으로 총화하며 비판과 사상투쟁을 통하여 자기를 혁명가로 단련시켜야 한다.

당원은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전체당원들에게 다같이 적용되는 당

의 규률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규률위반에 대하여는 건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3) 당원은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확립하고 자기의 정치, 사상, 문화 및 기술수준을 부단히 향상시켜야 한다.

당원은 주체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 및 혁명전통을 깊이 학습하며 경제 및 선진과학기술 지식을 습득하고 현실상황을 료해하며 자신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당원은 혁명적 군중로선을 관철하며 일상적으로 대중과 함께 일하여야 한다. 당원은 대중에게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일상적으로 해설하여 주며 그들을 교양개조하여 당 주위에 굳게 결속시키고 혁명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그들을 동원하며, 대중의 의견을 정확히 접수하여 그들의 요구를 제때에 해결하여 주어야 한다.

5) 당원은 노동과 생활에서 대중의 모범이 되며 모든 사업에서 선봉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당원은 집단의 혁명화투쟁을 지도하며 자신과 가족의 혁명화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당원은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규률을 자발적으로 지키며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며 자기가 맡은 사업에 정통하며 맡은 바 임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당원은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반대하며 기술혁신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로동생산능률을 부단히 제고하고 기업관리운영에 솔선 참가하며 국가와 사회재산을 애호하여 나라의 경제를 절약해야 한다.

6) 당원은 고상한 공산주의적 도덕품성을 소유하고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며 조직과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개인의 리익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당원은 높은 혁명적 자립정신을 발휘하고 모든 애로에 대하여 과감히 투쟁해야 한다.

당원은 항상 소박, 솔직, 겸손하여야 하며 사리와 공명을 탐내지 말고 당과 함께 솔직하며, 인간성이 풍부하고 문화적이어야 하며 국법과 사회 질서 및 공중도덕 준수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7) 당원은 사회주의조국을 튼튼히 보위하여야 한다.

당원은 일상적으로 긴장된 동원태세를 갖추고 군사지식을 배워 적의 침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적 대사변에 대비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8) 당원은 혁명규율과 질서를 준수하고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안일과 나태함이 없이 혁명적인 경각성을 높이고 당, 국가 및 군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9) 당원은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하여 당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현상뿐만 아니라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함과 부정적인 경향을 반대하여 투쟁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관계당위원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10) 당원은 규정된 당비를 매달 납부하여야 한다.

5. 당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회의와 당출판물을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 수행 및 당사업발전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2) 당원은 당회의에서 투표권과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3) 당원은 당회의에서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한 어떤 당원을 막론하고 비판할 수 있으며,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한 어떠한 지시의 준수도 거절할 수 있다.

4) 당원은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는 당회의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당원은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각급 당위원회에 어떤 신소나 청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6) 후보당원의 의무는 당원의 의무와 같다. 후보당원의 권리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결의권이 없는 이외에는 당원의 권리와 같다.

7) 당의 규률을 위반하는 당원은 당의 책벌을 받는다.

①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여 파벌조성행위를 하거나 적과 타협하는 등 당에 엄중한 손실을 끼친 당원은 출당시킨다.

② 당원의 칭호를 박탈하지 않을 정도의 과오를 범한 당원에 대하여는 과오의 경중에 따라 견책, 엄중경고 또는 권리정지나 후보당원으로 강등하는 책벌을 적용한다.

③ 당 책벌의 목적은 과오를 범한 당원을 교양하는 데 있다.

당의 책벌은 과오를 범한 동기와 원인 및 그 과오의 결과를 상세히 규명한 후에 신중하게 과해야 한다.

④ 당 책벌은 본인의 참가하에 그가 속한 당세포총회에서 토의결정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본인이 참가하지 않아도 책벌을 토의결정할 수 있다.

당중앙위원회,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는 당규률을 위반한 당원에게 직접 책벌을 내릴 수 있다.

당원에게 책벌을 적용할 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당원자격박탈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도(직할시)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출당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이 비준되기 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원의 당증을 회수하지 못하며 당생활 참가를 허용해야 한다.

⑤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에 대한 책벌은 당중앙위

원회 전원회의에서,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의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에 대한 책벌은 해당 당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당세포는 당중앙위원회,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의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이 당규를 위반한 경우에 위반당원에 대한 책벌을 해당 당위원회에 제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세포는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의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이 범한 과오가 해당 위원회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엄중경고까지의 책벌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해당 당위원회의 기준을 받아야 한다.

6. 종파 및 기타 다른 분파에 참가한 당원에 대한 당규를 문제의 심의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진행된다.

평당원 또는 시(구역)·군 기관의 간부로 있던 당원의 문제는 도(직할시)당위원회에서, 도(직할시) 또는 중앙당기관의 간부로 있던 당원의 문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한다.

7. 당중앙위원회,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는 당규를 문제와 관련된 당원의 청원을 지체없이 심의해결하여야 한다.

8. 당세포는 항상 책벌을 받은 당원을 방조하여야 하며, 만일 책벌을 받은 당원이 자기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행동이 개선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책벌을 해제하는 데 대한 문제를 총회에서 토의결정하여야 한다.

당원이 받은 책벌을 해제하는 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해당 시(구역)·군당위원회의 기준을 받아야 한다.

당중앙위원회,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의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이 받은 책벌의 해제는 그 처벌의 적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해당 당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된다.

9. 정당한 이유없이 6개월 이상 당생활에 참가하지 않는 당원에 대하여

당세포는 총회에서 제명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시(구역) ·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0. 당원의 등록과 이동은 당중앙위원회가 제정한 규정과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

## 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

11. 당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한다.

1)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은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하고, 선출된 당지도기관은 선거한 당조직에 대해 자기의 사업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총화, 보고한다.

2) 당원은 당조직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 복종한다.

3) 모든 당조직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상급당조직은 하급당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검열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게 자기의 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12. 각급 당조직은 지역 또는 생산 및 노동 단위에 따라 조직한다.

어느 한 지역을 담당한 당조직은 그 지역에 일부를 담당한 모든 당조직들에 대하여 상급당조직으로 되며, 어느 한 분야의 전체사업을 담당한 당조직은 그 분야의 일부 사업을 담당한 모든 당조직들에 대하여 상급당조직으로 된다.

13. 각급 당위원회는 각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정치적 총참모부이다.

집단적 지도는 모든 당위원회의 기본활동지침이다.

각급 당위원회는 새로운 중요한 문제들을 집단적으로 토의결정하여 그

것을 집행하여야 하며 이에 개인적 책임성과 창발성을 엄밀히 결합시켜야 한다.

각급 당조직은 해당 지역 또는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립적으로 토의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결정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14. 각급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전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가 없을 때는 당대회가 선출한 당중앙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된다.

도(직할시)·시(구역)·군당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당 당대표회이며, 당대표회가 없을 때는 당대표회가 선출한 해당 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된다.

초급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당총회(당대표회)이며, 당총회(당대표회)가 없을 때는 당총회(당대표회)가 선정한 해당 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된다.

2) 당대회 또는 당대표회의 대표자는 차하급 당조직의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선거한다.

당대회 대표자의 선출비율은 당중앙위원회가 결정하며, 도(직할시)·시(구역)·군당조직의 당대표회 대표자의 선출비율은 당중앙위원회가 작성한 규정에 따라 해당 당위원회가 결정한다.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의 수는 당대회가 결정한다.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의 수와 초급당위원회의 당원수는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해당 당대표회 또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당중앙위원회,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의 준후보위원은 생산로동에 직접 참가하는 핵심당원 중에서 선출된다.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 선거는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한 선거세칙에 따



른다.

15. 당중앙위원회와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준후보위원의 제명 또는 보선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실시된다.

당중앙위원회와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 위원 가운데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결원된 수만큼 해당 당위원회 후보위원 가운데서 보선한다.

만약 필요시는 당위원회 결원은 위원회의 후보위원이 아닌 다른 당원으로 보선될 수 있다.

초급당조직 집행기관위원의 제명 및 보선은 해당 당총회(당대표회)에서 시행된다.

초급당이 하급당의 규모가 방대하거나 널리 분산되어 있고 또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당총회(당대표회)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초급당위원회가 결원보충을 위한 보선을 실시할 수 있다.

상급당위원회는 결원된 하급당위원회의 책임비서(비서) 또는 비서(부비서)를 임명할 수 있다.

각급 당기관의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 참가하되 발언권만 가진다.

16. 당회의는 해당 당조직에 소속된 당원(당위원 또는 대표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참가하여야만 성립될 수 있고 제기된 문제의 결정은 해당 당회의 참가자의 과반수 찬성을 요한다.

17. 각급 당위원회 내에는 필요한 부서를 설치한다.

부서의 설치 및 폐지의 권한은 당중앙위원회가 가진다.

18.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 및 그들과 동등한 기능을 수행하는 당위원회의 조직과 해산은 당중앙위원회의 기준을 받아야 하며, 초급당위원회 및 분초급당위원회의 조직과 해산은 도(직할시) 당위원회가 비준하고 소수 당원을 가진 초급당위원회 또는 부문 당위원회 및 당세포

의 조직과 해산은 시(구역)·군당위원회가 비준한다.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는 당조직의 조직과 해산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9. 당중앙위원회는 어떤 당조직을 막론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 및 당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하거나 실천을 태만히 한 경우에 그 당조직을 해산하고 소속당원을 개별적으로 심의하며 그들을 재등록하여 새로운 당조직을 조직할 수 있다.

20. 당중앙위원회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부문 및 특수한 환경에 적합한 당조직의 구성, 당조직의 활동방법과 기타 당건설의 제반 문제에 관해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 제3장 당의 중앙조직

21.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표이다.

당대표는 5년에 1회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한다.

당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당대표를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 수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의 소집기일과 의정을 3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2. 당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당중앙위원회 및 당중앙검사위원회의 사업총화
- 2) 당강령과 규약의 채택 또는 수정 보충
- 3) 당로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문제 결정
- 4) 당중앙위원회 및 당중앙검사위원회 선거

23.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모든 당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는 전 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그 수행을 조직지도하며 당의 혁명대렬을 공고히 하고 행정 및 경제사업을 지도, 조정하며 혁명적 무력을 조직, 그들의 전투능력을 높이고 기타 정당 및 국내외기관의 활동에서 당을 대표하며 당의 재정을 관리한다.

24. 당중앙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6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 시기에 당이 직면한 중요문제 등을 토의 결정하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며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와 비서를 선거하고 당중앙위원회의 비서국과 군사위원회를 조직한다.

당중앙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를 선출한다.

25.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당중앙위원회 명의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26.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은 필요시 당 인사 및 당면문제 등 당내문제를 토의, 결정하며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 지도한다.

27.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군사정책 수행방법을 토의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 무력강화와 군수산업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우리나라의 군대를 지휘한다.

28.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는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 및 기타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 및 규약을 준수하지 않아 당규를 위반한 당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당규문제와 관련된 도(직할시)당위원회의 제의 및 당원의 신소를 심의해결한다.

29. 당중앙위원회는 당의 재정경리사업을 검사한다.

30.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당대표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당대표자회의 대표자의 선거절차와 대표자 선출비율은 당중앙위원회가

결정한다.

당대표자회는 당의 로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긴급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또는 준후보위원을 제명하고 그 차원을 보선한다.

## 제4장 도(직할시)의 당조직

31. 도(직할시)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도(직할시) 당대표회이다.

도(직할시)대표회는 3년에 1회 도(직할시) 당위원회가 소집한다.

도(직할시)대표회는 필요에 따라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 수 있다.

도(직할시) 당위원회는 도(직할시) 당대표회의 소집일자와 의정을 2개월 전에 하급당조직들에 통지하여야 한다.

32. 도(직할시)당대표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도(직할시)당위원회와 도(직할시)당검사위원회의 사업 총화
- 2) 도(직할시)당위원회 및 도(직할시)당검사위원회 선출
- 3) 당대회에 파견할 대표자 선출

33. 도(직할시)당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당원들과 근로대중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당원과 근로대중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굳게 무장시키고 그들이 당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수행하며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맹종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및 가족주의에 대해 견결히 투쟁하도록 감독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후비대를 육성하며 당력량을 합리적

으로 배치하고 당생활을 조직, 지도하며 하급당조직을 강화하고 그들의 활동을 감독한다.

당원 및 근로대중에 대한 주체사상, 당정책, 혁명전통교양 및 계급교양이 주내용인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을 강화해야 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통해 그들을 당두리에 결속시켜야 한다.

근로대중의 조직을 강화하고 그들이 자기 기본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지도, 조정하며 행정 및 경제사업을 적절히 지도하여 혁명과업수행을 보장한다.

로농적위대를 강화하고 그 전투력 향상을 조직적으로 지도하며 군사동원사업을 보장한다.

도(직할시) 당위원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소관 사업에 관해 당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34. 도(직할시)당위원회는 도(직할시)당전원회의를 4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전원회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수행방법을 토의결정하며 도(직할시)당위원회의 책임비서 및 비서를 선거하며, 비서처를 조직하고, 도(직할시)당위원회의 군사위원회와 검열위원회를 선거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도(직할시)당위원회명의로 당내사업을 조직, 집행하며 행정 및 경제사업을 지도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는 1개월에 2회 이상 소집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비서처는 인사행정 등 당내문제에 대해 필요시마다 토의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정책 수행방법을 토의결정하며 그 집행을 조직, 지도한다.

35. 도(직할시)당위원회 검열위원회는 반당 또는 반혁명적 종파행위 등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당로선 및 정책과 규약을 준수하지 않아 당규를 위반한 당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당규문제와 관련된 시(구역)·군당위원회의 제의 및 출당에 대한 결정을 최종적으로 비준하며 당규 문제와 관련된 당원의 신소를 해결한다.

## 제5장 시(구역)·군의 당조직

36. 시(구역)·군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시(구역)·군당대표회이다.

시(구역)·군당대표회는 시(구역)·군당위원회가 3년에 1회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시(구역)·군당대표회는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 수 있다.

시(구역)·군당위원회는 시(구역)·군당대표회의 소집일자와 의정을 1개월 전에 산하 당조직들에 통지하여야 한다.

37. 시(구역)·군당대표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시(구역)·군당위원회와 시(구역)·군당검사위원회의 사업총화
- 2) 시(구역)·군당위원회와 시(구역)·군당검사위원회 선거
- 3) 도(직할시)당대표회에 파견할 대표자 선거

38. 시(구역)·군당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당원들과 근로대중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 사업을 조직수행한다.

당원과 근로대중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이 당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수행하며,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적 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맹종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및 가족주의를 반대하여 전결히 투쟁할 것을 보장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계속 강화한다.

간부대렬을 강화하고, 그들을 교양하며 간부후비대를 육성하고, 그들을

조직적으로 훈련한다.

당원의 당생활을 조직, 지도하며 당의 핵심을 연구주시키고 그 대렬을 확대시키며 당원확대사업을 정기적으로 조직, 수행하며 당의 력량을 적절히 배치하고 당원과 후보당원을 등록한다.

당원과 근로대중에 대해 주체사상, 당정책과 혁명전통교양 및 계급교양이 주내용인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을 강화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통해 그들을 당두리에 결속시킨다.

당기총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초급당조직의 집행기관을 강화하며 그들의 기능과 역할을 부단한 향상을 위하여 매일같이 지도·방조한다.

근로대중의 조직들을 강화하고 임무를 정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업방향과 방법을 지시하며 그 리행을 감독한다.

행정 및 경제 사업을 정확히 지도하여 혁명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한다.

로농적위대를 강화하고 그들의 정치사상교양과 군사훈련을 강화하여 전투태세를 완비하며 군사동원사업을 보장한다.

시(구역)·군당위원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자기 사업에 관해 상급당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39. 시(구역)·군당위원회는 전원회의를 3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한다.

시(구역)·군당위원회 전원회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시(구역)·군당위원회의 집행위원회, 책임비서 및 비서를 선거하고, 비서처를 조직하며, 시(구역)·군당위원회의 군사위원회와 검열위원회를 선거한다.

시(구역)·군당위원회의 집행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명의로 당내사업을 조직하고 행정 및 경제사업을 지도한다.

시(구역)·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1개월에 2회 이상 회의를 소집한다.

시(구역)·군당위원회 비서처는 문제제기시마다 인사행정 등 당내사업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며 그 결정을 집행한다.

시(구역)·군당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정책 집행방법을 토의결정하며 그 집행을 조직지도한다.

40. 시(구역)·군당위원회 검열위원회는 반당, 반혁명적 종파행위 등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 및 규약을 준수하지 않아 당규를 위반한 당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당규를문제와 관련된 당원의 신소를 심의처리한다.

## 제6장 당의 기층조직

41. 당의 최하 기층조직은 당세포이다.

당세포는 당원생활의 거점이고 당 주위에 대중을 집결시키고 대중 속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당의 전투단위이다.

42. 당의 기층조직의 조직방식은 다음과 같다.

1) 당세포는 당원 5명에서 30명까지의 단위에 조직한다.

당원 5명 미만의 단위에는 당세포를 두지 않고, 그 단위의 당원 또는 후보당원은 인접 당세포에 소속시키거나 작업성격과 린접관계를 고려하여 2개 이상 단위의 당원을 합병하여 1개의 당세포를 조직할 수 있다.

특수한 경우에는 당원 3-4명이 있는 단위 또는 30명 이상의 단위에도 당세포를 조직할 수 있다.

당원 3명 미만의 단위에는 시(구역)·군당위원회가 추천하는 당원을 책임자로 하는 당소조를 조직할 수 있다.

2) 당원 31명 이상 있는 단위에는 초급당조직을 둔다.

3) 초급당조직과 당세포 사이에 당원 31명 이상이 있는 생산단위나 기타 활동단위에는 부문(마을)당조직을 둘 수 있다.



4) 초급당, 부문당 또는 당세포의 조직형성만으로는 당기층 조직구성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초급당조직과 부문 당조직 사이에 있는 생산단위나 기타 활동단위에 분초급당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5) 이상의 모든 당조직 형태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중앙위원회의 기준을 얻어 실정에 맞는 다른 당조직 형성을 취할 수 있다.

43. 당기층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당 조직의 총회(대표자)이다.

1) 당세포총회는 1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한다.

2)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마을)당의 총회(대표회)는 3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한다.

초급당조직이 500명 이상의 당원 또는 후보당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그 산하조직들이 널리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초급당조직의 총회를 1년에 1회 이상 소집할 수 있다.

44. 당의 기층조직은 1년 임기의 해당 조직의 집행기관을 선거한다.

1) 당세포는 총회에서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

2) 초급당위원회, 분초급당위원회, 부문(마을)당위원회는 각각 당총회(대표회)에서 선거하며 비서와 부비서는 각각 당위원회 회의에서 선거한다.

초급당 및 분초급당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각 집행위원회를 선거할 수 있다.

초급당위원회는 1개월에 3회 이상, 분초급당위원회와 부문(마을)당위원회는 1개월에 2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며 집행위원회가 조직된 초급당 및 분초급당위원회는 1개월에 1회 이상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집행위원회 회의는 1개월에 2회 이상 소집한다.

3) 중앙기관의 당조직은 당지도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45. 당기층조직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원들과 근로대중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그들을 당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

건 접수하여 끝까지 무장시키며 그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여 끝까지 옹호관철하도록 하며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적 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맹종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및 가족주의에 대해 견결히 투쟁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한다.

2) 하급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을 조직적으로 훈련시키며, 당핵심을 주지, 교양하며 부단히 그 대렬을 확대, 강화한다.

3)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고 그들의 당성을 단련한다.

당원들 속에 당규약 학습을 정기적으로 조직하며, 그들에게 항상 혁명을 위한 사고와 행동을 하도록 하고 모든 활동에서 선봉적인 역할을 하도록 당의 임무를 부여하며, 높은 정치사상적 수준에서의 당회의와 당생활 총화를 수행하며 당원의 당생활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들을 교양하며, 당원들을 혁명가로 개조하고 비판을 통한 사상투쟁을 강화한다.

당원이 과오를 범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추궁하고 그 과오를 시정하도록 그를 방조한다.

4) 당원 적임자를 발견등록하며 그들을 조직적으로 교양하며 심사 후 자격자를 입당시키며 후보당원과 새로 입당한 당원들을 교양훈련시킨다.

5) 당원들과 근로대중의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한다.

당원들과 근로대중에 대해 주체사상, 당정책, 혁명전통교양 및 계급교양이 주내용인 공산주의교육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을 강화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통해 그들을 당두리에 결속시킨다.

6) 근로대중의 요구와 의견을 겸손히 접수하고 그것을 제때에 해결하여 주며 그들의 물질문화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모든 단위와 직장에서 계통과 질서를 확립하며 반혁명적 분자들에 대한 투쟁을 강화한다.

7) 근로대중의 사회조직을 강화하고 그들에게 사업방향과 방법을 지시

하며 그들이 자기의 의무를 정확히 수행하도록 감독한다.

8) 모든 사업활동에서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 및 청산리정신과 방법을 적용하고 정치사업을 선행시키며 행정 및 경제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를 통해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대중이 그들의 혁명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이 혁신을 일으키며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과 사회주의 경쟁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기술혁명운동을 촉진하며 노동생산능률을 제고하고 노동규률을 강화하며 법령에 준수하고 국가와 사회재산을 애호절약하도록 그들을 조직, 고무한다.

9) 로농적위대를 강화하고 그들의 정치, 사상, 교양 및 군사훈련을 강화하여 당이 부를 때 항상 동원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10) 당원과 후보당원을 등록하며 당비를 각출하며 자기 사업에 관해 상급당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제7장 조선인민군대 내 당조직

46.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

47. 조선인민군대 내의 각급 단위에 당조직을 구성하며 조선인민군의 전체 당조직을 망라하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를 조직한다.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도(직할시)당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직속하며 그 지도 밑에 사업하고 자기 사업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48. 조선인민군대 내 각급 당조직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전 군을 주체사상으로 교양하기 위해 투쟁한다.

당원들과 군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공고히 확립하며 그들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서슴없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진정한 혁명전사가 될 수 있도록 단련한다.

간부대렬을 강화하며 간부후비대를 육성하고 그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도록 당원의 당생활을 조직, 지도하며 당대렬을 확대, 강화한다.

당원과 군인들에 대해 주체사상, 당정책 및 혁명전통교양과 계급교양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을 강화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통해 그들을 당두리에 결속시킨다.

조선인민군대 내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조직들을 강화하고 그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히도록 지도한다.

당군사로선과 주체적 전략전술을 수행하기 위해 군사사업에 관한 당위원회 집단적 지도를 강화하며 인민군을 일당백의 혁명적인 무장력으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과 붉은기증대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당원과 전사들이 언제나 지체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경계태세를 견지토록 하고 항상 완벽한 전투태세를 갖도록 고무한다.

당원과 전사들에게 높은 혁명적 동지에 및 군관과 전사, 군대와 인민간의 고귀한 전통적 단결정신을 발휘하도록 유도한다.

49. 조선인민군대 내 각급 당조직들은 조선로동당의 규약과 당중앙위원회가 비준한 지시와 규정에 따라 조직되고 사업을 진행한다.

50. 조선인민군대의 당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얻어 정치 및 군사간부를 주둔지역의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 및 공장·기업소의 초급당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8장 정치기관

51. 당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정치, 경제 및 군사 분야의 중요한 부

문에 정치기관들을 조직한다.

중앙기관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 및 그들에게 소속한 정치기관들은 해당 부문에서 당원들과 근로대중에게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조직수행하며, 해당 단위 내에 조직된 당위원회 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그 소속 정치기관은 해당 당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당정치사업을 조직하고 수행한다.

52.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중앙기관 내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는 당 중앙위원회 직속이며 그 지도하에 사업을 수행하고 담당사업에 관해 당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53. 중앙기관 내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들은 하급정치기관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당위원회들과 긴밀한 련결을 가져야 한다.

54. 정치기관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당원들과 근로대중을 동원키 위하여 당열성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5. 정치기관들은 로동당의 규약과 당중앙위원회가 비준한 지시와 규정 에 따라 조직되고 사업한다.

## 제9장 당과 근로대중의 조직

56.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광범한 근로대중의 정치조직이며 항일혁명투쟁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는 당의 외곽조직이다.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광범한 대중의 사상교양조직이며,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인전대(引轉帶)이며 당의 충실한 보조자이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우리의 혁명과업을 직접 계승하는 청년들의 혁명적 조직이며 당의 전투적 수비대이다.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당의 지도하에 자기의 사업을 진행한다.

57.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동맹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꾸리며 동맹대렬을 강화하며 조직생활과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통해 동맹원들을 당두리에 결속시키며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과 사회주의경쟁운동을 전개하며 동맹원들을 혁명과 건설에 적극 동원한다.

58. 각급 당조직들은 근로대중의 간부대렬들을 강화하고 근로대중조직의 매체를 통하여 대중과의 사업체계를 수립하며 근로대중의 특성에 맞게 사업방향과 방법을 정확히 제시하며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 제10장 당의 재정

59. 당의 재정은 당원들의 당비, 당이 운영하는 기관들과 기업소들로부터의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된다.

60. 당원 및 후보당원의 당비는 월수입의 2%로 한다.

## 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1987. 2.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호로 채택)

### 제1장 형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제2조 국가는 범죄와의 투쟁에서 노동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 제재를 배합한다.

제3조 국가는 모든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엄격히 지키며 범죄와의 투쟁에 적극 나서게 하여 범죄를 미리 막도록 한다.

제4조 국가는 범죄행위의 엄중성 정도와 범죄자의 개준성 정도를 고려하여 매 범죄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적용한다.

제5조 국가는 조국과 민족을 반역하는 행위를 감행한 자라 하더라도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에는 과거를 묻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제6조 국가는 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자기의 죄행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자수한 자에 대하여서는 관대히 용서한다.

제7조 이 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우리나라 공민과 우리나라에서 죄를 범한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외교 특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한 형사책임은 그때마다 외교적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다른 나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거나 조선공민을 침해하는 죄를 범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8조 죄를 범한 자에게는 그 범죄행위를 수행한 당시의 형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종전 형법에서 죄로 보던 행위를 이 법에서 죄로 보지 않거나 어떤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을 종전 법보다 낮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 제2장 범죄 및 형벌에 대한 일반규정

### 제1절 범 죄

제9조 범죄는 국가주권과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는 형벌을 줄 정도의 위협한 행위이다.

제10조 범죄행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그와 꼭 같은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을 때에는 이 법가운데서 그 종류와 위협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범죄의 종류와 위협성으로 보아 그와 유사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으며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침해대상과 사회관계, 주관적 표징과 범인의 표징의 한계를 넘어 류추할 수 없다.

제11조 범죄행위를 한 당시에 14살 이상 되는 자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14살 이상 17살에 이르지 못한 자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교양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 만성정신병, 일시적인 정신이상 때문에 자기의 행위를 가리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위협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서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으며 의료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죄를 범한 자가 판결을 내릴 당시에 정신병상태에 있을 때에는 의료처분을 적용하며 회복되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



술에 취하여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서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3조 형사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 및 사회적 이익이나 다른 사람 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해치려는 위급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이 방위의 정도를 지나치게 넘지 않았다면 범죄로 되지 않는다.

제14조 형사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급한 사태를 긴급히 피하는 데 그 길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한 결과 일어난 손실이 구원한 이익보다 적을 때에는 범죄로 되지 않는다.

제15조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하여서는 범죄의 기수와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

범죄의 준비자와 미수자에 대한 형벌은 범죄행위의 위험성 정도, 범죄의 실현 정도, 범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한 원인같은 것을 참작하여 정한다.

제16조 범죄행위를 감행하다가 도중에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그만둔 범죄행위에 대하여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지로 한 행위가 다른 무거운 범죄의 표징을 갖춘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다.

제17조 범죄조직체에서 주모자와 추종자는 그 조직체가 목적인 범죄에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처벌하며 주모자는 보다 엄격히 처벌한다.

제18조 범죄조직체가 아닌 공범에서 추진자, 방조자는 실행자에게 적용하는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

실행자, 추진자, 방조자에 대하여서는 그 범죄에 가담한 정도와 행위의 위험성 정도를 참작하여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19조 범죄를 감행할 당시에 관계하지 않고 범죄가 감행된 다음에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 주었거나 또는 범죄가 감행되었거나 준비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에 대하여

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20조 해로운 긴급사태를 능히 막거나 막을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둔 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 제2절 형 벌

제21조 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로동교화형
3. 선거권박탈형
4. 재산몰수형
5.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

제22조 사형, 로동교화형은 죄를 범한 자에게 적용하는 기본형벌이다.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은 부가형벌이다.

선거권박탈형과 재산몰수형은 함께 줄 수 있다.

제23조 범죄행위를 한 당시 17살에 이르지 못한 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줄 수 없으며 임신녀성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

제24조 로동교화형 기간은 6개월부터 15년까지로 한다.

로동교화형은 교화소에 넣어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제25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류되어 있는 기간은 로동교화형 기간에 계산하여 넣는다

제26조 선거권박탈형은 반국가범죄에 대하여서만 적용할 수 있다.

재판소는 반국가 범죄사건을 재판할 때에는 선거권 박탈문제를 심의하여야 한다.

선거권의 박탈기간은 4년을 넘을 수 없으며 로동교화형의 집행이 끝

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27조 재산몰수형은 반국가범죄에만 적용하며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재산을 전부 국가에 넘기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이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가족이 최저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일용필수품과 돈을 남겨놓아야 한다.

제28조 재산몰수형이 취소되었거나 죄가 없어서 사건이 기각되었을 때에는 몰수하였던 재산을 돌려준다.

현물로 돌려줄 수 없을 때에는 그 물건에 해당하는 값을 물어준다.

제29조 재산몰수대상자가 재산담보처분이 있기 전에 진 빚에 대하여서는 몰수한 재산가운데서 법이 따로 정한 순위에 따라 물어준다. 그러나 재산담보처분이 있는 다음에 진 빚에 대하여서는 몰수한 재산으로 물어주지 않는다.

제30조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준 일정한 자격을 완전히 빼앗거나 일시적으로 빼앗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재판소는 이 법 제79조, 제81조, 제94조, 제98-100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자격을 박탈할 것인가, 자격정지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심의하여야 한다.

자격정지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으며 로동교화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31조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서는 형벌을 적용한다.

형벌은 범죄의 성격, 범죄의 동기와 목적,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감행정도, 범죄의 결과, 범죄자의 개준성 정도같은 것을 참작하여 정한다.

앞항의 경우 이 법 해당 조항에 규정된 형벌의 한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32조 형벌을 정함에 있어서 무겁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주모자와 주동분자인 때

2. 여러번 또는 상습적으로 혹은 여럿이 공모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3. 잔악한 수단과 방법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
4. 자기의 보호 밑에 있거나 직무상 복종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5. 전시 또는 재해상태를 리용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제33조 형벌을 정함에 있어서 가볍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추종자와 피동분자인 때
2. 처음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
3. 강한 정신적 자극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4. 미성인이 죄를 범하였을 때
5.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어 죄를 범하였을 때
6. 자백 또는 고백하였을 때

제34조 재판소는 특별한 경우 해당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보다 더 낮게 형벌을 줄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판결서에 밝히고 해당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보다 낮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형벌의 종류는 바꿀 수 없다.

제35조 한 범죄자가 범한 여러 개의 죄를 함께 재판할 경우에는 매개 범죄별로 해당한 형벌을 정한 다음 범죄의 총체적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범죄들 가운데서 형벌을 가장 높이 정한 조항의 형벌에 처한다.

제36조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판결이 확정된 다음 그 형벌의 집행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새로 범한 죄에 대하여 따로 형벌을 정하고 그것을 남은 형기에 합한다. 이 경우 해당 형벌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제37조 5년까지의 로동교화형 판결을 받은 자의 개준성 정도, 범죄의 위험성 정도에 비추어 그를 교화소에 보내여 로동교화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

릴 수 있다.

1. 3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의 유예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

2. 3년을 넘어 5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의 유예기간은 5년부터 7년까지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에 새로운 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게 내렸던 판결의 집행은 끝난 것으로 인정한다.

제38조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에 새로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집행을 유예한 형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 범한 죄에 대하여 정한 형벌에 합할 수 있다.

형벌을 합하는 경우 로동교화형 기간은 15년을 넘을 수 없다.

제39조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형벌은 특사 또는 대사로 면제한다.

특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 실시하며 대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가 실시한다.

제40조 로동교화형을 받은 자가 범죄행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교화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의 절반이 지난 다음 남은 기간의 로동교화형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로동교화형을 받고 있는 자를 형기가 끝나기 전에 내놓을 데 대한 제의는 로동교화형을 집행하는 해당 교화소가 하며 이 제의는 재판소가 심의판정한다.

제41조 특사, 대사를 받은 자 또는 형벌집행이 끝난 자들에 대하여서는 특사, 대사를 받은 날 또는 형벌집행이 끝난 날부터 죄를 범하지 않았던 사람과 같이 인정하며 법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42조 죄를 범한 때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1. 5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 수 있는 죄에 대하여서는 8년

2. 5년을 넘어 10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 수 있는 죄에 대하여서는 10년

3. 10년을 넘는 로동교화형을 줄 수 있는 죄에 대하여서는 15년

반국가범죄와 고의적 살인죄에 대하여서는 앞항의 기간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제43조 이 법 제42조에 규정된 기간이 넘기 전에 범죄자가 새로운 죄를 범하였을 때,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였을 때, 형사사건 제기결정이 있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새로 계산된다.

### 제3장 반국가범죄

#### 제1절 국가주권을 반대하는 범죄

제44조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음모에 가담하였거나 폭동에 참가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추진자, 주모자, 주동분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 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5조 공화국에 반항할 목적으로 간부들과 애국적 인민들에 대하여 테로 행위를 감행한 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 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준비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6조 공화국을 전복, 문란, 약화시키거나 그 밖의 반국가적인 범죄행위를 감행하도록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7조 공화국국민이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거나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48조 공화국국민이 아닌 자가 우리나라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간첩행

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9조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집단을 추기거나 거기에 자금을 대주어 공화국에 대하여 무장간섭을 하게 하거나 외교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며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약을 폐기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50조 반국가적 목적 밑에 파괴암해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51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공화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대행위를 감행한 자는 3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절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범죄

제52조 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의 지배 밑에서 그와 야합하여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혁명투쟁을 탄압, 박해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은 것과 같은 민족반역행위를 한 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정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53조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혁명투쟁, 해외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를 위한 투쟁을 탄압, 박해하는 적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3절 반국가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신고죄

제54조 반국가범죄자 또는 반국가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 자로서 공범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55조 반국가범죄가 준비되고 있거나 감행된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 또는 반국가범죄가 감행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긴급히 막는 데 필요한 대책을 능히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둔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4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하는 범죄

### 제1절 사회주의적 소유를 침해하는 범죄

제56조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훔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럿이 공모하여 또는 대량 혹은 중요한 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1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57조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빼앗은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여럿이 공모하여 혹은 중요하거나 대량의 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2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58조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속여가진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 또는 중요한 재산을 속여가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59조 국가기관, 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의 위임에 따라 일정한 의무를 실행하는 자 혹은 관리일군이 직무상 또는 의무실행상 자기가 보관관리하고 있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 또는 중요한 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 교화형에 처한다.

제60조 이 법 제56-59조에 지적된 여러 가지 행위를 하여 략취한 총량이 대량인 경우에는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1조 특히 대량 또는 특히 중요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략취한 자는 6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2조 책임일군이 비법적으로 상금, 우대제, 생활비를 적용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공동탐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3조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협을 주는 폭행, 협박을 하여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강도한 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의 재산을 강도하였거나 여러번 또는 여럿이 공모하여 혹은 무기, 흉기를 리용하여 앞항의 행위를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피해자를 죽게 하였거나 중상을 입힌 경우에는 6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4조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 손상시킨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에 엄중한 손해를 주었거나 방화, 폭과같은 위험한 방법으로 파괴, 손상시켰거나 인명피해를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5조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과실로 파괴, 손상시켜 엄중한 손해를 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 2 절 사회주의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66조 화폐, 국가유가증권, 공화국은행에서 바꿀 수 있는 외국화폐를 위조

- 하였거나 위조한 것인 줄 알면서 써먹은 자는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67조 돈표, 물자인수위임장, 량표같은 것을 위조하였거나 위조한 것인 줄 알면서 써먹은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68조 리기적 목적으로 공화국은행에서 바꿀 수 있는 외국화폐를 팔았거나 산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비법적으로 거래한 화폐는 몰수한다.
- 제69조 상습적으로 암거래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부당하게 얻은 돈과 물건은 몰수한다.
- 제70조 허가없이 물건을 다른 나라에 내가거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밀수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부당하게 얻은 돈과 물건은 몰수한다.
- 대량 또는 상습적으로 혹은 국가가 통제하는 물건을 밀수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를 관리일군이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부당하게 얻은 돈과 물건은 몰수한다.
- 제71조 철도, 수상, 항공, 운수부문 일군이 운수규정과 로동규률을 어겨 기차, 배, 비행기를 전복, 파괴, 손상시켰거나 그 정상적 운행에 지장을 주었거나 인명피해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앞항의 행위로 많은 인명에 피해를 주었거나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72조 인민경제계획을 되는대로 세우거나 국가계획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계획수행정형을 거짓보고하거나 계획 및 계약규률을 어기는 행위를 여러번 하여 인민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에 큰 혼란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3조 자재공급일군이 고의적으로 자재공급 또는 판매규를을 여러번 혹 심하게 어겨 경제의 정상적인 관리운영에 큰 지장을 주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4조 많은 원료, 자재, 자금 또는 특히 중요한 설비 같은 것을 류용, 랑 비, 사장하여 인민경제의 정상적인 관리운영에 큰 지장을 주었거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에 엄중한 손해를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 교화형에 처한다.

제75조 원료, 자재를 비롯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무책임하게 보관, 취급하여 그것을 많이 부패, 변질, 류실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 교화형에 처한다.

제76조 기업관리의 책임일군이 설비에 대한 점검, 보수를 규정대로 조직 하지 않았거나 설비를 되는대로 다루게 하여 그것을 파손시켰거나 상당 한 기간 생산을 멈추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7조 설비와 물자를 비법적으로 팔거나 주거나 바꾸거나 훔쳐다가 자기 기관, 단체에서 쓰거나 다른 기관, 단체에 넘겨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 교화형에 처한다.

기관, 단체에 넘겨준 대가로 돈 또는 물건을 받아먹을 목적으로 설비 와 물자를 훔쳐가지고 있거나 돈 또는 물건을 받고 설비와 물자를 기 관, 단체에 비법적으로 넘겨준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8조 기술규정, 표준조작법, 제품규격, 제품검사에 관한 규정을 어겨 오 작품 또는 불합격품을 생산하였거나 생산하게 하여 국가 및 사회협동단 체에 엄중한 손해를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9조 오작설계로 시공하게 하거나 설계문건이 없이 또는 설계를 어겨 오작시공하여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0조 농업생산의 과학기술공정을 어겼거나 농산작업을 조잡하게 하여 농업생산에 큰 지장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1조 집짐승을 기르는 일군이 위생방역 또는 사양관리에 관한 규정을 어겨 많은 집짐승을 죽게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2조 상품공급과 판매질서를 어겨 인민생활에 큰 불편을 준 자 또는 상품의 성질을 비법적으로 고쳤거나 값을 속여 판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3조 계량계측기구의 눈금과 량을 비법적으로 고친 자 또는 계량계측기구의 눈금과 량이 틀린다는 것을 알면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 3 절 국토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84조 많은 토지를 람용하였거나 폐경시킨 자 또는 토지보호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많은 토지를 류실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5조 광석, 석탄 그 밖의 지하자원을 되는대로 캐여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6조 과실로 산불을 일으켜 산림자원에 많은 손실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7조 림지의 나무를 되는대로 또는 허가없이 찍거나 산을 개간하여 산림자원에 엄청난 손실을 준 자는 6개월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8조 허가없이 또는 금지된 시기와 장소에서 혹은 금지된 방법으로 물고기, 리로운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여 수산자원, 동식물자원에 손실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9조 강하천 또는 농경지에 해로운 물질을 흘러보내거나 유독가스를 방출시키는 것과 같은 공해현상을 일으켜 수산자원과 농업생산에 해를 주었거나 인민생활에 큰 지장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0조 국가건물 또는 공공시설물을 제때에 보수하지 않아 못쓰게 만들었거나 그 수명을 짧게 하였거나 구조를 비법적으로 고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1조 강하천보호에 관한 법규를 어겨 동쪽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였거나 강하천보호림을 찍은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 4 절 사회주의로동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92조 국가기관, 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의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로동보호 및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어 주지 않아 인명피해 또는 그 밖에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3조 로동안전기술규정과 작업규률을 어겨 인명피해 또는 그 밖의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4조 자동차, 트랙도르를 운전하는 자가 교통안전에 관한 규정을 어겨 인명피해 또는 그 밖의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 명의 인명피해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5조 사회주의분배원칙을 고의적으로 어겨 로동의 량과 질에 대한 평가를 심히 그릇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6조 여성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직종의 로동을 시킨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5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하는 범죄

제97조 국가에서 보존관리하는 문화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고의적으로 손상시킨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8조 탐욕, 질투 그 밖에 비렬한 동기 밑에 저작, 발명, 창의고안, 문학예술작품을 고의적으로 그릇되게 평가하여 묵살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창작품을 자기의 이름으로 발표한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9조 유치원, 탁아소일군이 어린이에 대한 보호관리를 심히 불성실하게 하여 중상을 입게 하였거나 죽게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0조 의료일군이 환자에 대한 치료와 간호를 심히 불성실하게 하였거나 약품을 잘못 주어 건강에 큰 장애를 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환자를 죽게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1조 의료일군이 아닌 자가 리기적 목적에서 의료행위를 하여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불구로 되게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2조 비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하거나 마약, 독약을 제조, 보관, 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6장 국가의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 제1절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103조 반국가적 목적이 없이 집단적으로 국가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사회질서를 혹심하게 문란시키는 것과 같은 소동을 일으킨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무기 또는 흉기를 리용하여 앞항의 행위를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살인, 파괴같은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항의 행위를 한 주모자와 주동분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4조 폭행, 협박, 모욕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일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5조 사회적 혼란과 국가에 대한 불신임을 일으킬 수 있는 거짓 또는 부정확한 풍설을 퍼뜨려 사회에 혼란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6조 리기적 목적 또는 비렬한 동기에서 문서, 공민증, 증명서를 감추었거나 처분하였거나 또는 위조하였거나 위조한 것인줄 알면서 써먹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7조 화물수송 또는 소포에 관한 규정을 어기고 방사성, 폭발성, 인화성 물질을 부쳤거나 부쳐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6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8조 법이 정한 군사복무동원을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9조 경비근무를 수행하는 자가 근무규정을 어긴 결과 경비대상물에 엄중한 손실을 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0조 군사적 경비 및 차단근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반항하여 그의 근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1조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를 훔쳤거나 빼앗거나 고의적으로 파괴,

손상시킨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2조 무기, 탄약, 그 밖의 군수물자를 잘못 보관취급하여 그것을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만든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3조 무기, 탄약같은 것을 비법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4조 폭약, 퇴관같은 폭발물을 훔쳤거나 비법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5조 국가 및 군사비밀을 누설한 자 또는 비밀문서를 분실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6조 다른 사람이 비행기 또는 배를 몰고 허가없이 우리나라 령공, 령해에 들어왔거나 령공, 령해 밖으로 나가며 지정된 항로, 비행고도를 비롯한 비행, 항해규칙을 어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비행기 또는 배를 몰수할 수 있다.

제117조 허가없이 국경을 넘는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8조 국경관리부문에 근무하는 관리일군이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를 도와준 경우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9조 허가없이 지정된 항해구역 또는 어로구역을 마음대로 리탈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0조 범죄에 대한 거짓신고를 한 자 또는 증인,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이 수사, 예심, 재판심리에서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1조 로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춘 자로서 공범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2조 이 법 제63조, 제141조, 제160조의 범죄가 준비되고 있거나 감행



된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로동 교화형에 처한다.

제123조 교화받고 있는 자 또는 구류보전처분결정에 따라 갇혀 있는 자가 도망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시설을 파괴하였거나 경비원에게 폭행을 하고 도망친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절 관리일군의 직무상 범죄

제124조 관리일군이 리기적 목적으로 직권 또는 직위를 람용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수 있게 한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5조 관리일군이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수 있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6조 관리일군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사업을 지연시켰거나 무질서하게 만들며 국가에 손실을 주었거나 인민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는 것과 같이 직무를 태만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7조 관리일군이 공민의 신소, 청원을 고의적으로 묵살하였거나 그릇되게 처리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8조 관리일군이 국가기관의 권위를 훼손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9조 사람을 불법구속, 불법구인하였거나 범죄자를 비법적으로 놓아준 자 또는 진술을 강요하였거나 사건을 과장, 날조하였거나 부당한 판결, 관정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

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0조 관리일군이 퇴물을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퇴물을 대량 또는 강요하여 받았거나 책임적 직위에 있는 자가 퇴물을 받은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퇴물로 받은 돈과 물건은 몰수한다.

## 제7장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131조 과렴치한 불량자적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2조 미성인에게 범죄를 감행하도록 추기거나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하며 불량자로 되게 한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3조 관리일군이 아닌 자가 관리일군으로 가장하여 또는 관리일군이나 다른 관리일군의 직권을 행세하여 국가의 위신을 훼손시켰거나 사회적으로 위협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4조 돈 또는 물건을 걸고 도박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돈과 물건은 몰수한다.

제135조 주은 돈 또는 물건을 국가기관에 바치지 않고 가진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6조 늙은이, 어린이 또는 로동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자가 그들을 고의적으로 돌보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7조 직무상 복종관계에 있거나 자기의 보호 밑에 있는 사람을 학대, 팔시하여 그의 건강에 해를 주었거나 자살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8조 죽을 위협에 처하여 있는 사람을 해당 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알

려주지 않았거나 자기가 능히 할 수 있는 방조를 주지 않아 그를 죽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9조 묘를 파괴, 손상한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0조 도적질한 물건인줄 알면서 그것을 사거나 팔아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8장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범죄

### 제1절 공민의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하는 범죄

제141조 탐욕, 질투 그 밖의 비렬한 동기에서 또는 다른 중한 범죄를 감출 목적에서 또는 잔인하게 혹은 여러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거나 부양간호해야 할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사람을 죽인 행위가 가벼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2조 피해자의 폭행 또는 심한 모욕때문에 일어난 발작적 격분상태에서 사람을 죽인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3조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거나 직무집행상 필요한 정도를 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4조 사람을 과실로 죽인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5조 사람의 생명에 위협할 정도의 상해를 입혔거나 눈, 귀 그 밖의 기능을 잃게 하였거나 얼굴에 흉한 허물을 남기는 상처를 입혔거나 또는 정신병을 일으키게 하였거나 로동능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증상을 입힌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피해자가 죽었거나 잔악한 방법으로 중상을 입힌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6조 피해자의 폭행 또는 심한 모욕때문에 일어난 발작적 격분상태에서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7조 과실로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8조 사람의 건강에 해를 주는 경상을 입힌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앞항의 행위를 하였거나 잔악한 방법으로 경상을 입힌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9조 사람을 때리는 것과 같은 폭행을 한 자는 6개월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잔악한 방법으로 앞항의 행위를 하였거나 여러번 또는 여럿이 공모하여 폭행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0조 리기적 목적 또는 복수적 동기에서 어린이를 훔쳤거나 감춘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1조 비법적으로 사람의 자유를 구속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2조 사람을 모욕하였거나 그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3조 폭행, 협박하는 방법으로 또는 구원을 받지 못할 상태를 리용하여 여성을 강간한 자, 15살에 이르지 못한 여성과 성교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 여성에 대하여 하였거나 륫간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4조 직무상 또는 의무실행상 복종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강요하여 성

교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 녀성에 대하여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피해자를 타락 또는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절 공민의 개인소유를 침해하는 범죄

제155조 공민의 재산을 훔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 또는 여럿이 공모하여 공민의 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6조 공민의 재산을 빼앗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 또는 여러번 혹은 여럿이 공모하여 공민의 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7조 공민의 재산을 속여먹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8조 공민의 재산을 횡령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9조 공민의 재산을 특히 대량 략취한 자 또는 재산략취행위를 하여 여러번 법적 처벌을 받은 자로서 공민의 재산을 대량 략취한 경우에는 6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60조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험을 주는 폭행, 협박을 하여 공민의 재산을 강도한 자는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여럿이 공모하여 혹은 무기, 흉기를 리용하여 앞항의 행위를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피해자를 죽게 하였거나 중상을 입힌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61조 공민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1992. 1. 1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호로 채택)

### 제 1 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제 2 조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활동에서 로동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군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한다.

제 3 조 국가는 반국가범죄와의 투쟁에서 적아를 엄격히 가려내어 극소수의 적대분자와 주동분자를 철저히 진압하고 다수의 피동분자를 포섭하며 일반범죄와의 투쟁에서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 제재를 옹계 배합한다.

제 4 조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활동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한다.

제 5 조 국가는 공민들 속에서 준법교양과 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범죄를 미리 막는다.

제 6 조 국가는 형사사건을 취급처리하는 데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한다.

### 제 2 장 일반규정

제 7 조 수사, 예심, 검찰, 재판기관들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취급과 처리는 이 법에 규정된 원칙과 방법, 절차에 따라 한다.

제 8 조 수사는 사회안전, 국가보위기관의 수사일군이 한다.

검사는 필요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다.

제9조 예심은 사회안전, 검찰, 국가보위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제10조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는 검사만이 한다.

제11조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나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류할 수 없다.

사람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48시간 안으로 그의 가족 또는 소속단체에 체포일자, 이유 같은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검사는 비법적으로 체포구류되어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를 놓아주어야 한다.

제12조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한 뒤에 그것이 나타났을 때에는 형사사건을 기각한다.

1. 14살에 이르지 못한 자의 행위인 때
2. 피심자, 피소자의 행위가 죄로 되지 않을 때 또는 죄로는 되나 형사책임을 추궁할 정도에 이르지 못할 때
3.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지났을 때
4. 특사, 대사로 형벌이 면제되었을 때
5. 확정된 판결, 판정이 있는 행위인 때
6. 형사책임을 추궁받아야 할 자가 죽었을 때

제13조 피심자, 피소자를 사회적 교양을 통하여 개조할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형벌을 주지 않고 사회적 교양에 넘길 수 있다.

사회적 교양에 넘긴 자가 형법에 규정된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기간에 새로운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에게 적용하였던 교양처분을 취소하고 형벌을 줄 수 있다.

제14조 사건의 조사심리는 조선말로 한다.

조선말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통역을 붙인다.

다른 나라 사람은 사건과 관련한 문서를 자기나라 글로 써낼수 있다.  
제15조 재판은 각급 재판소가 하며 형벌의 적용은 재판소의 판결로 한다.

제16조 모든 재판은 공개한다.

국가 또는 개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이 미칠수 있을 때에는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재판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도 판결의 선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는 피심자,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제18조 형사재판 이외의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은 형사재판에서도 그대  
로 인정된다. 그러나 그 사실이 죄로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것은 형사  
재판에서 심리확정되어야 한다.

제19조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것을 보  
상할 책임이 있는자를 상대로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에 손해보  
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보상청구는 범죄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한 때부터 재판심리를 하  
기전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손해보상청구에는 국가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에 손해보상을 청구하지 못한 피해자는  
따로 손해보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는 국가, 사회 또는 공민의 이익을 위하여 재판소에 손해보상청구  
를 직접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 손해보상청구는 해당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에서 함께 심  
리한다. 그러나 그것이 형사사건심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따로 손  
해보상청구를 심리하는 재판절차로 해결할 수 있다.

손해보상청구의 기각은 재판에서만 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 손해보상청구가 기각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이미 손해보상청구를 심리한 재판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에도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에 다시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제21조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은 자신과 친척이 해당 형사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사건을 취급처리하는데 참가할 수 없다.

제22조 서로 친척이 되는 판사, 인민참심원은 한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 수 없다.

제23조 제1심재판에 참가하였던 판사, 인민참심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제1심 또는 제2심재판소의 성원으로 될 수 없다.

제24조 이 법 제93조의 요구를 어기여 사건을 과장, 날조한 것이 재판소가 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낸 판정의 근거로 된 때 이미 그 사건을 예심하였던 예심원은 다시 예심할 수 없다.

제25조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는 자기가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증인,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으로 될 수 없다.

제26조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변호인, 증인,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은 해당 사건의 조사심리에서 서로의 임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증인은 손해보상청구자로 될 수 있다.

제27조 소송관계자는 이 법 제21~26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소 또는 검사에게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재판서기, 수사일군, 예심원,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을 바꾸어줄데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재판서기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은 재판에서 사실심리를 시작하기전에 하여야 한다. 사실심리가 시작된 다음에 그들을 바꾸어야 할 사유가 생겼거나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사실심리가 시작된 다음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 재판에 참가한 검사,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을 바꾸어 줄 데 대한 신청은 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가 관정으로 해결한다.

판사, 인민참심원을 바꾸어줄 데 대한 신청은 바꿀 대상으로 지적된 판사 또는 인민참심원을 내놓고 그 밖의 재판소성원들이 관정으로 해결한다. 이 경우 재판소성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에는 바꾸어야 한다.

제30조 검사는 수사일군, 예심원,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을 바꾸어줄 데 대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3일 안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검사의 해결이 있을 때까지 수사, 예심은 계속하여야 한다.

제31조 형사사건의 취급처리기간은 시간, 날, 달, 해로 계산한다.

기간은 그것을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다음 날 또는 다음 시간부터 계산한다.

날로 정한 기간은 마지막 날 24시로 끝난다.

달로 정한 기간은 마지막 달 가운데서 그 기간을 계산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과 같은 날이 지나면 끝난다. 마지막 달 가운데서 그 기간을 계산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과 같은 날이 없을 때에는 그 달의 마지막 날이 지나면 끝난다.

기간이 끝나는 날이 국가적 명절일이거나 일요일인 때에는 그 다음 첫 로동일이 지나면 기간이 끝난다.

제32조 상소장, 항의서 그 밖의 문서를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냈을 때에는 그 기간 안에 낸 것으로 인정한다.

이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을 취급처리하는 기관이 그 기간을 늘여줄 수 있다.

제33조 증인,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은 형사사건을 조사해명하는 데 동원된 기간의 생활비 또는 로력보수와 려비를 자기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받으며 기관, 기업소, 단체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그를

부른 기관에서 러비를 받는다.

제34조 수사, 예심, 재판준비, 재판에서는 진술서, 조서, 결정서, 판결서, 판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수사, 예심에서 만든 진술서, 조서와 그것을 고친 데는 작성자의 도장과 진술자의 지장 또는 도장을 찍으며 결정서에는 작성자가 도장을 찍는다.

재판준비조서와 재판조서에는 재판서기와 재판장이 도장을 찍으며 고친 데는 작성자가 도장을 찍는다.

판결서, 판정서에는 판사와 인민참심원이 도장을 찍는다.

사건조사에 립회인이 참가하였을 때에는 조서에 립회인도 도장을 찍는다.

담보처분한 재산, 압수품, 몰수품, 증거물에 대한 조서에는 품명, 형태, 품질, 규격, 수량, 소유관계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작성자, 소유자, 립회인이 도장을 찍는다.

### 제 3 장 증 거

제35조 형사사건의 취급처리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36조 범죄의 표징을 이루는 사실들과 형벌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 같은 것은 반드시 증거로 확정하여야 한다.

제37조 증거는 증인의 말, 감정결과, 검증결과, 증거물, 증거문서, 피소자의 말 같은 데서 얻어낸 것이어야 한다.

제38조 증거물로는 범죄행위를 감행하는 데 썼거나 범죄의 흔적이 있는 물건, 범죄행위의 대상으로 된 물건, 범죄와 범죄자를 적발하며 범죄사

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 물건이 될 수 있다.

**제39조** 증거문서로는 수사, 예심기관과 재판소가 만든 각종 조서, 진술서 같은 소송서류를 비롯하여 그 내용이 증거적 의의를 가지는 문서가 될 수 있다.

**제40조**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법이 정한 데 따라 제한을 받음이 없이 필요한 모든 증거를 찾아낼 수 있으며 그것을 리용할 수 있다.

**제41조** 증거는 군중의 힘에 의거하며 과학적 방법에 기초하여 찾아내야 한다.

**제42조** 범죄현장 또는 증거물을 발견하였거나 증거로 되는 사실을 안 사람은 그에 대하여 사회안전, 검찰, 국가보위기관에 곧 알리고 범죄현장상태가 달라지거나 증거물이 못쓰게 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여야 한다.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 재판소가 진술을 요구하거나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물건, 문서를 요구할 때에는 누구나 그에 응하여야 한다.

**제43조** 찾아낸 증거는 조서, 진술서 같은 것을 만드는 방법으로 고착시켜야 한다.

필요한 때에는 사진을 찍거나 도면을 그리거나 녹음, 록화할 수 있다.

**제44조** 증거는 객관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어야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제45조**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법이 규정한 데 의하여 수집되고 조사검토된 증거들을 자기의 확신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연관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46조** 증거물은 그것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얻어냈는가를 밝힌 조서와 증거물첨부결정서를 붙여 사건기록과 함께 그 사건을 조사심리하는 기관이 보관한다.

사건을 조사심리하는 기관이 보관할 수 없는 증거물은 봉인하여 관계

자에게 보관시키고 보관증을 받아 사건기록에 붙여야 한다.

제47조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 예심원, 검사, 재판소에 보낼 때에는 증거물을 사건기록과 함께 넘겨주어야 한다.

제48조 썩거나 못쓰게 될 수 있는 증거물은 수사, 예심기관의 결정으로 임자에게 돌려주거나 해당 기관에 넘겨줄 수 있다.

수사, 예심기관이 증거물을 돌려주거나 넘겨줄 때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근거문건을 검증조서 같은 것과 함께 사건기록에 붙여야 한다.

제49조 판결, 판정, 사건기각결정 같은 것을 할 때에는 증거물의 처리에 대하여 밝혀야 한다.

## 제 4 장 수사와 예심

### 제 1 절 수 사

제50조 형사사건취급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때로부터 시작된다.

수사를 할 필요가 없는 형사사건취급은 사건을 예심에 넘기는 결정을 하거나 예심시작결정을 한 때로부터 시작된다.

제51조 수사시작결정은 수사일군이 한다.

제52조 수사시작결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고 또는 직접 얻은 범죄자료에 기초하여 한다.

제53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범죄행위가 준비되고 있거나 수행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곧 사회안전, 검찰, 국가보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 범죄에 대한 신고는 써내거나 말로 할 수 있다.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주소와 이름을 밝혀야 한다.

신고를 받는 기관은 신고자에게 거짓신고를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고를 받을 때에는 신고조서를 만들어야 하며 조서에는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신고자에게 거짓신고에 대한 책임을 알려준 정형 같은 것을 적어야 한다.

**제55조** 사회안전, 검찰, 국가보위기관은 범죄에 대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관할에 관계없이 다 받아야 하며 받은 신고 가운데서 자기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은 곧 해당 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56조** 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기관은 1개월 안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고자는 신고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 해당 상급기관에 다시 신고할 수 있다.

**제57조** 수사일군은 수사를 하여야 할 범죄가 있다는 자료를 얻었을 때에는 곧 그 근거를 밝힌 수사시작결정을 하고 수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58조** 수사일군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때로부터 24시간 안으로 결정서 등본을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검사는 결정으로 수사시작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9조** 수사는 법에 따라 범죄자를 적발하여 예심에 넘기는 것을 임무로 한다.

**제60조** 수사일군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으로부터 범죄자를 적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진술을 받을 수 있다.

수사일군은 진술자에게 거짓진술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61조** 수사일군은 범죄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검증, 검진, 수색, 압수를 할 수 있으며 감정을 맡길 수 있다.

**제62조** 수사일군은 범죄자를 적발한 다음에는 증거수집활동을 할 수 없

다. 그러나 때를 놓치면 범죄의 흔적이 없어지거나 증거를 얻을 수 없거나 고착시킬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이 증거수집을 뒤로 미룰 수 없는 경우에는 수집할 수 있다.

**제63조** 수사일군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다음 그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때에는 검사에게 알리고 사건을 넘기는 결정을 하여 해당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

**제64조** 수사일군은 자기의 관할지역 밖에서 개별적인 수사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관할지역의 수사일군에게 맡길 수 있다.

개별적인 수사행위를 맡은 수사일군은 수사를 정확히 하고 그 결과를 곧 회보하여야 한다.

**제65조** 다음과 같은 때에는 검사의 승인없이 범죄자 또는 범죄혐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1. 범죄자가 범죄행위에 착수하였거나 범죄를 감행하다가 또는 감행한 즉시에 발견되었을 때
2. 피해자 또는 범죄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 범죄혐의자를 범죄자라고 가리켰을 때
3. 범죄혐의자의 몸 또는 거처에서 범죄의 흔적이 나타났을 때
4. 범죄혐의자가 도망치려 하거나 범죄자로서 뒤쫓기우고 있을 때
5. 범죄혐의자의 사는 곳이 딱딱하지 않을 때

**제66조** 이 법 제65조에 따라 체포한 범죄자 또는 범죄혐의자를 구금하려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안으로 구금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는 체포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조사하여 예심에 넘겨야 한다.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체포한 날부터 10일 안에 범죄자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내놓아야 한다.

**제67조** 수사일군은 범죄자가 적발, 확인되면 곧 그 사건을 예심에 넘기는

결정을 하고 예심에 넘겨야 한다.

제68조 수사일군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다음 이 법 제12조에 규정된 사유가 나타났을 때에는 수사시작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69조 수사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한다.

검사는 수사행위에 참가하거나 사건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위법적인 수사행위를 바로잡거나 수사일군에게 필요한 수사행위를 할 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 제 2 절 예심의 임무와 관할

제70조 예심은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피심자를 확정하고 그의 범죄사실을 남김없이 밝히며 련루자를 적발하는 것을 비롯하여 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을 임무로 한다.

제71조 예심원은 현실적으로 나타난 행동과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피심자가 범한 죄의 성격, 죄를 저지른 동기와 목적,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행위의 정도와 결과, 피심자가 범죄수행에서 논 역할과 책임의 정도 같은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정들을 사실 그대로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

제72조 예심원은 사건의 전모와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정들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피심자, 증인, 감정인을 심문하며 감정을 맡기거나 검증, 검진, 수색, 압수를 할 수 있다.

제73조 예심원은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안으로 끝내야 한다.

예심을 더하기 위하여 재판소에서 돌려보낸 사건에 대한 예심은 1개월 안으로 끝내야 한다.

제1항의 기간에 예심을 끝낼 수 없는 특별히 복잡한 사건에 대한 예



심은 이 법 제108조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까지 할 수 있다.

제74조 예심원은 자기 관할지역 안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을 예심한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 밑에 해당 관할예심원에게 알리고 범죄자가 사는 곳 또는 사건을 적발한 지역의 해당 관할예심원이 예심할 수 있다.

반국가범죄사건은 국가보위기관 예심원이 예심하며 일반범죄사건은 그것을 적발한 사회안전기관 또는 검찰기관 예심원이 예심한다.

군사상 범죄사건과 군대 안의 일반범죄사건은 군사검찰기관 예심원이 예심하며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범한 범죄사건과 철도운수사업의 정상적 활동을 침해하는 범죄사건은 그것을 적발한 철도안전부, 철도검찰소 예심원이 예심한다.

제75조 예심원은 사건이 자기 관할에 속하지 않을 때에는 긴급한 예심행위만을 한 다음 검사의 승인을 받아 사건을 넘기는 결정을 하고 해당 관할 예심원에게 보내야 한다.

제76조 예심원은 자기의 관할지역 밖에서 개별적인 예심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관할지역의 예심원에게 맡길 수 있다.

개별적인 예심행위를 맡은 예심원은 예심을 정확히 하고 그 결과를 10일 안으로 회보하여야 한다.

제77조 여러 사람이 함께 죄를 범하였거나 혼자서 여러 가지 죄를 범한 사건으로서 그것이 서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여야 할 사건이 따로 제기되었을 때에는 사건을 병합하는 결정을 하고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죄를 범한 사건이라도 사건을 분리하는 결정을 하고 따로 갈라서 취급할 수 있다.

사건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때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8조 예심자료는 예심원의 승인없이 공개할 수 없다.

제79조 예심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한다.

검사는 예심행위에 참가하거나 예심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위법적인 예심행위를 바로잡거나 예심원에게 필요한 예심행위를 할 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 제 3 절 예심의 시작과 형사책임추궁

제80조 예심원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으면 48시간 안으로 예심시작결정을 하고 예심을 시작하여야 한다.

예심원은 예심과정에 그 사건과 관련이 없는 범죄와 범죄자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검사에게 알리고 예심시작결정을 하거나 해당 수사기관에 자료를 넘겨주어야 한다.

제81조 예심원은 증거를 찾아내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피심자를 확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를 얻었을 때에는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82조 형사책임추궁결정서에는 예심원의 이름, 결정하는 날자, 피심자의 이름, 적용한 형법조항,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되는 리유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83조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였을 때 그것을 48시간 안으로 피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피심자에게 알려줄 때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며 그 정형을 형사책임추궁결정서에 밝혀야 한다.

제84조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다음 결정서등본을 곧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제85조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다음에 이미 적용한 형법조항을 바꾸거나 보충할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 4 절 피심자심문

제86조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형사책임추궁결정을 알려준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그를 심문하여야 한다.

제87조 구류되어 있지 않는 피심자를 불러 심문하려 할 때에는 그에게 소환장을 보낸다.

피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오지 않을 때에는 구인한다.

구인은 구인결정서에 따라 사회안전, 국가보위기관이 집행한다.

제88조 구류되어 있는 피심자를 심문할 때에는 예심원의 요구에 따라 계호일군이 그를 예심장소까지 호송한다.

제89조 예심원은 피심자가 도망쳤거나 사는 곳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수색결정을 한다.

수색결정서에는 피심자를 찾아내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적어야 하며 그 결정서를 검사의 승인을 받은 구류의 구속처분결정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90조 예심원은 피심자가 중병에 있거나 일시적으로 정신이상이 생겨 예심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예심을 중지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대책을 세워야 한다.

앞항의 경우 범의감정의사의 감정 또는 인민병원의 의사협의감정이 있어야 한다.

제91조 예심을 중지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예심을 계속하는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하여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92조 피심자가 정신병상태에서 죄로 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죄를 범한 뒤에 정신이상인 것이 생긴 것이 확증되었으며 앞으로도 그의 정신상태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건을 기각하며 검사는 의료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

앞항의 경우 법의감정의사의 감정이 있어야 한다.

제93조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범죄사실을 시인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받은 피심자의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

제94조 예심원은 피심자가 자백하였거나 고백한 경우에도 자백이나 고백과 결부되는 다른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피심자의 자백이나 고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그의 죄행이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다.

피심자가 자기의 죄행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것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때에는 피심자의 죄행이 증명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95조 예심원은 피심자가 여럿인 때에는 서로 련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피심자가 없는 데서 피심자심문을 하여야 한다.

범죄사건을 밝히는 데 필요할 때에는 피심자와 피심자, 피심자와 증인을 서로 대면시켜 놓고 심문할 수 있다.

제96조 피심자를 심문할 때에는 피심자가 먼저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말하게 하여야 한다.

제97조 조선말을 모르는 사람을 심문할 때에는 통역을 붙여야 하며 병어리, 귀머거리를 심문할 때에는 그의 의사표시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야 한다.

예심원은 통역원과 해석인에게 통역 또는 해석을 의식적으로 그릇되게 할 때에는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통역원 또는 해석인이 심문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서에 밝혀야 한다.

제98조 피심자를 심문하였을 때에는 심문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심문조서에는 범죄와 관련하여 피심자가 말한 것을 그대로 적어야 하며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피심자가 말한 것을 조서에 자기가 직접 쓰게 할 수 있다.

제99조 예심원은 피심자에 대한 심문이 끝나면 그에게 조서를 읽어보게 하거나 읽어준 다음 피심자에게 그가 말한 것이 조서에 옳게 씌여졌는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조서를 고칠 데 대한 피심자의 신청이 있을 때 그것이 정당하면 고쳐 주며 부당할 때에는 거부하고 그에 대하여 조서에 밝혀야 한다.

## 제 5 절 구속처분

제100조 예심원은 피심자가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거나 사건조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구속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1조 구속처분을 할 때에는 피심자에게 적용한 형법조항과 구속처분을 하는 이유를 밝힌 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102조 구속처분결정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검사는 예심원에게 구속처분결정을 하거나 취소하거나 고칠 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제103조 구속처분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피심자에게 곧 알려주어야 한다.

제104조 구속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피심자를 구류하는 구속처분
2. 피심자를 자기 집에 억류하는 구속처분
3. 피심자를 정해진 지역 또는 사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구속

## 처분

제105조 구속처분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다음에 하여야 한다.

제106조 구류의 구속처분은 1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피심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조사를 방해하거나 예심 또는 재판에 회피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할 수 있다.

임신한 피심자에 대하여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기간에 구류의 구속처분을 할 수 없다.

제107조 구류의 구속처분결정에 따라 피심자를 체포할 때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은 구류의 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피심자를 구류할 기관에는 결정서등본을 보내야 한다.

제108조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다.

예심을 2개월 안에 끝낼 수 없을 때에는 시(구역), 군 예심기관과 도(직할시)예심기관은 도(직할시)검찰소 소장, 중앙예심기관은 중앙검찰소의 승인을 받아 구류기간을 1개월간 늘일 수 있다.

구류기간을 더 늘이려 할 때에는 중앙검찰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2개월간 다시 늘일 수 있다.

구류기간에 예심을 끝내지 못하였을 때에는 피심자를 내놓고 예심을 계속할 수 있다.

제109조 피심자를 자기 집에 억류하는 구속처분을 할 때에는 2명 이상의 보증인을 세워야 하며 보증인으로부터 피심자를 언제든지 예심원 또는 재판소의 요구대로 보내겠다는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제110조 피심자를 정해진 지역 또는 사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구속처분을 할 때에는 피심자로부터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11조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예심과정에 언제든지 이유를 밝힌 결정으로 구속처분을 해제하거나 그 종류를 바꿀 수 있다.

## 제 6 절 검증과 검진

제112조 수사일군, 예심원은 범죄현장을 조사하고 증거를 찾아내며 증거물의 특징을 고착시키기 위하여 범죄현장 또는 증거물을 검증하며 사람의 몸에서 사건과 관련된 흔적과 특징을 찾아내기 위하여 검진을 한다.

검사와 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검증과 검진을 할 수 있다.

제113조 범죄현장에서 찾아냈거나 압수한 물건과 문서는 현장에서 검증한다.

검증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곳에 옮겨 검증할 수 있다.

제114조 검증과 검진을 할 때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워야 하며 여성을 검진할 때에는 여성을 립회시켜야 한다.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검증에 감정인을 참가시킬 수 있으며 법의감정 의사에게 검진을 시킬 수 있다.

제115조 검증과 검진을 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서에는 검증, 검진한 차례로 그 당시의 상태와 특징, 검증과 검진 결과를 써야 하며 락도와 사진을 붙일 수 있다.

법의감정 의사가 검진하였을 때에는 그가 검진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116조 수사일군, 예심원은 장소나 물체의 상태와 특징 같은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심리실험을 할 수 있다.

심리실험을 할 때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워야 하며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 제 7 절 감 정

제117조 수사일군, 예심원은 사건조사에 전문지식이 필요할 때에는 감정

을 맡겨야 한다.

검사와 재판소도 감정을 맡길 수 있다.

제118조 비정상적인 주검, 몸에 입은 상해정도와 정신병의 증상이 있는  
증인, 범죄자의 정신상태는 반드시 감정하여야 한다.

제119조 감정은 국가의 전문적인 감정기관에 맡겨야 한다.

해당 부문의 전문감정기관이 없을 때에는 그 부문의 국가적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감정시킬 수 있다.

제120조 감정을 맡길 때에는 감정할 것들과 감정인의 의무를 밝힌 결정, 판정을 하여야 하며 결정서, 판정서를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121조 감정을 맡길 때에는 감정인에게 감정하여야 할 것으로 자료와 함께 알려주며 감정하는데 필요한 것을 그가 알아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22조 감정을 맡은 기관 또는 감정인은 의무적으로 감정하여야 하며 감정을 맡긴 기관이 부를 때에는 제때에 와야 한다.

제123조 감정인은 감정이 끝나면 감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감정서에는 감정에서 밝혀낸 사실을 그대로 써야 한다.

같은 문제에 대한 여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때에는 감정서를 개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124조 감정인은 감정을 맡긴 기관의 승인 밑에 기록상 자료를 보거나 증인 또는 범죄자에게 물어볼 수 있으며 감정을 맡긴 기관에 감정에 도움이 될 자료를 요구하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전문일군을 붙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5조 감정자료가 정확하지 못하거나 감정에서 사실이 잘 밝혀지지 못하였을 때 또는 감정결과에 의문이 생길 때에는 이유를 밝힌 결정, 판정으로 그 감정인에게 다시 감정시키거나 다른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길 수 있다.



제126조 감정을 말기는 기관은 감정을 누구에게 말긴다는 것을 피심자, 피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27조 감정을 말긴 기관은 감정에서 명백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감정인을 심문할 수 있다.

감정인을 심문할 때의 절차는 이 법 제98-99조, 제148조에 따른다.

제128조 한 사건의 감정에 여러 감정인이 참가한 경우 그들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때에는 그들이 모두 자기의 의견을 말하게 한 다음 개별적으로 심문하거나 서로 대면시켜 놓고 심문할 수 있다.

## 제 8 절 수색과 압수

제129조 수사일군, 예심원은 범죄자를 찾아내며 범죄사실을 밝히는 데 필요한 물건이나 문서를 찾아내고 고착시키기 위하여 수색, 압수를 할 수 있다.

제130조 수색은 범죄자가 숨어있거나 범죄사실을 밝히는 데 필요한 물건, 문서가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다.

제131조 수색, 압수는 검사의 승인 밑에 한다.

수사일군, 예심원이 수색, 압수하려 할 때에는 수색, 압수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 제65조에 따라 범죄자 또는 범죄혐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검사의 승인없이 그의 몸 또는 거처를 수색하고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다.

제132조 수색, 압수를 할 때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은 수색, 압수결정서를 수색, 압수당하는 사람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33조 수색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안전원 그 밖의 경비원으로 수색장소에 경비를 세울 수 있다.

제134조 수색, 압수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낮에 하여야 한다.

제135조 수색, 압수를 할 때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물건 또는 문서를 압수할 때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를 립회시켜야 한다.

체신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편지, 전보 같은 것을 압수하려 할 때에는 해당 체신기관의 대표자를 립회시켜야 한다.

녀성의 몸을 수색할 때에는 녀성을 립회시켜야 한다.

제136조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외교대표부, 령사대표부, 무역대표부의 건물 또는 살림집을 범죄 및 범죄자의 적발과 관련하여 수색하거나 물건, 문서 같은 것을 압수하려 할 때에는 우리나라 외교부를 통하여 외교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색, 압수를 할 때에는 검사가 참가하며 해당 대표부의 대표자와 우리나라 대외사업일군을 립회시켜야 한다.

제137조 수색하는 과정에 범죄사건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 비밀을 알았을 때에는 그것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8조 압수를 할 때에는 범죄사건과 관련이 있는 물건과 문서만을 압수하여야 한다.

물건 또는 문서를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품목록을 만들어 사건기록에 붙여야 하며 압수당한 사람에게는 압수품목록등본을 주어야 한다.

제139조 수색, 압수를 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서에는 수색, 압수를 한 결과와 함께 제기된 의견을 밝혀야 한다.

## 제 9 절 증인심문

제140조 증인으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듣거나 보고 느낀 것이 있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법 제25-26조에 규정된 사람과 정신병 그 밖의 신체상 결함으로

사건에 대하여 듣거나 본 사실을 옳게 이해할 수 없거나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인으로 될 수 없다.

제141조 증인심문은 증인이 있는 곳에 가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필요할 때에는 증인을 불러다 심문할 수 있다.

제142조 증인은 예심원이 부르면 제때에 와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오지 않을 때에는 그를 구인할 수 있다.

구인은 구인결정에 따라 사회안전, 국가보위기관이 집행한다.

검사와 재판소가 증인을 구인할 때에도 앞항을 적용한다.

제143조 증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여야 하며 물음에 대답하여야 한다.

제144조 증인은 심문을 받을 때 위협이나 강제로부터 보호되며 자기가 한 진술을 조서에 직접 쓰거나 수정 또는 첨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5조 조선말을 모르는 사람 또는 병어리, 귀머거리를 증인으로 심문할 때의 절차는 이 법 제97조에 따른다.

제146조 증인심문은 다른 증인이 없는 데서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예심원은 증인심문이 끝날 때까지 그 사건의 증인들이 서로 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필요할 때에는 증인을 대면시켜 놓고 심문할 수 있다.

제147조 14살에 이르지 못한 증인을 심문할 때에는 교원, 부모, 후견인 그 밖의 보호자들 가운데서 립회인을 세워야 한다.

제148조 증인을 심문할 때에는 먼저 증인의 신분, 피심자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인한 다음 심문하는 이유와 증인의 의무를 설명하여 주고 그에게 범죄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할 때에는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49조 증인을 심문할 때에는 증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먼저 말하게 하여야 한다.

증인을 심문할 때에는 이 법 제98-99조에 따라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150조 예심원은 사건해결과 관련된 사람 또는 물건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와 비슷한 여러 사람 또는 물건을 피심자 혹은 증인에게 보이고 갈라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2명의 립회인을 세워야 하며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 제 10 절 재산담보처분

제151조 예심원은 형법에 재산몰수형이 규정되어 있는 사건을 취급할 때에는 몰수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담보처분을 하여야 한다.

예심원은 범죄행위로 입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와 국민들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시켜주기 위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는 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처분을 할 수 있다.

제152조 예심원은 피심자의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손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53조 재산담보처분을 하려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밝힌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산담보처분을 할 때에는 그에 관한 결정서를 담보처분 당하는 사람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2명의 립회인을 세우고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만을 담보처분하여야 한다.

재산담보처분을 한 다음에는 재산담보처분조서와 2통의 재산목록을 만들어야 하며 재산목록 1통은 재산보관자에게 주어야 한다.

예심원은 재산보관자에게 담보처분한 재산을 정확히 보관할 데 대한 책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재산담보처분이 필요없게 되었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이 확증되는 경우

에는 그것을 해제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154조 재산담보처분결정에 근거하여 담보처분을 하려고 하였으나 재산이 없을 때에는 그 이유를 밝힌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155조 담보처분한 재산 가운데서 썩거나 못쓰게 될 수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는 해당 기관에 넘겨주고 그 이유를 밝힌 결정서와 근거문건을 사건기록에 붙여야 한다.

## 제 11 절 예심종결

제156조 예심원은 피심자를 재판에 넘길 만한 충분한 증거를 얻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심을 끝낸다는 것을 피심자에게 알려주고 그의 범죄와 관련되는 사건기록을 보여주어야 하며 신청할 것이 없는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피심자의 신청이 정당할 때에는 예심을 더하며 부당할 때에는 결정으로 그것을 거부하여야 한다.

피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예심을 더하였을 때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사건기록을 피심자에게 보여야 한다.

제157조 예심을 끝내는 수속은 검사의 참가 밑에 하여야 한다.

제158조 예심을 끝낼 때에는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159조 예심이 끝나면 예심원은 기소장을 만든다.

기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1. 피심자와 그가 죄를 범한 날자, 시간, 장소와 범죄의 동기, 목적, 수단, 방법, 결과 같은 예심에서 조사확증된 사실과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
2. 피심사의 형사책임을 확정하며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의의를 가질 수 있는 사정

### 3. 피심자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형법의 조항

기소장에는 피심자, 재판에 불려야 할 사람들의 이름, 사는 곳, 피심자를 구류한 날자, 증거물, 손해보상청구와 재산담보처분 정형을 밝힌 문건을 붙여야 한다.

제160조 예심원은 예심을 끝낸 날부터 3일 안으로 기소장을 사건기록과 함께 검사에게 넘겨야 한다.

제161조 예심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형사 사건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1. 이 법 제12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
2. 예심을 시작한 다음 6개월이 지나도록 피심자를 재판에 넘길 만한 충분한 증거를 얻지 못하였을 때

사건을 기각하는 결정은 피심자, 피해자,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사건을 기각할 때에는 구속처분, 재산담보처분에 관한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여야 하며 증거물 가운데서 임자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것은 몰수하고 그 밖의 물건은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62조 증인,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 립회인, 피해자, 피심자와 피심자의 보증인은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날로부터 7일 안으로 검사에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을 받은 검사는 3일 안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예심원은 제1항의 의견이 자기에게 제기되었을 때에는 48시간 안으로 의견을 붙여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심은 계속하여야 한다.

## 제 5 장 검사의 사건처리

제163조 예심원으로부터 기소장과 사건기록을 받은 검사는 10일 안으로

그것을 검토처리하여야 한다.

제164조 검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중심을 두고 기소장과 사건기록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건의 전모와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정들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졌으며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있는가
2. 예심과정에 이 법에 규정된 요구들이 지켜졌는가
3.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 형법조항이 옳게 적용되었는가
4. 기소장이 옳게 만들어졌는가

제165조 검사는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게 예심이 충분하고 옳게 진행되었을 때에는 피심자를 재판소에 기소한다.

피심자를 재판소에 기소할 데 대하여 결정한 검사는 기소장과 함께 사건기록을 재판소에 넘겨야 한다.

제166조 검사는 예심을 추가 또는 보충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서면으로 지적하여 예심원에게 돌려보낸다.

검사는 필요에 따라 기소장을 다시 만들거나 고칠 수 있다.

제1항에 의하여 예심을 추가 또는 보충한 기간은 이 법 제73조에 규정된 예심기간에 넣는다.

제167조 검사는 사건심리를 중지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소를 중지하여야 하며 사건을 기각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건을 기각하여야 한다.

사건을 기각할 때의 증거물처리절차는 이 법 제161조 제3항에 따른다.

제168조 검사는 이 법 제13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급검찰소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를 사회적 교양에 넘기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 6 장 변 호

제169조 피심자, 피소자는 형사책임추궁결정을 받은 때부터 언제든지 변

호인을 선정하여 그의 방조를 받을 수 있다.

제170조 변호사와 피심자, 피소자의 근친자, 소속단체 대표자는 변호인이 될 수 있다. 그 밖의 사람은 검사 또는 재판소의 승인을 받아 변호인으로 될 수 있다.

제171조 피심자가 변호인을 선정하였을 때 예심기관은 3일 안으로 피심자가 선정한 변호인에게 그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제172조 변호인이 선정됨이 없이 사건이 재판소에 기소되었을 때에는 재판소가 해당 변호사회에 의뢰하여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73조 변호인은 법에 따라 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고 피심자, 피소자의 권리가 정확히 보장되도록 한다.

제174조 변호인은 변호인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안 때부터 피심자, 피소자를 만나 담화할 수 있다.

예심기관 또는 재판소는 피심자, 피소자가 요구할 때에는 변호인과 만나게 해주어야 한다.

제175조 변호인은 예심이 끝난 다음 언제든지 사건기록을 볼 수 있다.

제176조 변호인은 피심자, 피소자를 변호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확인할 수 있다.

제177조 변호인은 피심자, 피소자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을 받은 검사는 3일 안으로 처리하고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 7 장 재 판

### 제 1 절 재판의 임무와 관할

제178조 재판은 법에 따라 재판소가 재판관계자들의 참가 밑에 형사사건



을 심리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범죄자와 범죄사실을 정확히 확정하고 그것을 법률적으로 옳게 분석평가한 데 기초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을 임무로 한다.

제179조 재판소는 균중을 각성시키며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현지재판을 조직진행한다. 이 경우에는 노동자, 농민의 대표가 범죄자의 죄행을 폭로규탄하게 할 수 있으며 피소자에 대한 교양에 책임이 있거나 범죄의 틈을 준 해당 관계자들을 참가시켜 교훈을 찾도록 할 수 있다.

제180조 인민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와 특별재판소 및 중앙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일반범죄사건을 재판한다.

제181조 도(직할시) 재판소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한다.

1. 반국가범죄
2. 형법의 조항에 사형 또는 15년까지의 노동교화형이 규정된 일반범죄  
도(직할시)재판소는 도(직할시) 안의 인민재판소의 재판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한다.

도(직할시)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도(직할시) 안의 인민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직접 재판하거나 다른 인민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

제182조 군사재판소는 다음의 사건을 재판한다.

1. 조선인민군 및 조선인민경비대 군인, 사회안전원이 범한 죄
2. 군사기관, 사회안전기관의 종업원이 범한 죄
3. 이 밖에 법에 따라 그 관할에 속하는 범죄

제183조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범한 죄와 철도운수사업의 정상적 활동을 침해한 범죄사건을 재판한다.

제184조 중앙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 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의 제1심재판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한다.

중앙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어떤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제1심사건

이든지 직접 재판하거나 같은 급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

제185조 재판소는 관할지역 안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을 재판한다.

사건심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자가 사는 곳, 적발된 곳을 관할하는 재판소에서도 재판할 수 있다.

제186조 사건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같은 급의 여러 재판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그 사건을 먼저 심리하기 시작한 재판소에서 재판한다.

제187조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가지 죄를 범한 피소자 또는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명의 피소자를 함께 재판하게 되는 경우 그 가운데서 일부가 상급재판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상급재판소에서 재판하며 일부가 특별재판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특별재판소에서 재판한다.

군사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 사건일 때에는 군사재판소 이외의 재판소에서도 재판할 수 있다.

제188조 다른 재판소에서 넘겨받은 사건은 다시 다른 재판소에 넘겨줄 수 없다.

넘겨받은 사건이 다른 급 또는 다른 종류의 재판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상급재판소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재판소에 그것을 넘겨주어야 한다.

제189조 재판소는 사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 제 2 절 재판준비

제190조 기소된 사건은 재판준비회의를 거쳐 재판에 넘긴다.

제191조 재판준비회의는 판사인 재판장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재판준비회의에는 재판서기가 참가한다.

제192조 재판준비회의에는 검사가 참가한다. 재판준비회의날자를 3일 전에 검사에게 알린다. 검사가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판준비회의를 할 수 있다.

제193조 재판준비회의에서는 판사가 사건보고를 한 다음 검사의 의견을 듣고 해당한 판정을 한다.

판정은 재판소성원들이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채택한다.

제194조 재판준비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예심에서의 사건조사가 충분히 되었는가
2. 기소사실이 근거가 있는가
3. 형법조항이 옳게 적용되었는가
4. 예심에서 이 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를 지켰는가
5. 피심자의 신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6. 피심자에 대한 구속처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195조 재판준비회의에서는 사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예심이 충분하며 재판에 넘길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심자를 재판에 넘기는 판정을 한다.
2. 예심에서의 사건조사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기소장에 본질적 의의를 가지는 잘못이 있을 때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판정을 한다.
3. 기소된 범죄사실자체에는 다름이 없으나 법조항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판정으로 그것을 고친다.
4. 사건을 기각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각하는 판정을 한다.

제196조 재판준비회의에서 피심자를 재판에 넘기는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할 날자, 장소, 재판심리에 참가시킬 증인, 감정인과 재판심리를 공개 또는 비공개하겠는가를 정하여야 한다.

제197조 재판준비회의에서 내린 판정에 대하여서는 검사만이 상급재판소

에 항의할 수 있다.

검사는 판정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재판에 넘기는 판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3일 안으로, 그 밖의 사건에 대하여서는 10일 안으로 항의서를 재판소에 내야 한다.

재판소는 검사가 항의하기 위하여 요구할 때에는 판정서등본을 판정을 내린 날부터 2일 안으로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제198조** 재판소는 피소자에게 재판심리를 하기 3일 전에 기소장등본을 보내야 한다.

재판준비회의에서 기소된 범조항을 고치는 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피소자와 변호인에게 재판심리를 하기 3일 전에 판정서등본을 보내야 한다.

**제199조** 재판소는 재판심리를 하기 3일 전에 검사, 피소자, 변호인에게 재판심리날자를 알려야 한다.

**제200조** 사건이 재판소에 기소된 다음에 그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문제는 재판소만이 해결한다.

재판심리가 있기 전에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신청과 의견은 사건을 받은 판사가 혼자서 판정으로 해결한다.

**제201조** 판사는 현지재판의 교양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료해를 할 수 있다.

증인, 감정인을 대상으로 현지료해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와 함께 만나야 한다. 검사의 동의 밑에 판사 혼자서도 만날 수 있다.

### 제 3 절 재판심리

**제202조** 재판심리는 재판장인 판사와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재판심리에는 재판서기가 참가한다.

제203조 한 사건은 같은 재판소성원으로 재판한다.

재판심리를 하다가 재판소성원을 바꾸었을 때에는 재판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한다.

제204조 재판심리는 검사와 변호인의 참가 밑에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으로 검사가 참가하지 못하였을 때에도 재판심리를 할 수 있다.

제205조 재판심리에는 피소자를 참가시킨다.

피소자가 재판심리에 참가할 것을 거부하거나 재판을 회피할 때에는 피소자를 구인하여 재판한다. 피소자를 구인하는 절차는 이 법 제87조에 따른다.

제206조 손해보상청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보상청구를 심리하지 않는다.

손해보상청구를 심리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는 따로 손해보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207조 재판장은 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도록 재판심리와 재판관계자들의 활동을 지휘하며 그들이 재판질서를 철저히 지키도록 통제한다.

제208조 재판심리에서 검사는 피소자의 죄행을 철저히 폭로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며 그 죄행의 정도에 맞는 법적 책임이 피소자에게 지워지도록 한다.

제209조 재판심리에서 변호인은 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고 피소자의 행위가 옳게 분석평가되며 그의 법적 권리가 정확히 보장되도록 한다.

제210조 재판장은 재판시작을 알리고 피소자가 본인이 틀림없는가를 확인한 다음 그에게 기소장등본을 받았는가를 묻고 재판에서의 그의 권리를 알려준다.

제211조 재판장은 피소자와 재판관계자들에게 재판소성원과 검사, 재판

서기,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을 알려준 다음 그들을 바꿀 데 대한 의견이 없는가를 묻는다.

제212조 재판장은 재판심리에 부른 증인, 감정인 가운데서 오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피소자와 재판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으며 새 증거를 신청할 것이 없는가를 묻고 해당 판정을 한다.

제213조 사실심리는 재판서기가 기소장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재판장은 피소자에게 기소사실을 인정하는가를 묻는다.

제214조 재판소는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심리순서를 정한다.

제215조 피소자에 대한 심문은 피소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먼저 말하게 한 다음 검사, 손해보상청구자, 변호인, 재판장, 인민참심원의 차례로 한다.

여러 명의 피소자를 함께 재판할 때에는 변호인이 심문한 다음 그 사건의 다른 피소자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준다.

제216조 여러 명의 피소자를 함께 재판할 때 재판소는 사건의 성질을 고려하여 피소자들을 한 사람씩 재판정에 불러다 심문할 수 있다.

제217조 피소자가 재판장의 경고를 받고도 계속 재판질서를 문란시킬 때에는 재판소의 판정으로 피소자를 재판정에서 내보내고 심리를 계속한다. 이 때에는 사실심리를 끝낸 다음 피소자를 참가시킨다.

제218조 증인에 대한 심문은 순서에 따라 한 사람씩 재판정에 불러다 한다.

재판장은 먼저 증인이 본인이 틀림없는가, 피소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거짓말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준 다음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게 한다.

제219조 재판장은 증인의 말이 끝나면 그를 재판에서 심리할 것을 요구한 사람이 먼저 증인에게 질문하게 한다. 그 다음에 재판관계자들이 재판장의 승인을 받아 증인에게 물어볼 수 있다.

재판장은 피소자에게도 증인에게 물어볼 기회를 준다.

이미 심문한 증인을 다른 증인 앞에서 다시 심문하거나 증인들을 대면시켜 놓고 심문할 수 있다.

14살에 이르지 못한 증인을 심문할 때의 절차는 이 법 제147조에 따른다.

제220조 심문을 받은 증인은 그 사건의 심리가 끝나기 전에 재판소에서 떠날 수 없다.

재판장은 필요에 따라 재판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미 심문을 받은 증인을 그 사건심리가 끝나기 전에 보낼 수 있다.

제221조 재판심리에서는 필요한 경우 예심조서를 읽는 방법으로 증거를 검토할 수 있다.

제222조 재판심리에서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을 때에는 언제든지 증인심문을 그만둘 수 있다.

제223조 감정인은 처음부터 재판에 참가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감정시킴 때에만 참가시킬 수 있다.

제224조 재판심리에서 감정을 맡기거나 감정인을 심문할 때의 절차는 이 법 제120-121조, 제126-128조에 따른다.

재판심리에서 감정을 새로 시킨 경우에는 감정인에게 감정결과를 말하게 하며 감정서를 내게 한다.

제225조 재판소는 감정결과가 완전하지 못하거나 의문이 있을 때 또는 여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맞지 않을 때에는 다시 감정을 시킬 수 있다.

제226조 재판심리에서는 증거물과 증거문서들을 철저히 조사검토하여야 한다.

재판관계자들은 사실심리과정에 언제든지 증거물과 증거문서들을 조사검토할 수 있다.

제227조 재판소는 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재판관계자들의 참가 밑에 범죄현장을 검증하거나 현지에 나가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앞항의 검증 또는 증거자료의 확인은 재판소의 위임에 따라 재판장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서를 만들어야 하며 그것은 재판심리에서 검토되어야 판결, 판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제228조 재판소는 증거를 더 수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판심리를 미루고 재판관계자들의 참가 밑에 증거를 직접 수집할 수 있다. 재판소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낸다.

제229조 재판장은 기소된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을 때에는 증거심리를 끝내고 손해보상청구에 대한 심리를 한 다음 재판관계자들에게 심리할 것이 더 없는가를 묻고 사실심리를 끝마친다는 것을 알린다.

피소자에 대한 교양에 책임이 있거나 범죄의 틈을 준 해당 관계자가 재판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를 내세워 교훈을 찾게 한 다음 사실심리를 끝마친다는 것을 알린다.

제230조 사실심리가 끝나면 재판소는 검사, 손해보상청구자, 변호인의 순서로 론고와 변론을 하도록 한다.

재판심리에 노동자, 농민의 대표가 참가한 때에는 그가 먼저 피소자의 죄행을 폭로규탄하게 한다.

제231조 재판심리에서 검토되지 않은 증거는 론고 또는 변론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제232조 재판장은 검사, 손해보상청구자, 변호인이 보충적인 론고 또는 변론을 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그것을 허용할 수 있다.

제233조 재판장은 론고와 변론이 있는 다음 피소자에게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를 준다.



재판소는 사건해결에 본질적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사실이 피소자의 마지막 말에서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심리하기 위하여 재판심리를 다시 한다.

제234조 재판장은 피소자의 마지막 말이 끝나면 재판심리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고 인민참심원들과 함께 합의실에서 판결을 채택하기 위한 협의를 한다.

제235조 재판소는 피소자가 중병에 걸렸거나 정신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그의 병이 나을 때까지 사건심리를 중지한다.

피소자의 정신병이 나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건을 기각하며 의료처분을 적용할 데 대한 판정을 한다.

제236조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서를 만든다.

1. 재판날자, 장소
2. 재판소성원, 검사, 변호인, 재판서기의 이름
3. 사건명
4. 피소자의 이름, 신분관계
5. 손해보상청구자의 이름, 사는 곳
6. 재판진행순서에 따라 재판소가 한 모든 행위
7. 재판관계자들과 증인, 감정인들이 제기한 의견과 그들이 한 말
8. 재판심리과정에 재판소가 내린 판정들
9. 론고와 변론의 내용
10. 피소자가 한 마지막 말

제237조 재판조서는 재판이 끝난 날부터 3일 안으로 만들어야 한다.

재판관계자는 재판조서작성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5일 안으로 조서를 볼 수 있으며 조서에 빠진 것이 있거나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안으로 고칠 데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다.

재판장은 제기된 의견이 옳을 때에는 판정으로 조서를 고치며 부당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판정으로 거부한다.

#### 제 4 절 기소의 추가와 변경

제238조 재판소는 재판심리과정에 이미 기소된 범죄 밖에 새 범조항을 추가하여야 할 새로운 범죄사실이 피소자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거나 새 범조항을 추가는 하지 않으나 무거운 형벌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범죄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또는 기소된 범조항을 무거운 형벌을 줄 수 있는 범조항으로 고쳐야 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밝힌 판정으로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돌려보낸다.

제239조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기소된 범조항을 가벼운 형벌을 줄 수 있는 범조항으로 고쳐야 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계속 심리하여 판결할 수 있다.

제240조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기소된 범죄사실 자체에는 다름이 없으나 범조항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판정으로 고친다.

범조항을 고치는 것이 피소자에게 가벼운 형벌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계속 심리하여 판결하며 그것이 무거운 형벌을 줄 수 있는 것일 때에는 피소자와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심리를 10일까지 미루어준다.

제241조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피소자 아닌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처리에 대한 검사의 의견을 듣고 형사책임을 추궁할 데 대한 판정을 하여 검사에게 보낸다. 이 경우에 재판소는 구속처분판정을 할 수 있다.

#### 제 5 절 판 결

제242조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충분히 검토확인된 과학적인 증거에 기

초하여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졌을 때에는 법의 요구에 맞게 판결을 내린다.

제243조 판결을 채택할 때에는 해당 사건을 심리한 판사와 인민참심원만이 참가한다.

제244조 판결을 채택할 때에는 다음의 문제들을 심중히 토의결정하여야 한다.

1. 기소된 범죄행위 자체가 있었는가
2. 범죄행위를 그 피소자가 하였는가
3. 범죄행위가 범죄의 표징을 갖추고 있는가
4. 피소자에게 어떤 형벌을 어느 정도 줄 것인가
5. 제기된 손해보상청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6. 증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7. 구속처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8. 담보처분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제245조 판결은 재판소성원들이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채택한다.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판사 또는 인민참심원은 의견서를 낼 수 있다. 의견서는 판결을 내릴 때 읽지 않는다.

제246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

1. 피소자에게 형벌을 적용하는 판결
2. 피소자를 사회적 교양에 넘기는 판결
3. 피소자에게 대사를 적용하여 형벌을 면제하는 판결
4. 피소자에게 죄가 없다는 판결

사회적 교양에 넘기는 판결은 형법 제11조 제2항과 이 법 제13조의 사유가 있을 때 내리며 죄가 없다는 판결은 범죄사실자체가 없거나 피소자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 또는 피소자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을 때에 내린다.

제247조 재판소는 손해보상청구를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1. 손해보상청구가 정당할 때에는 손해를 보상시킨다.
2. 범죄사실자체가 없거나 피소자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보상청구를 기각한다.
3. 피소자의 행위가 죄로 되지 않을 때에는 손해보상청구를 해결하지 않는다. 이 경우 피해자는 따로 손해보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248조 판결, 판정을 내릴 때 증거물과 담보처분한 재산에 대한 처리는 이 법 제161조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다.

제249조 재판소는 판결서를 다음과 같이 만든다.

판결서의 첫 부분에는 재판날자와 재판소성원, 검사, 변호인, 재판서기의 이름, 사건명, 재판심리의 공개 또는 비공개 정형, 피소자의 이름과 신분관계, 손해보상청구자의 이름과 사는 곳, 범죄사실에 대한 재판소의 인정과 그에 대한 증거의 설명, 손해보상청구와 그에 대한 재판소의 인정, 그 밖에 사건의 성질에 따라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 문제들을 쓴다.

판결서의 다음 부분에는 피소자에게 죄가 있거나 없다는 것을 밝히며 그에게 적용하는 법조항과 형벌 또는 교양처분을 지적하고 손해보상청구, 증거물, 구속처분, 재산담보처분 같은 것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을 쓴다.

판결서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절차를 지적한다.

제250조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한다.

제251조 제1심 판결,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 피소자, 변호인, 손해보상청구자는 상급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으며 검사는 항의할 수 있다.

상소, 항의가 제기되면 그 판결, 판정은 집행되지 않는다.

제252조 상소, 항의를 하려 할 때에는 판결서 또는 판정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상소장, 항의서를 제1심재판소에 내야 한다.

판결서, 판정서의 등본은 판결, 판정을 내린 날부터 2일 안으로 검사, 피소자에게 준다.

제253조 시(구역), 군검찰소 검사는 해당 인민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도(직할시)검찰소 검사는 해당 도(직할시)재판소 및 인민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특별검찰소 검사는 해당 특별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중앙검찰소 검사는 각 도(직할시)재판소 및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다.

하급검찰소 검사의 항의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상급검찰소 검사는 그 항의를 취소할 수 있다.

제254조 제1심재판소는 상소, 항의기간이 지나면 받은 상소장, 항의서를 사건기록과 함께 해당 상급재판소에 올려보내야 한다.

제255조 중앙재판소의 제1심판결, 판정에 대하여서는 상소, 항의할 수 없으며 중앙재판소 판사회회에 비상상소만을 제기할 수 있다.

제256조 판결은 다음의 경우에 확정된다.

1. 상소, 항의가 없이 그 기간이 지났을 때
2. 상소, 항의가 있으나 제2심재판소에서 제1심판결을 지지하였을 때
3. 상소, 항의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을 때

판결의 일부에 대하여 상소, 항의가 있는 경우에 남은 부분은 상소, 항의기간이 지나면 확정된다.

제257조 구류되어 있는 피소자에게 죄가 없다는 판결,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유예를 하거나 사회적 교양에 넘기는 판결 또는 사건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린 경우에는 피소자를 곧 놓아주어야 한다.

제258조 로동교화형의 기간은 그 판결을 집행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로동교화형을 받은 피소자가 이미 구류되어 있었을 때에는 구류된 날부터 계산한다.

- 1970년대에 들어서는 산업용 원자재중 상품송장에 U로 표시된 품목보다 상품송장에 T로 표시된 국제현물거래시장에서 중개인을 통해 금방 상품화할 수 있는 물자 (Boersenwaren)의 비중이 커져 갔음.
- U로 표시되는 물자는 독일에서 제조·가공된 것으로서 동독으로 확실히 수송이 되나, T로 표시되는 물자는 외국산으로 연방경제성은 이 물자가 교회사업(A형·B형을 막론하고)인 만큼 외국에서 동독으로 수송되는 것에 대해 어떤 통제를 하지 못하고, 국제적으로 신용하는 회사를 통해 물자제공을 허가하기 때문에 이 물자가 동독에서 주민들을 위해 직접 소비되지 못하고 외국으로 얼마든지 재판매될 수 있었음.
- B 형 교회사업으로 제공되는 대표적인 물자는 원유, 산업용 다이아몬드, 구리, 은 등이었음.
  - 1979년 동독측이 U로 표시된 물품인 구리에 대해 산업기술상 가공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다른 T로 표시되는 품목으로 교체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는 이후, 80년대 말에는 B 형 교회사업 물품중 U로 표시된 물품은 은밖에 남지 않았음.
  - 이러한 B 형 교회사업 제공물자 품목의 변경은 “Koko”의 총책임인 Schalck 의 전략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동독의 외환확보를 위해 국제시장에서 재판매를 염두에 두고 이러한 품목선택이 이루어졌음.
  - 심지어 U로 표시된 물품마저도 창고에 보관되었다가 후에 외환을 확보하기 위해 재판매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U로 표시된 물품의 재판매는 수송 및 창고보관 비용이 많이 들었음.
  - T로 표시된 물품 중 국제현물시장에서 인기있는 물자와 원유는 이러한 수송 및 창고보관비용을 들이지 않고 더 신속하게 관계서류(청구서, 품질보증서, 선하증권, 보관증명서 등)의 인도로 외환과 직접 바꾸어졌음.

4. 법에 따라 기각하여야 할 사건을 기각하지 않았을 때

5. 변호인을 참가시키지 않았을 때

앞항의 경우에는 판결 가운데서 상소, 항의가 제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서도 제2심재판소에서 함께 취소할 수 있다.

제266조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가 관할을 어기어 채택한 판결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건을 해당 관할재판소에 보낸다.

제267조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에서 죄로 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죄로 된다고 판결하였을 때 또는 기각하여야 할 사건을 기각하지 않았을 때에는 판결을 취소하고 직접 그 사건을 기각한다.

제268조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가 인정한 사실과 맞지 않게 법을 적용하였거나 형벌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재판소에 돌려보낸다.

제269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2심재판소가 제1심재판소의 판결을 직접 고칠 수 있다.

1. 제1심재판소가 적용한 법조항보다 가벼운 형벌이 규정된 법조항으로 고치는 경우
2. 제1심재판소가 정한 형벌보다 가벼운 형벌로 고치는 경우
3. 제1심재판소에서 부가형벌 또는 대사를 적용하여야 할 것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잘못 적용하였을 경우

제270조 제2심재판소가 새로운 심리를 위하여 돌려보낸 사건을 받은 재판소는 제2심재판소의 판정에 따라야 한다.

제271조 피소자의 상소에 근거하여 판결이 취소된 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제1심재판소는 처음에 판결을 내린 재판소가 정하였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을 줄 수 없다.

제272조 제2심재판소는 판결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필요할 때에는 제1심재판의 부족점을 따로 판정으로 지적한다. 제1심재판소는

이 지적에 따라야 한다.

제273조 제2심재판소의 판정에 대하여서는 상소, 항의할 수 없다.

제274조 재판소는 판정서등본을 판정을 내린 날부터 2일 안으로 검사와 상소인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 제 9 장 비상상소와 재심

### 제 1 절 비상상소

제275조 확정된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어긋났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비상상소의 절차로 한다.

제276조 비상상소는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중앙재판소에 제기한다.

제277조 중앙재판소는 비상상소사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78조 비상상소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서 법을 본질적으로 어겼다는 것이 사건기록에 나타나 있을 때에 제기한다.

제279조 중앙재판소 소장과 중앙검찰소 소장은 비상상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어느 재판소에서 처리한 사건이든지 그 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 각급 재판소와 검찰소는 비상상소의 제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자기 관할 안에서 처리된 사건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비상상소에 제기하여야 할 사건은 해당한 의견을 붙여 사건기록을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에게 보낸다.

비상상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건의 기록은 곧 돌려보낸다.

제280조 중앙재판소 소장과 중앙검찰소 소장은 비상상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사건기록을 요구한 사건에 대한 판결, 판정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중앙재판소의 판결, 관정에 대하여서는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없다.

제281조 중앙재판소 이외의 모든 재판소의 확정된 판결, 관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중앙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심리해결한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내린 관정에 대하여 중앙검찰소가 의견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중앙재판소 판사회에서 다시 심리해결한다.

앞항의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82조 중앙재판소의 판결, 관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중앙재판소 판사회에서 심리해결한다.

중앙재판소 판사회는 중앙재판소 소장, 부소장, 판사들로 구성한다.

중앙재판소 판사회는 그 성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가하여야 할 수 있다.

판사회의 관정은 회의에 참가한 성원들의 다수가결로 채택한다.

제283조 중앙재판소 판사회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참가한다.

중앙재판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의 비상상소사건의 심리에는 중앙검찰소 검사가 참가한다.

비상상소사건의 심리날자는 3일 전에 중앙검찰소에 알려야 한다.

제284조 비상상소사건의 심리는 사건보고로부터 시작하여 필요한 심리한 다음 중앙검찰소 소장 또는 검사의 의견을 듣고 해당한 관정을 채택한다.

제285조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한 중앙재판소는 이 법 제263-269조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

## 제 2 절 재 심

제286조 판결 또는 관정이 확정된 사건의 재심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

실이 나타났을 때에 제기한다.

1. 판결, 판정의 기초로 삼았던 증거가 거짓이었을 때
2. 판결,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로써 재판할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알려졌을 때

제287조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은 그 판결을 받은 자가 죽은 다음에도 제기할 수 있다.

제288조 재심제기의 신청은 개인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검사에게 한다.

앞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1개월 안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자기의 의견을 붙여 그것을 중앙검찰소에 보낸다.

검사의 결심으로 재심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의 절차도 같다.

제289조 중앙검찰소 소장은 재심제기신청리유가 정당할 때에는 중앙재판소에 재심을 제기하며 부당할 때에는 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한다.

제290조 재심사건은 중앙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심리해결한다.

제291조 재심사건의 심리는 검사의 사건보고로부터 시작하며 필요한 심리를 한 다음 해당한 판정을 한다.

재심사건의 심리날자는 3일 전에 중앙검찰소에 알려야 한다.

제292조 중앙재판소는 재심제기의 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 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예심 또는 제1심재판소에 보내어 다시 심리하게 하거나 직접 기각하며 재심제기리유가 부당할 경우에는 재심을 거부하는 판정을 한다.

제293조 중앙재판소는 재심사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 10 장 판결, 관정의 집행

제294조 판결, 관정은 확정된 다음에 집행한다.

제295조 재판장은 판결, 관정이 확정되면 그 집행을 위하여 해당 집행기관에 집행지휘문건을 보낸다.

1. 로동교화형 판결, 관정에 대하여서는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판결, 관정 확정통지서를 보낸다.
2. 사형판결에 대하여서는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사형집행지휘문건과 판결서등본을 보낸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관정에 대하여서는 집행원에게 집행문을 보낸다.

제296조 판결, 관정의 집행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한다.

사형집행은 검사의 참가 밑에 한다.

제297조 사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제298조 사형집행은 사형집행지휘문건을 받은 후에 하며 재산집행은 집행문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으로 하고 해당 재판소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299조 로동교화형을 받은 자가 중병에 있을 때에는 그의 병이 나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로동교화형을 받은 자가 임신한 자일 때에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 집행을 정지한다.

제300조 로동교화형을 받고 있는 자가 병으로 병원에 수용되었을 때 그 기간은 로동교화형 집행기간에 넣는다.

제301조 로동교화형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로동교화형 판결을 내린 재판소 또는 로동교화형 집행기관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직할시)재판소가 관정으로 심리해결한다.

제302조 로동교화형을 받고 있는 자를 형기가 끝나기 전에 내놓는 것은

로동교회형 집행기관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직할시)재판소 또는 중앙재판소가 관정으로 심리해결한다.

제303조 판결, 관정의 집행과 관련된 신청은 그 판결, 관정을 내린 재판소 또는 그 판결, 관정을 집행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심리해결한다.

제304조 이 법 제301-303조에 따라 제기된 문제를 심리하는 재판소는 심리날자를 3일 전에 검사에게 알리며 제303조의 경우에는 판결을 받은 자와 손해보상청구자를 심리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제305조 재산몰수형에 대한 집행은 재판소의 집행원이 한다.

집행원의 집행행위와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서는 그 집행원이 속한 재판소의 판사가 심리해결한다.

## II. 동·서독 사례연구

# 1. 동·서독 인권관련 법규

## 가. 긴급수용법 및 시행령

< 법적근거 마련 및 운영상 제문제 >

0 2차대전후 소련점령지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공산정권의 통치를 피해 서방점령지역으로 넘어오자, 서방측은 이들을 다 수용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들의 수용 및 정착 지원에 따른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시작함.

- 이에 따라 서독의 기본법(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각 점령지역별로 피난민들이 서방측에서 확실히 인정할만한 어떤 사유로 넘어 왔으며, 이들이 어떤 기준하에 수용될 수 있는지 그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 시작함.

· 영국과 미군 주둔지역 주들은 각각 1947년부터 피난민의 수용기준과 주둔지역 정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는데, 1949. 8. 29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월젠의 지침서』 (Uelzener Richtlinie)라는 법적 기준을 마련함.

- 서독정부는 기본법 제정시 11조에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Freizuegigkeit)를 명시하였고, 116조에 구 동독지역 주민 또한 서독의 국적을 소지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구 동독주민중 서독으로 피난오는 자들의 수용여부에 관한 국내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서독정부는 1950. 8. 22 『긴급수용법』 (Notaufnahmegesetz : 정식 명칭은 『독일인의 서독지역에서 긴급수용에 관한 법』 Gesetz ueber die Notaufnahme von Deutschen in das Bundesgebiet 임)을 제정함.

- 『시행령』 (Verordnung zur Durchfuehrung des Notaufnahmegesetzes)은 1951. 1 제정되었음.

- 이 법의 입법취지는 다음과 같음.

- 양독간 정치 쟁점임을 고려하여 동독지역으로부터 지나친 피난민 유입을 적절하게 법적으로 통제함.
- 각 지역 주정부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 수용기로 한 피난민을 각 지역주에 적절히 배분하여, 이들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새로운 체제에 조속히 동화되도록 함.
- 서독의 전반적인 고용시장 및 주택사정을 고려하여
  - 당시만해도 서독 또한 전후복구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음 -
  - 동독지역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피난민의 유입은 적절하게 줄여나감.

0 이 법의 제정이후 실제운용과정에서, 피난민문제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각 주정부의 도움으로 이들의 정착을 지원한다는 입법취지는 달성되었으나, 피난민 유입을 줄여나가려는 입법목적은 관철시키기 어려움이 드러났음.

- 우선 긴급 수용법 제1조에 의해 거주허가 (Aufenthalterlaubnis) 를 받기 위해서는 피난민들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서독정부에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했음,

- 직계 존·비속간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피난
- 서독에서 주택과 직장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증명을 제시할 수 있는 피난
- 특별한 정치적인 이유로 긴급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시도한 피난
- 피난수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당자가 심대한 어려움을 겪게되는 피난

- 이러한 규정의 적용으로 상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허가를 받지 못했으나, 이들이 그렇다고 동독 지역으로 강제로 되돌려 보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난민의 유입은 계속적으로 줄어들지 않았음.

- 더구나 거주허가를 못받은 사람들이 계속 체류하면서 피난민 담당관청이 아닌 사회보장청이나 종교계통의 구호기관에 구호를 의탁함에 따라, 허가증 발급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었음.

0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자 긴급수용법 제1조 1항과 기본법 11조와의 관계에 관한 정치적, 법적인 논란이 벌어지게 됨.

- 헌법재판소는 1953. 5. 7 기본법 11조에 규정된 거주이전의 자유는 동독지역으로부터 피난 온 독일인에게도 적용된다고 판시하면서도, 그러나 과도한 피난민 유입을 규제하기 위해 선별을 규정한 『긴급수용법』 제1조 1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법적인 유권해석을 내렸음.

-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시 상황이 냉전이 격화되던 시기였으므로, 동독지역으로부터 오는 피난민들은 서독땅에 일단 이주한 이후부터는 차별없이 기본법상 보장된 권리를 완전히 누린다는데 국민적인 합의가 조성되어 있었음.

- 시간이 지나면서 서독내에서는 구 동독의 공산정권은 점점 불법시되었고, 이에 따라 서독내에서의 구 동독주민들의 『체류불허』에 따르는 문제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으며, 피난민의 수용절차는 해당요건을 충족시키면 허가를 내리는 『선별절차』 (Ausleseverfahren)에서 단순히 『기록하는 절차』 (Registerverfahren) 바뀌게 됨.

- 동독공산정권이 점차 독자적인 국가성을 강조하며, 국경선을 봉쇄해가고 베를린장벽을 구축한 이후부터는, 피난민의 거주허가신청이 기각되는 사례가 없어졌으며, 피난민이 수용허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동독으로부터 오는 모든 피난민은 기본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를 당연히 향유하게 되었음.



< 『긴급수용법』 (1950. 8) >

(Gesetz Ueber die Notaufnahme von Deutschen in das Bundesgebiet)

**제1조**

- 1) 소련점령지역이나 베를린 소련점령지역에 거주지를 갖고 있는 독일국적자와 독일 공민권 소지자는 이 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지역내에서 별도 허가없이 체류할 수는 있지만, 항구적인 거주를 위해서는 특별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서독지역에서 통용되는 기본법 11조 2항에 따른 거주이전의 자유는 그런의미에서 이들에게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 2) 현존하는 육체적 위해, 생명의 위협, 개인의 자유에 대한 현저한 위협이 존재하거나, 그밖에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1)항에서 언급한 지역을 떠나야만 했던 자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허가증 발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제2조**

제1조에서 언급된 탈출자들은 특정목적으로 설치된 수용소에 등록을 해야 한다. 거주허가증 발급에 대해서는 수용위원회 (Aufnahmeausschuss)가 결정한다. 동 위원회는 제1조 (2)가 규정한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

수용위원회의 거주허가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청원심사위원회 (Beschwerdeausschuss)에 청원제기가 가능하며, 동위원회가 최종결정을 한다.

#### 제4조

연방정부는 수용소의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 수용절차와 수용자들의 각 지역분배 및 거주허가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한다.

#### 제5조

연방정부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관청이 제2조에 따라 수용이 결정된 자들의 첫번째 주민등록지가 될 주(Land)를 결정한다. 이때 거주지가 될 주의 경제적인 사정이 고려된다. 각 주는 이들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수용자들의 거주지는 이들의 가족관계, 재정형편,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 제6조

연방정부는 이들 수용자를 각주에 배분함에 있어 기존 망명자나 실향민들로 인해 각주가 안고 있는 부담이 공정하게 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 제7조

수용자들의 유입으로 각주에 발생된 부담분의 일부는 기본법 120조의 규정에 따라 연방이 부담한다.

#### 제8조

이 법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연방대통령  
연방수상  
연방 실향민성 장관

< 『긴급수용법 시행령』 (1951. 1) >

I (수용소 결정)

제1조

(1) 긴급수용을 위한 수용소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Uelzen - Bohhdamm(베를린소재) : Poggenhagen, Loccum, Kirchrode 등 부속수용소 포함

2. Hammstrasse(기센소재)

(2) 연방정부는 필요시 긴급수용소를 더 설치할 수 있다.

제2조

(1) 부속수용소에는 수용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보통 24세까지, 특별한 위험부담이 있는 경우 28세까지의 독신자가 수용된다.

(2) 수용심사 관할부서장(수용소장) 명령에 의해 임시적으로 이들을 본부 수용소에 수용할 수도 있다.

II (수용절차)

제3조

수용절차는

1. 수용소장
2. 수용위원회
3. 청원심사위원회의 업무 협조로 진행된다.

#### 제4조

- (1) 수용소장은 수용절차를 합법적으로 집행하는데 책임을 진다.
- (2) 실향민성장관 (Der Bundesminister fuer Vertriebene) 은 수용소장과 그 직원을 임면한다.

#### 제5조

- (1) 수용위원회는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번갈아가면서 한다.
- (2) 필요시 더많은 위원회를 구성한다.
- (3) 위원회 위원은 실향민성 장관에 의해 임명된다. 연방상원은 위원의 절반을 추천한다. 위원수가 홀수일 경우 연방상원은 다수를 추천한다.

#### 제6조

수용위원회의 위원은 심사대상자 외모에 상관없이 학식과 양식에 따라 수용여부를 판단할 의무를 진다.

#### 제7조

- (1) 청원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동 위원회 위원장은 판사나 고등행정관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2) 위원의 절반은 연방상원에서 추천한다.

## 제8조

- (1) 거주허가증의 발급을 위한 신청은 수용소장에게 제출한다.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신청서를 제출한다. 수용위원회의 결정으로 만약 신청자가 육체적으로 심한 장애상태에 있거나 기타 긴급한 사유로 출두하지 못할때는 그러지 아니할 수도 있다.
- (2) 부부는 각각 상대방에 대해 그리고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3) 서독지역내에 친권자가 전혀없는 미성년자는 청소년담당청에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서독지역에 설치된 공인된 고아원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고아원장의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제9조

수용심사는 수용소장의 사실 확인에 의한 사전심사로 시작된다. 사전심사 결과는 수용위원회에 제출된다.

## 제10조

- (1) 수용위원회는 비공개로 신청자의 직접 참석하에 구두로 심사를 진행한다. 제8조 (1)항 절 내용이 심사절차에도 준용한다.  
연방정부대표와 주 대표로 신분이 확인된 자만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방청할 수 있다.  
참석과 관련한 더 이상의 예외사항은 수용위원회위원장이 결정한다.
- (2) 미성년자의 경우 문서로서 심사를 진행 결정할 수 있다.

### 제 11 조

수용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해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동 위원회는 관공서, 정당 또는 다른 사회단체로 부터 전문가적인 소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 12 조

수용위원회는 과반수로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보된다.

### 제 13 조

- (1) 수용위원회의 신청서 기각에 대한 재심청원은 2주 이내에 통지를 통해 청원심사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 (2) 청원위원회는 청원제기자에게 신청자에게 현존하는 육체적 위해, 생명의 위협, 개인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나 그밖의 긴급한 사유 등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 주어야 한다.

### 제 14 조

청원위원회의 결정은 서면으로 청원제기자에게 통보된다.

### 제 15 조

- (1) 수용거부를 통보받은자의 경우, 신청으로 만약 새로운 사실관계자료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수용재심사시 신청자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 때는 새로운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 (2) 신청자는 수용위원회나 청원심사위원회 개최시, 단지 자신이 몰랐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입증할 수 없었던 사실관계자료나 증거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다.

### 제 16 조

- (1) 수용위원회는 부정확한 자료제출, 위증자료제출,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침묵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발급된 거주허가서를 취소해야 한다.
- (2) 이러한 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청원제기도 13조 (1) 항에 정한 기한내에 허용된다.

### Ⅲ. 지역분산 배치

#### 제 17 조

- (1) 연방정부 전권위임자는 주정부대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수용자가 처음으로 정착할 주를 결정한다.
- (2) 실향민성 장관이 전권위임자를 임명한다.

#### 제 18 조

수용자는 지역을 배정받기전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Ⅳ. 결 론

#### 제 19 조

실향민성장관은 수용심사와 지역배치 등 모든 절차와 관련하여 감독권을 행사한다.

#### 제 20 조

이 시행령은 공포와 동시 시행된다.

연방수상  
연방실향민성장관

## 나. 헬싱키 최종의정서('75. 8) 요지

### o 제 1 범주 (Basket I)

#### < 서명국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10개 원칙선언 >

- ① 주권의 평등
- ② 폭력의 사용 또는 사용 위협의 배제
- ③ 국경의 불가침
- ④ 국가영토의 보전
- ⑤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
- ⑥ 내정 불간섭
- ⑦ 사상, 양심, 종교·확신의 자유를 포괄하는 인권과  
기본권적 자유의 보장
- ⑧ 제민족의 동등성과 자결권 보장
- ⑨ 국가들간의 상호협력
- ⑩ 국제법상의 제의무의 성실한 이행

#### < 안보문제 >

- ① 군사적인 신뢰 구축, 안보, 군축
- ② 대규모 군사훈련의 사전 통보
- ③ 군축과 관련한 제반문제

### o 제 2 범주 (Basket II)

#### < 경제·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 >

- ① 무역증진
- ② 경제협력, 공동 프로젝트 추진
- ③ 과학·기술협력
- ④ 환경문제 공동해결
- ⑤ 교통 및 관광진흥 분야 협력, 이주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문제해결 공동노력, 전문기술인력  
직업교육 등



o 제 3 범주 (Basket III)

< 인간적인 접촉 분야 >

- ① 가족 재결합 · 가족상봉 추진
- ② 국적이 다른 나라 국민들간의 결혼 제한조건 제거
- ③ 개인적 · 직업상의 이유로 인한 여행 적극 추진
- ④ 관광여행의 조건 개선
- ⑤ 청소년들간의 접촉 증대
- ⑥ 체육분야 교류 증대

< 정보교류 분야 >

- ① 정보의 교환, 접근, 전파의 개선
- ② 정보교류 분야 협력사업 추진
- ③ 언론인의 활동조건 개선

< 문화 분야 >

- ① 문화분야 교류 · 협력 증대

< 교육 분야 >

- ① 학문교류 장려
- ② 외국어 · 문화 소개 조장
- ③ 교습방법 교환

o 제 4 범주 (Basket IV)

< 후속조치 >

- 동 최종의정서 이행을 위한 각국별, 양자간 및 다자간 노력 경주 합의

※ 첨부: 『헬싱키 최종의정서』 제3범주(인도 및 기타분야 협력부분) 영문 원문

〈첨부〉

『헬싱키 최종의정서』 제3범주  
(인도 및 기타분야 협력부문)  
**Co-operation in Humanitarian  
and Other Fields**

**The participating States,**

*Desiring* to contribute to the strengthening of peace and understanding among peoples and to the spiritual enrichment of the human personality without distinction as to race, sex, language or religion,

*Conscious* that increased cultural and educational exchanges, broader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contacts between people, and the solution of humanitarian problems will contribute to the attainment of these aims,

*Determined* therefore to co-operate among themselves, irrespective of their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ystems, in order to create better conditions in the above fields, to develop and strengthen existing forms of co-operation and to work out new ways and means appropriate to these aims,

*Convinced* that this co-operation should take place in full respect for the principles guiding relations among participating States as set forth in the relevant document,

*Have adopted* the following:

## **1. Human Contacts**

**The participating States,**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contacts to be an important element in the strengthening of friendly relations and trust among peoples,

*Affirming*, in relation to their present effort to improve conditions in this area, the importance they attach to humanitarian considerations,

*Desiring* in this spirit to develop, with the continuance of détente, further efforts to achieve continuing progress in this field

*And conscious* that the questions relevant hereto must be settled by the States concerned under mutually acceptable conditions,

*Make it their aim* to facilitate freer movement and contacts,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whether privately or officially, among person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of the participating States, and to contribute to the solution of the humanitarian problems that arise in that connexion,

*Declare their readiness* to these ends to take measures which they consider appropriate and to conclude agreements or arrangements among themselves, as may be needed, and

*Express their intention* now to proce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following:

*(a) Contacts and Regular Meetings on the Basis  
of Family Ties*

In order to promote further development of contacts on the basis of family ties the participating States will favourably consider applications for travel with the purpose of allowing persons to enter or leave their territory temporarily, and on a regular basis if desired, in order to visit members of their families.

Applications for temporary visits to meet members of their families will be dealt with without distinction as to the country of origin or destination: existing requirements for travel documents and visas will be applied in this spirit. The preparation and issue of such documents and visas will be effected within reasonable time limits; cases of urgent necessity — such as serious illness or death — will be given priority treatment. They will take such steps as may be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fees for official travel documents and visas are acceptable.

They confirm that the presentation of an application concerning contacts on the basis of family ties will not modify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applicant or of members of his family.

*(b) Reunification of Families*

The participating States will deal in a positive and humanitarian spirit with the applications of persons who wish to be reunited with members of their family, with special attention being given to requests of an urgent character — such as requests submitted by persons who are ill or old.

They will deal with applications in this field as expeditiously as possible.

They will lower where necessary the fees charged in connexion with these applications to ensure that they are at a moderate level.

Applications for the purpose of family reunification which are not granted may be renewed at the appropriate level and will be reconsidered at reasonably short intervals by the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residence or destination, whichever is concerned; under such circumstances fees will be charged only when applications are granted.

Persons whose applications for family reunification are granted may bring with them or ship their household and personal effects; to this end the participating States will use all possibilities provided by existing regulations.

Until members of the same family are reunited meetings and contacts between them may take place in accordance with the modalities for contacts on the basis of family ties.

The participating States will support the efforts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concerned with the problems of family reunification.

They confirm that the presentation of an application concerning family reunification will not modify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applicant or of members of his family.

The receiving participating State will take appropriate care with regard to employment for persons from other participating States who take up permanent residence in that State in connexion with family reunification with its citizens and see that they are afforded opportunities equal to those enjoyed by its own citizens for education, medical assistance and social security.

### *(c) Marriage between Citizens of Different States*

The participating States will examine favourably and on the basis of humanitarian considerations requests for exit or entry permits from persons who have decided to marry a citizen from another participating State.

The processing and issuing of the documents required for the above purposes and for the marriage wi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accepted for family reunification.

In dealing with requests from couples from different participating States, once married, to enable them and the minor children of their marriage to transfer their permanent residence to a State in which either one is normally a resident, the participating States will also apply the provisions accepted for family reunification.

### *(d) Travel for Personal or Professional Reasons*

The participating States intend to facilitate wider travel by their citizens for personal or professional reasons and to this end they intend in particular:

- gradually to simplify and to administer flexibly the procedures for exit and entry;
- to ease regulations concerning movement of citizens from the other participating States in their territory, with due regard to security requirements.

They will endeavour gradually to lower, where necessary, the fees for visas and official travel documents.

They intend to consider, as necessary, means -- including, in so far as appropriate, the conclusion of multilateral or bilateral consular conventions or other relevant agreements or understandings --- for the improvement of arrangements to provide consular services, including legal and consular assistance.

\* \* \*

They confirm that religious faith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practising within the constitutional framework of the participating States, and their representatives can, in the field of their activities, have contacts and meetings among themselves and exchange information.

### *(e) Improvement of Conditions for Tourism on an Individual or Collective Basis*

The participating States consider that tourism contributes to a fuller knowledge of the life, culture and history of other countries, to the growth of understanding among peoples, to the improvement of contacts and to the broader use of leisure. They inten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ourism, on an individual or collective basis, and, in particular, they intend:

- to promote visits to their respective countries by encouraging the provision of appropriate facilities and the simplification and expediting of necessary formalities relating to such visits;

— to increase, on the basis of appropriate agreements or arrangements where necessary, co-operation in the development of tourism, in particular by considering bilaterally possible ways to increase information relating to travel to other countries and to the reception and service of tourists, and other related questions of mutual interest.

### *(f) Meetings among Young People*

The participating States intend to further the development of contacts and exchanges among young people by encouraging:

- increased exchanges and contacts on a short or long term basis among young people working, training or undergoing education through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or regular programmes in all cases where it is possible;
- study by their youth organizations of the question of possible agreements relating to frameworks of multilateral youth co-operation;
- agreements or regular programmes relating to the organization of exchanges of students, of international youth seminars, of courses of professional training and foreign language study;
- the further development of youth tourism and the provision to this end of appropriate facilities;
- the development, where possible, of exchanges, contacts and co-operation on a bilateral or multilateral basis between their organizations which represent wide circles of young people working, training or undergoing education;
- awareness among youth of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mutual understanding and of strengthe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nfidence among peoples.

### *(g) Sport*

In order to expand existing links and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port the participating States will encourage contacts and exchanges of this kind, including sports meetings and competitions of all sorts, on the basis of the established international rules, regulations and practice.

### *(h) Expansion of Contacts*

By way of further developing contacts among governmental institu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associations, including women's organizations, the participating States will facilitate the convening of meetings as well as travel by delegations, groups and individuals.

## **2. Information**

### **The participating States,**

*Conscious* of the need for an ever wide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various aspects of life in other participating States,

*Acknowledging* the contribution of this process to the growth of confidence between peoples,

*Desiring*, with the development of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participating States and with the further improvement of their relations, to continue further efforts towards progress in this fiel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from the other participating States and of a better acquaintance with such information,

*Emphasizing* therefore the essential and influential role of the press, radio, television, cinema and news agencies and of the journalists working in these fields,

*Make it their aim* to facilitate the freer and wider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f all kinds, to encourag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with other countries, and to improve the conditions under which journalists from one participating State exercise their profession in another participating State, and

*Express their intention* in particular:

### *(a) Improvement of the Circulation of, Access to, and Exchange of Information*

#### *(i) Oral Information*

— To facilitate the dissemination of oral information through the encouragement of lectures and lecture tours by personalities and specialists from the other participating States, as well as exchanges of opinions at round table meetings, seminars, symposia, summer schools, congresses and other bilateral and multilateral meetings.

(ii) *Printed Information*

— To facilitate the improvement of the dissemination, on their territory, of newspapers and printed publications, periodical and non-periodical, from the other participating States. For this purpose:

they will encourage their competent firms and organizations to conclude agreements and contracts designed gradually to increase the quantities and the number of titles of newspapers and publications imported from the other participating States. These agreements and contracts should in particular mention the speediest conditions of delivery and the use of the normal channels existing in each country for the distribution of its own publications and newspapers, as well as forms and means of payment agreed between the parties making it possible to achieve the objectives aimed at by these agreements and contracts:

where necessary, they wi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achieve the above objectives and to implement the provisions contained in the agreements and contracts.

—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access by the public to periodical and non-periodical printed publications imported on the bases indicated above. In particular:

they will encourage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places where these publications are on sale:

they will facilitate the availability of these periodical publications during congresses, conferences, official visits and other international events and to tourists during the season:

they will develop the possibilities for taking out subscriptions according to the modalities particular to each country:

they will improve the opportunities for reading and borrowing these publications in large public libraries and their reading rooms as well as in university libraries.

They intend to improve the possibilities for acquaintance with bulletins of official information issued by diplomatic missions and distributed by those missions on the basis of arrangements acceptable to the interested parties.

(iii) *Filmed and Broadcast Information*

— To promote the improvement of the dissemination of filmed and broadcast information. To this end:



they will encourage the wider showing and broadcasting of a greater variety of recorded and filmed information from the other participating States, illustrating the various aspects of life in their countries and received on the basis of such agreements or arrangements as may be necessary between the organizations and firms directly concerned;

they will facilitate the import by competent organizations and firms of recorded audio-visual material from the other participating States.

The participating States note the expansion in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broadcast by radio, and express the hope for the continuation of this process, so as to meet the interest of mutual understanding among peoples and the aims set forth by this Conference.

### *(b)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formation*

— To encourag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formation on the basis of short or long term agreements or arrangements. In particular:

they will favour increased co-operation among mass media organizations, including press agencies, as well as among publishing houses and organizations;

they will favour co-operation among public or private, national or international radio and television organizations, in particular through the exchange of both live and recorded radio and television programmes, and through the joint production and the broadcasting and distribution of such programmes;

they will encourage meetings and contacts both between journalists' organizations and between journalists from the participating States;

they will view favourably the possibilities of arrangements between periodical publications as well as between newspapers from the participating States, for the purpose of exchanging and publishing articles;

they will encourage the exchange of technical information as well as the organization of joint research and meetings devoted to the exchange of experience and views between experts in the field of the press, radio and television.

### *(c)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for Journalists*

The participating States, desiring to improve the conditions under which journalists from one participating State exercise their profession in another participating State, intend in particular to:

- examine in a favourable spirit and within a suitable and reasonable time scale requests from journalists for visas;
- grant to permanently accredited journalists of the participating States, on the basis of arrangements, multiple entry and exit visas for specified periods;
- facilitate the issue to accredited journalists of the participating States of permits for stay in their country of temporary residence and, if and when these are necessary, of other official papers which it is appropriate for them to have;
- ease, on a basis of reciprocity, procedures for arranging travel by journalists of the participating States in the country where they are exercising their profession, and to provide progressively greater opportunities for such travel, subject to the observance of regulations relating to the existence of areas closed for security reasons;
- ensure that requests by such journalists for such travel receive, in so far as possible, an expeditious response, taking into account the time scale of the request;
- increase the opportunities for journalists of the participating States to communicate personally with their sources, including organizations and official institutions;
- grant to journalists of the participating States the right to import, subject only to its being taken out again, the technical equipment (photographic, cinematographic, tape recorder, radio and television) necessary for the exercise of their profession; \*)
- enable journalists of the other participating States, whether permanently or temporarily accredited, to transmit completely, normally and rapidly by means recognized by the participating States to the information organs which they represent, the results of their professional activity, including tape recordings and undeveloped film, for the purpose of publication or of broadcasting on the radio or television.

The participating States reaffirm that the legitimate pursuit of their professional activity will neither render journalists liable to expulsion nor otherwise penalize them. If an accredited journalist is expelled, he will be informed of the reasons for this act and may submit an application for re-examination of his case.

---

\*) While recognizing that appropriate local personnel are employed by foreign journalists in many instances, the participating States note that the above provisions would be applied, subject to the observance of the appropriate rules, to persons from the other participating States, who are regularly and professionally engaged as technicians, photographers or cameramen of the press, radio, television or cinema.

### 3. Co-operation and Exchanges in the Field of Culture

The participating States,

*Considering* that cultural exchanges and co-operation contribute to a better comprehension among people and among peoples, and thus promote a lasting understanding among States,

*Confirming* the conclusions already formulated in this field at the multilateral level, particularly at th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in Europe, organized by UNESCO in Helsinki in June 1972, where interest was manifested in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broadest possible social groups in an increasingly diversified cultural life,

*Desiring*, with the development of mutual confidence and the further improvement of relations between the participating States, to continue further efforts toward progress in this field,

*Disposed* in this spirit to increase substantially their cultural exchanges, with regard both to persons and to cultural works, and to develop among them an active co-operation, both at the bilateral and the multilateral level, in all the fields of culture,

*Convinced* that such a development of their mutual relations will contribute to the enrichment of the respective cultures, while respecting the originality of each, as well as to the reinforcement among them of a consciousness of common values, while continuing to develop cultural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of the world,

*Declare* that they jointly set themselves the following objectives:

- (a) to develop the mutual exchange of information with a view to a better knowledge of respective cultural achievements,
- (b) to improve the facilities for the exchange and for the dissemination of cultural property,
- (c) to promote access by all to respective cultural achievements,
- (d) to develop contacts and co-operation among persons active in the field of culture,
- (e) to seek new fields and forms of cultural co-operation,

Thus *give expression to* their common will to take progressive, coherent and long-term action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present declaration; and

*Express their intention* now to proce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following:

### *Extension of Relations*

To expand and improve at the various levels co-operation and links in the field of culture, in particular by:

- concluding, where appropriate, agreements on a bilateral or multilateral basis, providing for the extension of relations among competent State institu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he field of culture, as well as among people engaged in cultural activities,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both for flexibility and the fullest possible use of existing agreements, and bearing in mind that agreements and also other arrangements constitute important means of developing cultural co-operation and exchanges;
-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direct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mong relevant State institu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cluding, where necessary, such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carried out on the basis of special agreements and arrangements;
- encouraging direct contacts and communications among persons engaged in cultural activities, including, where necessary, such contacts and communications carried out on the basis of special agreements and arrangements.

### *Mutual Knowledge*

Within their competence to adopt, on a bilateral and multilateral level, appropriate measures which would give their peoples a more comprehensive and complete mutual knowledge of their achievements in the various fields of culture, and among them:

- to examine jointly, if necessary with the assistance of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possible creation in Europe and the structure of a bank of cultural data, which would collect information from the participating countries and make it available to its correspondents on their request, and to convene for this purpose a meeting of experts from interested States;
- to consider, if necessary in conjunction with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ays of compiling in Europe an inventory of documentary films of a cultural or scientific nature from the participating States;

- to encourage more frequent book exhibitions and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organizing periodically in Europe a large-scale exhibition of books from the participating States;
- to promote the systematic exchange, between the institutions concerned and publishing houses, of catalogues of available books as well as of pre-publication material which will include, as far as possible, all forthcoming publications: and also to promote the exchange of material between firms publishing encyclopaedias, with a view to improving the presentation of each country;
- to examine jointly questions of expanding and improving exchanges of information in the various fields of culture, such as theatre, music, library work as well as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 *Exchanges and Dissemination*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facilities for exchanges and the dissemination of cultural property, by appropriate means, in particular by:

- studying the possibilities for harmonizing and reducing the charg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ommercial exchanges of books and other cultural materials, and also for new means of insuring works of art in foreign exhibitions and for reducing the risks of damage or loss to which these works are exposed by their movement;
- facilitating the formalities of customs clearance, in good time for programmes of artistic events, of the works of art, materials and accessories appearing on lists agreed upon by the organizers of these events;
- encouraging meetings among representatives of competent organizations and relevant firms to examine measures within their field of activity — such as the simplification of orders, time limits for sending supplies and modalities of payment — which might facilitate international commercial exchanges of books;
- promoting the loan and exchange of films among their film institutes and film libraries;
- encouraging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mong interested parties concerning events of a cultural character foreseen in the participating States, in fields where this is most appropriate, such as music, theatre and the plastic and graphic arts,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a calendar of such events, with the assistance, where necessary, of the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encouraging a study of the impact which the foreseeable development, and a possible harmonization among interested parties, of the technical means used for the dissemination of culture might have on the development of cultural co-operation and exchanges, while keeping in view the preservation of the diversity and originality of their respective cultures;

— encouraging, in the way they deem appropriate, within their cultural policies, the further development of interest in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other participating States, conscious of the merits and the value of each culture;

— endeavouring to ensure the full and effective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conventions on copyrights and on circulation of cultural property to which they are party or to which they may decide in the future to become party.

### *Access*

To promote fuller mutual access by all to the achievements -- works, experiences and performing arts -- in the various fields of culture of their countries, and to that end to make the best possible efforts, in accordance with their competence, more particularly:

— to promote wider dissemination of books and artistic works, in particular by such means as:

facilitating, while taking full account of the international copyright conventions to which they are party, international contacts and communications between authors and publishing houses as well as other cultural institutions, with a view to a more complete mutual access to cultural achievements;

recommending that, in determining the size of editions, publishing houses take into account also the demand from the other participating States, and that rights of sale in other participating States be granted, where possible, to several sales organizations of the importing countries, by agreement between interested partners;

encouraging competent organizations and relevant firms to conclude agreements and contracts and contributing, by this means, to a gradual increase in the number and diversity of works by authors from the other participating States available in the original and in translation in their libraries and bookshops;

promoting, where deemed appropriate,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sales outlets where books by authors from the other participating States, imported in the original on the basis of agreements and contracts, and in translation, are for sale;

promoting, on a wider scale, the translation of works in the sphere of literature and other fields of cultural activity, produced in the languages of the other participating States, especially from the less widely-spoken languages, and the publication and dissemination of the translated works by such measures as:

encouraging more regular contacts between interested publishing houses;

developing their efforts in the basic and advanced training of translators;

encouraging, by appropriate means, the publishing houses of their countries to publish translations;

facilitating the exchange between publishers and interested institutions of lists of books which might be translated;

promoting between their countries the professional activity and co-operation of translators;

carrying out joint studies on ways of further promoting translations and their dissemination;

improving and expanding exchanges of books, bibliographies and catalogue cards between libraries;

— to envisage other appropriate measures which would permit, where necessary by mutual agreement among interested parties, the facilitation of access to their respective cultural achievements, in particular in the field of books;

— to contribute by appropriate means to the wider use of the mass media in order to improve mutual acquaintance with the cultural life of each;

— to seek to develop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to preserve their links with their national culture, and also to adapt themselves to their new cultural environment;

— to encourage the competent bodies and enterprises to make a wider choice and effect wider distribution of full-length and documentary films from the other participating States, and to promote more frequent non-commercial showings, such as premières, film weeks and festivals, giving due consideration to films from countries whose cinematographic works are less well known;

— to promote, by appropriate means, the extension of opportunities for specialists from the other participating States to work with materials of a cultural character from film and audio-visual archiv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existing rules for work on such archival materials;

— to encourage a joint study by interested bodies, where appropriate with the assistance of the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the expediency and the condi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 repertory of their recorded television programmes of a cultural nature, as well as of the means of viewing them rapidly in order to facilitate their selection and possible acquisition.

### *Contacts and Co-operation*

To contribute, by appropriate means, to the development of contacts and co-operation in the various fields of culture, especially among creative artists and people engaged in cultural activities, in particular by making efforts to:

- promote for persons active in the field of culture, travel and meetings including, where necessary, those carried out on the basis of agreements, contracts or other special arrangements and which are relevant to their cultural co-operation;
- encourage in this way contacts among creative and performing artists and artistic groups with a view to their working together, making known their works in other participating States or exchanging views on topics relevant to their common activity;
- encourage, where necessary through appropriate arrangements, exchanges of trainees and specialists and the granting of scholarships for basic and advanced training in various fields of culture such as the arts and architecture, museums and libraries, literary studies and translation, and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favourable conditions of reception in their respective institutions;
- encourage the exchange of experience in the training of organizers of cultural activities as well as of teachers and specialists in fields such as theatre, opera, ballet, music and fine arts;
- continue to encourage the 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meetings among creative artists, especially young creative artists, on current questions of artistic and literary creation which are of interest for joint study;
- study other possibilities for developing exchanges and co-operation among persons active in the field of culture, with a view to a better mutual knowledge of the cultural life of the participating States.

### *Fields and Forms of Co-operation*

To encourage the search for new fields and forms of cultural co-operation, to these ends contributing to the conclusion among interested parties, where necessary, of appropriate agreements and arrangements, and in this context to promote:



— joint studies regarding cultural policies, in particular in their social aspects, and as they relate to planning, town-planning, educational and environmental policies, and the cultural aspects of tourism;

— the exchange of knowledge in the realm of cultural diversity,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hus to a better understanding by interested parties of such diversity where it occurs;

—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as may be appropriate, meetings of experts, the elaboration and the execution of research programmes and projects, as well as their joint evaluation, and the dissemination of the results, on the subjects indicated above;

— such forms of cultural co-oper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uch joint projects as:

international events in the fields of the plastic and graphic arts, cinema, theatre, ballet, music, folklore, etc.; book fairs and exhibitions, joint performances of operatic and dramatic works, as well as performances given by soloists, instrumental ensembles, orchestras, choirs and other artistic groups, including those composed of amateurs, paying due attention to the 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cultural youth events and the exchange of young artists;

the inclusion of works by writers and composers from the other participating States in the repertoires of soloists and artistic ensembles;

the preparation,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articles, studies and monographs, as well as of low-cost books and of artistic and literary collections, suited to making better known respective cultural achievements, envisaging for this purpose meetings among experts and representatives of publishing houses;

the co-production and the exchange of films and of radio and television programmes, by promoting, in particular, meetings among producers, technicians and representatives of the public authorities with a view to working out favourable conditions for the execution of specific joint projects and by encouraging, in the field of co-production,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filming teams;

the organization of competitions for architects and town-planners, bearing in mind the possible implementation of the best projects and the formation, where possible, of international teams;

the implementation of joint projects for conserving, restoring and showing to advantage works of art,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monuments and sites of cultural interest, with the help, in appropriate cas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a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character as well as of private institutions — competent and active in these fields — envisaging for this purpose:

periodic meetings of experts of the interested parties to elaborate the necessary proposals, while bearing in mind the need to consider these questions in a wider social and economic context;

the publication in appropriate periodicals of articles designed to make known and to compare, among the participating States, the most significant achievements and innovations;

a joint study with a view to the improvement and possible harmonization of the different systems used to inventory and catalogue the historical monuments and places of cultural interest in their countries;

the study of the possibilities for organizing international courses for the training of specialists in different disciplines relating to restoration.

\* \* \*

*National minorities or regional cultures.* The participating States, recognizing the contribution that national minorities or regional cultures can make to co-operation among them in various fields of culture, intend, when such minorities or cultures exist within their territory, to facilitate this contribution, taking into account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ir members.

## 4. Co-operation and Exchanges in the Field of Education

### The participating States,

*Conscious* that the development of relations of an international character in the fields of education and science contributes to a better mutual understanding and is to the advantage of all peoples as well as to the benefit of future generations,

*Prepared* to facilitate, between organizations, institutions and persons engaged in education and science, the further development of exchanges of knowledge and experience as well as of contacts, on the basis of special arrangements where these are necessary,

*Desiring* to strengthen the links among educational and scientific establishments and also to encourage their co-operation in sectors of common interest, particularly where the levels of knowledge and resources require efforts to be concerted internationally, and

*Convinced* that progress in these fields should be accompanied and supported by a wider knowledge of foreign languages,

*Express* to these ends their intention in particular:

### *(a) Extension of Relations*

To expand and improve at the various levels co-operation and links in the fields of education and science, in particular by:

- concluding, where appropriate,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providing for co-operation and exchanges among State institutions, non-governmental bodies and persons engaged in activities in education and science, bearing in mind the need both for flexibility and the fuller use of existing agreements and arrangements;
- promoting the conclusion of direct arrangements between universities and other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in the framework of agreements between governments where appropriate;
- encouraging among persons engaged in education and science direct contacts and communications, including those based on special agreements or arrangements where these are appropriate.

### *(b) Access and Exchanges*

To improve access, under mutually acceptable conditions, for students, teachers and scholars of the participating States to each other's educational, cultural and scientific institutions, and to intensify exchanges among these institutions in all areas of common interest, in particular by:

- increasing the exchange of information on facilities for study and courses open to foreign participants, as well as on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y will be admitted and received;

- facilitating travel between the participating States by scholars, teachers and students for purposes of study, teaching and research as well as for improving knowledge of each other's educational, cultural and scientific achievements;
- encouraging the award of scholarships for study, teaching and research in their countries to scholars, teachers and students of other participating States;
- establishing, developing or encouraging programmes providing for the broader exchange of scholars, teachers and students, including the organization of symposia, seminars and collaborative projects, and the exchanges of educational and scholarly information such as university publications and materials from libraries;
- promoting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such arrangements and programmes by providing scholars, teachers and students in good time with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ir placing in universities and institutes and the programmes envisaged for them; by granting them the opportunity to use relevant scholarly, scientific and open archival materials; and by facilitating their travel within the receiving State for the purpose of study or research as well as in the form of vacation tours on the basis of the usual procedures;
- promoting a more exact assessment of the problems of comparison and equivalence of academic degrees and diplomas by fostering the exchange of information on the organization, duration and content of studies, the comparison of methods of assessing levels of knowledge and academic qualifications, and, where feasible, arriving at the mutual recognition of academic degrees and diplomas either through governmental agreements, where necessary, or direct arrangements between universities and other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and research;
- recommending, moreover, to the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at they should intensify their efforts to reach a generally acceptable solution to the problems of comparison and equivalence between academic degrees and diplomas.

### *(c) Science*

Within their competence to broaden and improve co-operation and exchanges in the field of science, in particular:

To increase, on a bilateral or multilateral basis, the exchange and dissemination of scientific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by such means as:

- making this information more widely available to scientists and research workers of the other participating States through, for instance,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information-sharing programmes or through other appropriate arrangements;

— broadening and facilitating the exchange of samples and other scientific materials used particularly for fundamental research in the fields of natural sciences and medicine;

— inviting scientific institutions and universities to keep each other more fully and regularly informed about their current and contemplated research work in fields of common interest.

To facilitate the extension of communications and direct contacts between universities, scientific institutions and associations as well as among scientists and research workers, including those based where necessary on special agreements or arrangements, by such means as:

— further developing exchanges of scientists and research workers and encouraging the organization of preparatory meetings or working groups on research topics of common interest;

— encouraging the creation of joint teams of scientists to pursue research projects under arrangements made by the scientific institutions of several countries;

— assisting the organization and successful functioning of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seminars and participation in them by their scientists and research workers;

— furthermore envisaging, in the near future, a "Scientific Forum" in the form of a meeting of leading personalities in science from the participating States to discuss interrelated problems of common interest concerning current and future developments in science, and to promote the expansion of contacts, communications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scientific institutions and among scientists;

— foreseeing, at an early date, a meeting of experts representing the participating States and their national scientific institutions, in order to prepare such a "Scientific Forum" in consultation with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NESCO and the ECE;

— considering in due course what further steps might be taken with respect to the "Scientific Forum"

To develop in the field of scientific research, on a bilateral or multilateral basis, the co-ordination of programmes carried out in the participating States and the organization of joint programmes, especially in the areas mentioned below, which may involve the combined efforts of scientists and in certain cases the use of costly or unique equipment. The list of subjects in these areas is illustrative; and specific projects would have to be determined subsequently by the potential partners in the participating States, taking account of the contribution which could be made by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scientific institutions:

— *exact and natural sciences*, in particular fundamental research in such fields as mathematics, physics, theoretical physics, geophysics, chemistry, biology, ecology and astronomy;

— *medicine*, in particular basic research into cancer and cardiovascular diseases, studies on the diseases endemic in the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medico-social research with special emphasis on occupational diseases, the rehabilitation of the handicapped and the care of mothers, children and the elderly;

—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uch as history, geography, philosophy, psychology, pedagogical research, linguistics, sociology, the legal, political and economic sciences; comparative studies on social, socio-economic and cultural phenomena which are of common interest to the participating States, especially the problems of human environment and urban development; and scientific studies on the methods of conserving and restoring monuments and works of art.

#### *(d) Foreig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To encourage the study of foreig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as an important means of expanding communication among peoples for their better acquaintance with the culture of each country, as well as for the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this end to stimulate, within their competence, the further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foreign language teaching and the diversification of choice of languages taught at various levels, paying due attention to less widely-spread or studied languages, and in particular:

— to intensify co-operation aimed at improving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through exchanges of information and experience concerning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effective modern teaching methods and technical aids, adapted to the needs of different categories of students, including methods of accelerated teaching; and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conducting, on a bilateral or multilateral basis, studies of new methods of foreign language teaching;

— to encourage co-operation between institutions concerned, on a bilateral or multilateral basis, aimed at exploiting more fully the resources of modern educational technology in language teaching, for example through comparative studies by their specialists and, where agreed, through exchanges or transfers of audio-visual materials, of materials used for preparing textbooks, as well as of information about new types of technical equipment used for teaching languages;

- to promote the exchange of information on the experience acquired in the training of language teachers and to intensify exchanges on a bilateral basis of language teachers and students as well as to facilitate their participation in summer courses i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wherever these are organized;
- to encourage co-operation among experts in the field of lexicography with the aim of defining the necessary terminological equivalents, particularly in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disciplines, in order to facilitate relations among scientific institutions and specialists;
- to promote the wider spread of foreign language study among the different types of secondary education establishments and greater possibilities of choice between an increased number of European languages; and in this context to consider, wherever appropriate, the possibilities for developing the recruitment and training of teachers as well as the organization of the student groups required;
- to favour, in higher education, a wider choice in the languages offered to language students and greater opportunities for other students to study various foreign languages; also to facilitate, where desirable, the organization of courses i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on the basis of special arrangements as necessary, to be given by foreign lecturers, particularly from European countries having less widely-spread or studied languages;
- to promote, within the framework of adult education, the further development of specialized programmes, adapted to various needs and interests, for teaching foreign languages to their own inhabitants and the languages of host countries to interested adults from other countries; in this context to encourage interested institutions to co-operate, for example, in the elaboration of programmes for teaching by radio and television and by accelerated methods, and also, where desirable, in the definition of study objectives for such programmes, with a view to arriving at comparable levels of language proficiency;
- to encourage the association, where appropriate, of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with the study of the corresponding civilizations and also to make further efforts to stimulate interest in the study of foreign languages, including relevant out-of-class activities.

### *(e) Teaching Methods*

To promote the exchange of experience, on a bilateral or multilateral basis, in teaching methods at all levels of education, including those used in permanent and adult education, as well as the exchange of teaching materials, in particular by:

— further developing various forms of contacts and co-operation in the different fields of pedagogical science, for example through comparative or joint studies carried out by interested institutions or through exchanges of information on the results of teaching experiments;

— intensifying exchanges of information on teaching methods used in various educational systems and on results of research into the processes by which pupils and students acquire knowledge, taking account of relevant experience in different types of specialized education;

— facilitating exchanges of experience concerning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ing of education intended for adults and recurrent educati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se and other forms and levels of education, as well as concerning the means of adapting education, including vocational and technical training, to the needs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their countries;

— encouraging exchanges of experience in the education of youth and adults in international understanding,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ose major problems of mankind whose solution calls for a common approach and wider international co-operation;

— encouraging exchanges of teaching materials — including school textbooks, having in mind the possibility of promoting mutual knowledge and facilitating the presentation of each country in such books — as well as exchanges of information on technical innovations in the field of education.

\* \* \*

*National minorities or regional cultures.* The participating States, recognizing the contribution that national minorities or regional cultures can make to co-operation among them in various fields of education, intend, when such minorities or cultures exist within their territory, to facilitate this contribution, taking into account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ir members.



## 2. 동·서독 인권문제 논란

### 가. 국제적인 인권규약과 동독

- 동독을 포함한 동구권 국가들은 CSCE에 참여하면서, 서방국가와 중립 국가들의 요구로 헬싱키 최종문서 (Helsinkichlussakte)에 인권조항을 삽입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이후 국내 인권문제는 국제적으로 감시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음.
  - 마드리드에서 열린 CSCE 후속회의 (1980-1983)에서도 서명국들이 인권을 존중할 의무가 새삼 강조되었음.
  - 서명국들은 또한 인권에 관한 국제적인 선언이나 협정에 서명할 의무가 아울러 부과되었는 바, 대표적인 국제인권규약은 1966. 12. 10 UN에서 채택된 시민적·정치적 제권리에 관한 UN 국제협약 (Der Internationale UN-Pakt ueber buergerliche und politische Rechte, 이하 국제 인권협약이라 함) 임.
- 동독은 국제인권협약을 1973. 11. 2 비준했으며, 1976부터 이 협약이 동독내에서도 효력을 발하게 되었음.
  - 이 협약은 CSCE 최종문서에서와 같은 단순한 선언규정에 그치지 않고 동독이 형식적이지만 이를 준수해야 하는 국제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었음.
- 동독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서방측으로부터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동독은 다음과 같은 논거로 그들의 인권현실을 옹호했음.
  - 첫째, 인권개념에 대한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간의 이해가 서로 근본적으로 상이하기 때문에, 서방국가들의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비판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임.
  - 둘째, CSCE 최종문서 원칙 제6항에는 내정불간섭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방국가들의 인권문제 비난은 일종의 내정간섭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임.

- 셋째, 구동독 지도부는 동독에서는 CSCE 최종문서가 요구하는 인권문제 해결이 모두 충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권문제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음.

## 나. 동·서독 인권개념의 차이

- 동·서독간 인권은 형식상 거의 같은 정도로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통해 보장되고 있지만, 헌법상 보장된 인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정치적·법적인 조건을 어떤 방법을 통해 충족시켜 주느냐에 따라 인권개념이 달라지고 있음.
  - 서독을 위시한 자유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갖는 서방측은 헌법상 보장된 인권의 실현을 위한 사회·경제적인 체제 혹은 구조 결정문제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의 정치적인 자유영역으로 위임함.
    - 서독측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정치적인 의사형성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다수결로 결정된 권력구조를 수용하면서도
    - 인권보장이 그 어떤 제도보다도 우선하며 인권은 이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자유로운 의사형성 구조와 정치적인 제도로부터 사법부의 간섭을 받지 않음.
  - 동독을 위시한 구 동구권 국가에서는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구조가 중요하며, 이러한 전제조건들이 인권존중 그 자체와 같은 구속력을 갖음.
    - 이러한 개인의 인권실현을 위한 필수전제조건으로서는 “마르크스-레닌 정당의 권력”, “노동계급의 과학적 세계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관계 확립”, “중앙계획에 의한 사회주의적 경제체제” 등을 들 수 있음.
    - 즉 마르크스-레닌주의 세계관이 정치·경제·사회 체제 내에서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해석하고 실현하는 척도이자, 최고의 가치기준임.
- 이에따라 동·서독 주민들에게는 체제선택과 관련한 기본권 보장의

가능성이 상이하게 주어지게 됨.

- 서독주민들은 헌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자본주의적인 경제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집회·결사·의사 표현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바, 이를 통해 체제를 자유로이 비판할 수 있었음.
  - 반면 동독주민들은 일정한 세계관에 입각한 주어진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체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러한 집회·결사·의사표현의 가질 수 없어 체제수용을 조건으로만 기본권이 보장됨.
  - 이런 의미에서 동독에서의 기본권은 정치·경제·사회 체제의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보호장치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구조하에서의 재생산과정에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로서 이해되었음.
- 따라서 양측의 기본권이 형식적으로는 “헌법적인 질서에 입각하여” 보장된다고 선언되었지만, 실제로 “헌법적인 질서”가 의미하는 바가 전혀 달랐음.
- 가장 중요한 차이는 서독측에서는 체제반대자의 권리까지를 포함한 다원화된 제도에의 참여를 보장을 의미하는 반면,
  - 동독측에서는 국가에 의해 보장된 사회주의 소유권의 인정, 중앙계획경제구조의 인정,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영도성 인정,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공식적인 이데올로기로 인정 등을 의미했음.
- 동독측 학자들도 서독측과 인권문제를 거론할 때 정치적·시민적인 권리보다 사회·경제적인 권리실현을 우선한다는 기본적인 개념상의 차이를 바탕으로, 서독측에게 주민들의 노동의 권리 (Recht auf Arbeit) 부재와 불균등한 재산분배로 인한 평등권의 침해문제를 제기해 왔음.
- 그러나 서독에서 사회복지국가적 원칙에 의한 사회권의 보장은 동독에서 의미하는 노동의 권리에 입각한 완전고용이 아니며, 시장경제적 질서하에서는 완전고용이란 불가능하므로 노조의 공동결정권의 보장, 고용보호, 전직·직업 훈련 등 각종실업대책에 참여, 사회부조금 수령권 등을 의미했음.

- 서독인들은 주어진 정치적인 기본권을 바탕으로, 자기들에게 더욱 많은 사회·경제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는 사회·경제정책적 질서와 프로그램은 선택할 수 있었으나, 동독주민들에게는 실업이 존재하지 않으나 이러한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을 받는 노동의 권리만이 주어져 있을 뿐이었음.
- 서독의 자유민주적인 체제하에서는 정치적인 참여권과 사회권이 보장되더라도, 사유재산권에 바탕을 둔 부의 불균등 분배가 동독에 비해 심한 것은 사실이었음.
  - 그러나 서독에서는 이러한 문제도 정치적인 기본권의 확보를 통해 사회·복지적인 제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여지가 보장되어 있었으나, 동독에서는 이러한 평등문제에 관한 사회권을 보장받고 있더라도 국가의 후견에 의해 주민들이 미성년자화 되므로 하향적 평준화 이상의 대안을 모색할 수는 없었음.

## 다. 동독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 ① 자유왕래 및 이주권리 관련

- 국제인권협약 제12조에는 모든 사람이 자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를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고 이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국가안보, 공공질서유지, 국민건강, 공중도덕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동독은 1983년 UN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동독정부는 이러한 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단지 상기 조건들 때문에 예외적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례들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라고, 서독측은 주장했음.

### ㉠ 국경 봉쇄·차단

- 동독측이 설치한 국경탈출방지장치와 차단장치는 국제인권협약 제12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

- 국경탈출자에 대한 총격사용 사살행위 또한 동 협약을 위반하는 것임.
  - 동독측은 1982년도에 제정한 국경법을 근거로 이러한 총격사용행위가 동독의 국가안보 및 질서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었음.

㉠ 정치적 형사처벌

- 동독으로부터 합법·비합법적으로 이주하려는 국민들에 대해 가해지는 정치적인 형사처벌이 명백하게 동 협약에 위반임.
  - amnesty international이 밝힌 바에 따르면 1981년 한해동안 200명의 정치범이 체포되었는데 그중 160명이 탈출 또는 이주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이들에게 적용되는 정치적 박해목적의 형법규정을 살펴보면
  - 제 213조 : “불법적인 월경을 통한 공화국 도주죄”
    - 형량은 1979년 3차의 형법개정을 통해 5-8년 징역임.
  - 제 214조 : “국가·사회생활 침해죄”
    - 1983년 Jena에서는 한 주민이 이주허가신청이 기각되자, 이의 관철을 위해, 하얀 옷을 입고 침묵시위를 벌였는 바,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음.
  - 제 219조 : “불법적인 외부인사 접촉죄”
    - 이주를 원하는 자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었는데, 서방측 인권단체나 언론기관들과 접촉을 하고, 자신의 신상명세나 기타 문서를 전달한 경우 적용됨.
    - 특히 동독주재 서독 상주대표부를 방문하여 이주를 호소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음.
  - 제 220조 : “공공기관 비방 중상죄”
    - 이주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재차 다른 공공기관에 자신의 정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항변한 경우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아

처벌됨.

- 제 99조 : “국가반역적인 정보·자료 유출”
  - 자신의 이주 희망의사를 다른 자료와 함께 서방측 언론에 공개했을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됨.
- 제 106조 : “반국가적인 선동죄”
  - 자신의 이주문제와 관련하여 동독내 정부지도자급 관계인 (특히 호네커)을 비방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됨.
- 제 100조 : “국가반역적인 요인으로 활동죄”
  - 자신의 이주허가문제를 서방측 언론기관이나 인권단체 (“Vereinigung fuer Menschenrechte”, “Hilferufe von drueben”, “amnesty international”) 등과의 접촉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 제 97조 : “간첩죄”
  - 동독측 정보기관이 이주희망자를 간첩으로 분류한 경우가 이에 해당됨.
- 제 225조 : “불고지죄”
  - 동독을 탈출하려고 계획하는 사람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가 이에 해당됨.
- 제 104조 : “반국가적인 인신매매죄”
  - 서방측 탈출방조자와 그 도움으로 동독을 탈출하려는 자에게 이 조항이 적용됨.

㊦ 이주·자유왕래를 방해하는 행정적·직업상 제재

- Stasi나 내무성 또는 지방행정기관 이주 담당 직원들의 협박과 회유
- 이주허가신청의 접수거부 및 이주허가신청서 양식의 교부 거부
- 직장에서의 해고위협 및 자녀들의 상급학교 진학 거부
- 형법 제 48조에 의한 정치범의 일상생활통제

- 일정지역 (특히 동베를린지역)의 체류금지, 매일 주거장소를 경찰에 신고토록 함, 직장변경 및 특정인과의 교제금지 등.
- 특별증명서(PM 12)의 발행
  - 이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동구권 국가들을 포함한 외국여행이 제한되며, 기관에 의해 늘 용의자로서 취급됨.
  - 1984년에 구동독에는 약 6만여명이 이 특별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음.

### ㉑ 가족 재상봉 거부 및 지연

- 서독으로 탈출했거나, 합법이주했거나, 동독 정치범이었다가 서독으로 석방된 사람들과 그 잔류가족의 재상봉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 또한 국제협약에 위반임.
- 많은 경우 구동독 정치범들은 자신이 수감된 이후 그들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박탈되고, 심한 경우 다른 부모에게 강제 입양되는 경우가 있었음.

### ㉒ 인적 접촉 제한

- 동·서독간 방문·여행시 이들의 주민들간의 접촉을 제한하려는 동독 기관원들의 조치 역시 국제협약에 위반됨.
  - 동독정부는 긴급한 가사사유로 서독을 방문하려는 자들을 회유하여 이들로 하여금 여행을 포기하도록 함.
  - 동독정부는 많은 동독주민들을 “비밀 소지자”로 분류하면서, 해당 대상자의 범위를 세탁소 및 음식점 종업원에까지 확대하여 왔음.
  - 서독으로의 단체여행시 Stasi 요원들이 동행하여 서독주민들과 자유로운 접촉을 제한하는 사례

### ㉓ 추방, 재입 거부

- 1970년대 중반부터 체제반대자들에 대해서 의사에 반하여 서독으로

이주를 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했음.

- 특히 평화운동단체 일원들에게 이러한 이주 강요가 빈번했는데, 강제로 이주신청서를 내게 하고 만약 승락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위협을 하였음.
- o 구동독을 탈출하였거나, 합법적으로 허가를 얻어 이주하였거나, 정치범으로서 서독으로 석방되어 간 자들에 대해서는 서독에서 재차 동독으로의 여행이나 방문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음.

## ② 의사표현의 자유 관련

- o 국제인권협약 19조 2항에는 정보의 자유로운 취득과 전파 그리고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나, 동독측은 이를 보장하지 않았음.
  - 동독 헌법 제 21조 1항에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헌법의 기본원칙에 상응하여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헌법의 기본원칙이란 당의 국가·사회에서 영도적인 역할, 개인과 국가 이익의 원칙적인 일치, 동독의 소련과의 동맹관계를 들 수 있음.
  - 이러한 지역적인 해석이 가능한 헌법상의 유보조항을 이용하여 형법을 제정함으로써 국제인권협약에 규정된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실로 삼았음.
- o amnesty international 은 매년 200여명에 달하는 새로운 정치범중 거의 50% 정도가 동독정부나 체제를 비판하다가 재판을 받고 수감된 것으로 파악했음.

## ㉠ 형법을 통한 인권침해

- o 이러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적용된 형법조항과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동·서독 평화운동단체가 연대한 평화운동 집회개최와 관련하여
    - o 제 99조 : “국가반역적인 정보·자료 유출”
    - o 제 219조 : “불법적인 외부인사 접촉”
  - 폴란드 “연대노조”에 대한 지지 성명 발표와 관련하여
    - o 제 100조 : “국가반역적인 요원으로 활동죄”



- 제 220조 : “공공기관 비방증상죄”
- 반체제 지식인들의 체제비판에 대해
  - 제 97조 : “간첩죄”
- 공산당내의 새로운 분파를 형성하고 다른 사상을 널리 알리려 한 경우
  - 제 106조 : “반국가적 선동죄”

### ㉠ 기타 제재 수단을 통한 인권침해

-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주로 대상이 작가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작품이 발표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동독에서 출판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이 주요 수단이었음.
  - 그러나 이러한 작가들에 대한 박해는 국제적인 여론을 통해 동독정부에 압력이 가해졌기 때문에 이들 비판적인 작가들의 활동을 완전히 금지시킬 수는 없었음.
  - 또한 동독내에서는 이들 작가들이 쓴 글을 서적으로 출판하는 것을 완전금지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으나, 서독에서 이들의 작품이 출판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음.
  - 이러한 분류에 속했던 주요 작가들은 Stefan Heym, Christa Wolf, Christoph Hein, Gabriele Eckart 등을 들 수 있음.

### ③ 양심과 종교의 자유 관련

- 국제인권협약 제18조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종교와 세계관에 따라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유지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약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동독정부는 UN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인권규약은 지키되, 다만 교회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주권과 헌법과 법질서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음.
- 동독에서 종교자유 침해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단체 보다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고백을 통해 반체제적 활동을 하는 각 개인들을

대상으로 가해졌는 바, 주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신교의 보호아래 이루어졌던 평화운동·환경보호운동 단체의 회원들이 박해의 주대상이었음.
  - 부모가 기독교인인 자녀들은 상급학교인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에서 불이익을 당했음.
  - 기독교적인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교사로서 임용되는데 제한을 받았음.
  - 종교적인 이유로 학교에서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경우는 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웠으며, 군복무 자체를 거부한 경우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았음.
- 국가의 공권력행사에 대해서 종교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활동을 하는 평화 - 환경보호운동단체들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는 있었지만,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가해지는 인권침해를 전부 보호해 줄 만한 능력은 없었음.

#### ④ 법적인 보호 관련

- 국제인권협약 제 14조는 재판의 공개와 변호인의 선임과 변호업무에 대해 피고인이 알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동독에서는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구금, 형사처벌이 빈번하여 이러한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음.
  -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접견금지 및 방해
  - 피의자가 Stasi에 의해 조사를 받은 경우, 작성된 조서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강박에 의해 서명하는 사례
  - 요청한 법전과 기소문 등이 전달되지 않거나, 기소문이 서면으로 전달되지 않고 간수가 잠깐 읽어주는 식으로 전달되는 사례
  - 재판의 공개는 형식적으로만 보장되어 있고 실제로는 제한된 당관리나 Stasi 요원들만이 방청이 허용되는 사례

## ⑤ 교도소에서의 가혹행위, 고문

- 국제인권협약 제 7조에는 고문, 비인간적인 가혹행위나 처벌등을 무조건 금하고 있음.
  - 동독은 UN 인권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어떠한 형태의 가혹행위나 고문은 그들의 법적·도덕적인 기준에 합치하지 않으며, 결코 그런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음.
  -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행형시설내에서의 육체적인 고문이나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정도면에서 심하게 동독측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 않으나, Stasi에 의해 체포 구금된 사람들에게 대한 심리적인 압박,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을 구속한다는 위협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지적되었음.
  - 행형시설내서의 간수들의 폭력행사나 구치소에서의 고문 등은 동독내에서 일상적으로 빈번히 이루어지지 않는 않으나, 가끔 그런 사례들이 알려졌으며, 행형시설 자체가 매우 열악하여 서방측 기준으로 볼 때 인도적인 수감생활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음.

## 라. 국제적 비난에 대한 동독의 대응

- 동독측은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자국의 인권상황 비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지적에 대해 소극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내정간섭이라고 하여 대응을 하지 않거나, 국제인권협약에서 유보조건으로 허용된 예외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대처해 나갔음.
- 그러나 동독은 국제인권협약에 서명을 하였고, 또한 CSCE에 서명한 만큼, 어쨌든 회원국들이 제기하는 인권상황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야했고,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
  - 만약 동독측이 국제인권협약에서 허용된 제한조건을 들어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려고 할 경우, 회원국들은 구체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인권의 보장이 어떻게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해치는지에 대해 해명을 하라고 따지는 경우가 많았음.
- 동독지도부는 서방측의 인권보장에 대한 요구를 동독내에 반체제

세력을 지원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공세로 받아들이고, 서방측이 제기한 인권의 보장이 결국 잠재적인 체제반대세력을 양성하게 된다는 기본인식을 갖고 있었음.

- 결국 UN 인권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동독체제 내부의 정치적인 안정화 정도에 대해 국제적으로 보고하는 셈이 되었음.

## 마. 서독정부의 대동독 인권정책

- 동·서독은 기본조약 체결시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동 조약 제2조에 국제 연합 헌장의 제원칙을 열거하면서 “인권의 보호”(Wahrung der Menschenrechte)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서독측의 요청으로 기본조약에 이 조항이 삽입되었음.
- 서독연방헌법재판소는 1973.7.31 동·서독 기본조약에 대한 판결문에서 후반부에 동·서독 양측이 이러한 기본조약체결에 따라 존중해야 할 기본적인 인권 보장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언급하고 있음.
  - 동·서독인들에 대한 서신, 우편·통신 비밀 보장은 제한하거나 완화할 수 없고,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을 제한할 수 없음.
  - 라디오, TV 제작 및 방송과 관련하여 동독측이 원치않는 방송을 금지시킬 수 있는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되며, 서독측은 방송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항에 동독측과 합의하면 안됨.
  -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서 동독측이 원치않는 단체가 결성되어 이 단체의 목적과 선전활동이 조약의 정신에 일치하지 않으며 내정간섭을 행하고 있다고 동 단체를 금지하라는 요청이 있더라도, 서독측은 동 단체가 기본법질서를 준수하는 한 이를 금지해서는 안됨.
  - 동독측이 서독측의 내정간섭을 구실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주민들의 이익의 표출을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조약을 위반하는 것임.
  - 주민들의 자유왕래를 방해하는 내독간 국경선의 현실 즉 장벽,

철조망, 죽음의 사선, 탈출자에 대한 사격명령 등은 조약의 정신과 합치하지 않음.

-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러나 서독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구동독 지역 주민들에게도 효력을 미쳐야만 그들에게 실제적인 인권 보호를 법률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음.
  - 기본조약은 양독국민들의 국적문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서독기본법 제 16조 및 116조 1항과 기본조약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동독주민들도 서독주민들과 같은 단일 독일 국적을 갖고 있었음.
  - 그러나 서독의 기본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기본법 제 23조에 의하면 서독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동독주민들이 서독의 기본법에 의한 인권의 법적 보호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법이 적용되는 서독지역에 들어 와 있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동독지역에 머물고 있는 동독주민들에 대해 서독의 기본법이 규정한 인권의 보장을 동독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내독관계에서 법적인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야 함.
- 결국 서독측은 양독간의 합의에 의한 동독주민들의 인권상황개선은 불가능하므로, 양독국가가 인정하는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서만 동독에 대한 인권문제를 효과적으로 거론할 수 있게 되었음.
  - 특히 동구 공산주의 국가도 모두 서명, 비준동의하였던 UN 국제인권협약 ( 시민적·정치적 제 권리에 관한 협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제 권리에 관한 협약) 이 최초의 보편적이고, 국제법적으로 성문화된 하나의 인권문제에 관한 장전이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서독은 동독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개선을 촉구할 수 밖에 없었음.
  - 서독측 문헌에 나타난 UN 국제인권협약과 관련하여 동독측에 제기한 서독측 기본입장은 다음과 같음.
    - 국제인권협약에 보장된 인권의 상대화와 인권보장의 우선순위

설정은 곤란함. 예를들어 동독측이 중요시하는 노동의 권리는 서독측이 중요시하는 거주이전 및 이주의 자유보다 우선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음.

- 국제인권협약 그 자체가 인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기준이며, 이 협약에 서명한 이상, 다른 국가에게 인권실현을 촉구하며 강요할 일반적인 기준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음.
- 인권 (Menschenrechte)을 계급적인 권리 (Klassenrechte)로 이해하며 특정한 주민, 특정한 집단에게만 유리하게 보장하는 그러한 인권의 정치화 현상에 반대함.
- 인권침해사태가 곧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인권침해의 범죄화에 반대하는 바, 예를들어 동독주민에 대해 이주불허결정을 하고 이들을 다시 동독형법을 적용, 처벌하는 일이 없어야 함.
- 서독정부의 대동독 인권정책은 역대정부의 독일정책과 그 맥을 같이 하였음.
  - 독일정책은 평화, 자유(인권), 통일 3가지 헌법적 명제에 의해 결정되었으나 어느 명제에 중점이 두어졌는지는 시대상황에 따라 달랐음.
  - 주민들의 자유(인권) 보장 명제가 국가적 통일의 달성 명제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에 도달했으나, 동독(동구권 포함) 측과 화해를 통한 독일내, 나아가서 유럽내의 평화확보라는 명제가 다른 두가지 명제보다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단이후 역대 정권에 따라 국민적 합의가 변해왔음.
  - 시민당이 새로운 동방정책을 추진한 이후부터는 점차 평화보장 명제의 중요성이 커져 갔으나, 결코 평화정책 · 화해정책 추진의 이유로 인권의 보장문제가 대동독정책에서 그 중요성을 잃었던 적은 없다고 보아야 함.

- 평화·화해정책을 통해 오히려 체제개방에의 양보를 동독측으로부터 얻어내었으며 동독주민들의 분단에 따르는 고통은 오히려 완화되어 갔으며 이에 따라 동독주민들의 인권상황은 더욱 개선되어 갔다고 볼 수 있음.
  - 실제인정을 통한 동독측의 양보를 유도, 가족제상봉, 여행·방문조건의 완화, 방해받지 않는 서독 TV·라디오 시청이 가능해졌고 서독측 언론인들의 취재활동이 용이해질 수 있었음.
  - 물론 이러한 동독의 대서독 완화조치들은 충분한 것은 아니었지만, 서독측에서 볼 때 냉전시대에 동독의 인권문제를 공개적·선언적으로 거론할 때 보다는 그 실제결과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며 구체적인 성과가 많은 것이었음.
- 실제 독일정책 추진에 있어 화해정책을 구실로 인권과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을 결코 완전히 포기할 수 없었지만, 상대방에 대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서독의 기본법에 보장된 기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 수도 없었음.
  - 공개적으로 동독을 비판하는 기준은 해석상의 여지가 있지만 상호비준한 국제인권협약이 되어야 했으며, 이러한 기준을 통한 서독측의 동독에 대한 비판은 좀더 관계개선에서 현실적인 결과를 염두에 둔 온건한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었음.
  - 구동독 주민들에게 좀더 많은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서독지도부는 동독정권담당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화해·협력, 상호이익존중 (Interessenausgleich)을 필수적이라고 간주했음.
  - 동독지도부가 서독측의 화해정책 실시 이후 특히 동독체제가 서독체제보다 주민들로부터 확고한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체제의 취약점을 더욱 의식하게 되었으며,
  - 서독측은 평화의 보장에 역점을 두고 화해정책을 추진한 반면, 동독측은 체제개방에 따른 부담이 증가하고 잠재적인 체제반대세력이 동독내에 양성화되어, 체제의 존립문제로 화해정책을 바라보게 됨에 따라, 서독측에게는 더욱 조심스러운 대동독정책이 요구되었음.

- 따라서 서독측은 인류 보편의 가치인 민주화와 자유·인권의 보장문제는 포기할 수 없는 대원칙으로 설정해 놓고, 동독주민들의 실질적인 조건개선을 위해 화해정책을 추진하며 조심스런 곡예를 해 왔다고 할 수 있음.
- 동독측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서독측은 국제적인 회의를 통한 간접적인 논란제기와 비밀협상 채널을 통한 “특별노력” (besondere Bemuehungen) 등 이중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점진적으로 인권상황이 개선되도록 시도하였음.
  - 점진적인 개선에 만족하지 않고 동독정부에게 전반적으로 인권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여타의 협력관계를 동결시킨다는 전략은, 소망스러운 목표이기는 해도 동독으로 하여금 점진적인 인권상황의 개선마저 포기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거의 채택되지 않았음.
  - 동독정부가 체제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지 않을 최소한의 인권보장과 인권상황의 점진적인 개선을 하는 선에서 만족하지 않을 수 없었음.
  - 서독정부는 내독관계성 차관을 실무책임으로하여 구동독의 정치범 석방과 이산가족 재상봉을 중심으로 동독주민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동독측과 비밀협상을 통해 꾸준히 추진해 왔음.
- 서독측 특히 사민당측의 정치가들은 동독주민들의 인권보장 노력이 동독정부의 주민들에 대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제 권리 특히 이주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결코 더 이상 체제의 존립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로 인해 동독의 체제가 와해되지 않는다고 동독측을 설득하기도 하였음.
  - 그러나 동독 지도부는 서방측이 요구하는 동독주민들의 인권 보장 문제를 정치·사회적 체제 통합을 저해하는 체제의 존립문제로 간주하여 일정한 선 이상의 타협의 여지가 없었음.
- 그러나 서독측의 비밀노력이 계속되는 한 결코 국제적인 논란을 통해 직접 구동독의 인권침해문제가 구체적으로 해결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음.



## ① 동독 지역 정치범 석방을 위한 내독간 비밀거래(Freikauf)

### 〈협상 및 동·서독의 입장〉

- 전독성 (Das Ministerium fuer gesamtdeutsche Frage, 내독관계성 전신)은 베를린장벽 설치 이후 분단고통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주민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일환으로 두 가지 특별한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해 온 바 있음.
  - 정치범 석방을 위한 지불거래 (Freikauf) : 동독의 감옥에 수감 중인 정치적인 박해자를 서독에서 비밀거래를 통해 대가를 지불하고 서독으로 석방해 줌.
  - 이산가족 재상봉 (Familienzusammenfuehrung) : 동독 정부와 협상을 통한 이산가족의 합법이주 추진.
- 베를린장벽 개방 이후 언론매체를 통해 그러한 정치범 석방을 위한 지불거래 사실이 단편적이지만 구체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음.
  - 내독관계성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인사들의 증언과 회고록에 의하면 연방정부예산을 동독 정부에 지출하여, 총 33,755명의 정치범을 석방 하였음.
    - 아울러 비밀거래를 통해 이주가 허용된 정치범들의 가족 또한 자동적으로 이주가 허용되도록 동·서독간 협상이 계속 되었는데 처음에는 가족들이 6개월 후에 왔으나, 나중에는 상봉기간이 짧아져 3~5주만에 재결합됨.
    - 이를 통해 2천명의 어린이가 부모와 함께 살도록 허용되었고, 25만 명의 이산가족이 재결합되었음.
  - 이 사업을 시작한 당시에 구동독에는 1만 2천명의 정치범이 있었으나, 1989년 말에는 2천 내지 2천 5백명으로 줄어 든 것으로 되어있음.
  - 이러한 정치범 석방을 위해 서독측이 동독에 지불한 대가(Gegenleistung)

는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1인당 초창기부터 1977년까지 40,000 DM, 1977년부터 1989년까지는 95,847 DM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지불하였음.

-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간을 매매한다는 국제여론과 동독정부의 체면을 감안, 대가는 총량으로 계산,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동독에서 필요한 물건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처음에는 사과주스와 같은 음료수, 열대과일 등을 동독측이 요구 하였으나, 나중에는 주로 공산품으로 석유, 기계 등 고가품목을 지급하였다고 함.
- 석방대상은 주로 체제저항운동을 하다 투옥된 인사나, 동독으로 불법으로 탈출하려다가 투옥된 사람으로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정치적 박해자”에 한정하였음.
  - 초창기에 동독에서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 “일반 형사범”도 서독으로 방출하려 하였으나, 서독측에서 심사하여 밝혀지면, 대가지불에서 제외하였음.
- o 동·서독 간에는 이 비밀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서상의 합의나 조약은 없었으며, 서독정부는 정부예산으로 지원은 하였지만, 모든 거래는 변호사와 신고단체를 내세워 간접적으로 참여해왔음.
  - 기본조약 체결이후에도 기본적으로 양측의 변호사를 통한 간접적 협상 방식에 변함이 없었으며, 상주대표부 설치 이후에도 이 업무는 상주 대표부로 이관되지 않았음.
  - 서독측에서는 석방자 명단 작성 및 예산지원에 내독관계성 차관이 직접 관여했으나, 초창기에는 서독출신 변호사를 내세워 접촉했으며, 내독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에는 상주대표나 내독관계성 차관이 직접 동독 변호사와 협상을 하였음.
    - 거의 30년간 이 업무를 담당해 온 Wolfgang Vogel이라는 동독측 변호사는 카톨릭 신자이자 SED 당원이었는데 호네커와 서독정부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고 함.

- 석방요구자의 명단이 서독측으로부터 동독측으로 전해지면 동독측은 내무성, 국가보안부 (Stasi), 검찰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어 석방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함 (특히 Stasi의 형사범처벌 및 이주문제 담당부서 적극적으로 관여).
- 일단 명단이 넘어오면 1년 정도 걸려 그 석방여부가 결정되었음.
- 동독국민들 사이에 이러한 서독정부의 사업이 알려지자 동독지역에서 서독으로 불법탈출자가 급증함.
  - 특히 기술자와 고급 인력의 경우, 합법이주를 신청하여도 잘 허가해 주지 않고, 3~4년씩 기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탈출을 시도하여 실패하더라도 서독측에서 구제해주면 오히려 자유스러운 상태가 되는 기간이 짧아진다고 판단한 사람도 많았다고 함.
- o 양측이 이러한 정치범 거래 및 인도에 합의된 배경은
  - 서독측으로서는 물질적인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인도적인 견지에서 분단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 동독측은 체제유지에 부담이 되는 인물들을 추방함으로써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수 있었고, 또한 서독측이 지불한 대가는 이제까지 동독에서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주로 정치범들로 지식인, 기술자들이 많았음) 국가가 투자한 비용에 대한 대가로서 당연히 서독으로부터 보상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임.
  - 실제로 동독 변호사 Wolfgang Vogel은 “동독에서는 형사처벌이 그 대상자가 전체 사회에 끼친 손해에 따라 내려진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생소할지 몰라도 이러한 형사처벌 대상자들이 끼친 손해는 물질적으로 보상되어야 하며, 이러한 발상이 서독과의 물질적 대가를 전제로 한 석방거래를 가능케 한 동독지도부의 의사 결정 근거이다” 라고 한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바 있음.
- o 통독후 과거 서독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꼭 정치범 석방을 위해 거래를 했어야

했는가 하는 의문과 아울러 꼭 그 댓가로 그러한 물자제공방식을 택하는 길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하는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음.

- 구동독 정치범 석방을 위해 서독측이 대가로 지불한 원자재 등 물자들이 직접 동독주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해 쓰여졌는가, 아니면 권력자들의 수중에 들어갔는가 하는 문제가 과거청산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제기는 과거 서독정부의 대동독 화해정책이 동독체제의 붕괴를 지연시켰는가, 아니면 가속화시켰는가 하는 논의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남북관계 정책결정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임.

- 1992년 8월 28일자 “Die Zeit”지는 정치범 석방을 조건으로 동독에 제공된 물자들이 동독주민들의 부족한 물자공급문제 해결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고, 권력자의 권력기반을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했다고 과거 서독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바 있음.

· 등 기사에 의하면 제공된 물자가 동독 대외무역총괄회사인 Koko를 통해 외국에 재판매되고 그 대금 중 수십억 DM이 호네커의 비밀구좌로 들어갔으며 서독측의 관계자들 특히 연방내독성 (내독성 차관이 실무책임자였음)이나, 신교복지구호단체인 Diakonisches Werk의 담당자, 물자공급업체 등은 이를 알고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음.

o 정치범 석방거래정책 추진의 정당성에 대한 내독관계성 관계자 등 정부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동독의 체제가 무너져 내리고, 서독의 체제가 완전히 승리를 거둔 오늘날의 시각만으로 보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당시 동독은 내독관계에서 실체를 인정받았던 엄연한 대화의 상대로서 서독측을 견제하고 협상에 묶어 둘 중요한 견제수단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것임.

· 서독측은 베를린의 서독편입문제, 주민들의 자유왕래문제, 동독 주민들의 분단고통완화 및 자유와 인권보장을 위해 동독과 타협하고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음.

- 특히 정치범 석방, 가족 재상봉 등 인도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동독에게 양보하는 것이 불가결했으므로 서독정부가 특별사업으로 지정, 이를 공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 통독이후에 평가해 볼 때, 결국 이러한 정치범 석방 거래는 동독정권의 내적인 정통성을 본질적으로 약화시키면서 결국 체제붕괴에 일조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정치적인 의의를 간과할 수 없음.
- o 이러한 정치범 석방 거래가 동독체제 특히 동독경제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됨.
  - 동독측은 애초에 대가로 서독측에게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외환을 요구했으나, 서독측은 동독측과 타협을 통해 돈 대신 물자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음.
    - 냉전시 서방측의 주요 전략은 경제적인 봉쇄정책과 아울러 동구권이 경화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었는데, 서독 또한 내독관계에서 경화를 지불할 수는 없었음. (예를들어 서독이 동독측에 DM으로 지불한 통과여객일괄금 (Transitpauschale)은 1972년부터, 동독 고속도로건설 등에 자본참여는 1976년에 가서야 이루어졌음.)
    - 동독측으로 금수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전략물자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예상했음. (돈으로 지불했을 경우 이 돈으로 동독은 용이하게 외국으로부터 직접 전략물자를 구입할 수 있다는 고려하에)
    - 서독측은 아울러 물자공급을 통해 서독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확보되는 효과를 노렸음.
  - 그러나 제공된 물자들이 외국에 재판매되어 동독의 외환을 확보하는데 긴급하게 쓰이는 것으로 판명되었음.
  - 제공된 물건이 직접 또는 동독에서 재가공을 통해 제3국으로

판매되어 동독이 외환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거나,

· 서독으로부터 물자공급이 아니었다면 외국에서 수입해야 했으므로 외환을 절약하여 결국 외환을 확보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었음.

- 문제는 이렇게 제공된 물자가 재판매되거나, 투자되어 동독국민경제 전체에 가시적인 도움이 되었거나 동독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데는 실패했다는 점임.

- 이로써 서독정부가 협상에서 좀더 명확하게 제공된 물자의 용도를 지정하거나 물자 사용시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했어야 했는데, 이를 동독측에게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독정부의 정치범 석방 거래시 대동독 정책을 비판해 볼 수도 있음.

· 그러나 내독관계에서 동독정부는 늘 동독주민을 담보로 협상시 서독에게 강경한 입장을 취했고, 또 서독에 대해 늘 독립국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콤플렉스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서독측이 협상에서 동독측에게 물자사용의 제한을 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음.

- 또한 제공물자를 주민들을 위해 쓰도록 지정하고 이를 동독이 받아 들였다한들 효과면에서 볼 때 동독주민의 체제에 대한 만족도를 더욱 증가시켜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동독체제 자체를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갖게되는 모순이 있을 수 있음.

### 〈거래의 시작〉

o 전독성 (내독관계성의 전신)의 정치범 석방을 위한 인도적인 특별노력사업 (humanitaere Bemuehungen fuer politische Haeftlinge)은 1963년부터 본격화되었으나, 그 전부터 동독지역의 정치범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음.

- 동독지역의 정치범 (Politische Haeftlinge)은 크게 동독 공산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구속된 나찌추종자 또는 전범자들과 동독

체제를 비판하거나 서독으로 탈출하려다 구속된 공화국 도주자 (Republikflucht)들인 국가보안사범으로 크게 대별되었음.

- 전범자는 1945~1978년 동안 12,800명 정도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국가보안사범은 1950~1984년까지 140,000 정도가 형사처벌을 받았음.
- 전체 정치범 중 1956년부터 국가보안사범의 비율이 점차로 늘어났으며, 베를린장벽이 설치된 1961년부터는 서독으로 탈출하려다 구속된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났는데, 1969~1976년 동안 전체 정치범 중 국가보안사범의 비율이 75%를 차지했음.
- 동독의 사법부와 검찰은 “법은 지배계급의 권력행사의 특별한 형태”라는 그들의 정의에 따라, 동독 사회를 개조하는데 공산당 통치권력의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러한 사법부의 정치권력의 시너화로 정치목적으로 구속 수감된 자들의 인권은 무참히 유린되었음.
- 종전 직후부터 신교단체는 소련점령지역에서 전범이나, 정치범으로 몰려 구속수감되어 있는 군인 또는 민간인들을 돌보아왔음.
- 양쪽에 분단국가가 수립된 이후에는 서독 외무성은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 Behling 주도)을 개설하고, 분단에도 불구하고 동독측과 아직도 접촉을 갖고 있는 사회단체를 동원, 동독의 정치범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왔음.
- 냉전이 한창이던 1950년대만해도 동·서독은 동·서베를린의 왕래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정치적·군사적으로 완전한 분단은 불가능했으며, 국경선넘어 각 사회 단체들의 접촉과 서신연락이 가능했었음.
- 당시 동독의 정치범 현황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서독 정부에 구조를 요청해 왔던 서독의 주요 단체는 실향민 단체, 사회 구호 복지 (적십자사, Caritas), 노조, 동베를린에 지부 (Ostbuero)를

갖고 있던 정당 등이었으며, 아울러 서독지역으로 탈출한 피난민들도 자신과 주변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음.

- Behling이 주도하던 변호사 사무실이 전독성 내로 흡수되어 전독성 내에 “법률 보호실” (Rechtschutzstelle)이 개설되었으며, 이 “법률 보호실”이 동독지역의 정치범 현황과 법률구조활동에 대한 중심지가 되었음.
  - 1955년부터는 이 법률보호실은 동독의 변호사들과 연계를 갖고, 이들 동독 변호사들에게 정치범들의 변호와 법적인 보호를 요청했음.
  - 비록 우회적인 통로를 통해 간접적인 형태를 띠었지만 이러한 서독 변호사들의 법률구조활동은,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던 동독지역 정치범들에게는 커다란 위안이자, 희망이었음.
- 동·서독 변호사들 간의 연락과 상호업무협조를 위해서는 중개인이 필요했는 바, 동독에서는 Wolfgang Vogel 변호사가 서독에서는 Juergen Stange 변호사가 각각 중개인으로 상대편 지역을 방문하면서 활동했음.
  - 동베를린에서 변호사를 개업하고 있던 Wolfgang Vogel은 1957년부터 서베를린지역에서도 변호사 개업이 허용되었는데, 동·서독 지역에서 동시에 변호사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연고로 서독의 변호사들과 접촉하며, 정치범 법률구조와 관련한 중개역할을 하였음.
    - Wolfgang Vogel은 1963년부터 서독정부의 정치범석방 특별사업이 시작된 이래 통독직전까지 동독측의 최고위층의 신임을 받고 비밀리에 서독측과 협상을 벌이고 정치범 또는 스파이들의 석방과 교환에 참여했던 실무주역으로서 활동했는 바, 통독 이후에는 Stasi의 조정하에 비공식 정탐요원으로 활동했다는 비난과 함께 정치범 석방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건수임 의뢰인들을 강박으로 위협하며 이들 재산을 부당하게 갈취했으며, 변호사 활동시 세금을 포탈 혐의로 기소된 바 있음.



- 서독출신 변호사인 Juergen Stange는 1961년 베를린장벽이 설치된 후, 서베를린 지역 주민이나 변호사들의 동베를린 왕래가 완전히 차단되자 서독지역 중개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음.
- 당시 동베를린은 서베를린인들의 왕래를 완전히 차단했으나, 기타 서독지역 출신의 출입은 제한적으로 허가했기 때문에, 서베를린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설하고 있었지만, 연고지가 다른 서독지역 (Braunschweig)인 Juergen Stange는 중개인으로 동베를린을 왕래하며 법률구조활동을 할 수 있었음.
- 이러한 정치범 현황자료를 수집하고 변호사를 대주는 법률구조활동의 범위를 넘어서, 1963년부터 서독정부가 관여하기 전에 물질적인 대가(돈)을 사용해 정치범을 석방한 사례가 극비에 붙여졌지만 있었음.
- 교회단체가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는데, 교회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동독변호사 Wolfgang Vogel을 통해 2명의 정치범을 알려 지지 않은 대가를 지불하고 비밀리에 석방한 것으로 Ludwig Rehlingen (전독성의 베를린지소 정치담당으로 동독정치범 석방 사업을 최초로 정부에 건의하여 이 사업을 주관했으며, 후일 내독 관계성 차관이 됨)는 그의 책자에서 밝히고 있음.
- 당시 교회는 석방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려 했으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만약 이 사업을 확대추진하려면 정부차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
- o 정부차원에서 전독성이 물질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정치범 석방을 위한 특별사업을 비밀리에 시작한 것은 1963년부터임.
- 이 사업의 초창기 실무주도자였던 Ludwig Rehlinger 는 “적으로부터 억류되어 있는 자국민을 돈을 주고서라도 구해오는 일은 역사상 늘 있어왔으므로” 동독과 이러한 협상을 하는 것이 비도덕적이지 않고 오히려 인도주의적이라고 보았음.
- 이러한 발상에 대해 전독성의 간부들은 대부분 거부반응을

보였는데, 당시 보수당인 기민당 출신 간부들은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이지만 정치범 석방을 위해 돈을 주고 공산 불법체제와 인신매매를 한다는 자체가 비도덕적이라고 보았음.

- 동독 변호사 Vogel은 서독 변호사 Stange를 통해 동독측이 서독측으로부터 물질적인 대가가 있을 경우 대규모로 정치범을 석방할 용의가 있음을 알려왔음.
- 서독측 “법률보호실” 변호사들은 동독측과 예상되는 대규모 석방 거래에는 재정적·법률적·정치적인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했기 때문에 연방정부 (전독성) 의 결정을 기다려야 했음.
  - 정부가 아닌 사회단체가 이 일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래에서 동독측이 요구하는 대가지불을 위해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했고, 냉전기였던 만큼 상대방지역 국가기관 또는 단체와 회합 또는 통신 등 활동을 위한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정부에서 이 일을 추진할 수 밖에 없었음.
- 서독 “법률보호실” 변호사들은 당시 정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베를린 출신 신문재벌인 Axel Springer을 움직여 당시 전독성장관인 Rainer Barzel에게 이 사업추진을 요청했고, Barzel은 보수당인 기민당으로서는 정치적인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최고위층과 협의를 했음.
  - Barzel은 아데나워 수상, 수상실장관, 재무성장관, 기민당 원내의장들과 협의를 거쳐, 이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을 얻어 냄.
- 이러한 서독정부 결정은 Stange 변호사를 통해 동독측에 전달되었으며, 동독측은 비밀리에 이 사업이 추진되는 조건으로 1,000명의 정치범을 돈을 받고 석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음.
  - 아울러 동독은 서독측에게 요구하는 석방자 명단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음.

- 양측 정부의 기본적인 결정이 있는 후 서독측은 “인도적인 분야에서 연방 정부의 특별노력” (Besondere Bemuehungen der Bundesregierung im humanitaeren Bereich) 이라는 사업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동독측과 비밀리에 사업을 시작했음.
  - 전독성 베를린지소 정치담당인 Rehlinger 가 실무주무를 맡아 우선 “법률보호실” 에 정리되어 있는 12,000명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후 1,000명을 선발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음.
    - 극비로 이루어진 이 작업은 보안유지문제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자문을 받을 수 없어 매우 어렵게 이루어졌는데, 선발시 고려기준은 다음과 같음.
      - · · 구속과 판결이유, 형량, 수감자의 건강상태, 수감자의 가족 상황, 수감자의 경력 등이었음.
  - 동독측은 실제로 이 사업의 실행단계에 이르자 석방자 범위와 관련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음.
    - 베를린 장벽 설치 이후 장벽의 첫 희생자가 발생한 이후, 서독내에서 대동독 강경론이 우세한 가운데, 서독의 보수당 정부가 이 비밀 사업을 선전적으로 이용하여 동독을 궁지로 몰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이 동독지도부에 일기 시작했음.
    - 동독측은 처음 사업으로 1,000명은 너무 많으니, 500명으로 줄여 줄 것을 요청했고, 서독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이 있자 계속 이 사업 규모의 축소를 요구하여 100명, 50명, 10명, 최종적으로는 8명으로 결정이 되었음.
  - 서독측이 애초에 기대한 규모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첫 시도였던 만큼, 동독측으로부터 지속적인 사업에 대한 보장을 얻기 위해 동독측의 요구에 따르기로 하였음.
    - 합의에 관한 그 어떤 문제상의 협정도 없었고 다만, 양측 정부

최고위층의 의증을 전하는 동·서독 양측 변호사들에 대한 상호 신뢰에 의해 이 일은 진행되어야 했음.

- 동독측은 “최고위층”의 재가를 얻어 검찰총장 Josef Streit와 변호사 Vogel이 Stasi의 관여하에, 서독측이 제시한 명단을 기준으로 8명의 선발작업을 벌였음.
  - 8명의 최종 선발과 관련하여 동독측은 비밀리에 추진되는 사업이었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많은 고려를 하였음.
  - 동독측은 이 선발과정에 고위층이 개입되어 있다는 확신을 서독측에 주기 위해, 될 수 있으면 다양한 죄목으로 여러 곳에 분산 수감되어 있는 정치범을 선발했음.
  - 특히 당시만해도 서독측이 제시한 명단에는 소련점령치하에서 소련군정에 의해 판결을 받은 정치범이 많았지만, 동독은 소련을 의식하여 이 숫자를 될 수 있으면 줄이려 하였음.
- 개략적으로만 파악된 최종적으로 확정된 8명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소련군정 재판소에 의해 종신형을 받은 1명
  - 서독기민당, 사민당, 서독자민당, 서독노조와 각각 연계를 갖고 소위 간첩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된 정치적 확산범 각 1명씩 4명
  - 자발적으로 동독체제의 폭력지배에 대해 항거하다 구속된 정치범 1명 등임.
- 서독측은 이들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야 했는데, 사업의 첫 해인 1963년도에는 서독측 중개 변호사인 Stange를 통해 8명에 대해 총 320,000 DM이 현금으로 동독측 변호사 Vogel에게 전해졌음.
  - 각 정치범 1인에 대한 가격이 동·서독 양측에 의해 협상되었는데, 정치범의 정치적인 비중과 개인적인 학력·경력을 기준으로 가격을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얼마를 지불했는지는

밝혀지고 있지 않음.

- 동독측은 서독측이 지불하기 전에 우선 3명을 석방하여 사업진행의 성의를 보였으며, 서독측으로부터 대가가 전달된 이후 나머지를 석방하였음.
- 서독측 변호사 Stange가 동베를린에서 이들을 호송해왔으며, 서베를린에서는 “법률보호실”로 넘겨져 서독에서 정착하는데 대한 도움을 받았음.

### 〈지불방식 및 거래〉

- o 국가적 차원에서는 1963년 (Adenauer 수상, Bazel 전독성 장관시) 처음으로 32만 DM의 현금을 지불하고, 8명의 정치범을 석방해 왔음.
- 그러나 이러한 DM 직접 이전은 동독과의 정치범 석방 거래 지불에서 유일한 예외로 냉전시 경화인 DM을 동독에 직접 이전하는 것을 서방동맹권과 보수당인 기민당 정치가들은 허용하려 하지 않았음.
- 당시만해도 서방측의 평화전략이 태동되는 단계에 불과하고 대 동구권 경제붕쇄정책을 철칙으로 삼았던 엄연한 냉전시대였으므로, 동독으로 유입된 경화가 군사 및 전략물자 구입에 쓰여지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이었음.
- 서독정부는 따라서 기존의 내독무역상의 물자제공 (물론 내독무역은 청산단위 VE를 통해 상호정산하지만, 정치범 거래에 있어서는 서독측의 일반적인 이전임) 방식을 취하기로 결정함.
- 1964년 7월 연방정부가 본격적인 정치범 석방을 추진하면서 대가로 교회를 통한 물자지원방식을 택하기로 방침을 확정함.
- 서독교회에서는 1957년부터 동독의 교회와 교회산하기관의 운영을 돕기 위해 서독으로부터 외환의 이전이 불가능함을 감안 동독측의 대외무역성을 파트너로 하여 동독이 필요한 산업용 원자재를 공급하고, 그 금액만큼 동독정부가 동독의 교회를 도와주는

방식을 취해 왔음.

- 서독정부는 인신매매에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또한 외환을 동독에 지급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 정치범 석방거래시 교회를 통한 이러한 물자공급방식을 택하기로 함.
- 교회측에서는 이러한 두가지 사업을 구별하기 위해, 순수하게 동독측 교회를 돕기위한 사업을 A형 교회사업 (Kirchengeschaefit A), 정치범 석방을 위한 사업은 B형 교회사업 (Kirchengeschaefit B)라고 명명했음.
- 당시 내독관계성은 신교구호단체인 Diakonisches Werk 부회장인 Ludwig Geissel 에게 전권을 위임했고, 1982년까지 Geissel이, 그 이후에는 Diakonisches Werk 회장이 A형 교회사업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 B형 교회사업을 수행했음.
- B형 교회사업은 기관으로서 Diakonisches Werk 에 연방정부가 전권을 위임한 것이 아니고, A형 교회사업을 추진했던 Geissel이나 그 이후 회장개인에게 전권을 위임한 것이었으나, 사업추진을 위해 Diakonisches Werk 실무자들의 협조를 받았음.
- o A형 교회사업의 경우 서독측 주립교회 전권위임자 (초기 Geissel)가 동독측의 대외무역성의 대표자와 협상을 벌였는데, 1966년 대외무역성 산하에 외환용 대외무역총괄회사 “Koko”가 신설되면서부터 Koko의 책임자였던 Schalck (대외무역성 차관이자 동독외환확보의 총책이었으며, 내독관계 비밀협상의 동독측 주역이었음)와 제공물자에 관해 협상을 벌였음.
- 서독교회는 동독측이 요구하는 물자중 COCOM - list 에 들어있지않는 물자를 국제시장에서 신용하는 회사를 통해 EKD (신교연합회) 예산으로 구입하여 동독에 제공했음.
- 동독은 내독무역으로나 COMECON 국가로부터 유리하게 구입할 수 없는 산업용 원자재를 요구했는데, 주로 품목은 초창기 미국산 코우크스석탄, 면화, 철강석 등에서 나중에는 원유, 구리, 은, 고무원료, 주석원광, 수은, 산업용 다이아몬드, 원두커피 등

- 구입에 절대적으로 외환이 필요한 물품을 거의 망라하게 되었음.
- 이와같은 원자재는 거의 대부분 외국산이었으므로, 내독무역이 아닌 통과무역상의 물자공급으로 상품송장에 T (Warenbegleitschein T)로 표시되며, 서독연방경제성의 허가를 필요로 하였음.
  - 은, 옥수수와 같이 서독이 원산지인 품목은 내독무역의 일환으로 상품송장에 U (Warenbegleitschein U, U 는 unentgeltlich 의 약자로 무상이라는 표시임)로 표시되었으며, 내독무역 품목과 같이 제세공과금이 면제되었음.
- 이렇게 동독에 제공된 물품은 동독에서 현시가를 동독 마르크로 환산 (후일에는 외환용 마르크인 Valuta-Mark 로 환산) 동독 독일무역은행 (Deutsche Handelsbank)의 회계장부의 대변에 기입되고, 그 총액만큼이 교회를 위해 쓰여지도록 되어 있었음.
  - A 형 교회사업은 신·구교가 공히 재정부담을 하였던 바, 1957~1990 년간 총 28억 DM 어치를 동독에 공급했으며, 그중 21 억 DM은 신교가, 7 억 DM은 구교가 부담하였음.
  - 이러한 총물자공급액의 50%는 내독관계성의 예산 (예산항목 68521) 으로 보조되었음.
- o 정치범 석방을 위한 B 형 교회사업의 경우 1964년부터 A 형 교회사업방식에 따라 전적으로 내독관계성 예산을 통해 수행되었음.
  - 처음 시작 연도인 1964년에는 전적으로 동독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버터, 식용유, 커피가 전체 제공물량의 2/3에 달했으나, 1965년부터 산업용 원자재의 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함 (아래 도표 참조).

1964~1976 B형 교회사업에 의해 동독에 제공된 품목

단위 : 백만 DM

품목	상품상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원유	T	-	-	-	-	-	-	-	16.9	18.3	8.0	11.5	24.0	32.1
다이아몬드	T	-	11.8	-	-	-	7.0	7.7	22.0	10.1	4.5	8.0	12.0	10.5
구리	U	-	2.8	2.0	25.0	4.0	9.8	19.0	20.3	12.0	6.0	40.2	24.5	49.1
은	U	-	4.3	-	-	6.0	4.0	6.0	8.0	4.6	14.0	20.0	30.0	30.1
수은	T	-	-	2.7	-	3.5	-	3.5	2.0	4.6	1.5	2.5	7.5	8.1
질산은	U	-	-	-	-	-	-	-	1.0	7.0	-	-	-	-
주석	U	-	-	-	-	3.0	-	3.0	11.0	4.9	4.0	-	6.0	-
로듐	U	-	-	-	-	-	-	-	1.0	0.5	-	3.5	-	-
팔라듐	U	-	-	-	-	-	-	-	2.0	1.5	4.5	2.5	-	-
철광석	U	-	34.1	-	-	-	7.1	-	-	-	11.5	-	-	-
탄성고무	T	7.1	5.1	5.0	-	-	-	-	-	-	-	-	-	-
다른원자재		3.5	7.3	15.1	5.2	12.0	6.9	2.0	-	6.0	-	-	-	-
옥수수	U	2.7												
커피	T	8.5												
카카오 원두	T				1.3		10.0							
버터	U	13.9												
식용유	T	2.2	2.3											
		37.9	67.7	24.8	31.5	28.4	44.9	50.7	84.2	69.5	54.0	88.1	104.0	129.9

- 동독측은 제품결정시 1965년부터 소비제품보다는 외환절약 효과가 크고 국민경제전체에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산업용 원자재를 선호하였으며, 비밀협상에서 서독측에 의해 이러한 물자의 공급이 관철되지 않으면 정치범 석방을 하지 않겠다는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짐.

· 서독측은 당시 동독측의 이러한 요구를 승락하는 방향에서 정치적인 기본방향에 관해 결정을 하였으며, 결국 B형 교회사업에 있어서 동독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생활필수품이나 소비재만을 고집할 수는 없었음.

· 더구나 교회단체나 실무부처인 내독관계성은 이러한 정치적인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었음.



- 1970년대에 들어서는 산업용 원자재중 상품송장에 U로 표시된 품목보다 상품송장에 T로 표시된 국제현물거래시장에서 중개인을 통해 금방 상품화할 수 있는 물자 (Boersenwaren)의 비중이 커져 갔음.
- U로 표시되는 물자는 독일에서 제조·가공된 것으로서 동독으로 확실히 수송이 되나, T로 표시되는 물자는 외국산으로 연방경제성은 이 물자가 교회사업(A형·B형을 막론하고)인 만큼 외국에서 동독으로 수송되는 것에 대해 어떤 통제를 하지 못하고, 국제적으로 신용하는 회사를 통해 물자제공을 허가하기 때문에 이 물자가 동독에서 주민들을 위해 직접 소비되지 못하고 외국으로 얼마든지 재판매될 수 있었음.
- B 형 교회사업으로 제공되는 대표적인 물자는 원유, 산업용 다이아몬드, 구리, 은 등이었음.
  - 1979년 동독측이 U로 표시된 물품인 구리에 대해 산업기술상 가공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다른 T로 표시되는 품목으로 교체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는 이후, 80년대 말에는 B 형 교회사업 물품중 U로 표시된 물품은 은밖에 남지 않았음.
  - 이러한 B 형 교회사업 제공물자 품목의 변경은 “Koko”의 총책임 Schalck 의 전략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동독의 외환확보를 위해 국제시장에서 재판매를 염두에 두고 이러한 품목선택이 이루어졌음.
  - 심지어 U로 표시된 물품마저도 창고에 보관되었다가 후에 외환을 확보하기 위해 재판매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U로 표시된 물품의 재판매는 수송 및 창고보관 비용이 많이 들었음.
  - T로 표시된 물품 중 국제현물시장에서 인기있는 물자와 원유는 이러한 수송 및 창고보관비용을 들이지 않고 더 신속하게 관계서류(청구서, 품질보증서, 선하증권, 보관증명서 등)의 인도로 외환과 직접 바꾸어졌음.

- 동독이 B형 교회사업으로 제공받은 원자재를 해외에 재판매하여 벌어들인 수입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1990년 통독을 즈음해서 밝혀지기 시작했음.
  - Peter Przybylski는 구동독 정치국원들의 행적을 추적하는 책에서 이러한 돈이 1974년부터 동독 독일무역은행 (Deutsche Handelsbank) 서기장 구좌 (Generalsekretaerkonto) 번호 0628 에 입금됐다고 밝히고 있음. (Peter Przybylski 책 "Tatort Politbuero " Band 1,2, 1991·1992 참조)
    - 독일무역은행은 이 돈을 외국에 투자하여 외환증식의 수단으로 삼았음.
    - 호네커 당 서기장은 입금된 금액중 1년에 1억 Valuta-마르크까지 자유로이 사용 ·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음.
    - "Die Zeit"지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통독직전 1989년 12월 현재 구좌잔액은 2 105 781 064 (약 21억) Valuta-마르크로 나타나 있음.
    - 이 잔액은 통독이후 연방정부가 구동독의 모든 채권과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고스란히 서독측으로 되돌려졌음.
  - 연방은행이 추계한 바에 따르면 1963~1990년 동안 서독정부가 동독정부에 정치범 석방을 위해 지불한 대가가 총 34억 6천만 DM 임으로 (1 Valuta-마르크를 1 DM으로 환산할 경우) 총 지불액중 1/2이 넘는 액수가 쓰이지 않고 회수된 셈임.
    - 동독정부는 B형 교회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동독주민들을 위해 쓰지는 않았지만, 통독이후 반 이상을 남겨놓고 쓰지 않아 통독이후 서독측에 의해 회수되었음.
  - B형 교회사업 이외에 통과여객일괄금 (Transitpauschale) 등 그밖에 서독정부가 동독정부에 지불한 돈들이 이러한 서기장 구좌에 입금되어 자의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지 않음.

- 그러나 확실한 것은 동독이 주권국가로서 실체를 인정받고 있던 당시의 내독관계내에서는 서독이 동독으로 하여금 정치범 석방을 통해 획득한 돈을 동독주민들을 위해 유용하게 어떻게 쓰라고 강요할 수는 없었다는 사실임.
- 그것은 “접촉을 통한 변화정책”으로 특징지워지는 내독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서독측이 감수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희생이었음.
- o 서독정부가 1970년대부터 동독에 대해 외환을 다른 경로 (통과여객일괄금 등) 를 통해 송금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B형 교회사업의 경우도 차라리 직접 DM을 은행을 통해 송금했으면 불필요한 비용의 절감과 물자거래에 따르는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 이미 70년대초 대동독 화해정책이 추진되면서부터는 동독이 외환을 획득하는 것을 철저하게 봉쇄하는 냉전적인 사고방식이 더 이상 지배하지 않았으며, 예산액중 대동독 DM 지불액과 비교하여 B 형 교회사업 지출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임.

· 대동독 DM 송금액과 B 형 교회사업 지출액 비교 (단위 : 백만 DM)

	DM 송금액	B 형 교회사업 지출액
1979	998.0	107.6
1980	918.9	133.8
1981	1044.3	180.0
1982	999.7	179.3

- 그러나 정치범 석방거래가 인도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이긴 하나 반대급부로서 직접 돈을 제공할 경우 동독측에게 인신매매라는 비난이 국제적으로 제기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서독측 교회라는 매개단체를 통한 물자제공 방식이 계속 통용된 것으로 보임.

## ② 동독지역 정치적 폭행사례 기록보존소(Erfassungsstelle)

### ○ 설치근거

- 베를린장벽 설치로 인하여 동독지역과의 왕래가 차단된 이후 각 주 법무장관회의('61.10.25~27)에서 동독지역에서 자행되는 반법치국가적, 정치적 폭행사례를 기록하기 위하여 니더작센주 법무성 산하에 임무 수행을 위한 기관을 설립할 것을 결의함.
- 니더작센주 국경근방 도시인 Salzgitter에 이 기관이 설립된 것은 니더작센주가 가장 동독과의 국경이 길었고, 국경근방 도시중 Salzgitter가 지방법원이 소재한 비교적 큰 도시였기 때문이었음.
- 니더작센주 법무장관은 '61.11.15자 발령을 통해 Salzgitter에 주 법무부 부속 동독지역 정치적 폭행사례 기록보존소를 설립했으며, '61.11.24자로 공무를 개시함.

### ○ 조 직 : 총 7명

- 검사 2명 : 고등검사 1명(소장), 평검사 1명  
· 고등검사는 주1회 근무, 평검사는 주2회 근무
- 주 법무성 공무원(실무책임자) 1명
- 계약직 공무원(기록전문요원) 4명

### ○ 임무 및 기능

- 서독정부는 동독지역 주민의 인권보호적 견지에서(인권보호적 기능), 통일후의 법치국가적 질서확립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가해의 수단으로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앞으로 언젠가는 통일이되면, 또는 동독이 자유민주국가가 되면 그러한 자연법적 질서를 어긴 악행은 처벌 받는다는 경고를 통해 가해자들로 하여금 그 폭력행위를 자제토록 하기위해(경고적 기능) 설치되고 운영되었음.

- 이 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은 형사소추권은 없고 동독내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자행되는 아래와 같은 4가지 사례의 폭력행위 및 인권침해 사례를 사례 및 관계인 이름별로 분류기록하고 그 증거서류를 보존함.
  - 거주이전의 자유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채 정권목적 달성을 위해 행하여 지거나, 지시되거나 또는 묵인된 모든 형태의 살인행위 및 그 미수행위
  -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너무 과도한, 인도주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형벌을 선고한 테러적 판결
  - 수사과정중 또는 형사재판상의 조사를 구실로 행하여진 내지는 형무소 수감자에게 자행된 부당행위로서, 이것이 "동독의 정치폭력체제의 표현"으로 드러나는 경우
  - 서독 형법 220조 a(종족살인), 234조 a(납치) 및 241조 a(정치적 무고)에 따른 처벌사항으로 인정되는 제 행위
- 폭력행위 사례에 관하여 충분한 혐의점이 있을 경우 이는 기록되며, 그 이후의 절차는 행위의 유형별로 달라짐.
  - 살인행위의 경우 사실관계는 광범위하게 규명되었음. 특히 증인으로 간주되는 자는 경찰의 심문을 받으며, 그밖의 모든 제공증거들이 수집됨. 이에 의거 범행혐의가 현저하여, 판사에 의한 증거확보 또는 구속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 건은 형사소송법 제 13조 a에 따라 관할법원 결정을 위해 연방 대법원으로 이송되며, 다음 절차는 관할법원의 검찰청이 인수하여, 후속조치를 취했음. 폭행사례 기록보존소는 형사소송법상의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상기절차는 필수적이었음. 이를테면 본 부서가 독자적으로 판사에 의한 증인심문 따위를 신청할 수는 없었음.
  - 가혹행위와 관련, "동독내의 정치폭력체제의 표현"으로 분명히 평가될 수도 있었을 그러한 사례는 수형자들이 가해사례에 대해 보고를 하고 있었지만, 이는 대부분 교도관들의 부당행위로서, 이것이 동독 정치지도층에 의해 조직적으로 지시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묵인되었음은 확인되지 않았었음. 이러한 사례는 폭행사례 기록보존소에 의해 동독의 각 형무소별 서류철에 사실 관계에 대한 진술이 기재되며 진술에 입각하여 범행자로 간주되는 자의 성명은 추가로 알파벳 순의 명부에 기록됨.

정치적 무고로 기록된 경우는 형집행기간 동안에 있었던 정탐행위 내지는 탈출계획을 동독관헌에 밀고하는 행위들이 주를 이룸. 이 경우 사건의 진상규명은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혐의만으로는 연방대법원에 의한 관할법원 결정과 담당 검찰청의 사건처리를 의뢰할 수 없었음. 따라서 폭행사례 기록보존소는 이러한 사례는 기록하는 정도로만 업무를 한정지었으며, 물론 피해 인물이 서독으로 넘어올 경우, 수집보관자료는 활용될 수 있으며, 이때 해당사건은 피해자 거주지역 관할 검찰청으로 송부됨.

폭행사례 기록보존소는 정치적 이유로 인한 유죄판결 사례를 주로 다룸. 본 사례는 서독 또는 서베를린으로 넘어오는 피해자가 폭행사례 기록보존소가 주도하는 심문과정에서 자신과 동료 죄수들의 불운에 대해 보고를 함으로써 공개된 바 있음. 이 경우 기록보존소는 판결사례를 위법으로 간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자료가 수집될때 이는 기록되었는데, 소위 '공화국 탈주'로 인한 1년 이상의 금고형 판결사례가 주였으며, 피해자와 증인의 심문절차가 종료됨과 동시에 기록보존소의 소관영역에서 제외되었음.

## ○ 기록절차

- 관계인들로부터 자료·정보 수집
  - 서독에서 댓가를 지불하고 동독으로부터 구해온 정치범들(63년부터 약 33,000명) 증언
  - 동독지역으로 탈출한 군인(베를린장벽 설치이후 약 2,600명)들 증언
  - 동독에서 발행되는 각종 시사지, 간행물 등에서 사례 수집
  - 동독지역에서 서독의 친지들에게 보내는 편지 또는 전화를 통한 피해사례 수집(전화는 도청당할 우려가 있어 매우 위험했음)
  - 동독지역을 방문한 서독사람을 통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례 수집
  - 합법 이주자들로부터 사례수집
  - 기타 연방 정보기관과 협조

- Salzgitter의 Erfassungsstelle에서 각주 경찰에 명단을 통보하여 관계인이 서독지역에 와있는 경우, 질문서를 보내 진술청취 및 조사
  - 국경선에서 국경탈출자에 대한 발포행위의 경우는 국경수비대에서 조사서를 작성함.
- 진술조사를 마친 질문서는 다시 Salzgitter에 있는 Erfassungsstelle로 보내져 정리되며, 컴퓨터에 입력 수록됨.
- 30년동안 80,000명의 관계인들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중 10,000명은 형사소추가 가능한 피의자들이고, 70,000명의 관계증인 및 피해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으며, 관계 판검사도 6,500명이나 수록되어 있음.
- Salzgitter의 Erfassungsstelle는 형사사건만 기록하고 민사사건의 경우, 특히 재산권의 경우는 정치적 박해에 의해 재산이 몰수된 경우 이외에는 기록되지 않았음.

o 설립시 모범으로 삼은 기관

- 바덴뷔템베르그 주의 Ludwigsburg에 소재한 전후 전범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처벌하기 위한 나찌만행 기록소인 Zentrale Stelle der Landesjustizverwaltung

o 통일이후 중요한 역할 담당

- 동독지역 신설주의 사법체계를 세우는데 있어 과거 전력이 깨끗한 판·검사를 선발하는 주요한 증거자료 제공
- 동독에서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통일후 신체상, 재산상의 복권, 보상을 받는데 필요한 증거자료 제공
- 신설주의 사법체계 수립후 과거 반법치국가적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증거자료 제공
- 통일과 더불어 애초의 기록기능을 이미 상실했으며 자료의 대부분이 이미 Koblenz의 중앙문서 기록보존소로 이관되어, 통독 이 후('91) 해체되었음.

○ 기관의 운영문제

- 예산과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니더작센주 법무성 산하에 설치되어 관할에 속했으나, 그 임무수행에 있어서는 완전 중앙독립기관 역할을 하였음.
  - 각 각주에 협조할 일이 있으면 각주 법무장관 회의에서 니더작센주 법무장관을 통해 의견을 표명했지만
  - 사건별 기록업무는 직접 각 주정부 경찰에 지시하여 수행함.

○ 동독정부는 이 기관의 존재 자체를 동독정부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며 이 기관의 해체를 주장해 왔음.

- 동독은 동 기록보존소를 "서독이 독일을 단독으로 대표하겠다는 저의에서 서독법원의 주권확대를 목적으로 헌법상의 국민권 실행을 방자하여 동독 국민을 불법적으로 박해하는 국제법에 위배되는 기관"이라고 간주했음.
-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서독법원이 동독내에서 동독독일인에 의한 행위를 형법상의 관점에서 법률행위로 인정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음.
- 서독형법 제7조 2항의 1호에 따르면 외국에서의 범행시 독일형법은 다음의 경우 적용됨 : 범행이 범행지에서 처벌대상이 되고 범행자가 범행시 독일인이거나 또는 범행후 독일인이 되었을 경우임.
- 기본조약의 합헌성에 대한 73.7.31일자 연방헌법재판소의 확인판결에 의거 서독정부는 동독을 서독과의 관계에서 외국으로 간주하지 아니했음.
- 서독형법 제7조 2항 1호의 의미에서는 마치 동독이 외국처럼 다루어지나, 동독주민은 위에서 언급한 판결에 의하면 기본법상 독일인이기 때문에 서독의 법원은 동독에서 벌어진 범행이 동독에서도 형사상의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에 대해 서독형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음.



## 바. UN등 국제기구를 통한 동독인권문제 거론

- UN을 통해 개별 국가들의 국제인권협약 이행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제인권위원회에 보고서 제출, 국가별 소원( Staatenbeschwerde) 제기, 개인별 소원 (Individualbeschwerde) 제기 등 3가지가 있었음.
- 국제인권협약 서명국들은 국제인권협약 제 40조에 따라 UN 인권위원회 (동 협약 제28조 1항에 의거 1977년 처음 구성,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서독은 각각 1인의 국제법 학자가 참여함 : Ausschuss fuer Menschenrechte)에 동 협약에서 규정된 인권의 실현을 위한 국내의 제반조치들에 대해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대해 UN 인권위원회는 보고서 제출국에 대해 보고서 내용을 심사한 후 일반적으로 소견서를 작성,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아울러 각 서명당사국들은 보고형식을 통해 다른 국가들로부터 제기된 인권침해사례지적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인권현실을 정당화해 갔음.
- 동 협약 제 41조에 의하면 서명국들은 다른 국가가 이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의의를 제기하는 국가별 소원 (Staatenbeschwerde)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러한 국가별 소원제기는 동 조항에 의거 소원제기를 받아들인다는 서명 국가별 승복선언 (Unterwerfungserklaerung)을 전제로 해야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서독은 1976년 4월에 이 선언을 한 반면, 동독은 자신들의 인권상황을 동·서독관계와 연계시키지 않기 위해 이 선언을 거부함으로써 이 방법을 통한 동독에 대한 서독측의 인권개선 희망은 실현될 수 없었음.

- 또한 이러한 국가별 소원제기 절차를 통해서도 결코 국제적으로 인권침해국에게 그 어떤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음.
- 또한 국가별 소원제기에 의해 작성된 국제인권위 보고서 자체가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치고, 많은 국가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다른 국가 인권상황을 거론하는 그 자체를 꺼려 했으며, 국제적으로 법적인 제재조치의 마련보다 외교체널을 통한 영향력 행사를 더 선호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인권상황개선 효과는 미미했음.
- UN 인권위원회는 다른 서명국가의 인권침해에 관한 소원제기국의 보고를 접수하고, 소원제기 대상국가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양 국가의 의견을 청취한 뒤 UN 인권위는 보고서를 작성·발간하게 되어 있으며, 그 보고서를 관련국에 통보하는 것으로 그 활동을 일단 마감함.
- 만약 관련 당사국들이 사전에 동의할 경우는 인권위원회는 동 협약 제42조에 따라 사례별 특별위원회 (Ad-hoc-Vergleichskommission)를 설치하여 더욱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례 해결을 위한 입장표명을 하고, 관련국들에게 이 결과를 통보하면 관련국들도 3개월 이내에 이 특별위원회 보고서 내용에 동의하는지 입장을 표명해야 하나, 이 경우도 관련 당사국이 동의여부 입장표명을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 동 협약 추가의정서인 Fakultativprotokoll 제 1조에 의하면 인권침해사태에 대해 개인별 소원제기 (Individualbeschwerde) 가능성이 있었음.
  - 이 추가의정서에 서명한 국가들은 동 협약에 규정된 인권침해에 의한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각 개별국민에게 소원을 제기케 하고, 이를 인권위원회가 심사하고, 통보하도록 하고 있었음.

- 그러나 동 협약 서명국이면서도, 이 추가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가 서면보고를 받을 권한이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 동독과 서독은 이 추가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아, 내독간에는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인권침해문제에 대해 소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상대편 국가가 보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없었음.
- 국가별 소원제기나, 개인별 소원제기 방식을 통해 동독의 인권상황을 거론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므로, 단지 UN 인권위원회에 보고서 제출을 통해 동독의 인권상황에 대해 스스로 보고토록 하고 UN 인권위의 질문에 대해 동독의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는데 국제기구(UN)을 통한 동독인권문제거론의 한계가 있었음.
- 동독측은 UN 인권위원회에 1977년과 1983년 두 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제 2차 보고서를 중심으로 동독측의 인권문제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동독은 동 보고서에서 헌법과 인민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담긴 선언적인 명제만을 언급하였지, 실제 인권의 현황과 경험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음.
  - 동독측 보고서에 나타난 동독의 인권보장을 위한 주요 정책 기조는 다음과 같음.
    - 평화의 유지가 국제인권협약에 담겨있는 제반 규정을 실현하고, 담보하는 불가결한 조건임.
    - 국경의 수호와 무조건적인 현 국경의 인정만이 어떤 정책이 평화보장과 인간의 이익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가리는 시금석임.
    - 시민적·정치적인 제 권리 보장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제 권리 보장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서로 한편이 다른 한편을 규정짓고 지원함.

- 사회주의적인 사회질서를 통해서만 국민들이 시민적·정치적인 제 권리를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생활조건이 창출됨. 이러한 실질적인 조건 충족을 통해서만 동독의 모든 주민이 차별없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정치적인 제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보장되는 다음과 같은 권리 즉, “노동의 권리”, “교육받을 권리”, “자유와 휴가의 권리”, “건강보호와 노동력 보호 권리”, “주거공간의 확보 권리” 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모든 인권은 그 권리가 동독헌법의 기본정신과 목표에 합치하는 경우에만 보장됨.
- 보고서 제출 이후 동독측 대표의 구두진술과 이에 대한 인권위 소속 국제법 전문가 (서독측에서도 참여함)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인권위측의 국제적인 인권침해 사례 지적에 대해 동독측은 주로 국제인권협약에 규정된 예외조항을 거론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했음.
- 거주이전 및 이주자유 제한 지적에 대해서는 이주불허는 공공질서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될 경우에 취해질 수 있으며 그것은 국제인권협약 제12조와 제13조의 예외조항에 보장되어 있다고 항변함.
  - 국경탈출자에 대한 사살행위 지적에 대해서는 동·서독간의 국경은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국가간의 국경으로서, 국가안보를 위해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한 1982년도 국경법 및 그 법운용상의 실제상황과 국제인권협약 제6조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고 함.
  - 정치범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동독에서는 다른 견해를 가짐으로 해서 처벌받을 수 없으므로 동독에는 정치범이 없으나, 평화를 위협하거나, 파시즘적이며 군사적인 선전을 하는 행위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응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함.

### 3. 과거 동독주민들의 이주·탈출과 서독정부의 대처

#### 가. 과거 동독주민들의 이주·탈출 현황

##### ① 베를린 장벽 설치('61) 이전

###### 0 동독측의 국경차단 조치

- 전승 4대국의 양 점령지역 군사분계선 분할('46)
- 동독측의 내독간 국경통행 제한 조치('53)
  - 국경에 관한 시행령 제정
  - 탈출자 방지를 위한 총기사용 허용

###### 0 이주·탈출 유형

- '52년이후 냉전 기간동안 내독간 국경은 완전히 차단되었으므로, 4대국 합의에 의해 비교적 왕래가 자유로웠던 베를린을 이용 탈출, 피난

###### 0 주요 이주동기 : 정치적인 원인(기본권 제한, 정치활동 금지), 경제적 원인(강제집단화, 국유화에 반발)

###### 0 총 이주·탈출자 : 약 260만명

##### ② 베를린장벽 설치이후부터 '89년 여름까지

###### 0 동독측의 국경봉쇄 및 이주정책

- 베를린 장벽 및 내독간 국경 완전 봉쇄('61)

- 봉쇄조치와 아울러 국제적인 비난을 고려 제한적 합법 이주정책 마련('62)

- 연금수령 연령(여: 60세, 남: 65세)이상의 경제적 무능력자, 서독정부와의 비밀거래로 석방된 반체제 정치범을 중심으로 함

- 기본조약 체결이후 내독간 국경에 더 많은 차단장치 설치 ('71 전자감응 자동발사기 설치, '75 지뢰매설)
- 국경법 제정으로 탈출자에 대한 총기사용 법제화 ('82)

#### 0 이주·탈출 유형

- 내독간 국경 및 베를린 장벽 탈출자
  - 죽음을 무릅쓰고 사선을 넘어 탈출
- 제3국 소재 서독공관을 통한 탈출자
  - 동독주민들이 비교적 여행이 용이했던 동구권국가 이용
- 동독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서독지역을 방문중 서독에 체류한 자
-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농성·점거를 통해 동독 정부로부터 합법이주를 허용 받은 자

#### 0 주요 이주동기

- 정치적인 원인 (의사표현의 자유 결핍, 정치적 억압, 여행가능성 제한),
- 경제적인 원인 (불량한 생활필수품 공급, 미래에 대한 희망부재)

0 총 이주·탈출자 수 : 약 62만

③ '89여름부터 화폐·경제·사회통합 발효('90. 6. 30) 이전까지

0 이주·탈출 유형

- 브레즈네프독트린 폐기이후 유리한 국제환경 이용한 대규모 탈출·피난('89년 여름)
- 동구권 국가에로의 휴가를 이용한 대규모 탈출이 발단 되어 체코·폴란드·헝가리 주재 서독대사관 접거, 서독으로 이주 요구
- 동베를린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접거 서독으로 이주 요구
- 베를린 장벽 개방('89. 11) 이후부터는 자유로이 이주 가능

0 주요 이주동기

- 동독지도부의 개혁·개방 거부에 대한 집단적 저항
- 베를린 장벽 개방 이후에는 동·서독 지역간 신속한 생활 수준의 평준화기대, 동독지역내 경제·사회적 불안

0 총 이주·탈출자 : 34만('89), 24만('90)

## 나. 이주민·탈출자에 대한 서독정부의 대처

① 법적인 근거마련

0 서독 기본법 제정 이전

- 점령 정부가 피난민 수용기준 마련

0 서독 기본법에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11조)와 구 동독주민들도 서독주민과 같은 독일국적 소지(116조)가 규정됨에 따라, 동독으로부터의 피난민 수용에 관한 법률제정 필요성 대두

0 『긴급수용법』 (Notaufnahmegesetz) 및 동 시행령 제정 ('50)

- 동독 피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화
- 양독간의 정치상황을 고려, 동독으로부터 지나친 피난민 유입을 적절하게 법적으로 통제
- 피난민을 수용할 각 지방정부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 이들을 배분
- 피난민이 새로운 체제에 조속히 동화될 수 있도록 정착 지원

0 『긴급수용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53)

- 서독 기본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는 동독지역으로부터 온 피난민에게도 적용된다고 판시
- 동독주민들이 일단 서독으로 이주·탈출을 할 경우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없이 서독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확정함

② 서독정부의 동독 이주·탈출자 지원 내역

0 피난민들은 국경부근 도시(베를린, 기센)에 설치된 수용소에서 수용증명서를 발급받고, 정착할 도시에 도착할 때까지 정착안내를 받음

0 긴급수용소 체재시 제공되는 혜택

- 연방정부에 의한 일회 보조금 : 1인당 200 DM
- 주정부에 의한 보조금 : 가장 30 DM  
가족 1인당 15 DM



- 이주민에 대한 용돈 : 가장 15 DM  
(Hessen 주 사회복지기금에 의한  
재원) 가족 1인당 10 DM

- 직업정착, 사회정착, 보조, 혜택에 관한 상담
- 숙식 및 숙식비
- 건강진단 및 의료서비스 (필요시)
- 종교단체에 의한 의복제공
- 향후의 주거지나 주립임시수용소까지의 차표
- 긴급수용소로 부터 향후 주거지까지의 이삿짐 운송
- 대학진학상담

0 신청자의 요청 (개인의 연고관계)에 따르거나, 주정부의 사정에 따른 정착가능성 (직장, 주택 등)을 고려 수용될 주를 결정

0 정착할 지방에 도착한 이후 정착 지원

- 거주지 마련
  - 친인척이나 기타 연고를 통한 주택구입이 불가능할 경우 임시수용소에 기거
  - 주택소개
  - 주택건설을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  
연방정부는 피난민 복지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주정부에 재정지원함. 주정부는 이 예산을 자체예산과 함께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 사용
  - 복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주택건설법 (Wobaug) 제25조에 따라 동독출신 이주민에 대해서는 향후 5년동안 주택입주상의 혜택을 줌
- 생활상담과 후견
  - 새로운 생활환경 소개

- 생활용품, 가구구입을 위한 저리 용자
  - 독신자 : 3,000DM
  - 가족수가 많은 가정에 대한 기본액 : 4,000 DM
  - 기타 가족 1인당 : 1,000 DM
  - 최고액 : 10,000 DM
  
- 연방실향민법 (Bundesvertriebenengesetz : BVFG) 제92조에 따라 동독에서 취득한 학교졸업증명서나 직업교육 자격 증명서의 인정
  
- 연방교육촉진법 (Bundesausbildungsfoerderungsgesetz : BAFOEG)에 따라 (초중고 및 대학진학, 제한적으로 방송통신대학 진학시) 학자금 지원
  - 대학진학시 최고연령이 30세 (서독에서는 30세가 되면 용자를 받지 못하나 특별한 근거제출시 동법의 예외 규정 적용)에 달하더라도 장학금 용자 지원
  
- 대졸자 (30세에서 50세 사이) 사회진출을 위한 보조
  - 자격증이 전혀 인정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직업정착이 가능하도록 학업추가이수시 장학금 혜택
  - 동독에서 취득한 졸업증이 완전히 인정된다 하더라도 서독대학에서 추가연구를 마쳐야 적정한 직업정착이 가능하게 될 경우 학업이수에 따른 보조
  
- 자녀 수당지급
  - 연방자녀수당법 (Bundeskindergeldgesetz)에 따라 특별한 조건이 제시되는 한 이주후에도 동독, 동베를린에 살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도 지원

#### - 의료보호, 질병급부금

- 법정질병보험에 가입한 자는 서독에서 적용되는 질병보험법에 따라 질병보험으로부터 급부금을 받음.
- 동독에서 온 이주민으로서 서독에 도착한 지 3개월 이내에 질병이 발생할 경우 질병 급부금 지원을 신청할 권한이 있음.
- 질병급부금은 단체협약임금의 최고 80%, 혹은 최고 최종실직수당 만큼임.

#### - 연금보험

- 서독에서 적용되는 연금법에 따른 개별적 급부금을 받음.
- 동독, 동베를린에서의 기여금 불입기간을 산정해 줌.
- 1945. 1. 1 - 1949. 12. 31 중의 기간, 강제이주기간 내지 피난기간, 도착이후에 본인의 과실없이 질병이나 실직에 의해 근무하지 않은 기간도 일반적으로 산정해 줌.
- 과거의 자영업자도 기여금을 추가로 납입하면 연금대상으로 고려

#### - 실업보험

- 동독, 동베를린에서의 정치적 이유로 박해에 의한 실직기간도 취업기간에 고려
- 정치범으로서 구류기간을 실업수당 및 실직지원금 계산시 고려
- 자영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그 가족으로서 자영업을 도왔던 기간을 고려

- 실업수당

- 자녀수가 최소 1명이상인 실직자일 경우 단체협약임금 (실수령액)의 68%
- 독신자는 단체협약임금 (실수령액)의 63%

- 산재보험

- 원칙적으로 서독에서 적용되는 보험법에 따른 급부제공
- 동독, 동베를린에서 발생했던 산재의 경우에도 서독에서 적용되는 보험법에 따른 급부제공

- 전쟁희생자 원호

- 연방원호법 (Bundesversorgungsgesetz : BVG) 제1조에 따라 신체의 장애를 받은 자는 신청할 경우 건강과 경제력 피해에 대한 원호를 받음.
- 1945년 5월 8일 이전에 조국을 위해 근무하다가 신체의 장애를 받았거나, 1945년 5월 9일 이후 조국을 위한 병역의무 수행시 신체의 장애를 받았을 경우에도 원호대상이 됨.
- 신체의 장애를 받은 자가 그로 인해 사망하여, 유족이 신청할 경우 원호혜택을 받음.

- 연방사회부조법 (Bundessozialhilfegesetz)에 따른 지원

- 생계비 지원
- 주택임대료 지원
- 난방비 보조금
- 의복과 가구에 대한 보조금

- 공공사업 발주에 있어 우선적 수주 (BVFG 74조)
- 수공업자 협회에 가입 용이화 (BVFG 74조)
- 소득세법 (Einkommenssteuergesetz) 52조 24항, 33a조 1항에 따른 세금면제 및 세제혜택
  - 3년간 세금면제 (일반적으로 소득세법 적용지역에서 주거 신고를 한해 기준 또는 피난민 수용증명서가 발급된 해 기준)
  - 의복과 가구의 구입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적정한 금액을 고려 세금공제
  - 공장건물과 창고에 대한 특별 감가상각 허용
- 주택보조금에 대한 특별 면제액 (주택보조금법: Wohngeldgesetz 제16조)
  - 서독이나 서베를린으로 주거지를 옮긴지 4년 이후 10년이 될때까지 주택보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연간소득 계산 시 2,400 DM까지 공제해줌.
- 학자들에 대한 지원
  - 학자들이 학술연구경력면에서 이주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경우, 연방교육부장관은 서독대학에서의 직업정착을 위해 최고 2년까지 인건비를 계약사무직 (최고급수 BAT IIa) 기준으로 지급하며 재정지원함.
  - 재정지원의 전제조건은 서독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상기학자를 계속 채용한다는 약속을 할 경우임.

- 자영업 개업지원
  - 유럽개발계획 (ERP) 기업신설프로그램 (제조업)에 의한 유리한 조건의 융자
  - 기업신설목적으로 체결된 저축계약을 근거로 한 저축에 대한 저축장려보조금
- 농업정착 (부업)을 위한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
- 전쟁포로보상법 (Kriegsgefangenenentschaedigungsgesetz)에 따른 구 전쟁포로에 대한 보상
  - 구 전쟁포로에 대한 귀향민재단의 지원 및 연금조정금 보상
- 구속자지원법 (Haftlingshilfegesetz)에 따른 지원 (구 정치범 지원재단의 지원 포함)
- 부담조정법 (Lastenausgleichsgesetz)에 따른 지원
  - 후보상금
  - 가구보상금
  - 전쟁피해연금
  - 정착융자금

## 다. 동독주민의 재외서독공관·동독주재서독상주대표부 피난사례에 대한 서독정부의 대응

### ① 서독정부의 대응 원칙

- 0 동독측은 『2개 국가론』 더 나아가 『2개 민족론』에 입각하여 동·서독 국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동·서독간 상이한 2개 국적 제도를 옹호했음.
  - 이에 따라 '67년 동독은 독자적인 국적법을 제정했으며, 기본조약을 통해 서독이 동독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했음
- 0 반면 서독측은 정치적인 화해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법적으로는 분단이전 독일민족의 정통성을 승계하고 있다는 원칙하에, 단일국적 제도를 고수했음.
  - 동독 또는 동구권에 거주한 독일인들이 서독으로 이주·피난해 올 경우 다른 외국인에게 요구되는 국적 취득절차 없이, 서독주민이 기본법상 갖는 모든 권리를 향유한다고 보았음
- 0 따라서 서독 정부는 동·서독과 동시에 영사·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제3국에서 동독주민이 서독의 영사관, 대사관으로 피난해 온 경우 이들은 독일국적을 가진자로 취급하여 제반 보호와 정착지원을 제공했음.
  - 동독측은 제3국과 영사관계에 관한 조약(Konsularvertrag)·통해 이를 저지하려 했으나, 최소한 서방국가에서는 서독측의 입장이 관철되었음.
  - 동구권 국가의 경우는 대부분 동독측의 입장이 관철되어 해당 동독인이 동독측으로 되돌려 보내져 처벌되는 것이 상례였음

- 그러나 동독주민들중 동구권내 서독재외공관을 이용하여 탈출을 기도하는 자들이 198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자, 서독정부는 이들이 일단 동독으로 되돌려 보내지더라도, 서독측이 동독측과 비밀협상과 거래를 통해 이들이 서독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주할 수 있도록 노력했음.
  - 서독정부는 동독주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중요한 인권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대동독 화해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동독피난민들의 수용에는 동독정부에 대해 양보가 없었지만, 동구권 재외공관을 이용한 대규모 탈출의 경우 향후 내독관계, 주재국의 입장, 동독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했음.
- 0 서독정부는 재외공관을 통한 탈출자 처리에 있어서 동독지도부와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화해정책을 계속하면서, 점진적인 인권상황 개선(합법이주 허용)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점진적인 개선에 만족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인권상황 개선을 관철시키는 정책은 소망스런 목표이기는 해도, 동독으로 하여금 체제단속 조치를 강화해 점진적인 인권상황 개선마저 포기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으므로 신중을 기했음.
  - 따라서 서독정부는 재외공관에 이주 희망자가 대거 몰려들 경우, 동독이주민에 대해서 이들 공관은 잠정적으로 폐쇄하면서, 이들이 외교기관을 이용하지 말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서독으로 이주하도록 호소했음.
  - 특히 공관을 이용한 탈출 사례들을 보도하는 서독 방송매체가 동독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 이 사태가 내독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인 쟁점이 되지 않도록 노력했음.



- 그러나 동구지역 공판의 경우는 이들이 동독으로 귀환당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동독정부와 비밀협상채널(구 내독관계성 차관 또는 상주대표부 대표와 동독측 변호사 채널)을 통해 이들이 처벌받지 않고 서독으로 합법이주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 서독정부는 탈출사태의 근본원인이 동독체제의 불안과 주민의 자유이주를 억압하는 동독지도부의 정책에 기인한다고 생각했지만, 동독정부의 협조없이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독 정부의 체면을 살리는 비밀협상 방식을 채택했음.

· 이를 위해 서독정부는 경제적인 반대 급부를 협상의 카드로 사용했는데, 특히 '84 대규모 이주사태의 경우 동독정부 외환지불 능력 제고를 위한 서독은행의 대형 차관제공(10억 DM)은 유용한 협상수단이었음.

0 동 베를린주재 서독상주대표부의 경우는 서독정부가 이주·피난민 문제로 동독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대동독주민 영사업무를 취급하지 않았음.

- 다만 동독주민들이 이주목적 관철을 위해 서독 상주대표부를 점거·농성한 사례가 있어 서독정부는 아래와 같이 대처하였음.

## ② 서독정부의 구체적 대응 사례

0 1984년 동독주민(6명)의 이주목적 관철을 위한 동독주재 미대사관 점거사례

- 서독정부는 즉각 비밀협상 채널을 가동, 이들이 합법적으로 처벌없이 서독으로 이주하도록 동독정부와 타협함

o 1984년 동독주민 (50명) 서독 상주대표부 점거사례

- 동독측과 비밀협상채널 유지하며, 이들의 합법이주가 허용되도록 동독정부와 타협
  - 현역군인 1명, 퇴역군인 1명, 퇴직공무원 1명의 처리가 쟁점이었으나 서독측의 노력으로 전원 서독으로 이주함.
- 이주목적으로 공관을 악용하는 동독주민들에게 서독 상주대표부측의 성명 발표
  - 양독간에 긴장이 고조되어 기존 내독관계 훼손과 이에 따른 합법이주 사업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제 당부
- 동독주민에 대한 잠정적인 공관 폐쇄 (5주동안)

o 1984년 동독주민 (35명)의 프라하주재 서독대사관 점거 사례

- 동독·체코측과 협상을 거쳐 전원 이주토록 함

o 1989년 프라하, 부다페스트, 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 및 동독주재 상주대표부의 점거 사례

- 서독정부는 동독주민에게 서독이주를 위해 외교기관을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일시적인 공관 폐쇄 조치를 취함.
- 서독정부는 체·폴·헝 정부와 협상을 통해, 이들 정부가 동독과 체결한 조약에도 불구하고 서독으로 출국여행을 허용토록 조치함.
- 서독정부는 동독과의 협상을 통해, 이들이 특별열차를 통해 서독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함.

## 4. 독일 이주민 및 정주민 수용과 지원조치

※ 참고: 용어 정의

### ① 이주민 (übersiedler)

- 이주민은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 온 모든 이주자들을 뜻함. 즉, 동독에 거주하던 독일인이 법적 절차를 거쳐 서독으로 이주해 온 합법적 이주자들과, 허가없이 탈출이나 기타 방법으로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 오는데 성공한 이주자 (Flüchtlinge, Zuwanderer)들을 포함함.
- 서독정부가 동독으로부터 댓가를 지불하고 데려 온 정치범도 포함됨.

### ② 정주민 (Aussiedler)

- 정주민은 구소련,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등 동독 이외의 동유럽 여러나라에서 서독으로 온 독일계 이주자를 의미함.

### ③ 실향민 (Vertriebene)

- 연방실향민법에 의한 실향민은 독일국적 소지자 또는 독일계로서 당시 외국 통치하에 있는 독일 일부지역에서 거주하던 자로서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추방, 특히 국적박탈 또는 피난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한 자를 의미함.

## 가. 이/정주민 동화대책

### ① 목적

- 이주민과 정주민에 대한 동화 대책 (Eingliederungsmaßnahmen)은 이들이 독일 (통일 이전, 서독) 생활에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마찰없이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함.

### ② 주관 부서 및 단체

- 연방내무성, 연방 가족·노인성 및 주정부는 동화 대책을 예산상으로 지원함. 그러나 동화 프로그램을 정부가 직접 조직하거나 집행하지는 않음.
  - 이주민·정주민의 동화 대책을 담당하는 정부 기구는 전혀 없음.
  - 대신, 민간단체가 독자적으로 자문, 세미나 및 기타 동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가는 이들 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함.

### ※ 정주민 지원을 위한 연도별 연방예산

단위: 천 DM

내역	'91	'92	'93	'94
총 지원예산	2,825,079	2,633,322	2,810,153	3,636,373
동화 담당 단체 지원비 (내무성)	32,647	35,606	33,084	27,551
복지단체 및 실향민 협회를 통한 지원 (가족노인성)	91,732	79,800	70,000	46,000

## ※ 동화 지원 및 세미나 참여 단체

- 연방 차원의 민간 복지 단체 및 교회 단체
  - 카리타스
  - 신교 교회 Diakonisches Werk
  - 근로자 복지 단체
  - 독일 평등 복지 협회
  - 신교 교회청 정주민 사업단
  - 독일 카톨릭 난민 협의회
  - Ackermann-Gemeinde
- 실향민 및 피난민, 과거 정치범 관련 단체
  - 실향민 연맹
  - 실향농민 협회
  - 유럽지역 독일 청소년단
  - 중부 독일인 중앙협의회
  - 중·동부독일인 중앙협의회
  - 과거 정치범 지원 재단
  - 과거 정치범 동우회
  - 스탈린주의 희생자 연합 (VOS)
- 연방 및 주 정치교육센터 (세미나 개최)

## ③ 동화 대책 내용 및 방법

- 동화 대책은 이주민/정주민들의 주거, 직장, 교육 등 3가지 문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함.

- 동독 및 동구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한, 소위 사상 전환 교육은 전혀 실시하지 않음.
  - 이는 이데올로기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주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기판단력을 형성하는 것을 도와주는데 역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 특히, 동독 출신 이주민들은 서독의 매스미디어와 동서독간 친지 방문, 전화, 우편교류 등을 통해서 서독의 체제와 사회에 대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알고 있었으므로 정치사상교육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음.
  - 다만 연방주의, 정치·행정기구 및 그 기능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었음.
  
- 서독체제의 장점을 활용하여 스스로 자연스럽게 체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현지 주민과의 접촉 (Kontakt-Gedanke)과 파트너 (Teilhabe-Gedanke) 개념을 도입, 다음 두 가지 모델을 실시함.
  - (1) 시민대학 (Volkshochschule)을 통한 접촉
    - 각종 동화 대책 주관 단체들은 시민대학의 프로그램에 이주민/정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
    - 시민대학은 이들이 현지 주민과 만나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제공하는 바, 시민대학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동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음.
      - Stammtisch (대화의 광장) 운용
        - 장소: 저녁시간에 국민학교나 고등학교의 강의실을 주로 이용

- 주제: 독일 정주민의 역사, 이주동기 및 상황, 독일 현지 생활 등
- 진행 방법: 통상 주제발표를 하고, 질문과 토론을 함. 주제에 대한 영화나 비디오를 보고 토론을 진행하기도 함.
- 참가 유도: 시민대학 안내판에 Stammtisch를 공고하여, 현지 주민들과 이/정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토록 함.

- 소풍, 일일관광

- 시민대학 강좌에 참가하는 현지 주민들과 이/정주민들이 같이 야외로 소풍을 가거나, 연방의회, 박물관 등을 방문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함.

(2) 스포츠 동호인 클럽을 통한 접촉

- 많은 이주민/정주민들이 체육 동호인 단체 (Sportsverein)에 가입, 활동하도록 함.
  - 축구, 핸드볼, 배구, 농구 등의 스포츠를 통해서 공동체의식이 길러지고, 많은 접촉이 가능하며, 자기 발전과 성취욕이 달성되는 장점이 있음.

(3) 세미나 운용

- 연방 및 주 정치교육센터와 상기 동화대책 담당 단체들은 주말 세미나를 마련함.
  - 이/정주민들에게 세미나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자발적으로 참가토록 함.
  - 이/정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참가신청자 중 일부만 선별하여 참가토록 함.
    - 이는 예산 사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참석한 사람이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기가 듣고 알게 된 것을 전파하는

자 (multiplier)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기 위해서임.

- 자기가 아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는 장점도 있음.

○ 세미나 과목은 주로 생활적응과 관련된 것임.

- 시민사회
- 학교와 교육
- 직장생활
- 법률, 경제문제
- 보건
- 교회와 종교
- 휴가와 여가 선용
- 교육과 문화



## 나. 이/정주민 수용절차

- 독일에 도착한 정주민과 이주민은 연방수용소에서 2-3일 체류하면서 실향민증 발급 및 수용주 결정 등의 행정처리를 거친 후, 주 수용소로 배치됨.
  - 수용의 기본원칙은 집단수용을 피하고 연방에서 각 주로, 다시 각 주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골고루 분산 배치하는 것임.
    - 이는 집단 수용의 경우 「팔레스타인」 난민 수용소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었기 때문임.
  - 각 주 수용소로의 배당비율은 독일 16개 주 (통일 전 서독 11개 주)가 주 인구 비례에 따라 협의 결정함.
    -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 주와 같이 큰 주는 배당율이 높음 (통일 전 약 27%).
  - 수용주의 결정은 주 배당율을 우선 고려하되, 빈 자리가 있는지 여부와 본인 의사를 참작함.
    - 통상 본인의사를 존중하되, 희망주나 지자체에 빈 자리가 없을 경우, 인근 지역으로 배치하는 등의 배려를 해 줌.
  - 연방 및 주 수용소에서는 관련 행정처리만을 담당하며, 행정절차가 끝나는 즉시 이/정주민은 다음 체류지로 이동함.
- 각 주 수용소에서 등록절차 및 임시거주지 결정시까지 약 2주 정도가 소요되며, 정식 주택이 공급될 때까지는 2-3년이 소요됨.
  - 임시거주지 문제는 지자체의 난민과 또는 사회안정과, 복지과 등에서 담당함.
  - 임시거주지의 형태는 공동취사장이 있는 기숙사에서부터 개별

부업이 딸린 개인 또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기까지 각 주나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다양함.

- 수용자가 갑자기 많아질 경우에는 호텔 또는 여타 유료숙박시설에 투숙시키기도 함.

- 함부르크의 경우 영국 포크랜드전쟁에 참전한 병원선을 임시숙소로 이용한 사례도 있음.

- 비누, 담배 등의 일상용품을 제공하는 지자체도 있음.

- 가족이나 친지에게로 직접 갈 경우, 정식주택과 직장이 마련될 때까지 그곳에서 거주함.

## 다. 이/정주민 지원조치

### ① 수용소 체재시 지원내역

#### 〈연방정부의 일회성 구제용 보조금〉

- a) 법적 근거: 연방내무부 지침 ('85.11.29)
  
- b) 동 조치의 내용
  - o 이주민과 정주민은 최초의 긴급지출을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구제용 보조금을 받았는 바, 50년대부터 실시되었으며 환영금으로서 매우 효과가 컸음.
    - '72년부터 성인 150 DM, 미성년자 75 DM
    - '86.1.1 부터 1/3이 인상되어 성인 200 DM, 미성년자 100 DM
    - '87.1.1 부터 미성년자 역시 200 DM을 받음
  
- c) 동 조치의 비용
  - o 1987 회계년도의 지출: 1,860만 DM
  - o 1988 회계년도의 지출: 1,800만 DM
  - o 1976년부터 1985년까지 총 85,633,595 DM
  - o 1986년: 1,110만 DM
  
- d) 발생한 문제점과 후속조치
  - o 1986.10.16자 연방의회 결의사항 "동독 이주민의 서독 정착대책"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내포되어 있음.

- 미성년자에 대한 부조금 역시 성인에 대한 부조금과 동일하게 적용
- 부조금 지급액수의 중기적 검토
- o 상기 결의로 미성년자 역시 성인과 마찬가지로 200 DM의 부조금을 받게 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받아들여졌으며 물가안정추세로 볼 때 당분간 인상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 〈각 주의 부조금(정주민), 용돈(이주민), 현금(이/정주민) 지원〉

- a) 법적 근거: (생략)
- b) 동 조치의 내용
- o 구제용 부조금
  - 정주민들은 최초의 지출용으로 주정부로부터 부조금을 받았는 바
    - 1973.1.1 부터 가장 또는 독신으로 서독에 왔을 때 30 DM
    - 동반 가족은 15 DM씩 받음
  - 부조금은 Friedland 국경통과 수용소 및 Nürnberg 정주민 통과수용소에서 지불되었으며
    - 1988.2.1 부터 Unna-Massen 주립수용소에서 지불되었음.
    - 부조금 지불은 각 수용주의 예산으로 충당
  - D 1 대책의 일환으로 서독에 정착한 사람들은 연방정부의 부조금 지불이 보장되어 있는 한 부조금을 받음
  - D 1 대책에 무관하게 서독에 정착한 사람들 역시 이와 동일한 지

원을 받았음.

- 단 Rheinland-Pflaz, Hamburg, Hessen, Bremen 에서는 특별 규정이 적용됨.

o 용돈 및 현금지원

- 동독출신 이주민들은 Gießen 소재 Hessen 주립 중앙수용소에서 주정부 사회복지기금으로부터 일회성 용돈을 받음.
  - 가장: 15 DM
  - 가족: 1인당 10 DM
- 동독 출신 정주민은 Berlin-Marienfelde 소재 통과수용소에 도착 후 Berlin 주정부로부터 일회성 현금지원을 받았는 바,
  - 사회복지금이 지불될 때까지 1인당 매일 15 DM 씩 최장 5일간
  - 정주민으로서 주정부의 보조금이나 Gießen 중앙수용소에서 용돈을 받은 사실과 관계없이 지급되었음.

c) 동 조치의 비용

- 1987년 각 주는 Friedland 와 Nürnberg 의 국경수용소에서 지불 하던 용돈을 위해 약 130만 DM을 지출함 (베를린 특수규정 제외).

d) 발생된 문제점과 후속조치

- o 정주민과 동독이주민 (Zuwanderer)간의 불평등 취급
- o 1950년에 제정된 정주민에 대한 부조금 지급 도입 규정상으로 볼 때, 동독이주민에 대한 부조금 지급이 배제될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음.
- 다만, 그 당시 서독에 도착한 동독 이주민은 갖고 온 동독 마르

크를 환전소에서 서독 마르크로 교환할 수 있었기에 동 규정의 적용이 필요없었을 가능성이 있었음.

- 연방내무부는 각 주정부에게 정주민과 이주민에게 동일한 부조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함.
  - 각 주정부는 정주민과 동독이주민에 대한 평등취급을 위해 새로운 규정을 수립할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함.
  - 서독에 도착한 신청권자가 수용소에서 등록증 또는 수용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방정부로부터 정착지원금과 각 주정부로부터 평준화 된 20 DM 의 부조금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추진중임.  
( '88.3 현재)
    - 이에 대해 일부 주는 이미 동의하였으나
    - 일부 주는 예산상의 가능성을 확보해야 했음.

## 〈수용과 숙식〉

- a) 법적 근거 : (생략)
- b) 동 조치의 내용
  - Friedland 국경통과 수용소
    - Niedersachsen 주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수용능력 총 1,300명
    - 정주민의 체류기간은 통상 3-6일이나 그 당시 정주민들의 쇄도로 약간 길어짐.
    - 무료 숙식 (구내 식당에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제공)
    - 목적지로 출발하는 날에는 여행용 도시락이 지급됨.

- Nürnberg 정주민 통과수용소

- Bayern 주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수용능력 총 700명
- 체류기간은 통상 2-3일
- 무료 숙박
- 도착과 즉시 도시락과 16 DM 상당의 식권을 받음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식사)
- 체류기간이 연장될 경우 매일 16 DM 상당 식권을 추가 지급
- 정주민이 금요일에 도착할 경우 도시락과 토, 일요일용 식권 2장을 받음.
- 목적지로 출발하는 날에도 식권이 발급됨.

- Gießen 중앙수용소

- Hessen 주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수용능력 총 576명
- 동독 이주민 체류기간은 1-2일이며 최장 3일
- 목적지로 출발하는 날 도시락을 지급

- Berlin 정주민·이주민 통과기숙사

- Berlin 주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수용능력 총 688명
- 숙박비용은 베를린 사회복지국으로부터 기타비용에 의해 전용됨.
- 식사비는 사회부조금 또는 실업수당지급이 확정될 때까지 최장 5일간 매일 15 DM씩 지급
- 폐점시간 이후, 주말 또는 공휴일 도착시 도시락이 지급됨.
- 목적지로 출발하는 날에는 식권이 발급되거나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도시락이 지급됨

c) 동 조치의 비용

- o 각 주정부가 관할 수용소의 비용을 전담

d) 문제점과 후속조치

- o 1987.6월 이래 정주민은 급격히 쇠도하였으나 1958년 이후보다는 적었음.

- Friedland 국경통과소는 인력을 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폭증을 감당할 수 없었음.

- 1987.9.1부터 1987.12.31 까지 서독정부의 주선에 의하지 않고 쇠도한 7,500 명의 정주민들은 친인척에 의한 숙박 가능성도 없었음.

- 따라서 Friedland 국경통과 수용소를 비롯하여 Nürnberg 통과수용소에 일부 수용된 후, 지역 관계기관으로부터 실항민증 발급 신청을 한 후 곧 이어 추가 등록 절차를 밟음.

- o 따라서 연방내무부장관은 일련의 중대한 조직상의 조치를 취하였던 바,

- 독일인으로서, 실항민으로서의 신청자를 가능한 한 모두 신속하게 등록절차를 취하도록 함.

- o 1988.2.1 부터 Friedland 국경통과 수용소의 부담을 덜고자 Unna-Massen 주립 정주민·이주민 수용소가 설치됨.

- 정주민 분산담당 연방전담관의 파견근무처로서 1988.1.1부터 연방행정청에 예속



- 동 수용소는 1983년도 비상계획에 의한 것임.
- 총 수용능력 약 2,600명
- Nordrhein-Westfalen 주에 배당된 정주민과 이주민을 위한 중앙 통과수용소이므로 기타 국경 통과 수용소의 인프라스트럭처와 다른 구조를 갖추.
  - 숙박시설은 자취를 할 수 있는 주택으로 됨
  - 정주민은 도착 후 등록절차를 마치면 즉시 부조금을 받고 사회복지 부조금 신청권이 부여됨.
  - 야간이나 주말에 도착할 경우 도시락 지급
  - 수용소 부속 병원 운영
- 정주민에 대한 등록절차는 연방행정청 파견관에 의해 동 수용소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NRW 주와 합의함.
  - 연방행정청 정주민 분산담당 전담관 파견관실은 정주민 등록능력을 월간 4,000명으로 확장
- 이러한 조치와 함께 Friedland 국경통과 수용소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함과 동시에
  - 1988.3.24부터 Niedersachsen 주가 수행하던 등록업무를 행정절차의 합리화 조치로서 완전히 연방정부로 이관
  - 이로써 등록절차 담당 직원의 근무실을 재배치
  - 이 조치를 통해 국경통과 수용소의 체류기간을 현격히 줄이고자 함.

### 〈수용대상 주의 결정〉

- o 동독출신 이주민과 동구권 출신 정주민에 대한 수용대상 주의 결정 절차는 주립 난민관리 공동체가 연방내무부장관의 동의하에 1987. 1. 12 발효한 "수용 대원칙"에 의해 매우 간소화 됨.

- 즉 연방전담관은 동독이주민에 대해서는 수용절차, 동구권 정주민에 대해서는 등록절차를 거치면서 주정부 대표의 견해와 연방상원의 할당지수에 따라 수용할 주를 결정하는 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작함.
  - 최초의 정착을 희망하는 주/ 가족적·개인적 연고관계/ 주거가능성/ 구직가능성
  - 후일 다른 연방주로 옮길 경우 더 이상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음. 단 서독 도착 2년 이내일 경우 단지 통계치로서 파악되기만 함.

## 〈의료 서비스〉

### a) 동 조치의 내용

#### ○ Friedland 국경통과 수용소

- 여의사 한명이 정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담당
  - 정주민은 설문서와 함께 건강진단을 받음
  - 정주민은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정착 희망 주에 제출
  - 1982년부터 X-Ray 검사는 폐지됨
- 환자와 허약자를 위해 침상 33개를 갖춘 간이병원시설에서 정주민들은 24시간 간호요원의 의료서비스를 받음
  - 급성일 경우 전문의 또는 Göttingen 종합병원에 의뢰

o Nürnberg 정주민 통과수용소

- 정주민들은 여의사 1명에 의해 X-Ray 검진과 더불어 결핵 및 호흡기에 관한 진찰을 받은 후 건강진단서를 받음
  - 건강진단서는 정착 해당 주 보건국에 제출
  - 급성일 경우 Nürnberg 의 종합병원에 의뢰

o Gießen 주립 중앙수용소

- 동독 출신 이주민들은 2명의 전문의로부터 X-Ray 및 종합검진을 받음.
  - 건강진단서를 이주민들에게 발급
- 환자와 허약자를 위한 침상 24개의 간이병원에서 이주민들은 24시간 간호원의 의료서비스를 받음.
  - 급성일 경우 Gießen 대학병원에 의뢰

o Berlin 주립 정주민·이주민 통과수용 기숙사

- 의사 한명이 정주민과 이주민을 위해 의료서비스 수행
  - 급성일 경우 일반개업의 또는 종합병원에 의뢰

b) 동 조치의 비용

- 각 주정부가 관할수용소에 대한 비용을 부담

## 〈종교자선단체를 통한 의류지원〉

a) 법적 근거: (생략)

b) 동 조치의 내용

- o Friedland 지원협회는 개인들로부터 현금과 기증품을 수집함. 수용소에 파견된 자선단체 (독일적십자사, 구교자선단체 Caritas, 신교자선단체 Diakonisches Werk, 근로자 자선봉사대 등)들을 통하여 각 수용소에 체류하고 있는 정주민과 이주민이 필요한 의류지원을 받음.
- o 지원협회는 의류지원예산 한도를 설정
  - 1987년 중반까지 일인당 55 DM
  - 1987.7.1 부터 정주민 일인당 50 DM, 이주민 40 DM
  - 1988.1.1 부터 정주민 일인당 35 DM, 이주민 35 DM
- o 자선단체는 Friedland 지원협회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필요한 의류 및 내의를 구입함.
  - 이에 관계없이 자선단체는 막대한 양의 자체기금을 의류지원을 위해 지출
  - 또한 수집된 기증품이 Friedland 수용소에 배당됨
- o 베를린 수용소는 자선단체에 의한 의류지원금을 현금으로 지불했음
  - 1988.1.1 부터 일인당 30 DM
- o 자선단체는 의류관리업무를 위해 Niedersachsen 주와 Bazern 주로 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받음
- o 연방내무부는 보조금과 함께 신·구교 자선단체를 지원, Gießen 수

용소에 도착한 정치범에게 의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

c) 발생한 문제점/ 후속 조치

- o 정주민이 점점 증가함으로써 Friedland 지원협회는 재원 및 물적수단의 마련이 점점 어려워졌으며 다행히 현금액이 증가하였지만 정주민의 증가에 감당하지 못함.
  - 그러나 연방예산에 의한 Friedland 지원협회에 대한 보조금 지불은 거의 불가능
  - 따라서 연방정부는 홍보활동의 강화를 통해 Friedland 지원금을 확보해 나감.

**〈홍보자료의 제공〉**

- o 이주민들은 수용법 제1조에 의거 Gießen 및 베를린 소재 연방수용소에 수용되면 다음과 같은 홍보자료를 받음.
  - “동독으로부터의 탈출민 및 이주민을 위한 안내” (연방내무성)
  -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이주 환영” (연방내무성)
  - “실업자를 위한 리프렛” (연방고용청)
  - “이주민을 위한 학업 프로그램” (Otto Benecke 재단)
  - “이주민의 연금” (연방사무원보험청)
- o Gießen 소재 헤센주 중앙수용소에서는 “청소년 이주자 안내”, “초기 안내” 등을, 베를린 이/정주민 통과기숙사에서 “탈출자 및 이주민을 위한 안내”, “도로망 및 주소 리프렛”을 제공함.

o 정주민들은 Friedland, Nürnberg, Unna-Massen 수용소 도착시 다음 홍보자료를 받음.

- “정주민 안내” (연방내무성)
  - 독일어, 노어, 폴란드어로 발간, 정주민의 요구대로 제공
-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이주 환영” (연방내무성)
- “국적 및 이름 등록 문제에 관한 안내” (연방내무성)
- “실업자를 위한 리플렛” (연방고용청)
- “Langenscheidt 사전” (해당 언어 - 독일어)
- 이 외에 각 수용소에서는 주정부 발간 홍보자료를 제공함.

※ 역주: 연방정부, 주정부, 이외에 교회 및 자선단체들도 정/이주민들이 서독에서의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해 나가는데 필요한 각종 안내, 홍보책자를 제공함. 이들 자료는 수용질차, 사회부조 및 복지혜택, 학교, 교육, 직업교육, 구직, 정착지원 등 주로 실질적인 생활안내에 중점을 둠.

-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등 이념적인 내용은 거의 전무했음.

### 〈국경통과소 (또는 수용소)로부터 향후 주거지 (또는 주립 통과수용소)까지의 교통비〉

a) 법적 근거 : (생략)

B) 동 조치의 내용

o 정주민을 위한 교통비

- 정주민이 수용소를 떠나 정착주에 도착할 때까지 관할 수용소가 교통비를 부담, 차표를 줌
  - 정주민이 수용주(州)의 통과용 기숙사에 체류할 경우, 정착지까지의 교통비는 수용주가 부담

- 국경통과 수용소를 운영하고 수용주까지의 교통비 부담의 의무가 있는 주는 전쟁희생자 지원금의 일괄타결규정에 따라 지불됨.

o 이주민을 위한 교통비

- Gießen 중앙수용소
  - 수용증을 접수받은 이주민은 향후 주거지 (또는 주립통과용 기숙사)까지 기차표 (또는 항공권)을 중앙수용소로부터 무료로 받음
- Berlin 통과수용소
  - Berlin 통과수용소에 체류중인 이주민과 정주민은 12 주간에 걸쳐 베를린 교통수단 무료 승차권을 받음
  - 일단 베를린을 출발할 경우 향후 주거지 (또는 해당 주 통과용 기숙사)까지 무료 항공권 (또는 연결기차표)를 받음

c) 동 대책의 비용

- 각 해당주가 비용을 부담하나 연간 지출비용이 얼마인지 미상

**<국경통과소 (또는 수용소)로부터 향후 주거지까지의 이사비용>**

a) 법적 근거: (생략)

b) 동 조치의 내용

o 정주민의 이사짐: (생략)

o 이주민의 이사짐

- Gießen 중앙수용소에 도착한 이주민의 이사짐의 미래 주거지까지의 운송비용은 중앙수용소가 부담

c) 동 조치의 내용

- 각 해당주가 비용을 부담하나 연간지출비용이 얼마인지 미상



## ② 수용소 도착이후 지원내역

### 〈동독출신 이주민의 이사비용〉

- 정주민의 이사집은 송환비 보장의 일환으로 지급되었으나 동독출신 이주민의 이사집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음.
- 출발국을 떠난 후 제3국을 경유하여 독일로 올 경우, 제3국 주재 서독 공관으로부터 교통비와 운송비 지원을 받으며 서독에 도착 후 반환의무가 있음.
  - 정주민의 경우, 출발국으로부터 서독으로 직접 올 경우에 해당하는 비용만큼을 지급함 (난경 처리규정)
  - 그러나 동독 출신 이주민의 경우 반환의무가 있음.
- 현행 법규범으로는 연방정부에게 동독출신 이주민의 이사집에 대한 부담지불의 의무가 없음.
  - 그러나 연방내무장관은 동독 출신 이주민이 이율이 낮은 가구마련 용자금을 이사집 지불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선언함.
  - 이러한 방안은 각 주는 물론 해당 협회와 당사자에 의해 정확하게 준수되지 않음.
  - 1986.10.16 연방하원 역시 연방정부에게 동독출신 이주민의 이사비용을 부담할 것을 종용한 바 있으며 현 회계년도 중에 계속 논의될 것임.

## 〈정주민의 송환비용 지급〉

a) 법적 근거 : (생략)

b) 동 조치의 내용

o 제1차 인수법 (Überleitungsgesetz)에 따른 독일법이 적용되지 않는 정주대상지역 출신 독일인 송환비용은 연방예산으로 충당되도록 함.

- 1985년 말까지 유효했던 송환비용 청산가능성에 관한 연방내무장관의 기본지침은 행정간소화, 탈사무처리과정으로 인하여 심한 긴축운용이 필요했음.

- 이를 통해 각 주의 행정비용을 절대적으로 줄이고 악용가능성을 방지하도록 함.

o 이러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하여 1986.1.1 발효된 송환비용 지급지침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대상으로 됨.

- 교통비/ 여권비용 및 출국허가비용/ 국적반납비용 (특정조건하)/ 화물운송비용

- 나아가 신청권이 있는 모든 정주민은 부대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일괄금 30 DM을 받음 (특별 근거서류 제출 불필요)

c) 동 조치의 비용

o 1976년부터 1987년까지 정주민 송환비용은 약 30억 6,000만 DM 이 지출됨

d) 발생한 문제점

- 지금까지 각 주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 규정의 적용에 따르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다만, 재정적으로 볼 때 기존규정의 적용기간 동안 발생했으며 각 주와 협회가 신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남아 있음.
  - 정주민의 출신국 국적 반납이 서독의 신거주지 도착 이후에 신청되었을 경우에 대한 비용지불 문제가 등장함.
  - 원칙적으로 연방정부가 비용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으나 각 주정부는 특히 구소련지역 출신 정주민의 극소수가 재정취약상태로 이 문제에 당면한 점을 고려, 원만히 해결되고 있음.
  - 단 1983년 이래 폴란드와 1986년 이래 루마니아의 행정실무 변경으로 인하여 체코 출신 정주민에게만 출국 이전에 국적반납절차가 진행되는 利點이 발생함.
- 기존 규정과 신 규정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서독에 방문여행객 또는 관광객으로 온 정주민에게는 국적반납이 남아 있는 가족에게 유리할 경우 비용이 지불되는 바 매년 해결 건수가 경미하여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아니었음.
- 정주민의 국적반납문제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항상 지불대상이 될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법으로 볼 때 단일화 된 연방정부 부담 가능성은 도달될 수 없음.

## 〈주택공급〉

- a) 법적 근거 : (생략)
- b) 동 조치의 내용
  - o 통과용 기숙사 제공
    - 정주민과 동독출신 이주민이 서독에 도착하면 각 주로 분산되며 적절한 주택이 공급될 때까지 임시기숙사/ 통과용 기숙사에 수용되는 것이 통례임.
  - o 주택 제공
    - 각 주정부는 정주민과 이주민에 대한 적절한 주거공간 공급을 복지주택 건설의 일환으로 배려함.
      - 즉 정주민과 이주민이 자체적으로 주택시장을 통해 조달할 수 없을 경우, 신축된 복지주택이나 이용가능한 복지주택에 우선적으로 수용됨.
      - 정주민과 이주민을 위한 각 주의 별도 특별주택건설계획이 있음
  - o 정주민과 이주민에게 복지주택 입주권 취득이 용이하도록 서독 도착 이후 5년간 입주자격 연간 소득 상한선을 6,300 DM 상향 조정
  - o 주택보조금 지급시 특수 면제액
    - 4개년 동안 (최장 10년간) 정주민과 이주민에 대한 연간소득 신청시 2,400 DM의 면제액을 적용
  - o 부담조정법/ 난민구제법

- 정주민과 동독출신 탈출난민에게 부담조정법에 의한 안정용자금이 지급될 수 있음.
  - 난민이 아닌 동독 출신 이주자에게도 난민구제법에 의한 안정용자금이 지급됨.
  
- c) 연방정부의 비용/ 재정지원
  - o 연방정부는 1953년부터 1980년도까지 정주민과 이주민의 주택건설 촉진용으로 일반 주택건설비용에 추가적으로 약 85억 DM을 지출
  - o 1981년부터 1984년까지 공공촉진 복지주택 건설의 의무사항으로서 총 5억 DM이 정주민·이주민 할당에 따라 각 주에 지급됨.
  - o 1986년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은 자기집 마련 대책 지원용으로만 지불되었으며 복지임대주택은 해당 주 정부에 의해 지원됨.
  
- d) 발생한 문제점/ 후속 조치
  - o 각 주정부는 1987년도의 상황이 원칙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바, 정주민의 급증상태는 수년간 지속될 것이며 주정부 지원만으로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임.

### 〈가구준비 용자금〉

- a) 법적 근거 : (생략)
- b) 동 조치의 내용
  - o 적정한 주택에 처음 입주한 후 가구준비 용자금이 지급됨.

- 독신자 3,000 DM/ 자녀 없는 부부 5,000 DM/ 가족당 1,000 DM (최고 용자금 10,000 DM)
- 동독 출신 이주민 역시 가구준비 용자금을 이사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음.

o 용자금 상환기간은 10년, 초기 2년 동안 무이자

c) 동 조치의 비용

o 1987.12.31까지 총 249,124건의 용자신청에 대해 총액 약 12억 4,400만 DM이 지출됨.

d) 발생한 문제점/ 후속조치

o 가구준비 용자금은 매우 긍정적인 정착조치로 평가되었으며 각 주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함.

- 가구구입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용자액은 불변이나, 일부 시중은행은 실업자, 고령자 등에 대한 용자를 거부함.
- 용자금 처리기간의 지연으로 정착에 어려움이 따를 때가 있음.
- 용자액 증액은 예산법상 불가능하며, 실업이 용자거부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시중은행의 용자신청 처리기간은 통상 3주일이 소요됨.

<언어 촉진>

o 연방고용청은 정주민을 대상으로 독일어 교육을 실시함.

〈학교교육, 직업훈련교육 (보증기금, 대졸자 프로그램, 학자 프로그램, 연방 교육훈련촉진법)〉

a) 보증기금

- o 주관부서: 연방 청소년·가족·여성부
- o 35세 미만 젊은 이주민과 정주민, 탈출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사회적응 지원으로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음
  - 일반학교, 직업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
    - 독일어 능력개선 및 학교교육 상태 개선 포함
  - 직업훈련교육 참가
  - 연수교육 참가
  - 직업전환교육조치 참가
  - 언어, 직업관련 초지역성 세미나 참가
  - 대학입학준비용 세미나 참가
  - 대학교육
  - 출신국 대학졸업 이후 직업활동에 의의가 있는 초지역성 세미나 참가
- o 지원금 내용: 교육비, 생계비, 기타비용, 보험비용 등
- o 서독 도착 24개월 이내에 최초의 신청서 제출
- o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36개월이나 예외적으로 48개월간까지 연장 가능
- o 동 대책의 비용
  - 연방정부는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보증기금의 일환으로 약 15억 3,500만 DM을 연방예산에서 활용

b) 대졸자 프로그램

- o 주관 부서: 연방교육·학술부
- o 30세-50세 동독 출신 대졸 이주민으로 하여금 서독의 직업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o 동 조치의 비용
  -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약 510만 DM이 지출됨

c) 학자 프로그램

- o 주관 부서: 연방교육·학술부
- o 서독에 이주 또는 정주한 학자들의 불이익을 덜고 학자로서의 경력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
- o 비용: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약 1,110만 DM

d) 연방교육훈련 촉진법

- o 통상 30세 미만 이주민·정주민에 대한 대학교육비 지급
- o 비용: 통계치 없음



## 〈각종 시험과 증명서의 인정〉

a) 법적 근거: 연방실향민법 제92조

b) 동 조치의 내용, 문제점, 후속조치

### (1) 인정절차 및 관할권

- o 주법(州法)에 따른 관할 인정기관에 의해 형식적인 인정행위가 수행됨
  - 서독의 학교시험 및 대학시험은 각 주의 문화부가 전담
- o 동등 자격 부여의 협조 수단: 서독의 학교/ 대학 졸업증과의 동등 자격 부여
  - 베를린: 독일 학교·대학제도 판정관실 (이주민에 대해)
  - 본: 서독 문화장관 상설위원회 외국교육제도 판정관실 (정주민에 대해)

### (2) 인정절차의 기본원칙 및 의의

- 정주민과 이주민의 각종 시험과 자격증을 인정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은 서독의 시험이나 자격증과 동등해야 한다는 사실임
- 이는 기존 취득 교육상태를 인정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정착에 있어서 사회복지국가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함에 있음
- 그러나 과연 동등성이 있는지 여부는 관계 인정기관이 결정함
- 인정절차를 통한 이점
  - 노동시장에서의 균등한 직장알선기회
  - 실업수당 및 실업보조금 수령액의 결정
  - 연수교육 해당과정의 결정
  - 연금산정기간의 결정

### (3) 일반적 문제점

- 직업교육훈련 졸업증의 단순한 인정은 변화된 노동력 수요, 각 분야의 기술발전상태의 차이점 등 때문에 직업정책에 안정화를 이루지 못하고 자주 악용된 바 있음.
- 그에 비해 만일 불인정 조치 또는 하향조정식 인정조치는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무자격자의 수용을 조장하게 되어 향후의 직업·경제·사회적 정책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
- 연수교육 참가가 바람직함
- 기업주는 정주민과 이주민에게 적응과정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임

#### (4) 개별 전문분야의 인정문제

##### a) 서독의 고졸정도 직업증명서와 동격화 인정

- 직업교육훈련법 및 수공업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과 직업교육훈련 및 마이스터 자격시험
  - 연방경제부, 연방내무부, 연방노동부, 연방교육·학술부, 각 주정부 담당 최고기관이 인정실무에 관한 추천서를 작성:
    - 개별심사과정의 중요 판단기준은 사회복지국가원칙에 따른 적응 및 기존취득에 대한 관대한 판단기준 적용을 통해 이주민·정주민에게 유리하도록 함
- 연방법 규정에 준하는 자연치료요법 보조업에 관한 시험
  - 출신국의 교육수준이 낮으므로 인정절차에 문제점 발생
- 직업전문학교와 직업학교 시험
  - 출신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이 너무 세분화되었거나 수준이 낮을

## 경우 인정절차에 문제점 발생

- o 기타 시험 및 증명서
  - 연수교육수료시험을 통해 개별적 인정절차가 수행될 수 있음
  
- o 고졸 직장인을 위한 일반적 지원 가능성
  - 정주민 대부분은 신기술과 경제조직에 적응하기 위해 직업적응 연수교육이 필요하며 고용촉진법 직업교육대책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음
  
- b) 대졸자 및 국가고시 합격자에 대한 동등자격 부여
  
- o 동독이나 기타 출신국에서 취득한 교사자격증은 서독 교사자격증과 다름
  - 국민학교 교사자격증은 서독 대학에서의 추가교육을 전제 조건으로 인정됨.
  - 중·고교 교사의 경우, 제1차 국가고시를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
  - 1985년도 문화장관 상설회의는 동독출신 교사의 정착문제를 다루면서
    - 수년간 교직경력이 있을 것이 정착의 전제조건이나
    - 서독내 교사의 저조한 취업율에 비추어 단일화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결론 지음
  
- o 의사
  - 서독과 출신국간의 의사시험 수준과 전문화에 차이가 있어 자격인정에 문제점 대두
  - 자격인정이 불가능할 경우, 추가 대학교육이 적용
  
- o 자연과학자, 공학기사
  - 출신국의 낮은 시험수준, 매우 특수한 세분화로 인하여 자격인정에 문제점이 대두될 때가 있으나 자연과학자의 졸업증 인정에는

별문제가 없음

○ 법률가

- 법관시험은 오로지 제1차 국가고시로서 인정
- 따라서 법관시보에 필요한 4학기간의 대학공부를 권장함

○ 경제학자

- 동구권 교육제도에 시장경제지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인정상 문  
제점 대두
- 현재 문화장관 상설위원회가 정주민·이주민 경제학자에 대한 균  
일한 인정절차를 심사 중

○ 대졸 출신자에 대한 일반적 지원가능성

- 대졸자 역시 고졸자와 마찬가지로 직업활동 수행을 위한 연수교  
육, 추가대학교육, 각종과정 이수가 필요하며 “대졸자 프로그  
램”으로 지원함.

c) 일반학교 졸업증의 자격인정문제

○ 학교졸업증 인정은 주정부 소관사항임

○ 대학 (및 전문대학) 입학자격증

- 1979. 2. 23자 문화장관 상설위원회는 동독에서 취득한 대학입학자격  
증을 서독에서도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는 바 이에는 평균성적 판정  
에 관한 합의사항 역시 포함되어 있음

○ 기타 학교 졸업증

- 학교졸업증 인정문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음

○ 초중고생의 정착

- 문화장관 상설위원회와 각 주의 특수규정을 통해 초중고생의 적  
응이 처리되며
-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임 (과외지도 등)

d) 비용

o 인정절차는 정상적 행정절차에 다르므로 추가적 비용이 계상되지  
않음

- 다만 정주민 서류의 외국어 원본에 대한 번역비용이 지원됨

### 〈직업 적응〉

a) 법적 근거

b) 조치의 내용, 문제점, 후속조치

- 연방고용청은 모든 수용소에서 직업상담 특수 파견관실을 운용
- 각 주와 지역의 노동시장 현황에 따라 구직 가능성이 상이하었으나 이주민·정주민의 열의, 직장의 호의 등으로 진전되다가 최근에는 서독의 구직자와의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함.
- 정주민·이주민의 취약점
  - 언어 실력 (정주민)
  - 상이한 교육내용
  - 상이한 직장체험
  - 월등한 서독 생산기술
  - 서독에서는 미지의 직업
- 일반적으로 생산직종의 구직이 서비스 업종보다 유리
- 상업직, 고급 기술직, 대졸자들은 서독 정착 이전에 특수한 직장 체험을 했을 경우 적절한 직업상 동화에 어려움이 있었음.
- 공학 기사의 경우 현대적 생산기술에 접할 기회가 적었음.
- 필요할 경우 적응대책, 연수교육대책, 직업전환교육대책에 참여하여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

c) 비용

정주민과 이주민의 직장알선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 계정되지 않음

〈사회보험에의 가입〉

a) 법적 근거 (생략)

b) 동 조치의 내용, 문제점, 후속조치

o 의료보험

- 정주민·이주민은 법정 의료보험으로부터 혜택을 받음
- 과거에 법정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가 서독에 정착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경우, 가입상태가 계속 유지됨
- 서독 도착시, 또는 도착후 3개월 이내에 질병이 발생할 경우 관할 의료보험기관의 의료지원혜택을 받음
- 도착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은 3개월간 더 연장혜택을 받음
  - 정주민의 경우 등록증 제시
  - 이주민의 경우 수용증 제시
- 1987년 대상연도의 재원: 약 3,300만 DM
- 만일 정주민이나 이주민이 등록증이나 수용증을 즉시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의료비용을 사회부조금에서 지급함.

o 연금보험

- 만일 정주민이나 이주민이 서독에서 적용되는 연금법에 따라 혜

택을 받으며 구동독 및 동구권에서의 보험가입연도가 배려됨

- 보험 급부 발생의 차이점

- 서독 도착 이전에 연금을 받던 정주민·이주민은 일반 규정에 따라 보험급부발생의 근거가 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음
- 만일 서독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경우 연금은 물론 실업수당이나 실업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사회부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현행규정에 따라 직업수행 불능, 영업수행 불능 상태이거나 노후연금신청권이 있을 경우에만 연금이 지급될 수 있음

- 과거 농경인에 대해 노후연금 지급

o 산재보험

- 정주민이나 이주민은 서독의 적용규정에 따라 혜택을 받음

o 실업보험

- 정주민이나 이주민은 서독의 적용규정에 따라 실업수당과 실업보조금을 받으며 동독이나 동구권에서의 근무기간이 배려됨
- 또한 정치적 이유때문에 직장생활을 할 수 없었던 기간도 감안됨
- 서독 도착 이전에 자영업을 했거나 가족의 일원으로 일했던 사람도 실업보조금을 받음
- 처리기간
  - 실업수당 지불의 처리기간이 문제점으로 발생: 예, 1984년도 이주민의 급증시
  - 그러나 처리직원을 늘리고 사전지불 등을 통해 문제점이 해결됨
- 독일어 실력이 부족한 정주민에 대한 실업수당/ 실업보조금 지불 산정 문제 대두

c) 비용: 별도 집계된 바 없음

## 〈자영업 창업지원〉

a) 법적 근거 : (생략)

b) 동 조치의 내용

o 독일조정은행의 촉진 프로그램

- 제조업이나 산업 유관 자유업을 창업할 때 최고 100%까지 재정지원  
원
  - 융자액 최고 200,000 DM
  - 상한기간 12년간 (그 중 2년간 무이자)
- 1987년 89건의 융자에 약 490만 DM이 지출됨
  - 1986년 융자건수 92건, 약 530만 DM

## 〈농경인 정착 지원〉

a) 법적 근거: (생략)

b) 동 조치의 내용

- 이주민·정주민의 농경관련 대상의 신설 및 구입, 임대를 지원
- 촉진대상자
  - 과거에 집단농장에서 근무했거나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
  - 농산품 생산이 주업이었던 사람
  - 농업활동에 지장을 받았던 사람



- “독일 정착 및 주연금은행” (DSL)이 자체 프로그램으로 재정지원에 기여함

## 〈세금 혜택〉

- a) 법적 근거
- b) 동 조치의 내용
  - 정주민과 탈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서독 도착후 3년간 가족수에 따른 등급식 조세감면액의 혜택을 받음
  - 가구와 의류 구입비용에 대해 일정한도의 세금공제
  - 공장건물, 창고 등에 대한 감가상각 혜택

## 〈협회, 교회단체, 재단을 통한 자문과 후견〉

- a) 법적 근거 : 예산회계법
- b) 동 조치의 내용
  - 공산치하로부터 서독으로 오는 정주민과 이주민이 서독의 경제, 사회, 정치에 가능한 한 마찰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1976. 5. 12 부터 연방정부는 막대한 재원을 제공
  - 주정부 역시 관계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
  - 연방내무성은 정주민, 이주민, 실향민, 탈출민의 정착과 동화를 위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각종 사회단체에게 적정한 보조금을 지급함.
    - 참여단체: 교회 (카리타스, Diakonisches Werk), 독일적십자사, 복지단체, 독일카톨릭 탈출민협회, 실향민연맹, 실향농민협회, 유럽독일청소년협회, 중부독일연맹, 과거정치범재단 등

- 1주-3주간의 세미나 개최
  - 국가 시민과 관련된 문제
  - 학교와 교육
  - 직장 생활
  - 법률·경제문제
  - 보건
  - 교회와 종교
  - 휴가와 여가선용
  - 교육과 문화
  
- 예산: 연방내무성은 1987년 동화조치를 위해 약 2,640억 DM 지출

### 〈부담조정 및 난민지원법에 의한 지원〉

- a) 법적 근거: 부담조정법 ('69.10.1) 및 개정법 ('87.1.26)
  
- b) 동 조치의 내용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수백만명의 난민, 실항민, 피박해자, 전쟁 희생자 등이 잃어버린 재산손실을 어느 정도 보상해주고, 정착이 수월해지도록 부담조정조치가 마련됨.
  
  - 1987.12.31까지 부담조정의 일환으로 총 1,327억 DM이 활용되었는 바, 그 중 1,165억 DM은 당사자에게 직접 제공되었음.
  
  - 1987.12.31 현재 지출 분야와 액수는 다음과 같음
    - 보상액                    281억 DM
    - 연금                        521억 DM
    - 용자                        188억 DM
    - 가구파손보상            99억 DM

- 과거저축보상금 51억 DM
- 통화조정 11억 DM
- 기타 지원 14억 DM
- 잔액 162억 DM 은 채무변제, 사전재원조달 비용, 용자금 관리 등에 활용됨.

### 〈귀향민 지원조치〉

- a) 법적 근거: 귀향민 지원법 ('50.6.19)
- b) 동 조치의 내용
  - 특히 소련 출신 정주민과 동독출신 이주민은 억류생활, 강제노동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귀향민에 속하며 귀향민법에 부응한 지원 조치를 받음
    - 귀향민 여부에 관한 판정은 해당 주정부 기관이 내림
  - 귀향민법의 지원조치내용
    - 출옥지원금 200 DM
    - 잠정보조금 300 DM
    - 의료지원

### 〈기타 사회복지적 지원〉

- a) 전쟁희생자 원호조치
  - 연방원호법이 의미하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정주민과 이주민은 신체적·경제적 보상금을 받음
  -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에게 신청권이 있음

b) 과거의 포로병, 강제수용소 수용자, 강제노역자에 대한 지원 제공

o 포로병 보상조치

- 독일인으로서 포로병, 강제수용소나 강제노역장에서 있었던 사람이면 전쟁포로병 보상법에 따라 구금생활동안에 대한 보상조치가 따름
- 1955년부터 1987년까지 총 15억 2,200만 DM이 지출
- 1988년도 예산: 1,900만 DM

o 귀향민 지원재단 (과거의 포로병)

- 과거의 포로병, 그 미망인, 강제수용소나 강제노역장에 있었던 사람은 용자금과 일회성 지원금을 받음
- 동 재단에 의한 지원제공은 포로생활, 강제노역, 강제수용소에 있던 기간 및 석방일자와 서독 도착일자와 관계없이 수행됨
- 동 재단이 설립된 1970년부터 1987년말까지 일회성 지원금으로서 약 5,650만 DM, 용자금으로서 약 6,040만 DM이 지출됨
- 구금생활 기간을 법정 연금산정기간에 배려함

c) 사회부조금

- 정주민과 이주민 역시 연방사회부조법에 따라 모든 신청권자와 동일한 급부를 받음

d) 예방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조치

- 출발국이나 동독에서 입은 정주민과 이주민의 예방접종 피해는 보상금을 받음

## 라. '89 동독탈출난민의 서독 수용 및 지원

### ① 어느 부서가 난민문제를 전담했으며, 어떤 기관이 이에 참여하였는가?

연방내무부가 구동독 이주민의 서독 수용문제를 전담하였다. 1989년 가을 내륙간 국경이 개방되기 전, 동독인들이 동독을 떠나려는 출국여행에의 소망을 강력히 반영하기 위하여 프라하, 부다페스트, 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으로 피신하자 연방외무부 역시 관여하였다.

이주민 수용에는 이주민의 이동, 숙식제공, 각 주 배정과 같은 조직상의 문제처리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임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방내무부 관련근무처의 대표 및 기타 참여부서의 대표로 24시간 가동 실무단이 구성되었다. 특히 연방군, 연방국경수비대, 기술지원단, 독일적십자사, 말타지원봉사단, 요하니터 재난구제단, 다수의 각 지역 교회자선단체들도 참여하였다. 이주민 문제는 연방, 주, 지자체 차원에 걸쳐 모든 참여기관의 공동과제였다.

이주민들은 수용법에 따라 이주민 수용절차를 밟아야 했는 바, 수용절차는 각 연방주에 배정되어 숙식이 계속 제공되고 권리를 행사하고 각종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선결요건이었다. 50년대부터 수용절차가 착수된 이래 설치된 Gießen과 Berlin의 연방수용소를 비롯하여 별도로 설치된 다수의 긴급수용소는 연방내무부의 관장에 처해 있었다. 서독에 있는 친·인척에게 직접 갔던 사람들 역시 이곳에서 서류상의 수용절차를 밟았다. 1990년 6월 30일 수용절차는 수용법의 폐기와 더불어 종료되었다.

- ② 이주민의 수송 및 긴급수송에 필요했던 재원은 얼마였는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원부담율은 얼마였는가? 기타 재원은 있었는가?

연방행정청이 갖고 있는 연방재원의 배당 및 비용정산에 관한 관계서류에 따르면 연방내무부가 단독 처리했던 비용이 약 9,000만 DM 내지 1억 DM으로 되어 있다. 다른 부서의 부담율은 미상이다.

- ③ 신원 확인 및 신체검사와 같은 조치가 있었는가?

수송절차의 일환으로 이주민이 갖고 온 여권 또는 기타 증명서를 근거로 신원확인 조치가 취해졌다. 모든 이주민에 대한 대대적인 신원확인조치나 의무적인 신체검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 ④ 1989년 가을 구동독을 떠난 전체 피난민 수는 얼마였는가? 이주민 수송에 동원된 열차 수는 몇 대나 되었는가? 열차의 운행경로는?

1989년도 연방수용소에 등록된 이주민 수는 총 343,854 명이었으며 그 중 (헝가리 국경을 개방한) 1989년 9월부터 동년 12월까지 266,929 명이 등록절차를 거쳤다. (내독간 경계선이 개방된) 1989년 11월 중 이주민 신고자는 133,429명이었다. 1990년초부터 (1990년 6월 30일) 수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총 249,272명이 연방수용소에서 신고절차를 밟았다. 1990년 3월 18일 동독에서 최초의 자유선거가 실시된 이후 이주민은 현격히 감소되었다.

이주민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서독으로 왔을 경우 - 특히 헝가리를 경유한 출국이었을 경우 - 독일 연방철도청의 특별 열차 또는

정규 운행되던 열차에 추가로 연결시킨 열차를 비롯하여 버스와 항공기가 수송수단으로 동원되었다. 초기의 집중적인 이주민 쇄도에 대처하기 위해 30량의 열차가 필요했다.

이주민들은 부다페스트로부터 수회에 걸쳐 버스편으로 빈으로 운송된 후, 빈으로부터 독일연방철도청의 특별 열차편을 이용하여 서독(Gießen과 Schöppingen 연방 수용소)으로 운송되었다.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에 체류 중이던 이주민들은 특별열차편으로 우선 동독지역을 경유한 후 서독으로 운송되었다. 이주민의 동독경유는 정차역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심각했다. 이주민의 일부는 버스편으로 바이에른 주 동·서독 국경인접지역으로 운송되었다. 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에 체류 중이던 이주민의 최우선 운송수단은 항공기였다.

동원된 교통수단 (열차, 항공기, 버스)에 관한 정확한 수는 알 수 없다.

## ⑤ 이주민들은 어느 긴급수용소에 수용되었는가? 몇명이 친인척에게 직접 갔는가?

이주민의 수용과 숙소는 연방군 시설, 연방국경수비대 시설, 경찰서, 학교, 호텔, 천막시설 등 다양했다. 각 수용시설의 수와 수용능력은 그때 그때의 필요성에 따라 변동되었기 때문에 수용자의 명단작성이 불가능하였다.

1990년 수용신청서 처리대상 중 약 21%가 서류상의 절차를 밟았다. 수용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서독으로 왔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 사람들 중 과연 몇명이 친인척에게 갔는지 알 수 없다. 1989년에 친인척에게 직접 간 사람들의 수 역시 알 수 없다.

⑥ 이주민들이 서독에 도착한 이후 어떤 지원을 받았는가? 사회부조금 또는 물질적 긴급구제를 받았는가? 임대주택을 모색할 때 지원조치가 있었는가? 적절한 일자리가 이들에게 알선되었는가?

이주민들은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연방정부로부터 최초의 부조금으로 200 DM을 받았다. 최초의 수용소에서의 숙식은 무료였다. 이주민들은 이곳으로부터 원하는 서독내 목적지로 운송되었다. 이 시점부터 이주민의 숙식문제는 수용주(州)가 맡았다. 이주민들은 직장알선 또는 실업부조금 지원을 받기 위하여 즉시 노동사무소에 신고하도록 권장되었다.

그 당시 이주민들이 서독에 도착한 다음 받았던 각종 지원에 관한 내용이 별첨과 같다 (1990년 1월 18일 기준).

< 이주민들이 받은 지원 내역 >

일련 번호	지원 내용	법적 근거	수용증 여부	비용부담처
<u>I. 현지 거주민과 동일한 지원</u>				
1.	사회부조금			
2.	자녀수당			
3.	연방 교육훈련 촉진			
4.	전쟁희생자 원호			
5.	주택보조금			
6.	복지주택 입주권			



- 7. 자영업 창업을 위한  
ERP 용자
- 8. 가구와 의류 구입을 위한  
세금공제조치

II. 이주민을 위한 지원

9. 실업자를 위한 정착지원금	노동촉진법 제62조 a	불필요	연방고용청
10. 발병시 의료지원	연방실향민법 제90조 b	"	연방정부
11. 법정 연금보험에 의한 연금	외국불입 연금법	"	보험기관
12. 법정 재해보험에 의한 연금	외국불입 연금법	"	직업공제 조합
13. 보증기금에 의한 보조금	연방 청소년· 가족·여성· 보건부 지침	필요	연방정부
14. 연방교육훈련촉진법에 대한 추가적인 개인 지원	"	"	"
15. 대출자 프로그램	연방 교육· 학술부 지침	"	"
16. 학자에 대한 지원	"	"	"
17. 수용절차 수속 중 숙식제공	배당 규정	"	각 주정부
18. 수용주의 확정	수용의 기본원칙	"	"
19. 연방정부의 일회성 부조금 (200 DM)	연방 내무부 지침		연방 정부
20. 연방수용소로부터 향후 주거지까지의 차표	연방사회 부조법	"	각 주정부
21. 주립수용소에서의 숙식제공	배당 규정	"	"
22. 가구마련 저리융자금	연방내무부	"	연방 정부

23.	농업정책	난민지원법/ 연방실향민법 제 35 조	"	"
24.	수공업자 등록명부에의 등록 간소화	"/" 제71조	"	"
25.	권리행사 또는 법적지위 달성을 위한 제한규정의 비적용	"/" 제81조	"	"
26.	과거의 부채의무 비적용	"/" 제88조	"	"
27.	각종 시험의 인정	"/" 제92조	"	"
28.	증명서 갱신	"/" 제93조	"	"
30.	지속성 보조금	난민지원법	"	연방 정부
31.	제조업 및 자영업 구축 지원용 융자금 (최고 40,000 DM/ 이율 3.0%)	"	"	"
32.	농경업 구축지원용 융자금 (최고 16,500 DM/ 이율 0.0%)	"	"	"
33.	주택건설 지원용 융자금 (최고 26,000DM/ 이율 0.0%)	"	"	"
34.	보상금	부담조정법	"	"
35.	난경지원기금에 의한 지원제공			
	- 가구 보조금	"	불필요	부담조정기금
	- 지속성 보조금	"	"	"
	- 일회성 자본보조금	"	"	"
	- 정착 융자금 (31, 32, 33항과 동일)	"	"	"

## 5. 1989년 동독탈출난민 처리 및 협상과정

### 가. 동독주민의 탈출경과

- '89. 5. 2 이미 국내개혁을 추진 중이던 헝가리는 오지리와 국경선에 설치된 철조망 등 국경봉쇄 설치물을 제거하기 시작함.
- 동년 6월 헝가리는 유엔 난민협약(Convention of Refugees)에 서명함으로써 루마니아 등지로부터 이주해 오는 헝가리 동포들에 대한 유엔지원을 확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독주민들이 서독으로 탈출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국가로 인식됨.
- 처음에는 주로 불가리아 또는 루마니아 등 헝가리 남쪽으로 여행했던 일부 동독 주민들이 동독으로 돌아가지 않고 헝가리 국경수비대의 눈을 피해 서방으로 탈출했음.
  - 헝가리 경찰에 의해 동독으로 귀환된 탈출미수 주민들은 '공화국 도주죄'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음.
- 헝가리 등 사회주의 국가를 통해 동독을 탈출할 수 있다는 예기치 못했던 기회에 관한 소문이 동독에 퍼져나가면서, 서독여권을 얻기 위해 7월말부터 부다페스트, 프라하, 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 및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에 수백명의 동독탈출 주민(주로 20~40대의 휴가 여행자)들이 모여 들기 시작함.
  - 8. 3까지 동베를린 서독상주대표부에 80명, 주헝가리 대사관에 130명, 주체코대사관에 20명이 몰려듬.

- 부다페스트의 경우, 서독대사관의 건물 이외에도 상당수가 대사관 옆 교회 정원 등에 천막을 치고 서독으로의 출국을 기다리고 있었음.
  - 헝가리 정부는 이들 동독주민들을 더이상 동독으로 강제 송환시키지 않기로 결정함.
- 8.19 오지리 ‘범유럽연맹’ 과 헝가리 야당 단체들이 오지리-헝가리 국경지방인 Sopron 에서 개최한 ‘범유럽축제’ 를 이용, 661명의 동독주민이 오지리로 탈출함.
  - 9.3 경 헝가리에서 서독으로 출국을 기다리고 있던 동독주민수가 5,000여명에 이르렀고, 매일 500명씩 증가함. 주헝가리 동독대사관 관계자들이 이들의 동독귀환을 종용했으나 실패함.
  - 9.11 헝가리정부는 동독탈출민들이 서독으로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오지리와의 국경을 완전히 개방함. 출국허가조치는 1969년 헝가리-동독간 ‘여행협정’ 규정 (양국은 합법적 여행증명이 없는 상대국 시민을 제3국으로 출국여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가짐)과 배치되므로 헝가리 정부는 동 조약의 효력을 정지시킴.
    - 9월말까지 30,000명 이상의 동독주민들이 헝가리와 오지리를 거쳐 서독으로 탈출함.
  - 9월말 겐서 외무장관은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서방측 및 동독, 체코, 폴란드 외상 등과 만나, 동독탈출 난민 처리문제를 협의함.
  - 10.1 동독 특별열차 편으로 약 6,000명 이상의 탈출민들이 바르샤바와 프라하를 출발, 동독을 경유 서독으로 입국함.

## 나. 동독정부의 대응

- 1980년대 말 호네커를 비롯한 동독공산당 지도부는 주권국가로서의 동독의 안정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으며, 여타 동구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혁시도를 거부했음.
  - '89.6 동독 정부는 천안문광장 시위에 대한 중국의 무력진압을 공식 옹호함.
  - 헝가리와 폴란드에서와 같은 개혁에 대한 동독주민들의 갈망이 점차 증대함.
  
- 동독주민의 탈출사태에 대한 공산당의 반응은 당시 현실과 상당한 거리감이 있었음.
  - 호네커 당 서기장은 동독 사회주의의 승리를 강조하는 등, 동독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함.
    - 개혁을 권유한 크렌츠를 즉각 휴가 조치시킴.
  - 헝가리-오지리 국경이 개방된 이후, 동독주민의 대규모 탈출에도 불구하고, 동독은 전혀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공산당지도부는 탈출사태를 서독 등 서방에 의한 동독의 안정을 해치기 위한 기도라고 비난했음.
  - 9.13부터 동독국가보위부(Stasi)는 국경초소에 동독을 떠나는 여행자들에게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고 지시함.
  - 10.4 동독은 그때까지 자유스러웠던 체코로의 여행을 제한함.
  
- 한편, 동독정부는 서독외무성에 대해 동독인들의 서독대사관 피난물결을 막기 위해 바르샤바, 부다페스트, 프라하, 동베를린 주재 서독대사관 및 상주대표부 건물을 폐쇄할 것을 요청함.

- 동독여행자들이 주헝가리 서독대사관에 피신해 있을 당시(8월 중순경), Gerd Vehres 주헝가리 동독대사는 Horn 헝가리 외무장관을 면담, 헝가리가 동독난민문제 처리를 지연시켜 점점더 많은 동독인들이 헝가리에 머물도록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헝가리정부가 과거 관례대로 탈출 동독인들을 즉각 동독으로 귀환조치토록 요청함.
  - 이에 대해, 헝가리 외무장관은 “동독시민들이 동독귀환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들을 서독으로 이주시킬 수 밖에 없다”면서, 이 사실을 동독정부에게 보고하라고 말함.
  - 동독대사는 헝가리가 '69년 협정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으나, Horn 외무장관은 “챙피스런 협정을 체결했던 당사자들은 이미 무대에서 사라진지 오래며, 현정부는 그 당시 정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동독 외무장관에게 주지시키라고 말함.
- 헝가리 정부의 오지리 국경개방조치에 대해 동독정부 및 언론은 강력하게 비난함.
  - 동독정부는 국경개방결정을 “불쾌하게” 받아 들이며, 헝가리 정부가 여행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각서를 보냄.
  - 동독관영 AND 통신은 헝가리의 국경개방을 “쿠테타”로 규정하고, “이는 사회주의 전체에 반기를 든 제국주의 십자군의 원정의 일환”, “헝가리가 동독시민을 은화 몇푼과 바꾼 차디 찬 거래” 등으로 비난함.
  - 동독공산당기관지 Neues Deutschland도 서독의 매스미디어와 특정 정치 집단이 동독에 대한 음흉한 책동을 전개, 동독시민들의 불법출국을 조장하고 있으며, 이는 동독의 주권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도발행위라는 소련관영 Tass 통신을 인용, 보도함.

- 결국, 동독이 직면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적절한 개혁을 거부함으로써 호네커 정권은 동독의 멸망 속도를 가속화시킴.
- 과도한 중앙집중주의(Centralism)의 결과 당서기장의 정책에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동독정권은 8.21 쓸개수술로 호네커가 무능상태에 빠져 9월말까지 집무를 볼 수 없게되자 대책없이 상황에 끌려가기만 함.

## 다. 서독정치권의 대응 및 논쟁

- 서독의 주요 정당들은 동독과의 관계악화를 원치 않았으며, 동독의 급변 사태로부터 어떤 큰 이득이 올것을 기대하지도 않은 비교적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했음.
- '89년 상반기 동안 상당수의 여·야정치인들은 동베를린을 방문, 호네커 등 동독지도자들과 가진 비밀회담을 계기로 동독내부사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기민당의 Albrecht(니더작센주 수상), Lothar Spaeth(바덴-뷔르템 베르그주 수상), 자민당의 Feldmann 의원, 사민당의 Engholm(슐레스비히-홀스타인주 수상), Rau(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지사), Vogel 원내의장 등이 방문함.
- 대부분의 서독 주요 정당 지도자들은 동독과의 관계에서 급격한 변화를 바라지 않았음.
- 무엇보다도 서독지도자들은 유럽의 안정과 현상을 유지하는 국가로서의 서독 이미지를 계속 부각시키기를 원했음.
  - '88.10 겐서 외무장관은 동·서독의 공동협력을 통해 유럽대륙의 분단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89.7 콜 수상의 외교정책 고문이던 텔칙은 “동독이 별개의 국가로 존재함을 인정하며... 독일문제는 영토적 해결을 우선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전유럽의 상황전개와 조화시켜 나가야 할 문제” 라고 말함.
  - 89.8.22 콜 수상도 양독일간의 관계가 유럽안정에 긴요한 요소라고 강조함.
- 이런 상황에서 서독정부에게는 두 가지 정책대안이 있었음.
- 우선, 1989년 봄까지 추진해왔던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동·서독에 상호 이익이 되는 다각적인 교류와 접촉을 계속하는 것이었음.
    - 도시간 자매결연, 과학기술협력협정, 동·서베를린간의 환경보호 공동 사업 등이 추진되었음.
    - 사민당도 '89년 6월까지 안보분야의 공동협력을 위한 고위접촉을 계속했음.
  - 동독내의 상황이 점차 악화되면서, 서독정부에게 더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대안은 동독정권을 회피하는 정책이었음.
    - 그 대신 콜 수상은 소련, 헝가리, 폴란드 등 개혁정부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집권당의 긴장완화정책을 부각시킴.
- 동독탈출 난민문제와 관련해서도, 서독연방정부는 동독지도부와 접촉을 계속하면서 해결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했음.
- 이는 동독공산당이 어려운 협상상대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실체파악 가능하며 다룰 수 있는 정권으로 간주했기 때문임.



- '89. 8. 9 자이더스 수상실장관은 동독시민들에게 서독공관을 탈출의 해결 장소로 더이상 이용하지 말것을 호소하는 한편, 동독과의 필요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시사함.
- 콜수상도 8. 22 성명서를 통해 탈출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호네커와 이미 상의한 바 있으며,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호네커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말하는 한편, 동독정권이 진정한 정치적, 경제적 개혁을 추진할 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서독정부가 경제원조 뿐만 아니라, 군축 및 군비통제 분야도 협력할 것이라고 천명함.
  - 그는 또한 동구권의 민주화, 개방 및 개혁을 비롯, 유럽전체의 희망찬 변혁의 대열에서 동독이 고립되거나 이를 거부하지 말고, 역사적 기회를 이용, 전체유럽의 평화에 기여할 것을 촉구함.
- o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당시 인기하락세에 있던 서독 집권여당은 동독주민의 탈출사태가 국내정치적으로 예기치 못했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함.
  - 콜 수상과 Ruehe 사무총장은 기민당을 민족적 목표인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세력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실질적 이득을 얻어내고자 했음.
    - 8. 18 Ruehe 는 사민당의 “접근을 통한 변화” 정책을 “구걸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biederung)으로 표현하면서, 동 정책 때문에 서독은 동독주민을 내버려두었다고 비난함으로써 여론을 환기시키기도 했음.
    - 9. 5 연방하원 예결위 연설에서 콜 수상은 “사민당은 동독 지도자들과 가진 수많은 협상 및 대화에서 동독동포들의 자유에 대한 의지를 과소 평가하는 자기기만을 드러냈다” 고 공격함.
    - 특히, 그는 “정상적 여행교류” 를 위해 동독 국적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사민당의 입장을 공격함.

- 동독 탈출난민과 관련, 사민당 지도부는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 있었음.
  - Gansel 의원은 호네커 정권과의 접촉을 줄이고, 소위 개혁의지가 있는 공산당 인사와만 대화를 허용하는 소위 “거리유지를 통한 변화” (Wandel durch Abstand)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섬.
  - 그러나 사민당의 기본입장은 동독공산당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피한다는 것이었음.
    - 라퐁텐 부당수 등 사민당의 핵심지도자들은 사민당의 주요 기조는 독자적인 동독 시민권의 존재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계속 주장함.
    - 에곤 바와 Momper 서베를린 시장은 독일의 장기적인 민족목표(통일)에 대한 논의가 동독내 개혁명분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반대함.
  
- 여·야를 막론하고 서독 정치지도자들은 동독주민탈출 사태가 통일을 가져온 속도에 대해 준비가 거의 되지 않았었음.
  - 한 가지 이유는 동독으로부터 온 탈출민들에 대한 서독주민들의 환영열기가 점차 식기 시작했음.
    - 수만명의 동독이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혜택에 부담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서독 중산층의 안정되고 질서정연한 생활에 심리적 부담을 초래했기 때문임.
  - 외교정책면에 있어서도 독일통일의 가능성은 콜수상과 겐셔외무장관 등이 독일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이웃국가들이 위협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신시켜 온 콜 수상과 겐셔 외무장관 등의 모든 노력을 무산시킬 우려도 있었음.

- 겐서는 동독주민들이 “자신들의 국가내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유럽대륙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독일통일에 대한 예상을 불식시키고 “유럽화해”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유럽공동체 내의 존재” 를 부각시키고자 했음.
-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후에도 콜 수상은 결코 통일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동독의 정책담당자들이 즉각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게 하여..., 가능한한 많은 동독인들이 동독에 머물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 고 밝힘.
- 다만, 동독 탈출난민의 수용문제에 있어서는 콜 수상은(9.5 의회연설에서) 모든 탈출주민들이 기본법과 법률들이 부여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고 강조함.
  - “동독주민들이 동독에 등을 돌린 것은 개인의 사고와 거주이전의 자유에 따른 소망, 즉 보다 나은 삶의 조건에 대한 갈망 때문” 임.
  - 동독을 탈출, 서독으로 오는 동독주민은 모두 받아들여야 하며, 한사람도 돌려보내서는 안된다고 말함.
  - 그러나 그는 이들의 탈출결정은 존중하지만 가능한한 많은 주민들이 동독을 떠나 서독으로 넘어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독일정책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함.
    - “동독문제를 동독에서 해결해야지 본에서 해결할 수는 없다” 면서 가족들과 동독에 머물면서 보다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동독주민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책임감을 갖고 이들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 라. 서독-헝가리 정부간 교섭

- 8.14 서독정부는 동독탈출 난민문제 교섭을 위해 외무사무차관(Sudhoff)을 특별군용기 편으로 부다페스트로 급파함.
  - 헝가리측은 8.15 새벽 동독난민 대책회의에서 '88년 소피아 주재 헝가리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한 12명의 헝가리인의 인도(당시 헝가리와 불가리아 정부는 국제적십자사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남으로 봉인된 대형트럭을 이용, 헝가리인들을 제3국으로 출국시키기로 합의함) 경험을 바탕으로 제네바 국제적십자사를 통한 난민처리방침을 결정함.
  - 서독 외무차관과 대사는 헝가리 외무장관을 방문,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헝가리 정부가 서독대사관이 동독 탈출민에게 발급하는 여권을 인정하는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함.
  - 이에 대해 헝가리 외무장관은 이 방법은 “동독이 우리와 즉각 외교관계를 단절하게 되는 사태를 초래한다”면서 동독인들에 대한 서독국적 인정이 동독의 국가존립을 의문시한 것으로 같은 바르샤바 회원국인 동독에 대해 반기를 드는 조치라면서, 대신 ‘소피아 모델’을 제안함.
    - 동독 난민이 자율적으로 서독대사관을 떠나는 것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으므로 국제적십자사로부터 증명서(Lasses-Passer)를 발급받아 이들을 버스편으로 공항으로 이동, 서독이 제공하는 특별기편으로 비밀리에 데려갈 것을 쌍방이 합의하고, 국제적십자사의 협조는 서독측이 요청기로 함.
    - 헝가리측은 동 조치와 함께 더이상 난민들이 몰려 들지 않도록 서독 대사관을 폐쇄할 것을 요청했으나, 서독대사는 “잠정적으로 모든 탈출민을 받아 들여야만 한다”면서 폐쇄 불가 입장을 밝힘.

- 헝가리 외무장관은 탈출민 문제 협의를 위해 서독-헝가리 총리간 비밀회담을 서독에서 개최키로 했다고 Nemeth 헝가리 총리에게 보고함.
  - 8월 하순, 헝가리 외무장관의 요청으로 구체적인 방문일정 협의를 위해 서독 외무차관이 부다페스트를 방문했을때, 일전 합의한 국제적십자사의 증명서 및 서독 특별기 조치가 완결되었음을 통보함.
  - 또한, 서독측은 Nemeth 헝가리 총리와 Horn 외무장관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다만 도착 24 시간 이전에 서독에 통보해 주기를 요망함.
  - 헝가리 외무장관은 극비회담을 위해 Nemeth 총리를 수행, 8.25 서독을 방문할 것임을 Bonn 에 통보함.
- 8.25일 Bonn 근교 Gymnich 궁전에서 양국 외무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서독-헝가리 총리회담이 4시간여동안 개최됨.
  - 헝가리 외무장관은 동독난민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해결방안을 모르기는 하나, 여하튼 이들을 동독으로 귀환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함.
  - 콜 수상은 이에 대해 감사를 표한 다음 서독정부는 동독탈출민 문제로 곤경에 처해 있는 바, 왜냐하면 한편으론 서독이 동독을 불안정화 (destabilisieren) 하기를 원치 않지만, 다른 한편으론 비인간적인 동독 체제를 지원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함.
  - 동 회담에서 헝가리 외무장관은 특정한 날 밤, 특정시간에서 여명시간까지 헝가리-오지리 국경을 일시 개방하여 수천명 동독난민이 도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대해 서독측은 헝가리 정부의 개혁을 위해 10억 DM의 차관을 제공키로 약속함.

- 8.24 국제적십자사의 증명서를 소지한 서독 대사관 피난민 108명이 서독 특별기 편으로 헝가리를 떠나 서독으로 입국함.
  - 동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다페스트의 캠프장, 학교, 교회 등지에서 임시천막을 치고 있던 수천명의 동독난민문제는 여전히 미결상태여서, 헝가리 정부는 '69년 헝가리-동독간 여행통과협정을 효력정지시키고, 9.11일 0시를 기해 오지리 국경을 개방기로 결정함.
    - 헝가리 외무장관은 겐서 외무장관에게 사무차관을 부다페스트로 파견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그날 밤 도착한 사무차관에게 헝가리 정부의 국경개방 결정을 전달함(아울러 동독측의 감지를 막기 위해 암호전문을 보내지 말 것을 요청).
- 한편, 8.29 주헝가리 동독대사는 난민문제협의를 위해 헝가리 외무장관이 동베를린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함.
  - 8.31 Fischer 동독 외무장관, 정치국원 G. Mittag 이 참석한 가운데 동독-헝가리 외무장관 회담이 동독 외무성에서 개최됨.
    - 동 회담에서 동독측은 난민을 귀환시킬 경우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귀환을 요청함.
    - 이에 대해 헝가리측은 오지리 국경개방 결정사실을 밝히고, 그 배경을 설명함.
    - 동독 외무장관은 동독을 저버리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배신행위' 라고 비난하면서, 국경개방은 재난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국경을 폐쇄할 것을 요청함.
  - 9.8 동독 외무장관은 헝가리 외무장관에게, 9.9 호네커 서기장은 Nyers 헝가리 사회당 당수에게 국경개방결정을 취소할 것을 요청함.

- 9.10 오후 7시 헝가리 외무장관은 TV 방송을 통해 국경개방조치를 발표함.
  - 그는 동독정부가 불필요한 혼란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동독난민이 한 명이라도 헝가리에 남아 있는 한 국경을 계속 개방할 것이라고 강조함.
  - 헝가리 정부는 소련에게도 동 조치를 사전 통보했음.
- 9.14 헝가리 정부는 '69년 여행통과협정 파기에 항의하는 동독외무부의 9.12자 각서에 대해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양국간 협정 중 일부를 파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 반박함.

## 마. 동·서독간 접촉

- '89.8.8 연방수상실 독일정책 실무단장 Duisberg 국장은 본 주제 동독 상주대표부 부대표 Lothar Glienke를 만남.
  - ‘서독정부가 동독의 주권을 침해한다’ 는 8.7 동독외무부 성명에 대해 항의하고, 동독인들의 서독공관체류가 불법행위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공관의 문은 모든 독일인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이는 CSCE 마드리드 후속회담 결의안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주장함.
- 8.11 Duisberg 국장은 동베를린에서 Nier 동독외무차관을 만나 서독공관에 체류중인 동독탈출난민 문제를 협의함.
  - 이 자리에서 호네커 앞으로 보내는 콜 수상의 난민관련 친서를 전달함.
  - 동독외무차관은 서독은 동독시민에 대한 보호의무(Obhutspflicht)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해 여하한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8.15 동독 외무부 서독국 Hans Schindler 국장대리는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Bertele 대표에게 “주 헝가리 서독대사관의 동독시민들에 대한 국제법 위반 행위” 를 항의함.
  - Bertele는 동 항의를 일축함.
- 8.17 호네커가 콜 수상에게 서한을 보냄(내용은 비공개키로 합의함).
- 8.18 Seiders 수상실장관은 동베를린에서 Krolkowski 동독외무사무차관과 서독공관에 체류중인 동독탈출 희망자 문제를 협의함.
  - 회담 후 Seiders 장관은 동독은 애당초 약속한 귀환자에 대한 “무죄처분” 이상의 조치를 취할 용의가 없다고 밝힘.
- 동독 국선 변호사 Wolfgang Vogel(과거 내독간 정치범 석방거래, 합법이주 주선 담당)은 9.22 Bonn 에서 Seiders 수상실장관과 회담
  - 그는 서독상주대표부에 체류하고 있던 탈출희망자들이 본인과 면담후 대표부를 떠났으며, 이들이 10월 초순경 서독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Seiders 수상실장관은 9.14 연방하원 연설에서 단 하나의 독일국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서독)가 국제법이나 동독의 법률을 위반하거나 동독 내정을 간섭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독일인들을 우리가 돌려보내도록 촉구함으로써 오히려 동독이 우리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 고 반박함.



## 바. 서독-동독, 체코, 폴란드 정부간 교섭

- 9.26 동독측의 Vogel 변호사, 서독측의 프리스니츠 내독성차관, Bertele 상주대표부 대표 및 Sudhoff 외무차관이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을 방문, 동독탈출민들의 동독귀환을 설득함.
  - Vogel은 이들이 동독으로 귀환하면 6개월 이내에 서독으로 출국할 수 있다는 동독지도층의 확약을 전달함.
  - 약 1,100명의 탈출민 중 200명만이 이에 호응, 버스편으로 동독으로 귀환함.
- 헝가리가 국경을 개방하던 날, 체코정부는 헝가리 및 동독과의 국경을 봉쇄함.
- '89.9.28 Huber 체코주재 서독대사는 공관에 피신한 동독탈출민 수가 2,500명 이상 (이 중 어린이 500명)으로 '심각한 한계'에 도달했다고 본부에 보고함.
  - 특히 위생관련 시설 및 급식문제가 극한 상황에 있음을 통보
  - 외무부는 뉴욕으로 겐서 장관에게 동 사실을 신속 보고함.
  - 겐서는 독일적십자사 총재로 하여금 프라하를 직접 방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볼 것을 요청함.
- '89.9.27~29 겐서 외무장관은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소련, 프랑스, 동독, 체코, 폴란드 외상과 접촉, 탈출민 문제를 협의함.
  - 9.27 유엔주재 동독 대사관저에서 Fischer 동독 외무장관과 만나 점증하는 동독 탈출민에 대한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함.
    - 프라하 및 바르샤바 주재 동독대사관이 이들에게 출국사증을 발급해 주든지 또는 탈출민들이 기차를 이용, 동독지역을 경유 서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함.

- 그러나 Fischer 에게는 실질적 결정권한이 없었으므로 회담은 성과없이 끝남.
- 9.27 Skubiszewski 폴란드 외상은 겐서 장관과의 회담에서 폴란드는 “인도주의적 해결”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함.
- 같은 날 Johannes 체코 외상을 만났으나, Johannes는 서독대사관내 탈출민 사태는 전적으로 동·서독간에 해결할 문제라고 비협조적 자세를 견지함.
- 한편, 9.28 Baker 미국 국무장관, Dumas 프랑스외상은 겐서장관에게 도울 용의가 있다면서 체코정부와 접촉하겠다고 밝힘.
- 특히, 9.28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상은 겐서 장관으로부터 프라하의 극한 상황에 관해 설명을 듣고, 난민 중 아픈 어린이들의 숫자에 대해 걱정스럽게 질문한 후, 소련이 동독지도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세바르드나제는 베를린, 프라하 및 모스크바로 전문을 보내겠다고 약속함.
- 9.29 오후 Fischer 동독 외무장관은 Niklas 유엔주재 동독대사를 통해 겐서 외상에게 동독정부가 열차편을 이용, 체코와 폴란드의 동독탈출민들이 동독지역을 거쳐 서독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임을 통보함.
- o 9.30 겐서 외무장관과 자이더스 수상실장관은 프라하로 가서 서독대사관에 체류중인 동독탈출민들에게 서독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함.
  - 10.1 동독 국철열차편으로 800명의 난민이 바르샤바에서 동독을 통과, 서독의 Helmstedt 로, 5,500명이 프라하에서 동독 드레스덴을 경유 서독 Hof로 입국함.
  - 동 열차에는 서독정부 대표들이 동승했으며, 도중에 드레스덴 등지에서 동독시민들이 열차에 뛰어 올라타기도 했음.

- 동·서독 경계선을 넘어선후 탈출민들은 서독 열차로 갈아탑.
- 동독 외무성 대변인은 “프라하와 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의 견잡을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체코, 폴란드 및 서독정부와 협의한 끝에 불법 체류자들을 특별열차 편으로 동독영토를 경유, 서독으로 추방하기로 했다” 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함.

## 사. 서독의 국내조치

- o 서독에 도착한 동독탈출민들은 서독으로 입국, 기센 등 수용소로 보내어졌다가 여러 주로 배분되어 정착함.
  - 수송 교통편은 독일적십자사가 주관하였으며 비용은 독일정부가 부담함.
  - 서독에 친지가 있을 경우 난민들은 친지에게로 가서 자유롭게 거주했으며, 그외 난민들은 피난민 수용소에 수용됨.
- o 서독은 동독 고유 국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독주민도 서독국적을 소지하게 되었는데 바(기본법 제 116조), 서독시민으로 정착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
  - 정부 여당은 만약 사민당의 주장대로 동독국적을 인정했었다면, 89년 탈출난민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함.
- o 헝가리, 체코, 폴란드, 동베를린 등으로부터 서독으로 탈출한 동독주민수가 급증함에 따라 서독연방정부는 긴급수용 및 동화대책을 수립함.
  - 연방정부는 1988. 8. 31자 특별조치와는 별도로 1989~90년 긴급 재원충당 계획을 마련함.

- 연방, 주, 자치단체, 구호단체가 공동으로 수용절차를 신속히 추진함.
  - 임시숙소 설치를 위한 독일부흥은행의 지원을 확대함.
  - 이주민 주택건설사업에 있어서는 1989년 3만동의 추가주택 건립을 위해 주정부가 추가재원을 마련함.
    - 1990년에는 사회복지주택(Sozial Wohnung) 건립을 위해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증액시키고, 주정부는 총 16억 DM의 예산을 배정함.
  - 이주민 수용을 위해 기존건물을 활용하는 대책을 마련함.
    - 사용하지 않은 공간을 이주민 수용용으로 활용토록 건물소유주에게 추가적인 동기부여책을 강구
    - 공공건물을 이주민 수용주택으로 활용
  - 이주민의 학교 입학, 직업알선, 사회단체 가입 등을 위해 재원수단을 계속 동원함.
- 자이터스 연방수상실 장관은 정당, 연방정부, 주, 지방자치단체, 교회, 사회단체, 동호인클럽 등 모든 서독인들이 동독이주민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출발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줄 것을 촉구함.

## 6. 1989년 동구권 경유 동독탈출난민 일지

- 1989년 5월 2일 헝가리 국경수비대가 대 오스트리아 국경용 철조망을 제거하기 시작한 이래로 점점더 많은 동독인들은 헝가리를 통해 오스트리아를 경유, 서독으로 가려고 시도했음.
  - 이 중 국경에서 저지당한 동독인들은 우선 여권에 도장을 받았으나, 동독으로 송환되지는 않았음.
  - 수많은 사람들은 헝가리에 계속 머물면서 새로 탈출을 시도하거나, 부다페스트 주재 서독대사관의 도움을 요청했음.
  - 이때 프라하, 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과 동베를린 주재 서독상주 대표부에도 동독을 떠나 서독으로 탈출하려는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함.
  
- 89년 8월 3일
  - 헝가리 외무부, 헝가리 정부가 동독인들에 대한 망명비호권 보장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
  - 동베를린 서독상주대표부에 약 80명, 부다페스트 주재 서독대사관에 130명,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에 20명의 동독난민이 체류 중
  
- 89년 8월 4일
  - 헝가리 내무부는 정치적 동기가 있는 동독난민의 망명신청서를 검토하기로 함. 그러나 기타 범주의 난민은 동·서독 정부가 해결할 사안이라고 부연
  - 동독 국선 변호사 Wolfgang Vogel이 난민문제 해결차 동원됨.

o 89년 8월 7일

- 동독 외무부, 서독 정부가 “동독의 주권사안을 심각하게 침해” 한다고 비난 :
  - 각국 주재 서독대사관은 동독시민에 대해 하등의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음.
  - 언필칭 “보호주의” 행위는 “전형적인 대독일주의식 월권행위” 임.
- 헝가리 정부측, 국경탈주시도가 좌절될 경우 동독인들의 여권에 더이상 도장을 찍지 않을 것임을 확인
- 동독 주재 헝가리 여행사무소장은 동독과 헝가리간의 관광여행 제한조치에 관한 서독측 언론보도를 “모략성 주장” 이라고 일축하면서 동독-헝가리간 여행은 완전 정상상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

o 89년 8월 8일

- 동베를린 주재 서독상주대표부는 잠정적으로 대민접촉창구를 폐쇄하기로 결정
  - 서독정부의 고시 : “130명의 동독인들이 서독으로의 출국여행을 강요하기 위해 상주대표부를 찾아 왔으므로” 이와 같은 결단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상주대표부의 시설상 “더이상의 인원을 인간다운 조건하에 수용할 수 없는 상태” 임.
- 연방 내독관계성 Walter Priesnitz 사무차관은 동독정부 대표 Wolfgang Vogel 변호사가 130명의 출국여행 희망자들의 숙명에 관한 회답에 단지 “제한적 혼령” 만을 갖고 있다고 발표
  - Vogel 변호사는 동독난민들이 서독 상주대표부를 떠날 경우 무죄 처분될 것임을 약속할 수 있으나
  - 종전처럼 출국여행 신청서에 대한 “선의의 검토” 는 더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임.

- 연방수상실 독일정책 실무단장 Claus-Juergen Duisberg 국장은 Bonn 주재 동독상주대표부 부대사 Lothar Glienke 를 초치, 전달있었던 동독 외무부의 성명서 내용에 대해 항의함.
  - 동독인들의 서독상주대표부 및 서독대사관 체류가 불법행위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외교공관의 문은 모든 독일인들에게 개방되어 있음.
  - 이는 마드리드 CSCE 후속회담의 결의에도 부합하는 것임.

o 89년 8월 9일

- Rudolf Seiters 연방수상실 장관은 탈출을 원하는 동독시민들을 향해 서독 공관을 이용하는 방법은 “문제점의 해결보다는 더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므로” 더이상 이 방법을 이용하지 말 것을 호소함.
  - '89년 7월말까지 46,343 명의 동독인들이 합법적으로 서독으로 이주해 왔음을 주지

o 89년 8월 10일

- 비공식 발표에 따르면, 헝가리에 의한 대 오스트리아 국경철책 제거이후 약 1,600명의 동독난민들이 오스트리아로 월경함.
- 158명의 동독인들이 부다페스트 주재 서독대사관에 체류 중
- 헝가리 내무부는 동독측이 이들 난민의 무죄처분을 약속하면서 송환을 촉구한다고 발표
- 헝가리 정부는 동독측과 의견상충문제의 해결을 위한 회담 개시
  - 헝가리-동독간의 양국간 조약상의 의견상충 문제
  - 제네바(Geneve) 국제난민협약상의 의견상충 문제

○ '89년 8월 11일

- 연방수상실 독일정책 실무단장 Claus-Juergen Duisberg 국장은 동베를린에서 동독 외무차관 Kurt Nier와 만나 상주대표부 및 서독대사관에 체류중인 탈출희망자 문제에 관해 회담
  - 호네커에게 보내는 Kohl 수상의 난민문제관련 친서를 전달
  - 동독 관영통신 ADN 보도에 따르면 Nier 동독외무차관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는 것임 :
    - .. 서독은 “국제법의 제 규범” 에 따라 동독시민들에 대한 “보호의무” 를 결코 갖고 있지 않음.
    - .. 서독은 “동독시민에 대해 여하한 활동도 할 수 없음” .
  - 동독 작가 Stefan Heym은 서독 제1TV ARD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견해 표명
    - .. 현재 일고있는 탈출의 파고는 “무서운 현상” 임.
    - .. 동독지도층은 “통제된” 자유를 부여하면서 인간이 원하는 사회주의를 창조해야 함.

○ 89년 8월 13일

- 15명의 탈출희망자들이 자발적으로 서독상주대표부를 떠나고, 116명은 잔류함.
- 서독정부는 180명의 동독난민이 체류중인 부다페스트 주재 서독대사관을 폐쇄조치함.

○ 89년 8월 14일

- 증가일로의 동독시민들이 폐쇄상태의 부다페스트 주재 서독대사관 앞에 운집하고 적십자사의 지원을 받음.



- 서독외무부 Juergen Sudhoff 사무차관은 부다페스트에서 Gyula Horn 헝가리 외무차관과 만나 서독대사관 체류중인 출국여행 희망자들의 현황에 관해 회담.
- 헝가리 내무장관 Istvan Horvath 는 TV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선언 :
  - 헝가리 정부는 동·서독간의 “심판관” 이 아님.
  - 헝가리는 “사회주의 국가” 로부터 온 관광객들을 위한 “서방측 탈출용 도약대” 가 아님.
- 동독 공산당 기관지 Neues Deutschland지 및 기타 일간지는 서독공관에 체류중인 탈출희망자들의 현황을 다룬 소련 “프라우다” 지의 사설을 인용 보도 :
  - 서독으로 가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독의 프로파간다를 과신한 나머지 스스로를 기만하는 사람들임.
  - 국적문제는 정치적 제동장치가 되어 동·서독간의 분위기에 적국으로 하여금 하시를 막론하고 해독을 끼칠 수 있는 것임.

o '89년 8월 15일

- 동독 외무부는 Erich Honecker에 대한 Kohl 수상의 친서가 도착했음을 발표
- 헝가리 통신사 MTI는 “동독대사관의 발표문” 을 공개 :
  - 부다페스트 주재 서독대사관에 체류중인 동독시민들이 동독으로 귀환할 경우, 아무런 책임추궁이 없을 것임.
  - 이러한 조치는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동독시민에게도 적용됨.

o 89년 8월 16일

- 서독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부다페스트 주재 서독대사관에 171명,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에 40명, 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에 1명, 동베를린 주재 서독상주대표부에 116명의 동독인들이 체류함.

- 동독외무부 “서독국” 국장 직무대리 Hans Schindler는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Franz Bertele 대표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강력 항의
  - “헝가리 인민공화국 내 동독시민들에 대한 서독대사관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단호히 항의한다” .
  - 이에 대해 Bertele 부장은 동독의 항의를 “단호히 일축한다” 고 대응
- 연방외무부 Sudhoff 사무차관은 부다페스트에서 헝가리 외무장관 Horn과 재차 만나 서독대사관 체류 탈출희망자 문제에 관해 회담.

○ 89년 8월 17일

- Kohl 수상에게 보내는 호네커의 서한이 Bonn에 도착, 서신교환의 내용에 관해서는 묵계할 것이 합의됨.

○ 89년 8월 18일

- 수상실장관 Seiders는 동베를린에서 동독외무차관 Herbert Krolkowski와 만나 서독대사관에 체류중인 탈출희망자 문제에 관해 회담.
  - Seiders 장관은 회담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과 같이 설명
    - .. 동독은 그들의 애당초 약속인 “무죄처분” 을 초월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용의가 없음.

○ 89년 8월 19일

- 661명의 동독시민들이 헝가리 국경근처에서 개최된 “범유럽동맹” 행사를 이용하여 오스트리아로 피난함.

○ 89년 8월 21일

- 1명의 동독인이 헝가리 국경초병과의 실랑이 도중 피살됨.

○ 89년 8월 22일

- 140명의 난민들이 체류중인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은 잠정적으로 대민 접촉창구를 폐쇄함.

○ 89년 8월 24일

- 부다페스트 주재 서독대사관에 체류 중이던 108명의 동독시민들이 국제 적십자사의 여행증명서를 지참하고 헝가리를 떠났으며, 나머지 탈출희망자들은 자력으로 탈출을 시도하려고 이미 그 전에 서독대사관을 떠났었음.
- 동독외무부는 ADN 통신을 통해 “Die Welt”의 풍문성 보도를 “아무 근거 없다”고 반발 :
  - Die Welt지는 9월 1일을 기해 동독이 헝가리를 포함한 기타 국가에 대한 여행제한조치를 취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퍼뜨림.

○ 89년 8월 25일

- Kohl 수상과 Genscher 외무장관은 헝가리의 Miklos Nemeth 총리와 Horn 외무장관을 본 근교 Gymnich 궁전으로 초청, 난민문제를 협의함.

○ 89년 8월 28일

- 1,400명의 동독인들은 부다페스트의 난민수용소에서 출국을 기다림.
- 헝가리 외무부는 난민문제가 “조속한 시간내에” 해결될 것이라고(비밀사안을) 퍼뜨림.

○ 89년 8월 31일

- 동독 외무장관 Oskar Fischer는 동베를린에서 헝가리 Horn 외무장관과 의견교환차 만났으며, Horn 외무장관은 Radio Budapest를 통해 다음과 같이 보고

- “헝가리 정부는 난민문제에 관한 한 국제적 인권과 헝가리 정부의 인도주의적 정치 현실과 부합하며, 헝가리의 의무수행에 일치하는 처리과정에만 참여할 용의가 있다” .

- 프라하 주재 동독대사 Helmut Ziebart는 다음과 같이 성명서 발표

- “동독은 현재 외국대사관에 체류중인 동독시민들이 동독으로 귀환한 후 동독에서 합법적인 출국여행을 해 주기를 원한다” .

o 89년 9월 1일

- 3,500명 이상의 탈출희망자들이 헝가리에 있는 난민수용소에 운집
- Bayer 주가 천막도시를 만들기 시작하고, 기타 다른 연방주 역시 난민 숙소를 마련하기 시작함.

o 89년 9월 4일

- 동독은 부다페스트 근교 Zugliget에 난민수용소를 설치함과 동시에 동독인들의 귀환을 종용하고자 상담소를 개설함.

o 89년 9월 8일

- 동베를린 주재 서독상주대표부는 체류중이던 총 116명의 동독인들 - 그들중 일부는 1개월 이상 체류 - 은 자발적으로 고향으로 귀환
  - 무죄처분 약속과 합법적 출국여행 추진시 법적 지원 약속을 받음.

o 89년 9월 10일

- 헝가리 정부는 동독 정부와의 사전 협의없이 모든 동독 탈출난민이 서독으로 출국여행하도록 허용할 것을 발표

- 동독 ADN 통신은 헝가리 정부를 비난 :
  - 헝가리 정부가 국제조약을 위반함.
  - 헝가리 정부가 동독의 국내문제에 직접 개입함.

o 89년 9월 11일

- 헝가리가 자정을 기해 동독난민을 위해 대 오스트리아 국경을 개방
  - 동년 9월말까지 이 경로를 이용하여 25,000명 이상의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이주함.
- ADN 통신은 서독의 “거대한 기습작전(Coup)” 이라는 해설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논평 : (동 기사는 모두 '89년 9월 12일자 Neues Deutschland지에 전재됨)
  - 이 기습작전은 우연한 작전도 아니고 단독작전도 아니다. 이는 사회주의 전체에 반기를 든 제국주의 십자군 원정의 일환임.
  - Passau(오스트리아와 접경한 Bayern주 도시) 발 ADN 현지 보고 : “동독시민을 상대로 한 차디찬 거래 - 헝가리에게 은화 몇푼”

o 89년 9월 12일

- 동독 외무부의 각서를 헝가리 외무부에 전달함 :
  - “동독 정부는 합법적인 여행증명서 없이 제3국으로 출국여행할 수 있도록 한 헝가리 정부의 결정을 ‘불쾌하게’ 인지하였다. 동독은 헝가리가 무비자 국경통과 여행협정 중 일부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기를 기대한다. 1969년도 동 협정을 통해 동독과 헝가리 양측은 합법적 여행증명이 없는 상대국 시민을 제3국으로 출국여행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 Neues Deutschland지는 소련 관영통신 Tass를 인용, 다음과 같이 보도 :
  - 서독의 일부 매스미디어와 특정정치집단은 동독을 반대하는 음흉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

- 이를 통해 동독시민들의 불법 외국여행이 조장되고 있음.
- 동독의 주권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이 모의는 행위는 동독이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불가분한 한 가맹국이고 우리의 신뢰스런 우방이자 동맹국이라는 사실에 대한 도발임.
- 소련공산당 정치국원 리가초프(역주 :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에 맞섰던 보수파)는 구동독 공산당 정치국원인 Werner Krolkowski와 만나 회담, ADN 보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일치 :
  - 서독의 특정정치집단이 감행한 국제법 위반 음모활동을 준엄하게 심판함.
  - 비방, 유혹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동독시민들이 불법적으로 자국을 떠나도록 조장하였음.
- 약 250명의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 체류 탈출희망자들이 서독대사관을 떠난 후 동독으로 귀환 :
  - 무죄처분된다는 약속을 받음.
  - 출국여행 신청서 제출시 법적 상담지원을 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음.

o 89년 9월 13일

- Neues Deutschland지는 체코 관영통신 CTK를 인용, 다음과 같이 보도
  - “최근 서독의 매스미디어와 특정정치집단은 동독시민들을 제3국으로 불법 출국여행하도록 캠페인과 액션을 자행하였는 바, 이러한 선동행위는 전유럽과정의 정신에 위배되고 Wien의 CSCE 후속회담의 결과에도 위배되며, 기타 국제법적 기본규범에도 위배되는 것임.”
  - Passau 발 통신원 보도 : “서독 미디어와 정치가들의 야단법석이 끝난 다음, 동독시민들은 X-day를 기해 불법적으로 감행된 야음 액션에 그 운명이 떠맡겨졌다.”

o 89년 9월 14일

- 헝가리 외무부는 9월 12일자 동독외무부의 각서를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반박 :
  - 1969년도 조약법에 관한 Wien 협약은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인정되는 것임 :
    - .. “상황의 근본적 변화가 변화의 결과로 조약상 충족되어야 할 의무 행위의 범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때 동 조약의 파기 또는 조약으로부터의 탈퇴근거가 될 수 있음.”
    - .. 헝가리 정부는 상황의 근본적 변화때문에 양국간 협정 중 일부 사안을 잠정적으로 파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음.
- Neues Deutschland지는 서독을 비난하는 루마니아 통신 Agerpress를 다음과 같이 인용:
  - 서독은 불법행위를 통해 대다수의 동독시민을 매수, 헝가리를 경유하여 방류시켰음.
  - 동독과 체결한 양국간 조약을 남용하면서 불법출국행위가 비로소 가능해지도록 만든 헝가리 인민공화국의 자세는 이해할 수 없음.

o 89년 9월 17일

- 헝가리 총리 Nemeth는 서독의 “Bild am Sonntag” 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 :
  - 헝가리는 “인도주의라는 명분 하에” 동독난민의 대 오스트리아 월경을 허용하였음.
  - 진실로 “유럽의 집” 을 지으려면 국경을 다시 폐쇄할 수 없음.
- 부다페스트에 체류중인 난민들의 보고에 따르면 동독은 동독인들로부터 신분증과 여행증명서를 빼앗으면서 대규모 탈주를 방지하려 시도하였다는 것임.

- 부다페스트 주재 Malteser 재난 지원단장 Wolfgang Wagner의 보고 :
  - 난민수용소에 수용된 사람 중 상당수가 불법적으로 헝가리에 입국했다고 신고
  - 그 중 일부는 Stasi 요원이 그들의 가정을 방문, 증명서를 압수했다고 신고
  - 기타 동독시민들은 헝가리로 오는 도중 붙잡혀 집으로 되돌아 갔다는 것임.

o 89년 9월 18일

- Neues Deutschland 지는 서독이 동독에 대해 대대적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소련공산당 기관지 “Prawda” 와 체코공산당 기관지 “Rude Pravo” 지의 비난성 기사내용을 인용 보도함.
  - 숨길 수 없는 국제법 위반행위
  - 서독은 동독 건국기념일에 먹칠하려는 “도발행위” 를 감행
-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에 또 다시 약 400명, 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에 약 100명의 난민이 체류

o 89년 9월 19일

- Neues Deutschland 지는 “인신매매” 라는 제하의 전면기사와 함께 서독을 비난 :
  - 서독은 갖은 약속, 심리적 압박감 조성, 노골적 역선전 등의 방법을 통해 동독시민으로 하여금 제3국을 경유하여 고향을 떠나도록 하고 있음.
  - 서독의 책동은 고급참모급 수준으로 준비된 후 인정사정없이 감행되고 있음.
- 난민 초과체류상태 때문에 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을 폐쇄함.
-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에 찾아 든 난민수는 500명으로 증가
  - 난민증가 원인은 체코정부가 대 헝가리 국경에 대한 검문을 강화했기 때문임.



- 즉, 동독을 출발하여 새로 체코를 경유, 헝가리로 가려는 난민들은 모두 체코 국경수비대원에 의해 월정이 저지되었거나, 불법 월정에 성공하지 못했음.

o 89년 9월 21일

- Neues Deutschland지는 동베를린 Mitropa 호텔 요리사의 체험을 다음과 같이 보도 :
  - 헝가리에서 마취된 후 자의에 반하여, Wien으로 강제 인도되었음.
  - Wien 주재 동독대사관의 도움으로 다시 고향인 동독으로 되돌아 올 수 있었음.
  - 20명이 넘는 “독자 투고” 와 함께 상기 체험과 비슷한 내용을 게재함.

o 89년 9월 22일

- 동독 국선 변호사 Wolfgang Vogel은 협의차 Bonn 에 도착, 연방수상실장관 Seiters와 만남.
  - 비록 상세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에 체류하고 있는 탈출희망자들은 Vogel 변호사와 장시간 면담한 후 서독 상주대표부를 떠났으며 10월 초순경 서독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o 89년 9월 24일

- 서독정부는 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 및 신학교에 체류하고 있는 동독 난민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만간 모색될 것으로 기대함. 여하한 경우에도 동독으로의 압송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o 89년 9월 25일

- 점점더 많은 동독난민들이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으로 진입하기 위해 대사관 담장을 뛰어 넘음.
  - 건디기 힘든 상황하에 약 900명이 체류, 그 중 어린이가 200명이나 됨.
- Malteser 재난 지원단의 보고에 따르면, 상당수의 난민이 체코로부터 Donau 강을 건너 헝가리로 향하다가 익사하였다고 함.

o 89년 9월 26일

- 동독 국선 변호사 Vogel, 연방내독관계성 차관 Priesnitz 와 동베를린 주재 서독상주대표부 Bertele 대표 및 연방외무부 사무차관 Sudhoff와 함께 프라하로 향발
  - 이들은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에 체류중인 1,000명 이상의 동독난민들의 동독 귀환을 종용하고자 함.
  - Vogel 변호인은 만일 이들이 일단 동독으로 귀환하면 향후 6개월 이내에 서독으로 출국여행할 수 있다는 동독지도층의 “보증성” 약속을 전언
  - 그러나 난민중 200명 만이 이에 호응, 대기중인 버스편으로 동독 귀환
- 체코정부의 한 대표는 Sudhoff 사무차관과 회담 후, 난민문제는 체코정부와는 무관한 동·서독 문제라고 선언

o 89년 9월 27일

- 폴란드 외무부의 한 대변인은 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에 체류중인 약 400명의 동독난민에 대한 해결방안이 “순조롭게 모색 중” 이라고 발표
- 폴란드의 “Trybuna Ludu” 지는 동베를린 특파원 보도를 게재,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킴:
  - 최근 일고 있는 동독 난민운동의 동기는 서독정치가들의 선동에 의한 것임.

- 이로 인해 독일문제가 다시금 일일논의의 대상이 되었음.
- 폴란드는 분단독일의 현상황에 대해 직접 개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
- 그러나 폴란드는 독일민족이 몇개의 국가로 구성되었거나 관계없이 독일민족과 우호, 평등, 안전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가 맺어져야 함은 자명한 일임.

o 89년 9월 28일

- 동독 국선 변호사 Vogel은 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에 체류중인 동독 난민중 50명 만을 우선 동독으로 귀환한 후, 동독에서 서독으로 출국여행할 수 있다는 조건과 함께 설득
- 바르샤바 및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에 체류 중인 동독 난민의 절대다수는 동독으로 귀환하지 않고 직접 서독으로 가기를 강력히 주장
- 이에 Vogel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계속 설득 :
  - 동독 귀환후 단 몇주일 이내에 가족과 함께 서독으로 출국여행 가능
  - 개인 소지품도 지참한 후 서독으로 출국여행 할 수 있으며, 앞으로 동독을 재입국할 수 있음.
- 2,000명 이상의 난민들이 체류 중인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되자, 연방외무장관 Genscher는 독일적십자사 총재 Sayn-Wittgenstein 공으로 하여금 현지 상황을 직접 살펴본 후 지원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양청
  - Sayn-Wittgenstein 총재는 연방외무부 정무차관 Irmgard Adam-Schwaetzer 여사와 함께 프라하로 향발
  - 대사관내 위생시설은 완전 절망상태이고 난민의 보건문제가 심각
  - 난민에 대한 급식문제 역시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 대사관 홀에 마련된 1,000명의 급식용 대형 주방시설마저 더 이상 인원에 대한 급식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름.

- Genscher 외무장관은 UN 총회 참석차 New York 체류 중 소련 외무장관, 체코 외무장관, 동독 외무장관과 회동
  -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다른 국가와 접촉을 유지하면서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에 체류중인 난민현황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
  - 부쉬 대통령과 베이커 외무장관과 함께 오찬을 나누면서 미국의 지원을 약속받음.
  - Fischer 동독 외무장관과 만찬을 나누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함.
    - .. 동독난민들을 동독 국철을 이용하여 동독지역을 통과, 서독으로 출국 여행토록 하면, 이는 곧 강제추방이라고 공식선언할 수 있을 것임.
    - .. Fischer는 이 제안에 대해 묵묵부답
- 점점더 많은 동독시민들이 동독-폴란드간의 국경(Gruene Grenze : 장애물이 없는 지역)을 통과 폴란드로 가려고 시도함.
  - 보도에 따르면 상당수의 동독인들이 국경에서 체포되었다고 함.

o 89년 9월 29일

- 동독 외무장관 Fischer 는 UN 총회 연설을 통해 타국시민에 대한 “언필칭 보호의무” 를 마치 자국의 사안인양 참칭하면서 분쟁을 야기하고 나아가 평화마저 위협한다고 선언
- 체코정부는 동독난민을 위한 주거지 마련을 위한 대책 논의
- Sayn-Wittgenstein 총재, 체코 적십자사와 회담, 인도주의적 지원 가능성 논의

o 89년 9월 30일

- 연방외무장관 Genscher는 연방수상실장관 Seiters와 함께 프라하로 향발, 서독대사관에 체류중인 동독난민들을 향해 오늘 저녁 중에 모두 서독으로 출국 여행할 수 있다고 전달

- Genscher 장관과 Seiters 장관은 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에 체류중인 동독난민 문제는 Honecker가 직접 결단을 취할 사안이라고 부연
- 동독국철의 특별열차편으로 800명의 난민이 바르샤바로부터 동독을 경유, 서독의 Helmstedt 로, 5,500명의 난민이 프라하로부터 Dresden을 경유 서독의 Hof로 향발
- 이 특별열차에는 서독정부의 대표들이 동승
- 난민들이 동독지역에 도착하자 그들의 증명서를 압수하고 다음과 같이 이번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 :
  - 프라하 및 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에 체류중인 동독난민의 상황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출국여행 허가를 발급함.
  - 체코와 폴란드 주민에게 위해가 따를 수 있는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코자 함.
  - 출국여행 행위는 일종의 “추방” 이며, 난민들은 조국을 배신했음.
- 동독외무부는 서독정부가 동독의 국내사안에 개입하면서 국제법 위반행위를 자행하는데 이 모든 것은 대결상태 이상의 심각한 문제라고 재차 서독을 비난

o 89년 10월 1일

- 6,000명 이상의 난민이 동독국철의 특별열차편으로 프라하 및 바르샤바를 출발 서독에 도착
- ADN 동독 관영통신은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논평 :
  - 난민들은 도덕적 가치관을 발로 짓밟는 행동을 통해 스스로 우리사회로부터 배제되었으니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릴 필요가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40주년 건국기념일을 기해 구동독 공산당 정치국원 Egon Krenz가 동독대표로 참석)

○ 89년 10월 2일

-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에 또다시 1천여명, 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에 100 여명의 동독난민이 체류하기 시작
- Seiters 수상실장관은 Bonn 주재 동독 상주대표부 대사 Horst Neubauer를 수상실로 초치, 동독정부가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라고
  - 이에 대해 Neubauer는 ADN을 통해 서독측이 구동독 시민의 추방과 관련된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
  - 이에 대해 Seiters 수상실장관은 난민수용을 거절할 수 없다고 대응
- Priesnitz 연방내독관계성 사무차관은 서베를린에서 동독 국선변호인 Vogel과 만나 난민현황에 관해 논의

○ 89년 10월 3일

- Bonn 주재 동독 상주대표부 대사 Neubauer는 수상실장관 Seiters에게 동독 정부가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에 체류중인 난민전체에 대해 서독행 출국 여행 허가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달
- 동독-체코간 무비자 여행교류 조치는 즉각 중단됨.
  - 이에 관한 ADN 통신보도 : 서독의 특정집단이 동독 건국 40주년을 기해 계속적으로 도발
  - 이에 관한 Neues Deutschland지 사설 : 서독이 국제법 위반행위를 자행하면 할수록 점점 더 여행제한조치가 강화될 것임.

○ 89년 10월 4일

- 약 7,600명의 동독난민이 빗장을 질러 잠귀는 동독국철 특별열차를 이용, 동독지역을 통과 서독으로 운송됨.
  - 서독도 착은 기술적 문제 때문에 하루가 지연되었는데, 동독은 주민들의 동승사태를 방지하고자 선로와 정거장을 접근금지 시켰음.

- Dresden 중앙역에서 약 3,000명의 주민들과 안보요원간에 폭력사태 발생
- 전날부터 동베를린 주재 미국대사관에 체류중이던 18명의 탈출 희망자들은 출국여행 신청서가 “관대하게 검토” 될 것이라는 확약을 받고 대사관 건물을 떠남.
- 동독 외무부차관 Harry Ott가 난민문제를 협의코자 헝가리 외무장관 Horn을 방문

(동독 건국 40주년 공식행사가 동독인민군 열병식과 함께 시작)

o 89년 10월 5일

- 약 600명의 난민이 동독국철 특별열차를 이용, 바르샤바로부터 하노버에 도착
-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에 체류중이던 약 2,000명의 동독시민들은 귀환후 2개월 이내에 출국여행 할 수 있다는 확약을 받고 동독으로 귀환
- Neues Deutschland지는 동독을 불법적으로 출국해버려 비어 있는 주택은 즉시 새로운 세입자에게 임대될 것이라고 공식발표를 인용 보도
- 동·서베를린 통과초소에서 대다수의 동독행 입국 희망자들의 동독입국이 거절됨.
  - 서독정부와 서베를린 시정부는 이에 항의
  - 서베를린 주둔 연합군 도시사령부는 동베를린 주재 소련대사관에게 입국거절조치를 철회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발표
  - 잇단 항의에도 불구하고 10월 9일까지 동독입국 거절조치는 계속되었으며,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3,625명에 대한 입국거절 사례가 집계됨.

○ 89년 10월 6일

(동독건국 40주년 기념행사 전야제)

- Bonn 주재 동독 상주대표부 대사 주최 동독 건국행사 리셉션에 수상실장관 Seiders가 서독정부를 대표하여 참석

○ 89년 10월 7일

(동독건국 40주년 기념일)

○ 89년 10월 9일

- 동베를린 주재 서독상주대표부 Bertele 대표는 연방정부의 이름으로 동독 외무부에게 7일과 8일 서독 취재기자의 자료압수 및 파괴 등 방해사태에 대해 항의

○ 89년 10월 10일

- Muenchen 소재 Bayern주 국경경찰 보고에 따르면 8월 중순부터 Bayern주에 집계된 동독난민 35,000명중 50명이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동독으로 귀환했다고 함.

○ 89년 10월 11일

- 구동독 공산당 정치국은 동독 현황보고를 통해 동독시민의 대규모 탈출 사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발표 :
  - 그들이 탈출하는 동기는 다양함.
  - 우리는 그들이 우리모두처럼 한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색할 것이며, 여행 가능성을 개선할 것임.



o 89년 10월 12일

- 동베를린 시장 Erhard Krack은 종교지도자들과 토론후 “여행 가능성의 확대조치” 를 시사
- 동독 문화연맹 총재단은 수천시민이 고향과 고국을 등지고 있는데, 특히 젊은이들이 국외로 이주하지 말고 어렵더라도 동독에서 미래의 생활을 모색해야 한다고 성명

o 89년 10월 13일

- Honecker는 처음으로 대규모 탈출사태에 대해 언급 : “어떤한 근거라 할지라도 우리나라로부터 결별하는 시민들은 결코 모든 사람들과 동격화 할 수 없다.”
- 서독정부는 동독정부로부터 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의 보호하에 있는 동독시민들이 바르샤바 주재 동독대사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원하는 국가로 출국여행 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통보를 받음.
- Neues Deutschland지는 동독 내무부의 발표를 인용, 체코행 무비자 여행 교류조치가 취소된다고 보도

o 89년 10월 14일

- 동독외무차관 Harry Ott는 2일간 바르샤바를 방문, 서독대사관 체류 동독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해결방안” 논의

o 89년 10월 15일

- 가을방학의 시작과 더불어 헝가리를 경유하여 서독으로 가려는 동독 난민수가 폭증
- 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에는 1,200명의 동독난민이 확약받은 서독행 출국여행 허용조치를 기대하며 대기중

○ 89년 10월 17일

- 바르샤바로부터 동독난민 제1차 그룹이 뉘셀도르프 공항에 도착
- 동독 자민당(LDPD) 중앙위는 커뮤니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촉구
  - 전반적인 여행 자유화 조치
  - 동독시민권 포기를 위한 새로운 법규정 마련

○ 89년 10월 18일

(Honecker 실각)

○ 89년 10월 19일

- 동독 각료평의회는 동독 내무부로 하여금 동독시민의 국외여행에 관한 법률초안을 즉각 작성하도록 지시, 또한 동독 법무부로 하여금 조만간 내년도 입법제정 계획의 일환으로 여행법 초안을 제출하도록 함.

○ 89년 10월 20일

- 동독 외무부의 한 대변인은 동독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 :
  - 동독을 떠난 사람들은 원할 경우, 동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음.
  - 동독으로 귀환할 경우, 서독 주재 동독상주대표부를 포함한 동독의 모든 재외공관과 접촉하면 됨.

○ 89년 10월 21일

- 동베를린시장 Erhard Krack과 구동독 공산당 정치국원 Guenter Schabowski는 시위군중과 1시간동안 토론후, Schabowski는 새로운 여행법이 “최우선 순위” 에 있는 사안임을 강조

o 89년 10월 24일

- 동독인민의회 Egon Krenz를 국가평의회 의장으로 선출, Krenz는 “우리 시민들이여 동독을 동돌리지 말아 달라” 고 호소

o 89년 10월 25일

- Egon Krenz 신임 구동독 공산당 서기장은 서독 자민당 원내총무 Wolfgang Mischnik의 의견교환 방문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
  - 동·서독 관계의 안정은 유럽안정에 중요함.
  - 새로운 여행규정의 도입과 함께 모든 동독시민은 여권과 비자를 받게됨.
- 동독 변호사 협회는 여행자유 등을 촉구

o 89년 10월 26일

- Kohl 수상은 신임 동독국가주석 Egon Krenz와 동·서독간 협력의 속행에 관해 20분간 전화통화
- 동독 각료평의회 의장 Willi Stoph는 동독 TV 및 라디오 방송을 통해 소비재 및 생필품의 추가수입조치를 발표

o 89년 10월 27일

- 동독 국가평의회는 89년 10월 27일 이전, 불법월경의 처벌행위를 저지른 사람 및 불법적으로 동독을 출국해 버리려 시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 사면 조치를 결정
- 동독 각료평의회는 잠정적으로 무효화 했던 체코행 무비자 여행교류조치를 89년 11월 1일을 기해 재도입하기로 결정

- 동독 국영 Interflug 항공과 서독의 Lufthansa 항공은 89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체결한 Leipzig-Duesseldorf/Frankfurt간 항공운행을 90년 2월 1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
-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에 체류중이던 150명의 동독 난민들은 버스편으로 서독으로 운송됨.
  - 이들은 사전에 동독대사관으로부터 동독국적을 박탈당한 후 출국여행 증명을 받았음.

○ 89년 11월 8일

- 동독주민의 탈주는 계속되어 지난 24시간동안 11,126명이 서독으로 넘어옴.

○ 89년 11월 9일

- 19시경 동독 공산당 중앙위 정보담당서기 Guenter Schabowski는 동독 TV를 통해 새로운 여행법을 공포 :
  - 앞으로 동독시민은 아무런 문제없이 서독으로 여행할 수 있으며, 여권과 비자는 신속한 절차를 통해 발급될 것임.

(Brandenburg 문 개방 - 동·서베를린장벽 무너지기 시작)